

祈雨祭謄錄 3
기우제 등 록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祈雨祭謄錄
기우제 등 록
3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4책

영조조

을해년 ¹⁷⁵⁵	10	임오년 ¹⁷⁶²	86
병자년 ¹⁷⁵⁶	11	계미년 ¹⁷⁶³	118
정축년 ¹⁷⁵⁷	17	갑신년 ¹⁷⁶⁴	132
무인년 ¹⁷⁵⁸	29	을유년 ¹⁷⁶⁵	178
기묘년 ¹⁷⁵⁹	45	정해년 ¹⁷⁶⁷	191
경진년 ¹⁷⁶⁰	54	무자년 ¹⁷⁶⁸	207

기축년1769

216

경인년1770

230

신묘년1771

237

임진년1772

265

계사년1773

287

갑오년1774

307

정조조

병신년1776

329

정유년1777

330

무술년1778

359

기우제등록

제4책

1755~1778년

전향사기우록 6

典享司祈雨錄 六

영조조 을해년¹⁷⁵⁵부터 병신년¹⁷⁷⁶까지

정조조 정유년¹⁷⁷⁷부터

예조 상

英廟朝 自乙亥至丙申

正廟朝 自丁酉

禮曹上

건륭 20년 을해년¹⁷⁵⁵ 6월 29일

● 영제를 설행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영제^{禁祭}는 오는 2일 설행하라.”

하였다.

을해년¹⁷⁵⁵ 7월 12일

● 영제 헌관을 써서 들이다.

전교하기를,

“영제^{禁祭}의 헌관은 전례대로 써서 들이라.”

하니, 전례대로 써서 들였다.

을해년¹⁷⁵⁵ 7월 17일

● 제관과 하인에게 미와 포를 지급하라는 전교를 그만두기를 청하는 호조 판서 이철보의 계사

약방이 입진하고 전임 전라도 관찰사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호조 판서 이철보^{李喆輔}가 아뢰기를,

“영제^{禁祭} 때 제관^{祭官} 이하와 별단에 실려 있는 하인에게 미^米와 포^布를 지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례가 없으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乾隆二十年乙亥

六月二十九日

● 禁祭設行傳敕

傳曰：“禁祭，以來初二日設行。”

乙亥七月十二日

● 禁祭獻官書入

傳曰：“禁祭獻官，依例書入。”
前例書入。

乙亥七月十七日

● 戶判李喆輔，因祭官下人 米布題給傳敕，置之啓辭

一. 藥房入診，前湖南道臣同
爲入侍時，戶曹判書李喆輔所
啓：“禁祭時祭官以下，別單中
下人，米布題給事，命下，而此
無前規，置之何如？”上曰：
“依爲之。”

을해년¹⁷⁵⁵ 7월 21일

● 사문영제를 통지하라는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2차 사문 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23일에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⁷⁵⁶ 5월 25일

● 사문영제를 설행하고 헌관과 집사들을 가려 차임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아직 보리를 수확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단비가 장마가 되었으니 농사가 걱정스럽다.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26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며, 헌관과 집사들을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병자년¹⁷⁵⁶ 5월 26일

● 사문영제를 한 차례 지냈는데 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그쳤으므로 제사 설행을 어떻게 할지 여쭙는 기사를 올리자 성실함이 부족하니 이대로 거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乙亥七月二十一日

● 四門祭祭知委啓辭

一. 曹啓曰：“再次四門祭祭，不卜日，來二十三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允。”

丙子五月二十五日

● 四門祭祭設行，獻官·諸執事擇差傳教

傳曰：“牟麥猶有未穫處，而時雨成霖，民事可悶。四門祭祭，不卜日，以二十六日設行，三日而止事，分付該曹，獻官·諸執事擇差。”

丙子五月二十六日

● 四門祭祭一次，雲散雨晴，故行祭何以爲之啓辭，傳曰：“亦欠誠實，依此舉行。”

一. 曹啓曰：“四門祭祭，以

“사문영제를 26일에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어제 즉시 향궐을 받아 한 차례 설행하자마자 오늘 먹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져 비가 깨끗이 그쳤습니다.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한 차례 제사를 지낸 뒤 비록 중지한 전례는 없지만 날이 갠 뒤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 또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제를 3일 동안 지내는 것은 3백 년 동안 내려온 오랜 규례이다. 이 제사를 지내라고 명한 것은 백성의 보리 농사 때문에 안절부절못하여 그런 것이다. 기우제와 기청제를 지내는 것은 백성은 임금에게 의지하고 임금은 하늘에게 바라는 법이니 근심이 있으면 호소한다는 의미이다. 처음에 이르다고 하면서 중지하기를 청하였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제사를 지낸 뒤 하루 날씨가 맑아지자마자 바로 중지하면 어찌 성실하다고 하겠으며, 천지신명이 흠향하고 감동하겠는가.

오늘 바람이 맑으니 보리에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제 날이 개었다고 해서 어찌 어제 비가 오지 않을 줄 해야겠으며, 오늘 날이 개었다고 해서 어찌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줄 알겠는가. 마음 속으로 다행으로 여기는 가운데 여전히 안절부절못하다. 더구나 오늘 날이 개인 것은 제사를 지낸 결과가 아니고, 기청제 또한 하루 날이 개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니 어찌 일찍 중지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二十六日設行，三日而止事，下教矣。昨日即爲受香，纔行一次，而今日則陰雲四散，雨意決晴。取考膳錄，則一次行祭後，雖無中止之前例，既霽之後，仍爲行祭，亦涉如何，何以爲之？敢稟。”傳曰：“祭祭三日，三百年舊規，其命此祭，爲民麥事，憧憧而然。凡祈雨祈晴者，民之所依君，君之所望天，有悶則籲之之意也。初曰早而¹請寢，猶可也，既祭以一日之晴旋寢，其豈日誠？神何享感？今日見風清，於麥雖幸，再昨日霽，豈料²昨日之不雨？今日之霽，焉知明日之不雨？心中幸，其猶憧憧，況今霽，非行祭之致，祈晴亦非一日之霽，其何早乎³？末梢句語，亦欠誠實，依此舉行。”

1 而：저본에는 ‘雨’.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5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 料：저본에는 ‘料’.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5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 乎：저본에는 ‘雨’.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5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문구도 성실함이 부족하니 이대로 설행하라.”
하였다.

● 사문영제를 적간하다.

전교하기를,

“날이 우연하게 요행히 개었다고 또 영제를 중지할
지 여쭙었으니, 참으로 세도가 알아 필시 마음이 해
이해진 탓이다. 만약 정결함이 부족하면 제사를 지
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 사대문에 특별히 신칙하여
반드시 정성껏 지내고, 비변사로 하여금 때때로 적
간^{摘奸}하여 부지런한지 살피게 하라.”

하였다.

병자년¹⁷⁵⁶ 7월 25일

● 영제의 택일에 대한 계사를 올리자 형세를 보
아 하겠다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미 가을이 오고 찬비가 쏟아져 사흘 동안 그치지
않으니, 이삭이 팬 곡식이 필시 손상되었을 것입니
다.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기청
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전례대로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부터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형세를 보아 하겠다고 전교하였다.

● 四門祭祭摘奸

一. 傳曰：“日偶幸晴，又有稟
寢，誠淺世道，心必懈弛，若
或欠潔，不若不祭。另飭四門，
必也虔誠，其令備局，時遣摘
奸，察其勤慢。”

丙子七月二十五日

● 祭祭卜日啓辭，傳曰：“觀
勢爲之。”

一. 曹啓曰：“秋節已屆，冷雨
大注，三日不止，發穗之穀，必
致傷損，言念民事，誠爲可慮。
祈晴之舉，不容少緩，依前例，
四門祭祭，不卜日，來二十七
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何
如？”傳曰：“觀勢爲之。”

병자년¹⁷⁵⁶ 8월 21일

- 영제를 거행하는 헌관과 집사들을 가려 차임 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추수가 다가왔는데 찬비가 그치지 않는다. 형세를 보려다가 때를 넘기느니 즉시 설행하는 것이 낫다. 영제는 해당 조로 하여금 모레 설행하게 하고, 헌관과 집사들을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병자년¹⁷⁵⁶ 8월 23일

- 기청제는 다시 형세를 보겠다는 하교

전교하기를,

“오늘은 이미 개었으니 기청제는 다시 하루 이틀 보다가 하교를 기다려 거행하라.”
하였다.

- 기청제에 친히 전향하다

전교하기를,

“기청제의 향을 받는 것은 내일 친히 전한 뒤 승지가 월대^{月臺}에서 거행하라.”
하였다.

丙子八月二十一日

- 祭舉行獻官·諸執事擇差傳教

一. 傳曰：“秋成在近，而冷雨不霽，欲觀勢而過時，不若趁卽設行。祭其令該曹，以再明日舉行，獻官·諸執事擇差。”

丙子八月二十三日

- 祈晴更觀下教

一. 傳曰：“今已報晴，祈晴更觀一兩日，待下教舉行。”

- 祈晴親傳香

一. 傳曰：“祈晴受香，明日親傳後，承旨月臺舉行。”

병자년¹⁷⁵⁶ 8월 26일

● 영제의 제물 준비를 문루 아래서 하도록 엄히
신칙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영제는 옛날에 문루^{문루} 아래에서 지냈는데, 무례한 일이 많았으므로 초루^{초루}에서 하라고 명하고 북문^{북문}에 장막을 설치하라고 하교하였다. 그런데 지금 승지가 아뢴 말을 들으니, 제물을 익히고 진설하는 것도 성상소^{城上所}¹에서 하고, 문루 안 위판^{位版}이 있는 곳 옆에서 준비한다고 한다. 이는 모두 장막을 설치하지 않고 편의대로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예전에 문루 아래에서 지낼 때도 문루 위에서 하였는가.

더구나 북문의 경우는 문루 아래에서 익히고 진설하였다고 하니, 이 한 가지 일만 보아도 편의대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경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위판 옆에서 만들고 준비한 것이 첫째요, 편의대로 하여 공경하지 않은 점이 둘째요, 전사관^{典祀官} 이하가 문루 위에서 3일 동안 위판과 함께 지낸 점이 셋째이다. 이는 필시 문루 위에서 제사를 설행한 뒤로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해당 헌관, 전사관, 감찰은 해당 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해야 한다. 이번 관원들이 처음 한 일이 아닌 듯하여 비록 참작하지만, 이처럼 무례하고 불경한데도 요

¹ 성상소(城上所) : 조선시대 대궐 문 위에 설치하여 사헌부·사간원의 하위 관원이 근무하던 곳이다.

丙子八月二十六日

● 祭祭物措備, 樓下爲之, 嚴飭傳教

一. 傳曰: “祭祭古行於門樓下, 而多有褻慢之事, 故命於譙樓, 其於北門設帳爲之事, 下教. 今聞承宣所奏, 祭物熟設, 亦爲於城上, 而措備於樓中在位版之側云, 此專由於不設幕, 取便爲之意, 曾前樓下爲之時, 亦行於樓上乎? 況北門熟設於門下云, 卽此一款, 其取便可知. 其褻慢者不一, 造備位版之側一也, 取便不敬二也, 典祀官以下與位版, 三日同處樓上三也, 此必樓上設祭之後, 若此故也. 當該獻官與典祀官·監察, 事當令該府處之, 而想非今官所爲, 其雖參酌, 若是褻慢不敬, 倖而開霽, 此亦高高恤元元之意, 其亦幸矣, 此後祭物措備, 必也樓下爲之事, 嚴飭.”

행히 날이 개었다. 이 역시 하늘이 백성을 불쌍히 여긴 뜻이니, 이 또한 다행이다. 앞으로 제물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문루 아래에서 하도록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병자년¹⁷⁵⁶ 9월 3일

● 기청제를 거행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가을이 머지않았는데 이처럼 찬비가 내리니 2차 기청제를 내일 거행하라.” 하였다.

● 제관은 가려 차임하고 제문은 친히 짓겠다는 전교 및 영제의 향을 받으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예전에 보니 제관을 모두 연로한 사람으로 채워 차임하였다. 이번에는 가려 차임하고, 제문은 친히 지어 내릴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제의 향을 받는 것은 내일 거행하라.” 하였다.

丙子九月初三日

● 祈晴舉行傳敎

一. 傳曰：“秋來指日，冷雨若此，再次祈晴，明日舉行。”

● 祭官擇差祭文親製傳敎及禳祭受香傳敎

一. 傳曰：“曾見祭官皆以年老之人填差矣。今番則擇差，祭文當親製以下矣。”

一. 傳曰：“禳祭受香，明日舉行。”

병자년¹⁷⁵⁶ 9월 4일

- 사문영제를 지내는 곳이 정결한지 여부와 헌관과 집사들의 숙소를 적간하고 금연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승지 1원은 나가서 사문영제를 지내는 곳이 정결한지 여부와 헌관 이하 집사들의 숙소가 문 안 어디에 있는지 적간^{摘奸}하고 또한 금연하게 하라.”
하였다.

정축년¹⁷⁵⁷ 5월 13일

전교하기를,

“보리를 이미 수확하여 농사가 가망이 있었는데 요즘 서늘한 바람이 불고 비 내릴 조짐이 더욱 아득하니, 이곳에 있어도 우리 백성을 돌아보면 내심 걱정이다. 지금 예관이 아뢰는 말을 들으니 대신의 뜻도 그렇다고 한다. 인산^{因山} 이전에 기우제를 설행한 것도 경자년¹⁷²⁰, 경종즉위의 전례가 있으니,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16일에 설행하라. 발인^{發輿}이 머지않았으니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비가 쏟아진 뒤에야 마음이 조금 놓일 것이니, 특별히 근시^{近侍}를 보내 설행하라. 삼각산은 우승지 윤동섬^{尹東暹}, 목덕산은 우부승지 위창조^{魏昌祖}, 한강은 동부승지 김기대^{金器大}를 헌관에 차임하라고 분부하고, 집사들은 각별히 가려 뽑으라. 제문은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丙子九月初四日

- 四門禁祭所精潔與否, 獻官·諸執事宿所, 摘奸禁草

一. 傳曰: “承旨一員進去, 四大門禁祭所精潔與否, 獻官以下諸執事宿所於門內何處, 摘奸亦爲禁草.”

丁丑五月十三日

一. 傳曰: “麥已登場, 農有可望, 近日淒風, 雨意愈邈, 雖在此中, 顧我元元, 其竊悶焉. 今聞禮官所奏, 大臣之意亦然云, 而因山前設行, 亦有庚子前例, 初次祈雨, 不卜日, 以十六日設行, 靸日不遠, 何循常規? 霈然而後, 心可少弛. 特遣近侍設行, 三角山右承旨尹東暹, 木覓山右副承旨魏昌祖, 漢江同副承旨金器大差獻官事, 分付, 諸執事另擇, 祭文當製下.”

정축년¹ 5월 15일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보리는 이미 풍년이 들었고 밭 갈고 김매는 때도 놓치지 않았으니, 망극한 가운데 밤낮으로 온 마음으로 바란 것은 풍년이 드는 것이었다. 근래 가뭄으로 인한 곤궁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아무리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하는 시기를 만났더라도 이미 옛 전례가 있으니, 만약 시일이 지나면 더욱 절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지 않고 승지에게 기우제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때가 되어 여차⁴의 뜰에 앉아 은하수를 바라보니 바람은 심하지 않지만 비가 내릴 조짐은 여전히 전혀 없다. 빈전⁵을 우리러보아도 나를 위로하시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아래로 백성을 돌아보니 김매기를 그만두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 효성이 얕아 시탕⁶할 때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또 덕이 없어 마음으로 비를 불러오지 못하였으니² 이리저리 보아도 부끄러워 이 마음을 억누르기 어렵다. 울부짖으며 탕제를 먹다가 특별히 승지를 불러 내가 지극히 정성이 얕고 덕이 없으니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여 몸소 신칙하는 뜻을 보이겠

2 마음으로……못하였으니 : 송나라 효종(孝宗) 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효종이, 전날 저녁에 기도를 드리려고 하자 한밤중에 곧 비가 왔다고 하며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은 짐이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자, 이때 바로 비가 쏟아졌다. 효종이 비를 보고 웃으며 “이 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자 조웅(趙雄) 등 신하들이 “폐하의 마음으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宋史全史 卷26下 孝宗』

丁丑五月十五日

一. 承旨入侍時, 傳曰: “麥事已登, 耕耘不愆, 罔極中, 夙宵一心, 惟望有年, 近因旱氣之窮, 曷喻? 雖值停大中小祀之時, 已有古例, 若過時日, 尤爲切迫, 故不拘常規, 命承宣而祈雨. 時至坐廬次庭, 而望⁴雲漠, 風色雖不甚, 雨意其猶邈, 仰瞻殯殿, 慰小子之音莫聞, 下顧元元, 撒耘望雨之狀若覩. 噫, 誠孝淺薄⁵, 莫能致誠於侍湯⁶, 又由否德, 亦不能致方寸之雨⁷, 俯仰愧慙, 此心難抑, 攀號進湯, 特召承宣, 曉諭⁸誠淺涼德之至, 仍減三

4 望 : 저본에는 ‘漢’.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 薄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6 於侍湯 : 저본에는 ‘未得陽’.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7 雨 : 저본에는 ‘內’.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8 曉諭 : 저본에는 ‘囑喻’.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다고 효유하였다.

아, 신하들은 선불리 기우제를 지낸다고 말하지 말라. 상복을 입고 발인일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관원을 보내 기우제를 지내게 하니,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제사를 정지한 시기에 어찌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겠는가. 지체하는 동안 농사지를 때를 놓친다면, 아, 이때는 무슨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겠는가.

또 지나치게 가물거나 지나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늘 있는 이치이다. 이러한 때 비가 내리지 않아 시기를 놓쳐 흉년이 판가름났다가 뒤늦게 장마가 저서 발인하는 날 방해가 된다면 어버이에게 효도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백성에게 정성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보니 마음 속에 열음과 숯불이 교차하는 듯하다.

처음에 승지에게 명한 것도 선부른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겠다는 하교 역시 선부른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아, 마음이 타는 듯하여도 자전^{慈殿}께서 위로하는 하교를 들을 수 없고, 저 들판을 바라보니 백성을 위해 대신하고 싶다.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소소한 일로 어떻게 마음을 펴겠는가.

지난날 음식 가짓수를 줄였을 때 매번 자전에게 바치는 것은 제외하라고 하교하였다. 더구나 빈전^{賓殿}인 정성왕후 찬실^{欽室}에 음식을 바치는 것 또한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원량^{元良}이 대리하고 있

日, 以示飭躬⁹之意. 呼嗟, 臣工¹⁰莫日徑¹¹先, 服¹²衰未過引日, 遣臣祈雨, 豈非常年?¹³ 況停祀之日, 亦豈拘常格? 遲滯之間, 農若不及. 嗚呼, 此時, 何心對民? 且極無極備¹⁴, 理之常也, 不雨此時¹⁵, 而愆期判農, 後時成霖, 有碍引日, 可謂爲親孝矣, 可謂爲民誠乎? 思之及此, 氷炭交中, 初次命承宣, 非不知徑先而然也, 減膳之教, 亦非知不經先也. 噫,

9 躬 : 저본에는 '於'.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0 臣工 : 저본에는 '王心'.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1 徑 : 저본에는 '經'.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2 服 : 저본에는 '恨'.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3 豈非常年 : 저본에는 '豈能常承'.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4 備 : 저본에는 '傷'.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5 時 : 저본에는 '心'.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으니 게으르지 않도록 권면해야 한다. 나와 원랑에게 바치는 음식만 거행하라. 승지는 수도안^{囚徒案}을 가져다 살펴보고 경죄수를 석방하라.” 하였다.

정축년¹⁷⁵⁷ 5월 16일

승전색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어제 전교에서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減膳三日]’에서 ‘3일’을 빼고, ‘비가 내릴 때까지[限得雨]’ 세 글자를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앞에 보태라.” 하였다.

정축년¹⁷⁵⁷ 5월 17일

전교하기를,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2차 기우제를 설행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2차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2차 기우제를 지내는 곳에 재신^宰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9일에 설행하라고 통

心焉如灼，慰教莫聞，瞻彼田野，爲民欲代，減膳小節，何以伸懷？前日減膳時，每教慈殿所捧外，況尤¹⁶殯殿貞聖攢供，亦何預乎？今日元良代理，宜勉其倦，只予及元良供膳舉行，承旨取覽囚徒，輕囚放釋。”

丁丑五月十六日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昨日傳教中，減膳三日之三日拔去，限得雨三字，添於減膳上。”

丁丑五月十七日

一. 傳曰：“龍山江·楮子島，再次祈雨祭設行.”

一. 曹單子：“龍山江·楮子島，再次祈雨設行事，命下矣。兩處祈雨祭，遣宰臣，不卜日，

¹⁶ 尤：저본에는 ‘又’.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망극한 가운데 가뭄이 심하여 우리 백성을 돌아보
니 걱정스럽고 다급한 마음 더욱 간절하였는데, 하
늘이 백성을 위하여 밝게 보살피고 보우하여 먹구
름을 일으켜 비를 쏟아주어 나의 애타는 마음을 풀
어주셨다. 마음은 다행스럽지만 나를 위로하는 목
소리는 들을 수 없으니, 감히 마음에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가.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
하다. 이 비를 누가 내려주셨는가. 하늘에 계신 영령
의 은혜이다. 비가 내렸는데 기우제를 지내면 성실
함이 부족하니, 용산강과 저자도의 기우제는 우선
정지하고 수표직의 보고를 기다렸다가 보사제를 지
낼 것이다. 해당 조로 하여금 잘 알고 거행하게 하
라. 보사제의 제문은 지어 내릴 것이다. 지금 비가
내렸지만 어찌 감히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일은 그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향을 전달하는 일은 하교를 기
다려 거행하라. 승지는 입시할 때 제보부(祭報府)를 가
지고 들어오라.”
하였다.

來十九日設行之意，知委何
如?”

一. 傳曰：“罔極之中，旱氣之
甚，顧我元元，尤切悶迫，蒼
蒼爲民，照垂眷佑，油然霈然，
釋我焦心，心雖幸矣，慰音莫
聞，敢論心幸？哀慕愈切，是
誰之賜？陟降攸惠，得雨且祈，
其欠誠實，江島祈雨，姑爲停
止，以待水標，應行報謝，其令
該曹，知悉舉行。報謝祭文，其
當製下，今雖得雨，豈敢解心？
減膳一節，因爲舉行。”

一. 傳曰：“龍山江·楮子島傳
香，待下教舉行，承旨入侍時，
祭報府持入。”

전교하기를,
 “음식 가짓수를 줄이게 하였는데, 일단 비가 내렸다고 해서 평상시처럼 회복하지 말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넘쳐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축년¹⁷⁵⁷ 5월 18일

예방 승지와 편차인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세 곳에 지내는 보사제는 택일하지 말고 19일에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보사제 헌관은 유신을 차임하여 보내라고 분부하고, 집사와 제물을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예조의 계목에,
 “방금 황해 감사 심발^{沈壑}이 농사 형편을 보고한 장달^{狀達}을 보니,

一. 傳曰：“使之減膳矣，姑勿以得雨而復常。”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金四同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過流’是如爲白臥乎事。”

丁丑五月十八日

一. 禮房承旨編次人入侍時，傳曰：“三處報謝，不卜日，以十九日舉行事，分付。”

一. 傳曰：“報謝祭獻官，以儒臣差遣事，分付，執事祭物，另加申飭。”

一. 曹啓目：“卽見黃海道監司沈壑農形狀達則：‘去月二十六日及二十二日之雨，俱

‘지난달 26일과 22일에 내린 비는 모두 호미날을 적실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릴 조짐은 더욱 아득합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으레 정성껏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창 제사를 중지하는 시기이므로 설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제사를 중지하는 때이지만 서울의 기우제를 이미 특교로 설행하였고, 본도의 가뭄이 또 이처럼 혹심하니 기우제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도내의 영험한 곳에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방의 기우제는 도신이 한편으로는 설행하고 한편으로는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규례인데, 황해 감사의 장달과 해당 조의 초기草記는 평상시의 규례와 다르다. 게다가 이번의 비가 필시 두루 내렸을 테니, 이 초기는 돌려주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오점금吳點金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촌 2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不過一鋤許，而淒風連吹，雨意愈邈，在前如此之時，例有虔誠祈禱之舉，而方當停祀之日，不得設行’云。今雖停祭時，京中祈雨祭，旣因特教設行，而本道之亢旱，又若是孔酷，則祈雨祭不容少緩，道內靈驗處，不卜日設行之意，分付何如？”傳曰：“方外祈雨祭，道臣一邊設行，一邊狀聞例也，則黃海監司狀聞，該曹草記，事異常規，且今雨必也周遍，此草記給之。”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吳點金手本內：‘今朝下雨，水標看審，則二寸二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예조의 단자에,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3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호조와 공조에서 남부와 북부에 보내는 감결에,

“이 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얼마 전 특교로 인하여 기우제를 연이어 설행하였는데, 각 단^壇의 제사에 더러운 곳이 많다고 들었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지난 봄 연신^{筵臣}이 아뢴 말로 인하여 각 단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각별히 엄히 신칙하였으니, 본조의 낭청을 보내 때때로 적간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때에는 더욱 유념하여 거행해야 하니, 각 부^部에 소속된 각 단을 단직^{壇直} 등에게 정결하게 수리하고 청소하게 하여 훗날 크게 논책당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각 단의 단직들은 정식으로 인원수를 갖추어 둔 뒤에야 거행할 수 있으니, 각 단 단직의 원호^{元戶} 8명씩을 즉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고 예조에 올려 상고할 수 있게 하십시오. 만일 늦어지면 죄를 달게 받고 사양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一. 曹單子: “中部水標直金四同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五寸三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戶工曹南北部了甘結: “右甘結, 纔因特教, 祈雨祭連爲設行是如乎, 聞而各壇祭多有汚穢處云, 事甚該然. 昨年春, 因筵臣所達, 各壇修掃, 別爲嚴飭, 發遣本曹郎廳, 時時摘奸事, 傳教教是如乎, 況當此時, 尤爲惕念舉行, 各部所屬各壇, 使其壇直等, 務潔修掃, 俾無日後大段論責之弊爲旂, 且於各壇壇直等, 宜依定式名數備置, 然後可以修舉, 各壇壇直元戶八名式, 卽爲修成冊上曹, 以爲憑考之地爲白乎矣, 萬一遲晚, 甘罪不辭事.”

정축년¹⁷⁵⁷ 5월 19일

전교하기를,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경기 감영의 장계는 나머지 여러 도^道의 장계가 도착한 뒤에 승정원에서 입계하라고 명하였으니, 이번에 비 내리는 상황을 알고자 해서이다. 이번에는 비가 내린 뒤 대내^{大內}에서 들을 것이니 전례대로 원량^{元良}에게 들이라.” 하였다.

정축년¹⁷⁵⁷ 5월 24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2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의 수본에, ‘오늘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촌 2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의 수본에,

丁丑五月十九日

一. 傳曰: “雨澤狀聞, 畿營狀啓, 其餘諸道來到後, 自政院入啓之命, 欲知今番雨澤之意, 今番雨澤後, 則自內當聞, 依例入于元良.”

丁丑五月二十四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四同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二尺二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四同手本內: ‘今夜水標看審, 則六寸二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四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축년¹⁷⁵⁷ 5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 별장^{漢江別將} 이동준^{李東浚}의 첩정^{牒呈}문에,
 ‘이번에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 제천정^{濟川亭}의 평상시 수위를 기준으로 포백척^{布帛尺}으로 측량하니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축년¹⁷⁵⁷ 7월 2일

예조의 단자에,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이 와서 아뢰기를,
 ‘3경에 수표를 측량하니 1촌 2분이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의 수본에,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丁丑五月二十八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別將李東浚牒呈內: ‘今番下雨, 江水漲溢, 濟川亭常流基¹⁷, 以布尺尺量加漲’是如爲白臥乎事.”

丁丑七月初二日

一. 曹單子: “中部水標直金四同來告內: ‘三更內, 水標尺量, 則一寸二分’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¹⁷ 基: 저본에는 ‘墓’. 『승정원일기』 인조 5년 6월 21일 등의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오늘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촌 2분이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수표직 김사동_{金四同}이 와서 아뢰기를,
 ‘5경에 수표를 측량하니 4촌 3분이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중부 수표직 김사동_{金四同}의 수본에,
 ‘오늘 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촌 3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축년₁₇₅₇ 7월 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_{金四同}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6촌 1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金四同手本內：‘今夜下雨，水標看審，則一寸二分’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¹⁸：“水標直金四同來告內：‘五更量，水標尺量，則四寸三分’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中部水標直金四同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四寸三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丁丑七月初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金四同手本內：‘今朝下雨，水標看審，則三尺六寸一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18 曹單子：저본에는 없음. 문맥에 근거하여 보충

정축년¹⁷⁵⁷ 7월 16일

전교하기를,
“기우제와 기청제는 모두 때에 따라 지내니, 김낸 뒤에 만약 비가 연일 내리면 풍년을 기대하는 농사가 걱정이다. 택일하지 말고 사문영제를 17일에 거행하라고 즉시 분부하고, 제관은 각별히 가려 유신^{儒臣}으로 차임하여 정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17일에 거행하라고 전교 하셨습니다. 17일에 시작하여 규례대로 3일 뒤에 정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정축년¹⁷⁵⁷ 7월 27일

전교하기를,
“가을비가 장마가 되었으니, 기청제는 내일 향^香을 받아 모레부터 3일 동안 지내고, 헌관은 유신으로 가려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오늘 날씨가 쾌청하면 내일 나에게 물은 뒤에 향을 전달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가을비가 장마가 되었으니 기청제를 즉시 거행해야

丁丑七月十六日

一. 傳曰：“祈雨祈晴，其皆隨時，鋤後其若連日，望登之年事可悶，不卜日，四門禋祭，以十七日舉行事，卽爲分付，祭官另擇儒臣差定。”

一. 曹啓曰：“四門禋祭，不卜日，以十七日舉行事，傳教矣。自十七日爲始，依例三日而止事，知委何如？”

丁丑七月二十七日

一. 傳曰：“秋雨成霖，祈晴祭明日受香，自再明日至三日，而獻官以儒臣擇差事分付，今日若快晴，明朝稟後傳香”事，傳教。

一. 傳曰：“秋雨成霖，祈晴宜卽舉行，自明日至三日爲之，

한다. 내일부터 3일 동안 거행하라. 제문은 지어 내릴 것이고 헌관은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5월 5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오점금^{吳點金}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2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5월 13일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내린 비는 보리에는 충분했지만 벼에는 적실 정도였고, 그 뒤 5일이 지났는데 하룻밤 보슬비가 내린 뒤로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다. 저 들판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걱정스럽다. 때를 놓치느니 미리 하는 것이 낫다. 1차 기우제는 15일에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1차 기우제를 15일에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而祭文製下，獻官擇差。”

戊寅五月初五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吳點金手本內：‘今朝下雨，水標看審，則二尺二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戊寅五月十三日

一. 傳曰：“頃者之雨，於牟麥雖足，於畚穀惟潤矣。其後五日，一夜微雨之後，雨意漠然，瞻彼田野，予心悶然，其或後時，不若預焉。初次祈雨祭，以十五日舉行事，分付。”

一. 曹啓曰：“初次祈雨祭，以十五日設行事，命下矣。三角

다.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명하였으니 비국으로 하여금 적간(摘奸)하게 할 것이다. 각별히 정성껏 치재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5월 16일

선전관과 교동 수사(喬桐水使)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2차 기우제의 헌관과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宰臣)을 보내고,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山·木覓山·漢江等處，遣三品官設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一. 傳曰：“祈雨祭既命設行，當令備局摘奸，各別虔誠致齋事，分付。”

戊寅五月十六日

一. 宣傳官喬桐水使入侍時，傳曰：“再次祈雨祭獻官·諸執事另擇事，分付。”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宰臣，不卜日，來十八日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

무인년¹⁷⁵⁸ 5월 1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오점동^{吳點同}의 수본에,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촌 1분 높
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5월 19일

전교하기를,
“보사제를 지낸 뒤에도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으
니, 3차 기우제는 사직과 남단에 대신을 보내 21일
에 설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3차 기우제 단자는 예조에 하교할 것이니, 하교하
면 단자를 들이라.”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5월 22일

예조가 아뢰기를,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에서 지내야 하
는데, 전교로 인하여 사직·남단은 이미 거행하였

戊寅五月十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吳點同手本內：‘今朝下雨，水
標看審，則二寸一分流下’是如
爲白臥乎事。”

戊寅五月十九日

一. 傳曰：“報謝之後，漠然雨
意，三次祈雨，社稷·南壇遣
大臣，二十一日設行。”

一. 傳曰：“三次祈雨祭單子，
當下教于禮曹，單子待下教入
之。”

戊寅五月二十二日

一. 曹啓曰：“三次祈雨祭，當
行於風雲雷雨·山川·雪祀，
而因傳教，社稷·南壇，已爲

고 우사는 미처 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4차 기우제는 북교·우사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4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이 초기를 미처 들이기 전에 구전으로 하고 하여 봉입하지 못하였다.】

전교하기를,
 “3차 기우제를 지냈는데도 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아득하다. 저 들판을 바라보니 애타는 마음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내일 선농단에 나아가 희생을 대신 하여 친히 기도할 것이니, 삼엄三嚴은 진정辰正 3각으로 거행하라. 마군馬軍 3초哨와 보군步軍 6초, 금군禁軍 3번이 수기隨駕하라. 원량元良의 지영祇迎은 그만두라. 시위侍衛는 그대로 하고, 길은 홍화문弘化門을 경유하라. 해당 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동부승지는 본원에 남고 협련挾輦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5월 24일

선농단 기우 친제에 입시하였을 때 상이 이르기, “기우제를 지낼 때는 본디 우구雨具를 사용하지 않으나, 단상의 신위를 봉안한 곳에는 기름 먹인 차일遮日이 없으면 안 된다. 앞으로는 사단社壇과 교단郊壇에도 일체 거행하라고 거조를 내고 정식으로 삼으라.”

舉行，雩祀則未及設行矣。今此四次祈雨祭，北郊·雩祀遣宰臣，不卜日，來二十四日設行之意，分付何如？”【此草記未入前，口傳下教，不得捧入。】

一. 傳曰：“三次祈雨，雨意愈邈，瞻彼田野，焦心曷諭？明日詣農壇，代犧牲親禱，三嚴以辰正三刻舉行，馬軍三哨，步軍六哨，禁軍三番隨駕，元良祇迎置之，侍衛仍，途由弘化門，令該曹舉行。”【同副承旨留院，挾輦仍¹⁹。】

戊寅五月二十四日

一. 先農壇祈雨祭親祭入侍時，上曰：“祈雨祭時，固不用雨具，而至於壇上神位奉安處，不可無油遮日。此後則社壇·郊壇，一體舉行事，出舉條，

19 仍：지분에는 ‘行’.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였다.

승전색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신칙하였는데도 이처럼 붙잡혔으니 한심하다. 관원은 모두 해당 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하인은 모두 병조로 하여금 곤장을 치게 하라. 이성배李盛培가 누구인지 알아서 들이고, 하인 하나는 예조의 사령이라고 하니, 당상관을 의금부로 내려 추고하라는 휘지徽旨를 봉입捧入하고, 당하관은 의금부에 내려 처리하라.”
하였다.

환궁한 뒤 예방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희생을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였으나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다. 우리 백성을 돌아보니 마음이 타는 듯하다. 친제를 지낸 뒤 해당 조에서는 으레 내게 묻지 못하니, 우선 오늘 보다가 27일에 5차 기우제를 북교에서 친히 지낼 것이다. 예조로 하여금 잘 알도록 하라.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의 수가隨駕는 선농단에서 거행할 때와 한결같이 하고, 협련군과 수가군은 모두 다른 군병으로 거행하라. 유도留都는 어영청이 하고, 수궁 승지守宮承旨는 좌승지가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선농단에서 기우 친제를 지내겠다고 명을 내리셨

定式可也.”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申飭之下，若是見捉，其涉寒心，官員並令該府處之，下人並令兵曹決棍，李盛培²⁰何許人知入，一下人，則禮曹使令云，堂上下義禁府推考，徽旨捧入，堂下下義禁府處之。”

一. 還宮後，禮房承旨入侍時，傳曰：“代犧親禱，雨意漠然，顧我生民，心尤焦灼，親祭之後，該曹例不得稟，姑觀今日，二十七日五次祈雨，當親行於北郊，令儀曹知悉。馬步軍隨駕，一依農壇舉行，挾輦與隨駕軍，皆以他軍舉行，留都，御營廳爲之，守宮承旨，左承旨爲之。”

一. 曹啓曰：“先農壇祈雨親

20 李盛培：저본에는 '李聖情'.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습니다.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전부터 국홀 중에 기우제를 친히 지낼 때 전하의 복색은 흑원령포^{黑圓領袍}·옥대^{玉帶}·흑화자^{黑靴子} 차림으로 제사를 지냈고, 배향^{陪香}할 때도 이 복색을 착용하였으며, 백관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제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선농단 기우 친제를 지낼 때 단상^{壇上}을 수리하는 등의 일은 규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의 낭청을 별도로 보내 함께 검사하고,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감역관을 별도로 정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중사^{中祀}에서는 연제^{練祭} 이후에 음악을 사용하도록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선농단 기우 친제 때는 전례대로 음악을 사용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

祭事, 命下矣. 取考膳錄, 則自前國恤祈雨祭親行時, 殿下服色, 以黑圓領袍·玉帶·黑靴子行祭, 而陪香時, 亦用此服, 百官則以黑團領陪祭矣. 今亦依此例磨鍊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一. 曹啓曰: “今此先農壇祈雨親祭時, 壇上修理等事, 依例別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 眼同看檢, 而亦令繕工監別定監役官, 急速舉行事, 分付何如?”

一. 曹啓曰: “中祀則練祭後用樂事, 已爲定奪矣. 今此先農壇祈雨親祭時, 依例用樂之意, 分付何如?”

一. 曹啓曰: “祈雨親祭時, 自上逮至諸享官, 例有散致齋之

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선농단 친제는 이를 밖에 남지 않았으니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하며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한 일만 아뢰며,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소享所에서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壚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히 지낼 때 향관들은 하루 전 동틀 무렵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달 24일 선농단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23일에 동틀 무렵 먼저 향소에 가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선농단 기우 친제 때 높고 낮은 집사관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이번 23일 동틀 무렵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선농단에 도착한 뒤 높고

規,而今此先農壇親祭,只隔二日,散齋則勢不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壚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二十四日先農壇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二十三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一. 曹單子:“今此先農壇祈雨親祭教是時,大小諸執事官,除隸儀,今二十三日質明,先詣享所爲白如可,大駕詣壇所

낮은 집사는 중사_{中使}·근시_{近侍}와 함께 흑단령 차림으로 규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5월 25일

도승지가 선전관을 거느리고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친히 기도한 뒤 해당 조에서 감히 규례대로 내게 묻지 못하였지만 우리 백성을 돌아보니 어찌 내 몸을 돌보겠는가. 오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일 다시 지내고자 하였는데 이처럼 비가 내리니 하루 이틀 보고 하교하겠다. 이렇게 분부하고 어제의 전교는 우선 그대로 두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중부 수표직 오점금_{吳點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측량하니 2촌 3분이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 30년 동안 덕이 없어 백성이 원망하니, 깊은 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밤낮으로 두렵다.

後，大小諸執事與中使·近侍，以黑團領，依例並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

戊寅五月二十五日

一. 都承旨率宣傳官入侍時，傳曰：“親禱後，該曹不敢循例取稟，顧我元元，其何顧身？今若不雨，明欲復行，雨勢若此，當視一兩日下教，以此分付，昨日傳教姑置。”

一. 曹單子：“中部水標直吳點金手本內：‘今日雨下尺量，則二寸三分’是如爲白臥乎事。”

一. 傳曰：“噫，卅載否德，生民嗷嗷，夙夜懷²¹惕，臨深履

²¹ 懷：저본에는 '燠'.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작년에 풍년이 들고 올해 보리가 익은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아, 하늘은 백성을 돌보는데 한 달 동안 줄곧 가물어 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아득하고, 세 차례 기우제를 지냈으나 저 하늘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4차 기우제는 종묘에서 지내야 한다. 아, 우리 백성을 돌보는 것은 바로 우리 열성^{列聖}이다. 비록 내가 덕이 없어 초래하였지만 어찌 감히 영령에게 근심을 끼칠 수 있겠는가.

현재 상중에 있으나 이 마음이 타는 듯하여 상복을 벗고 희생을 대신하니, 어찌 하늘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겠는가. 제사 지내는 날 밤에는 별만 보이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어가를 돌린 뒤에도 여전히 햇빛이 뜨거웠으니, 우리 농민을 돌아보면 참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제사를 지낼 때 전^殿에 배알하자니 마음이 더욱 부끄러웠는데, 새벽에 빗소리가 들렸으니 누가 내려 준 것이겠는가. 하늘과 영령이 주신 것이다. 아, 천지신명이 어찌 나를 도왔겠는가. 실로 백성을 위해서다.

어제는 오늘 보다가 만약 또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으면 북교에서 친행하려고 생각하였다. 이미 명을 내렸으나 어찌 감히 전례대로 희생을 대신하겠는가. 모든 일은 선후가 있지만, 지금 내가 작년과 올해 지탱하고 의지하는 바는 백성이니, 백성이 만약 죽는다면 무슨 낮으로 죽어서 선조를 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이 있는 줄만 알고 내 몸이 있는 줄 몰라 먼저 사흘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내일 몸소

薄, 昨歲報登, 今年麥熟, 非予之致, 吁嗟蒼蒼, 眷顧元元, 一旱浹月, 雨意逾邇, 三次祈雨, 彼蒼猶高²², 其於四次, 宜行²³闕宮, 而噫, 眷恤元元者, 卽我列聖, 雖因予否德而召²⁴, 其何敢貽戚陟降? 方在諒闇, 而此心焦灼, 釋衰代犧, 何望孚格? 行祀之夜, 見星無雨, 迴駕之後, 烈烈猶杲, 顧我農民, 良欲無言, 祭時拜殿, 心愈惡²⁵焉, 曉聞雨聲, 其誰之賜? 皇天暨陟降之賜, 吁嗟明神, 其豈佑我? 實爲元元, 昨意則其觀今日, 若復漠然, 北郊親行, 雖已命焉, 亦豈敢循例代犧? 凡事雖有先後, 今予則昨今年支撐, 所依者民, 民若劉

22 高 : 日本에는 '亭'.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3 行 : 日本에는 '何'.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4 召 : 日本에는 '卽'.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5 惡 : 日本에는 '惡'.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나아가고자 하였다. 아, 큰비가 내려 우리 백성이 장차 소생한다면 내 몸을 어찌 아끼겠는가. 아득한 이 마음은 저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 지금 비가 내리니 실로 뜻밖이다.

아, 우리 백성을 하늘이 이처럼 돌봐 주고 명령이 이처럼 돌봐 주며 천지신명이 이처럼 돌봐 주니,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이는 하늘을 저버리고 명령을 저버리고 천지신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아, 『자성편(自省編)』에도 말하였지만,³ 비가 내렸다고 마음을 놓는다면 오늘의 비는 내일 반드시 다시 가뭄이 될 것이다. 내가 비록 노쇠하나 어찌 감히 비가 내렸다고 마음을 놓겠는가. 내일 정식으로 삼아 입시하기로 한 것을 오늘로 당겨 정한 의도는 여기에 있다. 비록 건강부회에 가깝지만 어제 용흥궁(龍興宮)에서 영의정을 만나 하유하였다. 삼정승은 바로 삼태(三台)이다. 몇 달 동안 나라에 영의정이 없었는데 어제 아침에 명을 받들어 쌓인 일을 장차 거행하게 되었으니, 감응하는 이치가 없다면 그만이거니와 비색한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또 한 가지 방도이다.

아, 안으로 대소 신료, 밖으로 관찰사와 수령들은 보우하는 뜻을 유념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구휼하는

3 『자성편(自省編)』에도 말하였지만 : 이는 '내가 비록 덕이 부족하지만 온 마음은 하늘을 공경하는 데에 있다. 한 번 바람이 불고 비가 한 번 내리면 이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마음을 굵어살피고 우러러 천상(天象)을 살펴보니, 이 마음을 잡았는가 놓았는가에 따라 메아리처럼 응답한다. 그러므로 밤낮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감히 태만할 수 없다.[予雖涼德, 一心在於敬天, 一風一雨, 此心不弛, 俯察于心, 仰觀于象, 其所響應, 隨此心之操舍, 故夙夜兢兢 不敢怠荒.]'라는 구절을 가리킨다.

矣, 何顏歸拜? 故只知有民, 不知有身, 欲先減三日之膳, 待明躬詣. 噫, 其若沛然, 吾民庶幾, 則身何顧惜? 悠悠此心, 可質彼蒼, 今者之雨, 寔是料外, 寔是料外. 噫, 我元元, 皇天若是²⁶眷佑, 陟降若是眷佑, 明神若是眷佑, 而不能²⁷仰答, 則此負皇天也, 負陟降也, 負明神也. 噫, 述編既云, 若以得雨放心, 今日之雨, 明必復旱, 予雖衰矣, 何敢得雨而解心乎? 明日定式入侍, 進定今日, 意蓋此也. 且雖近傳會, 昨日龍興之宮, 面論領相, 三公卽三台, 幾月國無元輔, 而昨朝承命, 叢脞之事, 其將修舉, 其無感應²⁸之理則已, 否中爲²⁹泰, 此亦一道. 吁嗟,

26 料外……若是 : 저본에는 '寔是眷佑.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27 能 : 저본에는 '然.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8 應 : 저본에는 '念.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9 爲 : 저본에는 '有.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정사를 부지런히 강구하여 정사 보는 곳의 묵은 먼지를 이번 비에 씻도록 하라. 이미 진찰을 허락하였으니 차를 마실 것이며 노쇠함을 꺼리지 않고 역시 스스로 힘쓸 것이다. 모두 이 하교를 유념하여 나의 뜻을 어기지 말라.”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5월 26일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27일 북교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전하의 복색은 이번 선농단 친제의 전례대로 흑원령포^{黑圓領袍}·옥대^{玉帶}·흑화자^{黑靴子}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배향^{陪香}할 때도 이 복색을 착용하며, 백관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제사에 참석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북교 기우 친제를 지낼 때 단상^{壇上}을 수리하는 등의 일은 규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의 낭청을 별도로 보내 함께 살피게 하고, 또한 선공감에서 감역관을 별도로 정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內而大小臣工，外而方伯·守令，仰體眷佑之意，保民恤民之政，孜孜講究，政事堂舊廳，其洗於今雨，既許診³⁰筵當服茶飲，不憚其衰，亦當自強，咸體此教，莫替予意。”

戊寅五月二十六日

一. 曹啓曰：“今月二十七日，北郊祈雨親祭時，殿下服色，依今番先農壇親祭例，黑圓領袍·玉帶·黑靴子行祭，陪香時，亦用此服，百官則黑團領陪祭事，知委何如?” 傳曰：“允.”

一. 曹啓曰：“今此北郊祈雨親祭時，壇上修理等事，依例別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眼同看檢，而亦令繕工監別定監役官，急速舉行，何如?” 傳曰：“允.”

수정

30 診 : 저본에는 ‘論’.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성상부부터 향관^{享官}들까지 으레 산재^{散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북교 친제는 이틀 밖에 남지 않아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면서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한 일만 아뢰며, 향관들과 근시^{近侍}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繡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히 지낼 때 향관들은 하루 전 동틀 무렵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27일 북교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이번 26일 동틀 무렵 먼저 향소에 가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북교 기우 친제를 지낼 때 높고 낮은 집사관

一. 曹啓曰：“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齋之規，而今此北郊親祭，只隔二日，散齋則勢不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官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享百官諸衛之屬，守衛墻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傳曰：“允。”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二十七日，北郊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今二十六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一. 曹單子：“今此北郊祈雨親祭教是時，大小諸執事官，除

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이번 26일 동틀 무렵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가 단소壇所에 도착한 뒤 높고 낮은 집사들은 중사中使·근시近侍와 함께 흑단령 차림으로 전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보사제는 내일 향香을 받고 28일에 친압親押할 것이니, 1일의 축문 봉두祝文封頭와 함께 향실 관원으로 하여금 명정전明政殿에 대령하게 하라. 예조 관서·예방 승지는 제관기祭官記를 가지고 오후에 집현문集賢門에 와서 대령하라. 동촌東村의 밭 가는 백성 5, 6인을 집례문集禮門으로 불러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오점금吳點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촌 5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이익화李益華의 첩

隸儀, 今二十六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詣壇所後, 大小諸執事與中使·近侍, 以黑團領, 依例並爲私習, 俾無失儀事, 知委何如?”

一. 傳曰: “報謝祭明日受香, 二十八日當親押, 與初一日祝文封頭, 令香室官員, 待令明政殿, 禮判·禮房承旨, 持祭官記, 午後集賢門來待, 東村鋤民五六人, 其令召待集禮門.”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吳點金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八寸五分流下’是如爲白臥事.”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李益華牒呈內: ‘今番雨水, 江

정牒呈에,

‘오늘 비로 강물이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으로 포백 척布帛尺으로 측량하니 어제 보고한 1척 5촌 외에 또 3촌이 늘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6월 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복金萬福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넘쳐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6월 10일

대신大臣·비변사 당상·승지들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한 번 비가 쏟아진 뒤로 열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또 가뭄의 조짐이 있다. 초복이 머지않았으니 백성을 위해 애타고 근심스럽다. 어젯밤 동풍이 분 뒤에 보아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희생을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하늘이 백성을 위하여 뜻밖에 비가 쏟아졌으니 백성이 장차 소생하게 되었다. 이번에 여러 도의 농사 형편과 비 내

水漲溢, 常流水基³¹良中, 以布帛尺尺量, 則比昨日所報一尺五寸外, 又加三寸’ 是如爲白臥乎事.”

戊寅六月初八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萬福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過流’ 是如爲白臥乎事.”

戊寅六月初十日

一. 大臣·備局堂上·諸承旨入侍時, 傳曰: “一霽之後, 浹旬不雨, 又有旱徵, 初伏不遠, 爲民焦悶, 欲觀昨夜東風之後, 若無其雨, 復欲代犧親禱, 蒼蒼爲民, 望外沛然, 吾民庶幾, 今番諸道農形雨澤以狀啓爲

31 基 : 저본에는 ‘墓’. 『승정원일기』인조 5년 6월 21일 등의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린 상황을 장계로 아뢰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복金萬福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촌 1분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복金萬福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넘쳐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6월 23일

전교하기를,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낸 뒤에도 기청제를 지낸 일
이 있었으니, 농사에 있어서는 가뭄이나 장마나 마
찬가지이다. 지금의 비는 장마가 될 조짐이 없지 않
으니, 다시 하루 이틀 보다가 날이 개일 조짐이 없으
면 영제靈祭를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之事, 分付.”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萬福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八寸一分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萬福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過流’是如爲白臥乎
事.”

戊寅六月二十三日

一. 傳曰: “古則祈雨後, 亦有
祈晴之事, 爲農事無與備一
也. 今者之雨, 不無成霖之意,
更觀一兩日, 若無霽意, 祭
依例舉行事, 分付.”

무인년¹⁷⁵⁸ 6월 26일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그대로 장마가 되었으니,
사문영제를 해당 조로 하여금 내일 거행하고 3일 뒤
중지하게 하라.”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8월 1일

전교하기를,
“올해 농사는 대체로 풍년이 들 가망이 있어서 내 마
음이 조금 놓였는데, 행행하는 길에 직접 곡식을 보
니 장차 무슨 낮으로 능^陵에 배알하겠는가. 특별히
열흘간 음식 가짓수를 줄여 농민에게 사죄하겠다.”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8월 2일

예조가 아뢰기를,
“때아닌 찬비가 연일 쏟아져 형세상 필시 곡식이 손
상될 테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입니다. 기
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전례대
로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4일 설행하기 시
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戊寅六月二十六日

一. 承旨入待時，傳曰：“雨猶
不止，仍爲成霖，四門祭，其
令該曹明日舉行，三日而止。”

戊寅八月初一日

一. 傳曰：“今年穡事，有蓋熟
之望，此心稍舒，其於行幸之
路，目見禾穀，將何顏拜陵？
特爲減膳十日，以謝農民。”

戊寅八月初二日

一. 曹啓曰：“非時冷雨，連日
大注，傷損禾穀，勢所必至，言
念民事，誠爲可慮。祈晴之舉，
不容少緩，依前例，四門祭，
不卜日，來初四日爲始設行，三
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
“允。”

무인년¹⁷⁵⁸ 8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이익화^{李益華}의 첩정^{牒呈}에,
‘이번에 장맛물이 불어나 제천정^{濟川亭}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19척이 더 흘렀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인년¹⁷⁵⁸ 8월 16일

예조가 아뢰기를,
“연일 찬비가 내리니 여름 장마와 다름없습니다. 곡
식이 손상되는 것은 형세상 필연적이니 농사를 생
각하면 참으로 지극히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전례대로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7일 설행하기 시작하여 3일 뒤
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⁷⁵⁹ 윤6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단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집사관들은 예
식 연습을 면제하고 이달 24일 동틀 무렵 먼저 향소
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대차^{大次}에 나아간 뒤 높고

戊寅八月十一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李益華牒呈內: ‘今番潦水漲
溢, 濟川亭常流水基³²良中尺
量, 則以布帛尺十九尺加流’是
如爲白臥乎事.”

戊寅八月十六日

一. 曹啓曰: “冷雨連日, 無異
夏潦, 傷損禾穀, 勢所必然, 言
念民事, 誠極可慮. 祈晴之舉,
不容少緩, 依前例, 四門祭祭,
不卜日, 來十七日, 爲始設行,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傳
曰: “允.”

己卯閏六月二十三日

一. 曹單子: “今此社稷祈雨親
祭教是時, 諸執事官, 除隸儀,
今二十四日質明, 先詣享所爲

³² 基: 저본에는 ‘臺’. 『승정원일기』
인조 5년 6월 21일 등의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낮은 집사는 중사^{中使}·근시^{近侍}와 함께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규례대로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享官}들은 조복^{朝服}을 입고, 하루 전에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달 25일 사직단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24일에 동틀 무렵 먼저 향소에 가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사직단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고,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한 일만 아뢰며, 향관들과 근시^{近侍}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으며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堽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白有如可，大駕詣大次後，大小諸執事與中使·近侍，以黑團領，依例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

一．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二十五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二十四日質明，先詣享所，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一．曹啓曰：“今此社稷祈雨親祭時，自今日，殿下別殿致齋，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并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堽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윤6월 25일 사직단 기우제 친제를 지낼 때 희생
 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일은 규례대로 친림하
 는 것으로 마련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하였다.

기묘년¹⁷⁵⁹ 윤6월 24일

예조의 단자에,
 “중부 수표직 이후성^{李厚成}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 높이로 흘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묘년¹⁷⁵⁹ 윤6월 26일

전교하기를,
 “백성을 위하는 일을 세손^{世孫}에게 보여야 한다. 내
 일 인정전^{仁政殿} 밖에서 지영^{祗迎}하고, 광정문^{光政門} 밖
 에서 교輦³³을 탈 것인데, 원량^{元良}의 지영은 그만두라.
 시각은 묘정^{卯正} 3각^刻에 전례대로 거행하라. 전알한
 뒤에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필 것이니 예조에 분
 부하고, 집사들을 가려 차임하라. 길은 돈화문^{敦化門}
 을 경유하겠다.”
 하였다.

一. 曹啓曰：“今閏六月二十五日，社稷祈雨親祭時，省牲省器，依例以親臨磨鍊舉行乎？敢稟。”“依爲之。”

己卯閏六月二十四日

一. 曹單子：“中部水標直李厚成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尺二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己卯閏六月二十六日

一. 傳曰：“爲民之事，當示世孫，明日仁政殿外祗迎，光政門外乘輦³³，元良祗迎置之，時刻以卯正三刻，依前舉行。展謁³⁴後，當省器省牲³⁵，分付儀曹，諸執事擇差，道由敦化門。”

33 乘輦：저본에는 ‘我輦’.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윤6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4 謁：저본에는 ‘拜’.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윤6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5 省器省牲：저본에는 ‘省牲’.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윤6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기묘년¹⁷⁵⁹ 윤6월 28일

종묘에 거동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내 정성이 얇아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다. 백성을 위하여 애태우지만 부묘^{附廟}하는 예를 거행한 뒤 사흘 안에 몸소 종묘에 제사 지냈으니 이것은 내가 유감이 없다. 이미 제사를 지냈으니 가을 전알은 날 씨를 살펴보아 묘현례^{廟見禮}와 함께 거행하겠다. 예조로 하여금 하교를 기다려 택일하게 하라.” 하였다.

환궁한 뒤 월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2차 기우제를 지냈으나 정성이 얇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비가 내릴 조짐이 더욱 아득하다. 우리 백성을 돌아보니 이 마음이 타는 듯하다. 교외의 제단에서 희생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다음 차례의 일이다. 백관과 군사들을 위하여 비록 섭행하라고 명하였으나 덕 없는 내가 가물을 초래하였고 정성이 없어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다. 역시 군병을 위하여 희생을 대신하지는 않았으나 무슨 마음으로 밥을 먹겠으며, 어떻게 저세상에 사죄하겠는가. 오늘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의금부와 형조는 죄수를 관대히 처결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일은 대전^{大殿}만 거행하라.”

己卯閏六月二十八日

一. 宗廟舉動入侍時，傳曰：
 “緣予誠淺，雨意漠然，雖爲民焦心，附禮之後，三朝之內，躬行享祀於太廟，此則予無憾焉。既行享祀，秋謁當觀日勢同行廟見禮，令儀曹，待下教擇日。”

一. 還宮後月臺入侍時，傳曰：
 “再次祈雨，微誠未格，雨意逾邈，顧我元元，此心焦灼，郊壇代犧，即次第事，而爲百官爲三軍，其雖命攝，否德致旱，無誠漠雨，亦爲軍兵，不爲代犧，何心玉食？何謝彼世上？自今日限得雨減膳，金吾秋曹疏決。”

一. 傳曰：“減膳，只大殿舉行。”

하였다.

영교하기를,

“비록 몸소 대전을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백성을 위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가뭄을 걱정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역시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월대에 전좌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친제를 지낸 뒤 해당 조는 감히 규례대로 내게 묻지 못하는 법이다. 만약 물을 것이 있다면 그날이 죄수를 관대히 처결하는 날과 겹치니, 남단南壇에 중신重臣을 보내 거행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남단에 중신을 보내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풍운뢰우·산천단의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월 1일 중신을 보내 설행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남단 기우제를 설행할 때 으레 우사단에서도 함께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같은 날 우사단에서 일체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一. 令曰: “雖未能躬陪大殿, 爲民祈雨閔旱之意, 曷有其極? 其令亦爲減膳事, 分付.”

一. 月臺殿座入侍時, 傳曰: “親祭後, 該曹不敢循例以稟, 其若有稟, 其日疏決相值, 南壇遣重臣舉行.

一. 曹啓曰: “南壇遣重臣舉行事, 命下矣. 依聖教, 風雲雷雨山川祈雨祭, 不卜日, 來七月初一日, 遣重臣設行, 而自前南壇祈雨攝行祭時, 例爲並行於霽祀壇矣. 今亦依前例, 同日霽祀壇, 一體設行事, 分付何如?”

기묘년¹⁷⁵⁹ 윤6월 29일

약방이 입진하기 위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뜨거운 해가 내리쬘고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없어
서쪽 교외를 바라보니 마음이 타는 듯하다. 남교의
3차 기우제는 하교대로 거행하되, 헌관은 죄수를 관
대히 처벌하는 날과 겹치므로 어제 중신^{重臣}으로 채
워 차임하라고 하교하였다. 이 단^壇은 체모가 무거운
데, 친제를 지낸 뒤에 입시한 대신 역시 가겠다고 청
하였으니 대신으로 채워 차임하고, 예문관 제학으로
하여금 제문을 지어 올리게 하고 위판^{位版}을 배진^{陪進}
하는 일과 제물 등에 관한 일은 해당 시^寺에 각별히
신척하라.”
하였다.

기묘년¹⁷⁵⁹ 윤6월 30일

죄수를 관대히 처벌하기 위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
기를,
“군사들을 위해 섭행하도록 명하였으나 저 남쪽 교
외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타는 듯하다. 비록 섭행하
더라도 어찌 감히 편안히 지낼 수 있겠는가. 『자성편
自省編』에도 말하였다.⁴ 오늘날 제사 지내는 정시^{正時} 2

4 『자성편(自省編)』에도 말하였지만 : 이는 ‘내가 비록 덕이 부족하지만
온 마음은 하늘을 공경하는 데에 있다. 한 번 바람이 불고 비가 한 번 내
리면 이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마음을 굽어살피고 우러러 천상(天象)을
살펴보니, 이 마음을 잡았는가 놓았는가에 따라 메아리처럼 응답한다.
그러므로 밤낮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감히 태만할 수 없다.[予雖涼德, 一
心在於敬天, 一風一雨, 此心不弛, 俯察于心, 仰觀于象, 其所響應, 隨此心
之操舍, 故夙夜兢兢 不敢怠荒.]’라는 구절을 가리킨다.

己卯閏六月二十九日

一. 藥房入診入侍時, 傳曰:
“烈³⁶陽杲杲, 雨意漠漠, 瞻望
西郊, 心焉焦灼, 南郊三次祈
雨祭, 依下教舉行, 而獻官疏
決相值, 故昨以重臣填差事,
下教. 此壇體³⁷重, 親祭之後,
而入侍大臣亦請行, 以大臣
填差, 令藝文館撰進·位版陪
進·祭物等事, 另飭該寺.”

己卯閏六月三十日

一. 疏決入侍時, 傳曰: “爲三
軍, 雖命攝行, 瞻彼南郊, 此
心焦灼, 其雖攝行, 何敢便
處? 述編既云, 今夜祭正時前
二刻, 入直承旨來詣集英門,
諸執事齋沐禁草等事, 另加

36 烈 : 저본에는 ‘愈’.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윤6월 29일 기사에 근거하
여 수정

37 體 : 저본에는 ‘依’.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윤6월 29일 기사에 근거하
여 수정

각 전에 입직한 승지는 집영문集英門에 나아가 집사들의 재계와 목욕, 금연 등의 일을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후성李厚成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촌 5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묘년¹⁷⁵⁹ 7월 1일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내리신 전교에,
‘우선 오늘 내일 날씨를 보아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4차 기우제를 북교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설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비가 아직 한 번도 쏟아지지 않았으니, 성상의 하교대로 북교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4일에 설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에서 기우 친제를 지내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전부터 종묘에 친제를 지낼 때는 으레 영녕전

申飭.”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李厚成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寸五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己卯七月初一日

一. 曹啓曰：“昨日所下傳教中，姑觀今日，若不霈然，四次祈雨祭，北郊遣大臣攝行事，命下矣。雨澤尙靳一霈然，依聖教，北郊遣大臣，祈雨祭，不卜日，來初四日設行之意，敢啓。”

一. 曹啓曰：“太廟祈雨親祭事，命下矣。自前宗廟親祭時，例有永寧殿遣大臣攝行之禮，

에 대신을 보내 설행하는 예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세 차례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가 내릴 조짐은 더욱
아득하다. 이번이 3차이니 어찌 감히 스스로를 돌
아보겠는가. 그러나 백관이 연일 수고하는 것이 근
심스럽고 군사들이 한여름 피약별을 쬌 것이 걱정
되어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4차는 몸소 거행해야 하
는데,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서 협련군(挾輦軍)에게 하
유하였으니 어찌 차마 한 차례 설행하라고 명하는
것으로 고식적으로 군사들을 위로하겠는가. 예조
로 하여금 오늘 내일 보다가 만약 비가 쏟아지지 않
으면 4차 기우제는 북교에 대신을 보내 설행하게 하
고, 제문 역시 제학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라.
석적 기우제(蜥蜴祈雨祭)도 겸하여 지내야 하지만, 동자
역시 백성이다. 부덕한 내가 어찌 또 어린아이를 괴
롭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하유하지 않았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중부 수표직 이성재(李成才)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촌 5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今亦依此舉行事，知委何如？”

一. 傳曰：“三次祈雨，雨意愈
邈，今番三次，何敢自顧？而
閱百官之連日勞苦，恤三軍之
盛暑曝陽，命攝矣。其於四次，
宜當躬行，而仁政月臺，既諭
挾輦軍，豈忍以一次命攝，姑
息慰軍乎？其令儀曹，觀今明
日，若不霈然，四次祈雨祭，北
郊遣大臣攝行，祭文亦令提學
撰進，蜥蜴祈雨祭，其當兼行，
而童子亦赤子也，以予否德，
又何³⁸苦孺子乎？故不論矣。”

一. 曹單子：“中部水標直李成
才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
審，則四寸五分流下’是如爲白

38 何：저본에는 ‘되’.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7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였다.

기묘년¹⁷⁵⁹ 7월 3일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 윤6월 28일에 내린 전교에,
‘비가 내릴 때까지 반찬 가짓수를 줄이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다행히 비가 내려 기
우제를 지내는 일도 그만두라고 명하였으니, 평상시
의 음식을 회복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평상시의 음식을 전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소나기와 가랑비가 내렸으나 수표^{水標}의 보고는 모
두 반 척도 채우지 못하였으니, 이것으로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한다면 어찌 성실하게 하늘을 섬기는 것
이겠는가. 초기^{草記}를 보류하고 다시 형세를 본 지 지
금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도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
니, 어찌 대번에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라고 명하
겠는가. 다시 하교를 기다리라.”
하였다.

기묘년¹⁷⁵⁹ 7월 6일

“약방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대신^{大臣}이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도록 강력히 청

臥乎事.”

己卯七月初三日

一. 曹啓曰：“去閏六月二十八
日所下傳教中，限得雨減膳
事，命下矣。今幸得雨，祈雨之
舉，亦命置之，則復膳之節，不
容少緩。自今日常膳，依例舉
行，何如？”傳曰³⁹，“驟雨霽雨，
水標之報，俱不滿半尺，以此
復膳，其何事天以誠乎？留草
記，更觀勢，今既三日，亦無雨
意，其何遽命復膳乎？更待下
教焉。”

己卯七月初六日

一. “藥房入侍時，傳曰：‘大臣
強請復膳，依禮曹草記施行’

39 傳曰：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35년 7월 1일 기사에 근거하
여 보충

하였으니 예조의 초기대로 시행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조께서 이미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라고 명하였으니, 일체 거행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영교하였다.

기묘년¹⁷⁵⁹ 7월 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안성재^{安成才}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촌 5분 높
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5월 9일

환궁하여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 입시하였을 때, 전
교하기를,
“올해는 절기가 조금 이르지만 지난번에 보슬비가
내린 뒤에 제법 가뭄 기운이 있었다. 오늘은 비가 내
리려다가 내리지 않고 날이 저문 뒤에야 서늘한 바
람이 불었다. 『중용』에 ‘모든 일은 미리 하면 성립된
다.’ 하였다. 기우제를 지내는 방도는 미리 하지 않으
므로 농사의 시기를 놓친다. 일찍 경작한 논은 5월
이 반이나 지나려 하니 농민을 위해 어찌 마음을 놓

事，傳教矣。大朝既命復膳，
一體舉行，何如？”令曰：“依。”

己卯七月初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安成才手本內：‘今朝下雨，水
標看審，則三寸五分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庚辰五月初九日

一. 還宮時仁政殿月臺入侍
時，傳曰：“今年節序差早，而
頃者微雨之後，頗有旱氣，今
日欲雨不雨，晚後淒風，傳云，
凡事豫則立，凡祈雨之道不⁴⁰
豫，故於農過時，早耕之畝，仲

40 不：저본에는 없음. 『송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겠는가. 하루 이틀 살펴보고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12일에 1차 기우제를 규례대로 청하여 거행하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보슬비가 내린 뒤에 제법 가뭄 기운이 있었으니, 하루 이틀 살펴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12일에 1차 기우제를 규례대로 청하여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가뭄이 점점 심해지는데 비가 내릴 기미는 아직도 아득하니 기도하는 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1차 기우제는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지에 3품 관원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4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점동(李點同)의 수본(手本)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는 지금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夏將半，爲農民，心奚弛⁴¹乎？其觀一兩日，其若不雨，十二日初次祈雨祭，依例請行事，分付該曹。”

一. 曹啓曰：“頃者微雨之後，頗有旱氣，其觀一兩日，其若不雨，十二日初次祈雨祭，依例請行事，命下矣。即今旱氣轉甚，雨意猶邈，祈禱之舉，有不可緩。初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遣三品官，不卜日，來十四日設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李點同手本內：‘今朝下雨，水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傳曰：“祈雨祭，今姑停止。”

41 奚弛：저본에는 ‘其他’.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경진년¹⁷⁶⁰ 5월 16일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가뭄을 걱정하던 때에 단비가 내렸지만, 쟁기날을 적실 정도의 비가 내린 뒤에 이어서 날이 개었다. 수원^{水源}이 있는 논은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수원이 없는 곳에 기우제를 지내고자 하였다. 지체하기 어려우므로 오늘 대신에게 하문하였더니, 비가 내린 지 사나흘 만에 곧바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불경한 짓에 가까운 듯하다고 하였다. 다시 2, 3일 살펴 보겠다고 하교하였지만 이러한 때는 물 한 모금도 금처럼 아껴야 한다. 제방을 쌓는 것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제방 쌓기가 해이해졌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우선 기호^{畿湖}의 제방 쌓은 곳에 비변사 낭청을 보내어 무작위로 추출하여 적간하게 하라.”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5월 18일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비가 한 번 내린 뒤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아 농사가 걱정스러우니 어찌 지체하겠는가. 1차 기우제를 모레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庚辰五月十六日

一. 承旨入侍時, 傳曰: “憫旱之際, 雖得喜雨, 犁雨之後, 仍而日晴, 有水根處, 其可得力, 而無水根處, 欲行祈雨, 難以遲待. 故今日問于大臣, 得雨三四日, 旋行祈雨, 似近瀆褻云. 當更觀二三日下教, 而此時勺水如金, 其所堤堰, 以備其旱者, 而堤堰其涉解弛, 令備局, 爲先畿湖堤堰處, 遣備郎, 抽牲摘奸.”

庚辰五月十八日

一. 次對入侍時, 傳曰: “一雨之後, 欲雨不雨, 農事可憫, 其何⁴²遲待? 初次祈雨祭, 再明日設行事, 分付.”

42 何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경진년¹⁷⁶⁰ 5월 2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의 수본^{手本}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흘렀
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 내일 날씨를 살펴보고 2차 기우제를 지낼지
내게 물어야 한다. 예전에도 지냈으니, 용산강^{龍山江}
에 재신^{宰臣}을 보내고 저자도^{楮子島}에 중신^{重臣}을 보내
어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5월 21일

예조가 아뢰기를,
“2차 기우제는 용산강에 재신을 보내고 저자도에 중
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제 비
가 밤새 그치지 않아 아직 날이 개려는 기미가 없습
니다. 그러나 2차 기우제를 지낼지 여쭙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전교하였다.

庚辰五月二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四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一. 傳曰：“觀今日明日，當稟
再次祈雨，曾亦⁴³已行，龍山
江遣宰臣，楮子島遣重臣設行
事，分付。”

庚辰五月二十一日

一. 曹啓曰：“再次祈雨，龍山
江遣宰臣，楮子島遣重臣設行
事，命下矣。昨日之雨，通宵未
已⁴⁴，姑無收霽之意，而再次祈
雨祭，既有當稟之教，何以爲
之？敢稟。”傳曰：“依例舉行。”

43 亦：저본에는 ‘在’.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4 已：저본에는 ‘見’.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전교하기를,

“어제 수표단자를 보니 예상보다 더하였다.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에 선전관 2원을 보내 살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에 재신을 보내고 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3일에 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5월 22일

전교하기를,

“예방 승지는 기우제의 향을 전달한 뒤 정성껏 하라고 신칙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의 수본手本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촌 1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一. 傳曰：“昨日見水標單子，則過於所料，東西郊遣宣傳官二員，使之看審以來。”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遣宰臣，楮子島遣重臣，不卜日，來二十三日設行之意，知委何如？”

庚辰五月二十二日

一. 傳曰：“禮房承旨，祈雨祭傳香後，申飭虔誠。”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金四同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二寸一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경진년¹⁷⁶⁰ 5월 23일

편차인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일은 규례대로 친행
할 것이니, 이렇게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마음으로 정하고 벌써 정승에게 하유하였다.
영령께서 매우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헤아
리셨지만 1차, 2차 기우제를 지내자 잠깐 비가 내렸
다가 바로 그쳐 여전히 비가 쏟아지지 않고 있다. 어
제는 아침에 비가 쏟아지기를 바랐지만 비가 내리기
도 하고 개기도 하여 마음이 몹시 초조하고 근심스
러워, ‘방촌우^{方寸雨}가 나에게 달렸다고 말하지 말라.
영령들이 살피시니 불초한 내가 한 번 배알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여겼다. 생각이 여기
에 미치니 마음을 어찌 억누르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날이 저문 뒤에도 비가 내릴 조짐이
있어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저녁 바람 한 번
불자 먹구름이 모두 걷혔다. 백성에게 하문하였더니
‘5일 내로 비가 내린다면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름까지라면 농사를 망치지는 않겠지만 풍년은 기
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난 뒤에
내 마음이 갑절이나 심란하였다. 더구나 마음이 이
미 정해졌는데, 순차적으로 명관^{命官}에게 기우제를
섭행^{攝行}하도록 하고서 보고만 있겠는가. 먼 옛날 사

庚辰五月二十三日

一. 編次人入侍時, 傳曰: “省
牲省器, 依例親行, 以此分付.”

一. 傳曰: “既定于心, 已諭于
相, 陟降雖高高, 已照此心,
初次再次, 乍雨旋止, 猶斬一
霈, 昨日則朝雨其望霈然, 或
雨或霽, 心切焦悶, 自謂曰莫
日方寸之在我, 陟降照焉, 無
乃待不肖之一拜乎? 思之及
此, 心何抑乎? 雖然, 晚後
亦有雨徵, 猶望雲漢, 夕風一
起, 密雲皆捲, 已問農民, 五日
之前, 其若得雨, 可冀有秋, 若
至晦日, 雖⁴⁵可及也, 登歉難
料⁴⁶. 聞此之後, 予心一倍, 況
心有既定, 循次命官攝行祈雨
爲觀瞻乎? 古人云, 不誠無
物, 物猶然矣, 況事神乎? 勿

45 雖 : 저본에는 ‘難’.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6 難料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람이 ‘성실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하였다.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귀신을 섬기는 경우는 오히려 죽하겠는가. 정해진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백성을 위해 호소하는 일을 어찌 평상시의 전례를 따르겠는가.

그리고 백성을 위한 기우제도 성심으로 지내야 한다. 그 마음이 초조하고 절박하니 장차 어디에 호소하겠는가. 오늘 날씨를 살펴서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3차 기우제를 종묘에서 몸소 지내겠다. 친행할 때 명관이 영녕전永寧殿에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이 전례이다.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릴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라. 원량이 지영祗迎 하는 등의 절차는 그만두고, 보군步軍 5초哨와 마군馬軍 2초, 금군禁軍 3번이 수가隨駕하고, 시위는 전전 시위前前侍衛로 그대로 하고, 어가를 돌릴 때 동문東門 밖의 농사 형편을 볼 것이니 홍화문弘化門으로 거행하라. 삼엄三嚴은 진초辰初 3각刻에 하고, 집사들은 각별히 가려 뽑으라.” 하였다.

편차인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하교할 때 빠뜨린 것이 있는데 깨닫고도 유시하지 않는다면 귀신과 사람과 마음을 속이는 짓이므로 제문을 불러 쓰는 일이 끝나기 전에 먼저 이 뜻을 유시하노라.
아, 불초하고 부덕한 몸으로 30년 동안 왕위에 있으

拘日次，已有舊例，爲民籲諫，何循常例？且爲民祈雨，其當以誠，其心焦迫，將籲于何⁴⁷？觀今日，若不霈然，三次祈雨，將躬行于⁴⁸太室。親行時，命官同祭永寧殿，乃是前例，祭文當親製以下，令儀曹舉行，元良祗迎等節，置之，步軍五哨，馬軍二哨，禁軍三番隨駕，侍衛以前前⁴⁹侍衛仍，回駕時當見東門外農形，以弘化門舉行，三嚴辰初三刻爲之，諸執事另擇。”

一. 編次入侍時，傳曰：“下教之際，有遺漏者，既覺而不論，則是欺神欺人欺心⁵⁰，呼寫祭文未了，先論此意。噫，以不肖

47 何：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48 于：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49 前前：저본에는 ‘日’.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0 欺神欺人欺心：저본에는 ‘欽神欽人欽心’.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면서 한 가지도 계승한 것이 없고, 백성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면서 정성이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이는 나의 허물이다. 처음 생각에는 옛날 주공(周公)이 ‘우리 선왕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⁵라고 하였으나 삼단(三壇)에 태왕(太王)과 왕계(王季), 문왕(文王)을 제사 지냈으니, 이 또한 선왕에게 호소한 것이다. 불초한 내가 가뭄을 걱정하여 호소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겠는가. 더구나 작년 이후로 이달이 어떤 달이던가. 반드시 부모에게 호소하는 도리로 볼 때 종묘를 우선해야 하므로 마음속으로 헤아렸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승에게 하유하였다. 마음속으로 헤아린 것도 하늘에 계신 영령께서 다 아실 것인데, 하물며 하유한 경우는 어떻겠는가.

저자도(楮子島)와 용산강(龍山江)에서 중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하여 이미 나의 뜻을 보였고, 3차 기우제는 사직단(社稷壇)과 남단(南壇)에 먼저 대신(大臣)을 보내어 설행하려 하고, 4차 기우제는 반드시 종묘에서 친행할 것이니, 이렇게 마음먹고 날짜를 안배하여 기우제를 지낸다면 성실하다고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세 차례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바로 송(宋)나라 황제가 아무 날에 비가 내린다면 직접 기도하겠다고 한 경우와 같다.⁶ 이것이 ‘성실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다. 3차 기우제를

5 우리……된다 : 무왕(武王)이 병이 들자 태공(太公)과 소공(召公)이 점을 치겠다고 하였다. 주공은 무왕의 병 때문에 선왕을 근심하고 번뇌하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들의 청을 물리쳤다. 『書經 金縢』

否德，卅載臨御，無一繼述，爲民祈雨，誠不感神，是誰之過？寔予之咎，初意昔周公，雖曰未可以威⁵¹我先王，三壇之中，祀太王·王季·文王，此亦籲先王也，肆⁵²不肖籲閔旱，將先於何？況昨歲之後，此月何月？其在必呼父母之道，宜先太室，故非徒料于⁵³心，已諭于相臣，既料于心，陟降已照，況諭乎？楮子島·龍山江命重宰祈雨者，已示予意，三次則社壇·南壇，欲爲先遣大臣攝行，四次則必也親行太室，以此爲⁵⁴心，排日爲之，誠乎否乎？若此而三次，此正若宋帝之某日將雨⁵⁵，當親禱者也，此

51 威 : 저본에는 ‘感’.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2 肆 : 저본에는 ‘謝’.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

53 于 : 저본에는 ‘耳’.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4 爲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55 某日將雨 : 저본에는 ‘某某將事’.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친행하려 하니 마음조차 속일 수 없는데, 하물며 명령을 속이겠는가. 깨달았는데도 침묵한다면 성실이 아니다. 다시 이런 뜻을 유지하니 대소 신료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3일 동안 제사를 도와 나의 얕은 정성을 돕도록 하라.”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5월 24일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5월 26일 종묘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종묘 친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과 근시 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塲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

6 송(宋)나라……같다 : 송나라 인종 때 경사(京師)에 큰 가뭄이 들자 신하들이 인종에게 직접 교외(郊外)로 나가 기도할 것을 청하였는데, 인종은 태사(太史)가 비가 온다고 하는 날 하루 전에 기도하러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왕소(王素)가 그처럼 정성이 부족해서는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간언하자, 인종이 이튿날 서태을궁(西太乙宮)으로 가서 기도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 『宋史 王素列傳』

所謂不誠無物者也。三次既欲親行，則心猶不可欺⁵⁶，況陟降乎？既覺而嘿，則非誠也，復論此意，大小臣工，知意此意，助祭于三日者，補予淺誠。”

庚辰五月二十四日

一. 曹啓曰：“今五月二十六日，宗廟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規，而今此宗廟親祭，只隔二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弔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去百官諸衛之屬，侍衛廟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傳曰：“允。”

56 可欺：저본에는 ‘欲’.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5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의 수본^{手本}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남단 기우 친제 때, 단 위를 수리하는 등의 일
은 전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의 낭청을
별도로 보내어 함께 검사하고 또한 선공감에서 감역
관을 별도로 정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남단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재
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선농단
친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
재^{致齋}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庚辰五月二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四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三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一. 曹啓曰: “今此南壇祈雨親
祭時, 壇上修理等事, 依前例,
別遣戶曹工曹郎廳及本曹郎
廳, 眼同看檢, 而亦令繕工監
別定監役官, 急速舉行事, 分
付何如?” 傳曰: “允.”

一. 曹啓曰: “南壇祈雨親祭
時, 自上逮至諸享官, 例有散
致齋之規, 而今此南壇親祭,
只隔二日, 散齋則勢未及舉行,
自今日, 殿下別殿致齋, 不吊
喪問疾, 不聽樂, 有司不啓刑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과 근시^{近侍} 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하루 동안 향소^{享所}에서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壘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친제 때 향관들은 하루 전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달 29일 남단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28일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아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남단 기우 친제 때 높고 낮은 집사관들은 이번 28일 동틀 무렵 먼저 향소에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단^壇에 도착한 뒤에 높고 낮은 집사들과 중사^{中使}, 근시^{近侍}들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규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殺文書，致齋唯啓享事，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壘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

一. 曹單子：“凡親祭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二十九日南壇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今二十八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一. 曹單子：“今此南壇祈雨親祭教是時，大小諸執事官，今二十八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詣壇所後，大小諸執事官與中使·近侍，以黑團領，依例並爲私習儀，俾無失儀事，知委何如？”

하였다.

편차인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추모하는 마음을 펴기는 하였으나 정성이 얇아 감
동시키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아, 명령들께서는 어찌 백성을 돌보지 않겠는가. 그
이유를 따져 보면 참으로 나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
었다. 만약 이달이 지나면 초복^{初伏}이 머지않았으니,
사방의 논밭이 갈라지면 비록 비가 내린들 무슨 소
용이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더욱 애가 탄다.
마음을 정하고 이미 아뢰었으니, 친행하지 않으면
어찌하겠는가.

29일 남단에서 4차 기우제를 친행할 것인데 집사가
많지 않다. 집준^{執尊}부터 축사^{祝史}까지 시임^{時任} 유신^{儒臣}
으로 채워 차임하고, 봉조관^{捧俎官}은 정간^{井間}의 차
례대로 가려 차임하지 말라고 분부하라. 시각과 문,
군병^{軍兵}의 수가^{隨駕}는 한결같이 23일의 하교대로 거
행하되, 지영^{祇迎}과 아헌^{亞獻}은 그만두고, 승정원에 남
는 승지도 전에 하교한 대로 거행하라. 소가^{小駕}의 의
장^{儀仗}으로 거행하되 그중에서도 전례를 참고하여 규
모를 줄여 응당 거행하던 보여^{步輿}에 부련^{副輦}을 빼
고, 유단^{壘壇}의 수리와 청소를 신칙하고 부관^{部官}에게
신위를 살피게 하고, 오갈 때 공경을 다하라고 태상
시^{太常寺}에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一. 編次人入侍時, 傳曰: “雖
伸追慕之心, 微誠未孚, 尙無
霈澤. 於戲, 陟降何不恤民?
究厥其由, 諒⁵⁷由一人, 若過今
月, 初伏不遠, 四野將坼⁵⁸, 雖
霈何及? 思之及此, 彌切焦灼,
定心已奏, 不親而何? 二十九
日, 南壇四次祈雨祭, 當親行,
執事不多, 自執尊至祝史, 以
時任儒臣填差, 捧俎官, 勿循
井間擇差事, 分付, 時刻門與
軍兵隨駕, 一依二十三日下教
舉行, 祇迎亞獻置之, 留院承
旨, 亦依前下教舉行, 小駕儀
仗舉行, 而其中亦考前例減省,
例當步輿⁵⁹, 除副輦, 壘壇修掃
申飭, 令部官看審神位, 往來
時致敬事, 嚴飭太常.”

57 諒 : 저본에는 '涼'.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8 坼 : 저본에는 '折'.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9 步輿 : 저본에는 '前奏'. 『승정원일
기』 영조 36년 5월 27일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경진년¹⁷⁶⁰ 5월 28일

호조 판서와 편차인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가문을 걱정하는 윤음에 전교하기를,

“아, 3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계승한 일이 하나도 없고 도모한 일도 하나도 없어 늘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몸은 노쇠하였으나 한결 같이 군사와 백성을 염려하였다. 보리가 풍년이 들었고 또 추수철이 다가오니 비가 오려나 비가 오려나 기대했지만 한 달 넘게 계속 가뭄이 들었다. 요즘 들어 어찌 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마는, 끝내 한 번 시원스레 쏟아지지 않아 종묘에서 친히 기도하였다. 추모의 정성은 폄지만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아 더욱 애가 탄다. 어제 내린 비는 영령들께서 내려 주셨는데, 내가 부덕한 탓에 여전히 두루 적시지 못하였다. 밤새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다 아침이 되자 비가 내렸는데 옷을 조금 적실 정도여서 월대⁶⁰에서 비가 그치는 것을 보았다. 먹구름이 모였으나 단비가 또 언제 내리겠으며 어찌 감히 옷을 벗겠는가. 하늘을 바라보니 날이 벌써 저물었기에 마음이 초조하였다.

이번에 가문을 초래한 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실로 나의 허물이다. 지나치게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혹여 정결함이 부족할까 두려워 막중한 교외의 제사에 30년간 겨우 두 차례 행했으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아무리 몸소 제사를 지낸들 노쇠하고 정성이 얕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

庚辰五月二十八日

一. 戶判編次人同爲入侍時，悶旱綸音，傳曰：“噫，卅載臨御，一無繼述，一無⁶⁰猷爲，尋常懷惕，夙夜罔懈⁶¹，其雖衰耗，一念軍民，牟麥既登，又望有秋，其雨其雨，一早浹月，其於近日，豈日無雨？終靳一霈，親禱太室，雖伸追慕，微誠未徹，益切焦悶，昨日之雨，陟降攸賜，而⁶²因予否德，尙未周洽，徹宵油然，朝來下雨，小濕其衣，月臺見霽，密雲雖⁶³集，甘霖何時，何敢釋衣？惟⁶⁴望雲漢，日已向夕，心焉悵⁶⁵灼，

60 無：저본에는 ‘欲’.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61 夙夜罔懈：저본에는 ‘罔措’.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62 而：저본에는 ‘向’.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63 雖：저본에는 ‘醕’.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64 惟：저본에는 ‘猶’.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65 悵：저본에는 ‘憤’.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의 허물이다. 제사는 정성껏 지내지 못하고 기강은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못하여 늙은 나이에 친제를 지내는데 집사들이 우물쭈물하니, 그 임금이 성실하다면 신하들이 어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나의 허물이다. 마음 속으로 추모하고 한 달에 세 번 강학講學하지만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여서 실천하지 못하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한 달에 세 번 차대次對를 하지만 구경하는 데 불과하여 정사는 느슨하고 백성은 곤궁하여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인도하지 못하여 사치하는 풍조는 날로 심해지고 재정은 날로 궁핍해지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겉모습이 바르면 그림자가 어찌 곧지 않겠는가. 조급하게 벼슬을 다투는 습속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신료들을 다스린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곧은 사람을 등용하였다면 누가 감히 소란을 피우겠는가. 엄히 신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폐단이 점점 심해진다. 그 원인을 따져 보면 허물이 한 사람에게 있으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기강이 날로 무너져 안일하게 세 월만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니, 기강을 진작시켰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이는 나의 허물이다. 사私가 공公보다 우세하고 욕심이 의리를 이기니, 허물을 따지자면 허물이 임금에게 있다. 이는 나의 허물이다.

이것으로 보건대 교외의 제단에서 예를 거행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허물이고, 노쇠하여 정성이 부족

今茲致旱，是誰之咎？寔予之咎，過爲戒懼，恐或欠潔，莫重郊祀，卅載之間，僅得兩行，此予之咎。雖親圭璧⁶⁶，衰耗誠淺，莫能感⁶⁷孚，此予之咎。祭不能虔誠，綱不能檢下，白首親祭，逡巡執事，其君若誠，臣何忍⁶⁸此？此予之咎。追慕于中，月雖三講，書自我自，莫能實踐，此予之咎。月三次對，不過觀瞻，政弛民困，一無其效，此予之咎。莫能導率，侈風日盛，財用日窮，此予之咎。表若其端，影何不直？躁⁶⁹競之習，日甚月盛，此予之咎。御下幾年，其若擧直，孰敢浮⁷⁰囂？

수정

66 璧：저본에는 '璧'.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67 感：저본에는 '敢'.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68 忍：저본에는 '思'.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69 躁：저본에는 '躁'.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70 浮：저본에는 '憊'.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한 것이 두 번째 허물이고,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못한 것이 세 번째 허물이고, 강학講學을 부지런히 하지 않은 것이 네 번째 허물이고, 정사가 해이해지고 백성이 곤궁해진 것이 다섯 번째 허물이다. 사치가 성행하고 재물이 궁핍한 것이 여섯 번째 허물이고, 벼슬을 조급하게 다투는 일이 그치지 않는 것이 일곱 번째 허물이고, 소란 피우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여덟 번째 허물이고, 기강을 진작시키지 못한 것이 아홉 번째 허물이고, 공소를 실추시키고 의리를 덮은 것이 열 번째 허물이다. 허물이 과인에게 있으니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 이 때문에 허다한 군병들이 한창 무더운 날씨에 연이어 말을 달렸으니, 이것이 어찌 옛날 군병을 돌보신 뜻을 평소 유념한 것이겠는가. 이 또한 나의 허물이다. 이 또한 나의 허물이다.

가물을 근심하여 자신을 신칙한 것이 어찌 한두 번이었겠는가. 저녁 내내 하늘을 바라보니 이처럼 애가 타는데, 의례적인 투식으로 어떻게 사죄할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내일 돌아갈 때 경기 백성을 남대문 밖에서 불러 만날 것이니, 규례대로 상언上言을 봉입하는 것보다 백성의 곤궁함을 직접 묻는 것이 낫다. 한성부와 경기 감영은 잘 알도록 하고, 의금부와 형조의 경죄수輕罪囚를 모두 풀어 주어 내가 가물을 근심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非不嚴飭，而其弊轉⁷¹甚，究厥所由，咎在一人，此予之咎。紀綱日頹，恬惓⁷²成習，若能舉綱，何至于此？此予之咎。私勝於公，慾勝於義，若問其咎，咎在厥辟，此予之咎，以此觀之，郊壇曠⁷³禮，其咎一也。衰耗誠淺，其咎二也。莫能檢下，其咎三也。講學不篤，其咎四也。政弛民困，其咎五也。侈盛財窮，其咎六也。躁競不戢，其咎七也。浮囂不悛，其咎八也。不能舉綱，其咎九也。公墜義掩，其咎十也。在寡躬，民何其辜？思之及此，心焉悚慄，以此之故，許多軍兵，方當盛暑，連爲驅馳，此豈恒日體昔年恤軍兵之意乎？此亦予咎，此亦予咎，悶旱飭躬，奚止

수정

71 轉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72 惓 : 저본에는 '惕'.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73 曠 : 저본에는 '瞻'.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5월 29일

전교하기를,

“대궐로 돌아갈 때 태상시^{太常寺}를 경유하여 신실^{神室}을 봉심하겠다.”

라고 답전 하교하였다.

전교하기를,

“남단에 제사를 지낼 때 마음이 더욱 간절해야 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속이 타는 듯하다. 친제를 지낸 뒤에는 해당 조에서 감히 으레 나에게 묻지 못하는 법인데 이미 아뢰었으니, 어찌 감히 이 한 몸을 돌보겠는가. 오늘 보고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오는 3일에 희생을 대신하여 사단^{社壇}에서 다시 기도할 것이니, 해당 조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제문은 지어 내릴 것이다.”

하였다.

一二? 而⁷⁴竟夕瞻漠, 若是焦心, 其循例套, 何以仰謝? 自今日爲先, 限得雨減膳, 明日回駕時, 當召見近畿民人於南門外, 例捧上言, 不若親問困窮, 其令京兆·畿營知悉, 金吾·秋曹輕囚, 一例放釋, 以示予悶旱之意.”

庚辰五月二十九日

一. 傳曰: “回駕時, 歷臨太常寺, 奉審神室^{神室}事, 榻前下教.

一. 傳曰: “奎壁南壇, 宜應愈懇, 瞻望雲漠, 如憤如灼, 親祭之後, 該曹不敢例稟, 業已奏矣, 何敢顧身? 觀今日若不霈然, 初三日當代犧, 復禱於社壇, 令該曹知悉, 祭文當製下矣.”

74 而 : 저본에는 '되'.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경진년¹⁷⁶⁰ 6월 1일

전교하기를,

“엿그제 이미 하유하였으니 사단^{社壇}에서 5차 기우 친제를 규례대로 거행하겠다. 시각은 이미 하교하였고, 문과 군병, 지영^{祗迎}, 유원^{留院}, 시위^{侍衛}, 수궁^{守宮} 등의 일 또한 이전 하교대로 거행하라. 앞으로 모든 기우제 때 시위하는 등의 일은 처음 낙점받은 사람이 비가 올 때까지 그대로 거행하라고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성상부터 향관^{享官}까지 으레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사직 기우 친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아 산재는 형세 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과 근시 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壚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庚辰六月初一日

一. 傳曰：“再昨已諭，社壇五次祈雨親祭，依例舉行，時刻已下教，門與軍兵·祗迎·留院·侍衛·守宮等節，亦依前下教舉行，此後凡祈雨祭侍衛等節，以初次受點人，限得雨，仍爲舉行事，定式。”

一. 曹啓曰：“社稷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規，而今此社稷祈雨親祭，只隔二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侍衛之屬，守衛壚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悉何如?”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享官들은 조복 차림으로 하루 전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있습니다. 이달 6월 3일 사직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2일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가되 4품 이상은 조복 차림으로,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기우 친제 때 높고 낮은 집사관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이번 6월 2일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대차大次에 나아간 뒤 높고 낮은 집사들과 중사中使, 근시近侍들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규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6월 3일 사직 기우 친제 때,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일은 규례대로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여 거행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一. 曹單子: “凡大祭親行時, 諸享官以朝服, 前一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將至祇迎事, 禮文載錄爲白有昆, 今六月初三日, 社稷祈雨親祭教是時, 諸享官初二日質明, 先詣享所, 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黑團領祇迎事, 知委何如?”

一. 曹單子: “今此社稷祈雨親祭教是時, 諸執事官, 除隸儀, 今六月初二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詣大次後, 大小諸執事官與中使·近侍, 以黑團領, 依例並爲私習儀, 俾無失儀事, 知委何如?”

一. 曹啓曰: “今六月初三日, 社稷祈雨親祭時, 省牲省器, 依例以親臨磨鍊舉行乎? 敢稟.” 傳曰: “依爲之.”

경진년¹⁷⁶⁰ 6월 2일

희생을 살핀 후 대차^{大次}에 예방 승지·예조 판서·편차인·봉상시 관원·영의정이 입시하였을 때, 사직단에서 희생을 살핀 후 태상^{太常}에게 하유하여 전교하기를,

“아, 『맹자^{孟子}』 곡속장^{穀觶章}에서 맹자가 제 선왕^{齊宣王}에게 어진 마음을 지녔다고 칭찬하였다. 어찌하여 제 선왕을 말하였는가. 옛날에 친향^{親享}한 뒤로 한 달 남짓 소고기를 드시지 않은 것을 내가 우러러 본 적이 있었다. 제전^{祭奠}과 대향^{大享} 외에 친림하는 경우는 세 가지 희생을 갖추었고, 섭행하면 돼지만 희생으로 사용하였다. 아, 부덕한 내가 가뭄을 초래하여 발두둑이 장차 갈라지고 백성이 장차 구렁에 나뿔것이니 실로 나의 허물이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군병을 수고롭게 하였으니 실로 나의 허물이다. 두 번이나 친히 기도하였으나 비가 아직 흡족하게 내리지 않아 오늘도 사직단에 왔으니 군병과 백성은 죄가 없다. 어찌 소와 양을 닦아겠는가. 제기를 봉심하고자 신주문^{神廚門}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미시^{未時}가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희생은 이미 바쳤으므로 소가 그 안에 있었고 많은 군병이 에워싸고 서 있었으니, 이는 장차 희생을 도살하기 위해 그러 한 것이다. 보고 있자니 불쌍하고 측은하였으니 어찌 제 선왕의 마음에 그치겠는가. 번육^{膾肉}을 받는 일은 체모가 중요하므로 빠트릴 수 없다. 이번 번육은 양만 봉진^{封進}하여 옛날의 성대한 덕을 본받으려

庚辰六月初二日

一. 省牲後大次, 禮房承旨·禮判·編次人·奉常寺官員·領相入侍時, 社壇省牲後, 諭太常, 傳曰: “噫, 孟子穀觶章, 鄒聖稱齊宣以仁心, 奚謂齊王? 昔年親享之後, 月餘不御牛肉, 予嘗⁷⁵仰觀, 凡祭奠大享之外, 親臨則備三牲, 若攝行則只用豕牲. 噫, 否德致旱, 田疇將圻⁷⁶, 民將溝壑, 寔予之咎, 當此盛暑, 軍兵勞攘, 寔予之咎, 親禱至再, 尚未周洽, 今日又詣社壇, 軍民無辜, 其尤牛羊? 欲爲奉審祭器, 入神廚門, 未後⁷⁷不至, 而犧牲已捧, 故牛在其中, 衆軍環立, 此將爲宰牲而然也. 看來矜惻, 奚徒齊宣⁷⁸

75 嘗 : 저본에는 ‘當’.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76 圻 : 저본에는 ‘拆’.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77 未後 : 저본에는 ‘後未’.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78 宣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는 내 뜻을 보이라.”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4일

영교하기를,
“대조^{大朝}께서 가뭄을 걱정하여 애태우며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며 음악을 중지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나도 오늘부터 정당^{正堂}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겠다. 이 뜻을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편차인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6차 기우제의 제문을 지어 내리겠다. 북교^{北郊}에 1
품 중신을 보내어 6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집사
들은 가려서 차임하고 정결을 다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는 설행하지만 어찌 범범하게 하겠는가. 집
사들의 재숙^{齋宿} 여부는 비변사에 입직한 낭청이 적
간^{摘奸}하여 아뢰게 하라. 위판^{位版}이 많으니 봉상시정
겸 대축^{奉常寺兼大祝}이 모시고 가서 봉안하게 하라.”
하였다.

之心? 受膳體重, 不可闕也.
今番膳肉, 只封其羊, 以示予
體昔年盛德之意.”

庚辰六月初四日

一. 令曰: “大朝憫旱焦憂, 至
有避正殿·減膳·撤樂之命, 余
亦當自今日, 避正堂⁷⁹·減膳,
此意知悉.”

一. 編次人入侍時, 傳曰: “六
次祈雨祭, 祭文當製下, 北郊
遣一品重臣, 初六日設行事, 分
付, 諸執事擇差, 其令致潔.”

一. 傳曰: “今番則攝行, 曷致
泛然? 諸執事齋宿與否, 使備
局入直郎廳, 摘奸以奏, 位版
既多, 奉常正兼大祝, 使之陪
進⁸⁰奉安.”

79 堂 : 저본에는 ‘宮’.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80 進 : 저본에는 ‘道’.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전교하기를,

“아, 세 차례 친히 기도하였는데 모두 이튿날 가랑비가 내렸지만 큰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더구나 도성과 경기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또한 범상한 일이 아니다. 그 이유를 따져 보면 참으로 덕이 없는 나 때문이다. 직접 제문을 짓는 것은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으니 나에게 있는 도리를 닦아야 한다. 이미 단壇에서 사죄하였으니 더 이상 어찌 지체하겠는가. 오늘부터 정전에 나가지 않고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일을 규례대로 거행하라.

지난번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명하였는데, 정전에 나가고 음악을 듣는 일을 회복하는 것은 으레 가을이 된 이후에 하니, 지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는 사안 또한 하나의 규례이다. 음식 가짓수 줄이는 기한은 전례대로 하고, 가을에 공상하는 노루도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데 해당하니 모조리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전에는 이러한 때에 으레 배설排設하여 거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걸치례이다. 전에 시민당時敏堂 월대月臺에서 시사視事할 때 차일遮日 등의 물건을 널리 구비하느라 도리어 경비를 썼으니, 이 또한 몸소 신척하는 뜻이 아니다. 이번에는 거행하지 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一. 傳曰：“噫，三次親禱，皆已翌日小雨，霈澤猶邇，此豈偶矣？況都下近畿不霈，亦非泛然，究厥其由，良由否德，親製祭文，其若親祭，而當修在我⁸¹之道，既謝于壇，復何遲待？自今日不御正殿·撤樂等事，依例舉行，頃者減膳時，有限得雨之命，凡復御殿·復樂，例⁸²在報秋之後，今則減膳·撤樂，亦⁸³一例，減膳亦依前例限矣。秋供簞亦在減膳之中，一體舉行事，分付。前則此等之時，例有排設舉行之事，而此亦文也，曾前時敏堂月臺視事也，遮日等物廣備，反費經費，亦非自飭之意，今番勿爲舉行事，分付。”

81 我：저본에는 ‘家’.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82 例：저본에는 ‘依’.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83 亦：저본에는 ‘卽’.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경진년¹⁷⁶⁰ 6월 7일

전교하기를,

“7차 기우제는 선농단에 대신^{大臣}을 보내 설행하고
집사들을 각별히 뽑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9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오늘 비 오는 형편을 보고 만약 두루 적시지 않는
다면 8차 기우제를 우사단^{雩祀壇}에 1품 중신을 보내
설행하라. 아, 지금의 가뭄은 백성의 죄가 아니니,
하물며 동자는 오죽하겠는가. 이번에 석척 기우제<sup>蜥
蜥祈雨祭</sup>는 그만두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촌 2분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10일

편차인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庚辰六月初七日

一. 傳曰：“七次祈雨祭，先農
壇遣大臣設行，諸執事另擇
事，分付。”

庚辰六月初九日

一. 大臣·備局堂上入侍時，傳
曰：“觀今日雨勢，若不周洽，
八次祈雨祭，雩祀壇遣一品重
臣設行。噫，今者之旱，非民之
辜，況童子乎？今番蜥蜴祈雨
置之。”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
則二寸二分流下’是如爲白臥
乎事。”

庚辰六月初十日

一. 編次人入侍時，傳曰：“初

“초복이 이미 지났는데도 큰비가 내리지 않으니 더욱 초조하다. 몸소 거행하기로 하였으니 어찌 중신에게 명하겠는가. 내일 우사단은 대신이 섭행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서,
‘오늘 비 오는 형편을 보고 두루 적시지 않는다면 8차 기우제를 우사단^{雩祀壇}에 1품 중신을 보내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제 비도 여전히 두루 적시지 못하였으니 성상의 전교대로 8차 기우제를 우사단에서 택일하지 않고 오는 12일에 1품 중신을 보내어 설행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의 수본에,
‘오늘 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넘쳐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伏已過，霈然逾邈，采切焦心，
既欲躬行，何命重臣？明日雩
壇，大臣攝行事，分付該曹.”

一. 曹啓曰：“昨日傳教中，觀
今日雨勢，若不周洽，八次祈
雨祭，雩祀壇遣一品重臣設行
事，命下矣。昨日之雨，猶不周
洽，依聖教，八次祈雨祭，雩祀
壇，不卜日，來十二日，遣一品
重臣設行之意，敢啓。”傳曰：
“知道.”

庚辰六月十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四同手本內：‘今夜下雨，水
標看審，則過流’是如爲白臥乎
事.”

一. 傳曰：“噫，烈⁸⁴陽杲杲，雲

84 烈 : 저본에는 ‘愈’. 『승정원일기』

“아, 뜨거운 햇볕과 아득한 하늘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비가 한 자 정도 내리자마자 그치고는 먹구름이 바람에 흩어져 석 달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 참으로 40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애태우고 근심하는 까닭이다. 더구나 1차부터 모두 이틀째 비가 잠깐 내렸다가 곧장 그쳤으니 역시 ऐसा롭지 않아 더욱 마음이 타는 듯하다.

아, 가뭄을 근심하는 중에 추모하는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워 원침園寢에 몸소 전알展謁하여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신제忌辰祭를 지내고 돌아오다가 검암巖에 가까워서야 비로소 가랑비를 만났다. 그 뒤에도 뿌렸다가 개다가 하여 여전히 쏟아질 기미가 있으니, 삼가 명령들의 보살핌을 바랐다. 아, 선농단과 우사단에는 비록 설행하라고 명하였지만 이 마음은 안절부절못하였다. 3차는 친제를 지내고 5차는 설행하여 신령의 감응이 아득하던 때 어제 저녁에 큰 비가 내렸으니, 이는 뜻밖이다. 어떻게 얻었겠는가. 신명이 내리신 것이고 정승이 정성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아, 비록 전례가 없더라도 여러 달 애태우고 근심하던 뒤이니 한 번 사례해야 마땅하다. 하물며 전례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는 어떻겠는가. 예조의 옛 규례에는 보사제를 입추 뒤에 지냈는데 근년 이래로 모두 때맞추어 지냈다. 비가 내려도 보사제를 입추까지 기다린 이유는 신을 섬기는 데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漢藐藐，古雖有之，報尺⁸⁵旋止，密⁸⁶雲風散，浹三朔以旱，誠是四十年初覩，此予所以晝夜焦悶者。況自初次，皆第二日，乍雨旋止，亦非尋常，尤切惓⁸⁷惓。嗚呼，悶旱之中，追慕難抑，躬謁園寢⁸⁸，四十年來初行忌辰祭，而回來迫黔巖，始逢微雨，其後或灑或霽，猶有需然之意，竊望陟降之眷佑。噫，農壇雩壇，雖命攝行，此心憧憧⁸⁹，三次親祭，五次攝行，冥應漠然之際，昨夕得需，寔也望外，其何以⁹⁰得？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85 尺：저본에는 ‘矣’.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86 密：저본에는 ‘蜜’.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87 惓：저본에는 ‘招’.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88 躬謁園寢：저본에는 ‘躬謁陵園寢’.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89 憧憧：저본에는 ‘種種’.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90 以：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아, 처음에는 이 단壇에서 친행하겠다고 편전 뜰에서 이미 아뢰었으나, 마침 동가(動駕)가 있어 군병들을 쉬게 하겠다는 뜻을 능침에 아뢰고 또 군병들에게 유시하였다. 그러므로 부득이 섭행을 명하였으나 마음은 단소(壇所)에 있었다. 제문은 친히 지었는데, 그 글에 ‘정성껏 정결을 다하라.’ 하였으므로 감히 친제 때와 달리 할 수 없다. 비가 내린 뒤에도 마음 속으로 ‘내가 비를 얻었다고 마음이 풀어지면 이는 옛사람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제사 지낼 때부터 새벽종이 칠 때까지 눕지 않고 앉아서 기다렸으니, 이는 나의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기 위해서이다. 집사에게 상을 준 이상 신에게 사례하지 않으면 이는 경중이 뒤바뀐 것이다. 또 어제 만약 친행하였다면 제문에 보사(報謝)하겠다는 구절을 보태야 한다.

아, 백성을 위해 애태우는 때 희생을 대신하여 직접 기도하려고 하였고, 큰비를 바라던 끝에 이렇게 큰 비가 내렸으니, 명관(命官) 또한 옛날에 정성으로 신을 섬기던 도리를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사단에 14일 보사제를 지내되, 제물과 의절(儀節)은 종묘에서 고유제(告由祭)를 친행하는 규례와 똑같이 하고, 3일 안에 선농단에도 대신을 보내어 같은 날 보사제를 지내되, 후직씨(后稷氏)의 위판(位版)은 주위(主位)를 따라 단상에 두라고 예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망제(望祭)의 종묘 축문은 직접 지어 명령을 위로하겠다. 승정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明神攸賜，相臣虔誠。噫，雖無其例，幾月焦悶之餘，其宜一謝⁹¹，況有例班班⁹²者乎？儀曹舊例，行於立秋後，而近年以來，其皆趁行，蓋得雨報謝，遲⁹³待立秋，事神欠誠故也。噫，此壇初欲親行，便殿庭中已奏，而適有動駕，爲軍兵弛張之意，奏于陵寢，亦諭三軍，故不獲已命攝，心在壇所，文則親製，其文中，既曰虔誠致潔，故不敢異⁹⁴於親祭，得⁹⁵霈之後，心自謂曰：‘予若得霈而弛心，此非古人之意。’自祭時至曉鍾，不臥坐待，此則少伸

보충

91 謝：저본에는 ‘例’.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92 班班：저본에는 ‘斑斑’.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93 遲：저본에는 ‘啓’.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94 異：저본에는 ‘奏’.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95 得：저본에는 ‘復’.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전교하기를,

“강물이 1척 불어나도 수본을 올리게 하였으니, 예
조 판서는 이를 알고 입시하라.”
하였다.

予忱，既賞執事，不謝其神，
此輕重⁹⁶置，且昨若親行，祭
文當添報謝⁹⁷句。噫，爲民焦灼
之時，其欲代犧，望霈之餘，得
此甘霈⁹⁸，而命官亦豈仰體昔
年事神以誠之道乎？零壇則
十四日當行報謝⁹⁹，而祭物儀
節，一依太室親行告由祭例，
既在三日之內，先農壇亦爲遣
大臣，同日報謝，而后稷氏位
版，從主位¹⁰⁰壇事，亦令儀曹
舉行望祭，太室祝文，當親製，
仰慰陟降，政院知悉。”

一. 傳曰：“江水加漲，雖一尺，
使之手本，禮判知此入侍。”

96 例：저본에는 '例'.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97 謝：저본에는 '復'.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98 霈：저본에는 '霍'.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99 當行報謝：저본에는 '當親行報謝'.
『승정원일기』영조 36년 6월 12일 기
사에 근거하여 수정

100 主位：저본에는 '重陪'. 『승정원일
기』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사동^{金四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1분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이한엽^{李漢燁}의 첩정^{牒呈}에
 ‘지난밤 큰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 평상시 수위 기
 준에서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3척 2촌이 더 불어났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우사단에 보사제를 친히 지낼 때, 성상부터 향관들
 까지 으레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에 우사단에 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이틀밖
 에 남지 않아서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하면서 조문
 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
 과 근시 관원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
 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四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五寸一分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一. 曹單子：“節呈漢江鎮別將
 李漢燁牒呈內：‘去夜大雨，江
 水漲溢，常流水基¹⁰¹良中，以
 布帛尺尺量，則三尺二寸加漲’
 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啓曰：“雩祀壇報謝祭親
 行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
 散致齋之規，而今此雩祀壇報
 謝祭親行，只隔二日，散齋則
 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
 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
 事，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
 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

101 基：저본에는 ‘墓’. 『승정원일기』
 인조 5년 6월 21일 등의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관과 유문(塹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하루 전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6월 14일 우사단 보사제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13일에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가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13일

우사단에 거동하여 입시하였을 때, 상이 이르기를,
“수표직 수본에 이름이 비었으니 매우 괴이하다.”
하니, 호조 판서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수표직은 예전에는 쓸모없는 듯하였지만 지금은 매우 긴요하니, 준천사(濬川司) 고직(庫直)이 겸하여 살피게 하고 병조로 하여금 값을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塹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悉何如？”傳曰：“允。”

一. 曹單子：“凡祭親行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六月十四日，雩祀壇報謝祭親行教是時，諸享官十三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庚辰六月十三日

一. 雩祀壇舉動入侍時，上曰：“水標直之虛名手本甚怪矣。”戶判洪鳳漢曰：“水標直，前則雖似無用，今則甚緊，使濬川司庫直兼察，令兵曹給價，何如？”上曰：“依爲之。”

경진년¹⁷⁶⁰ 6월 14일

보사제는 고례^{古禮}대로 입추 뒤에 지내라는 윤음을 쓰라고 명하고서 전교하기를,
“보사제를 입추까지 기다리면 혹여 정성이 부족하겠
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근년 이래로 모두 즉시 거
행하게 하였다. 오늘 생각해 보니 그 뜻이 미묘하다.
한편으로는 다시 몸소 기우제를 지내는 일이 있을
까 걱정하였고, 한편으로는 농사가 끝나기를 기다렸
던 것이었다. 옛 전례를 따라야 하니, 이후로는 한결
같이 옛 전례대로 입추에 거행하라고 예조에 분부
하라.”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15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기수^{朴棋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1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기수^{朴棋瑞}의 수본에,

庚辰六月十四日

一. 報謝祭, 依古禮, 行於立
秋後綸音, 傳曰: “報謝祭之待
立秋, 意或欠誠, 故近年以來,
皆令卽行. 今日思之, 其意微
妙, 一恐或更有躬爲之事, 一
則待其年事之畢也. 當遵舊
例, 此後一依古例, 立秋後舉
行事, 分付儀曹.”

庚辰六月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棋
瑞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
審, 則一尺三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庚辰六月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棋
瑞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4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준천사^{濬川司}의 감결^{甘結}에,
 “……수표직을 본사의 고직이 겸하여 살피는 일은 이미 연석에서 여쭙어 처리하였습니다. 예조는 앞으로 수표의 초기를 수표직의 수본대로 거행하며, 중부가 수표직 수본을 예조에 보고하는 사안은 그만 두십시오.”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17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을 위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상로가 아뢰기를,
 “기우제 헌관에 중신을 보내라는 특교가 있을 경우, 종1품과 정2품 관원을 통틀어 채워 차임하도록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2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審, 則一尺四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濬川司甘結內: “云云, 水標直以本司庫直兼察事, 既爲筵稟是置, 禮曹段, 此後水標草記, 依水標直手本舉行爲旆, 中部段水標手本, 報禮曹事安徐事, 甘.”

庚辰六月十七日

一.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啓: “祈雨祭獻官¹⁰², 若有遣重臣之特教, 則以從一品·正二品通融填差矣,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庚辰六月二十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

¹⁰² 官: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오늘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3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6월 27일은 입추이니, 정전^{正殿}으로 돌아가고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는 사안을 규례대로 거행하라
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24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25일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6월 27일은 바로 입추이니 대전께서는 정전으
로 돌아가고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는 사안을 규례
대로 거행하도록 방금 계품하였는데 윤허를 내리셨

瑞手本內：‘今夜下雨，水標看
審，則二尺三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一. 曹啓曰：“今六月二十七日，
乃是立秋節，還御正殿·復常
膳等事，依例舉行事，分付何
如？”傳曰：“允。”

庚辰六月二十四日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
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庚辰六月二十五日

一. 曹達曰：“今六月二十七日，
乃是立秋節，大殿還御正殿·
復常膳，依例舉行事，纔已啓
稟允下矣。邸下還座正堂·復

습니다. 저하께서도 도로 정당正堂에 자리하고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는 등의 사안을 같은 날 똑같이 거
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영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이한엽李漢燁의 첩정에
‘이번에 큰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12척이 더 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6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
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진년¹⁷⁶⁰ 7월 16일

전교하기를,

“수표직이 수표를 몰라서 그런 것인가. 해방 승지는

常膳等事, 同日一體舉行事,
分付各該司, 何如?” 令曰:
“依.”

一. 曹單子: “節呈漢江鎮別將
李漢燁牒呈內: ‘今番大雨, 江
水漲溢, 常流水基¹⁰³良中, 以
布帛尺尺量, 則十二尺加漲’是
如爲白臥乎事.”

庚辰六月二十八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 ‘今朝下雨, 水標看
審, 則五尺五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庚辰七月十六日

一. 傳曰: “水標直不知水標而
然耶? 該房承旨申飭, 這這書

¹⁰³ 基: 저본에는 ‘墓’. 『승정원일기』
인조 5년 6월 21일 등의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신척하고 날날이 써서 들이라. 앞으로 만약 다시 이
전처럼 한다면 병조로 하여금 곤장을 치도록 분부
하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5월 26일

전교하기를,
“아, 지금 나의 생각은 오직 백성 뿐이니, 지난번 가
뭍이 들었을 때도 마음이 근심스러웠다. 요즘 아침
에는 비가 내리려다가 내리지 않고 낮에는 햇볕이
쨍쨍하고 저녁에는 바람이 불어 이미 가뭄 들 기미
가 생긴 지 열흘이 넘었으니, 먹고 잘 때마다 애태울
뿐이다. 오늘날의 심기로 가뭄을 만나다면 더욱 무
슨 말을 하겠는가. 옛글에 ‘미리 하면 성립된다.’ 하
였고, 또 이달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니, 하루 이
틀 사이 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허물은 한 사람에
게 있으니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1차 기우
제는 택일하지 않고 이번 28일에 삼각산^{三角山}, 목덕
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규례대로 거행하고, 헌관과 집
사를 가려 차임하라. 아, 지금 나의 이 마음은 오로
지 백성에게 있으니 어찌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되겠
는가.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入, 而此後若復如前, 則當令
騎曹決棍事, 分付.”

壬午五月二十六日

一. 傳曰: “噫, 目今予之一念,
惟在元元, 頃者旱徵, 心猶悶
也. 近日朝則欲雨不雨, 晝陽夕
風, 已成旱氣, 恰¹⁰⁴滿旬餘, 於
宿於食, 只自焦心, 以今心氣,
若逢其旱, 其尤何言? 傳曰, 預
則立, 且今月只隔三日, 一日二
日, 其或愆期, 咎在一人, 民何
其辜? 初次祈雨祭¹⁰⁵, 不卜日,
今二十八日, 三角·木覓·漢江,
依例舉行, 獻官·執事擇差. 噫,
今予此心, 只在¹⁰⁶乎民, 何拘常
例? 親文當製下矣.”

¹⁰⁴ 恰 : 저본에는 ‘洽’.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5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⁰⁵ 祭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5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⁰⁶ 只在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38년 5월 26일 기사에 근거
하여 보충

전교하기를,

“헌관을 각별히 가리라고 하교하였지만 백성을 위하여 어찌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되겠는가. 또한 전례가 있으니, 세 곳은 모두 유신으로 채워 차임하고 정성껏 기도하게 하라. 제단 역시 미리 분부하여 깨끗이 청소하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5월 28일

전교하기를,

“백성을 위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가랑비가 내렸다고 곧장 그만둘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정성으로 신을 섬기는 도리로는 번거롭게 할 수도 없다. 오늘 비 내리는 기세를 보고 하교하면 거행하도록 모든 일을 미리 대기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새벽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촌 5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 걱정예 덩달아 애가 탄다. 오늘이 지난

一. 傳曰：“獻官另擇事，雖下教，爲民何拘常例？亦有前例，三處皆以儒臣填差，其令虔誠祈禱，祭壇亦爲預分付掃潔。”

壬午五月二十八日

一. 傳曰：“其在爲民之道，豈可以微雨旋止？而雖然，事神以誠之道，亦不可瀆褻，觀今日雨勢，待下教舉行，凡事其令預待。”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曉下雨，水標看審，則一寸五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傳曰：“目今悶旱，兼爲焦心，過今日後，再次祈雨祭，其

뒤 2차 기우제를 해당 조로 하여금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2차 기우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침에 물어보았으나 감히 대뜸 말을 만들어 하교할 수 없다. 지금 수표가 1척을 넘었는데 기우제를 그대로 거행하면 정성으로 귀신을 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곧 중지하는 전례가 분명히 있으니, 2차 기우제는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5월 29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7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令該曹依例舉行.”

一. 曹啓曰：“云云事，命下矣。即今雨勢如此，再次祈雨祭，何以爲之乎？”傳曰：“朝者之稟，不敢遽然措辭下教，今則水標過尺，仍行祈雨，非事神以誠之道，得雨旋止，古例班班¹⁰⁷，再次祈雨祭，勿爲舉行。”

壬午五月二十九日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尺七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¹⁰⁷ 班班：저본에는 ‘斑斑’.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임오년¹⁷⁶² 윤5월 1일

건명문^{建明門}에 전좌^{殿座}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비가 내릴 듯하다가 내리지 않고 서늘한 바람만 계속 불어 비가 내릴 기미가 아득하여 우리 백성을 생각하니 매우 애타고 근심스러웠다. 아, 하늘에 계신 영령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여 돌보셨으니 이 비를 어찌 예상이나 했겠는가. 이 또한 헌관이 정성껏 기도하며 보잘것없는 내 정성을 잘 인도한 결과이고, 수표^{水標}가 1척을 넘은 것도 전례가 있다. 1차 기우제를 지낸 삼각산 헌관 사복시 정 이경옥^{李敬玉}, 한강진 헌관 부사과 윤만순^{尹晩淳}, 목덕산 헌관 응교 김종정^{金鍾正}에게 각각 반숙마^{半熟馬} 1필을, 세 곳의 대축^{大祝} 이하 집사들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찬자^{贊者}와 알자^{謁者}에게 각각 상현궁 1장을 내려 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1차 기우제에 비가 내리다니 실로 뜻밖이다.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입추까지 기다리겠는가. 이미 헌관들에게 상을 내렸으니 보사제를 지내지 않는다면 경중이 뒤바뀌는 것이다. 보사제는 택일하지 말고 6일에 거행하라. 그리고 제문을 처음 지을 때 이미 예법에 구애받지 않고 유신에게 쓰라고 명하였다. 이번 보사제에는 근시^{近侍}를 보낼 것이니, 삼각산에는 좌승지, 한강진에는 우승지, 목덕산에는 좌부

壬午閏五月初一日

建明門殿座入侍時，傳曰：“欲雨不雨，淒風連吹，雨意日邈，顧我元元，方切焦悶。嗚呼，蒼蒼陟降，愛恤其民，則此豈攸料？此亦獻官虔誠訴禱，能導微誠之致。水標過尺，又有前例，初次祈雨祭，三角山獻官司僕正李敬玉·漢江獻官副司果尹晩淳·木覓山獻官應教金鍾正，各半熟馬一匹，三處大祝以下諸執事，各兒馬一疋，贊謁者，各上絃弓一張賜給。”

一. 傳曰：“初次得雨，實是料表，何循常例而待立秋？既賞獻官，不爲報謝，輕重倒置。報謝祭，不卜日，初六日舉行，而祭文製初，已不拘禮，命儒臣行寫。今於報謝，當遣近侍，三角山左承旨，漢江右承旨，木覓山左副承旨進去，明日當親傳香，分付儀曹。”

승지가 나아가라. 내일 직접 향을 전달할 것이니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윤5월 6일

전교하기를,
“아, 얼마 전 경기에 심한 가뭄이 들어 내 마음이 초조하였는데,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자 두 도^道의 장계가 일제히 왔다. 본디 매우 노쇠한 몸으로 밤낮 백성을 염두에 두었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들으니 어찌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겠는가. 일시에 관원을 보내어 기우제를 경건히 지내라.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강원도에 있다. 아, 우리 백성이 만약 비 덕분에 소생한다면 밥을 먹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허물이 실로 나에게 있으니 음식이 어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가. 한 번 설행하도록 명하였다고 어찌 하늘이 감동하기를 바라겠는가. 도신과 수령을 신칙하고 권면한 뜻은 깊다. 아, 도신과 수령은 나의 이러한 뜻을 유념하여 덕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더욱 정성을 다하여 기필코 비가 쏟아지게 하여 우리 백성이 가을에 수확하도록 하고, 비 내리는 상황을 자주 장계로 보고하여 나의 애타는 마음을 풀어 주라고 두 도의 도신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壬午閏五月初六日

一. 傳曰：“噫，俄者畿甸亢旱，予心焦灼，雲漢之心小弛，兩道之狀齊到，衰耗自甚，夙宵在民，今聞此報，何拘常例？一時遣官，敬行祈雨，身雖在此，心在東道。吁嗟吾民，其若賴活，庶幾玉食，或若不然，咎實在予，食豈下咽？一次命設，何望感格？而飭勉道臣·守令，意則深矣。咨道臣·守令，體予此意，莫云否德，益加虔誠，期得霈然，使我元元有秋，雨除狀聞，頻頻馳聞，解予焦心事，下諭兩道道臣。”

전교하기를,

“아, 경기와 삼남^{三南}의 기우제를 설행한 곳에 비가
흠족하게 내렸다는 장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초복^{初伏}이 내일인데 어제 비가 내리다가 바로 그치
고 뜨거운 햇볕이 또 짹짹 내리쬘니, 농사를 생각건
대 모두 죽게 되면 무슨 마음으로 밥을 먹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네 도^道에 신칙하여 각별히 정성껏
기도하라고 분부하게 하라. 지금 막 불려서 쓰는 즈
음에 경상 감사의 장계가 마침 도착하였다. 72개 고
을 중에 비가 내린 곳은 비록 흠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가량이 있지만, 그 밖의 읍과 진에는 끝내 비
가 내리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더욱 애타고
걱정이다. 특별히 어사를 보내 기우제를 지내게 하
였는데도 극심한 가뭄이 여전히 이와 같으니, 이것
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이는 실로 나 때문이다. 비
록 탕제를 복용하며 가만히 누워있는 중에도 마음
은 남쪽 지방에 있으니, 나의 이러한 뜻을 유념하여
각별히 정성껏 하라고 똑같이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경기 감사의 장계를 보니, 이천^{利川}과 지평^{砥平}
에는 모두 단비가 내려 기우제를 이미 중지하였으니
우리 백성이 장차 소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산^{安山}
과 금천^{衿川}은 처음부터 이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다
면 기우제를 즉시 설행해야 하였다. 초복^{初伏}이 지난

一. 傳曰：“噫，畿甸三南，祈
雨祭設行處，周洽之狀，尙未
到¹⁰⁸焉。初庚在明，而昨雨旋
止，烈陽又杲杲，言念民事，若
盡劉，何心玉食？令備局申飭
四道，另加虔誠祈禱事，分付。
今方呼寫之際，嶺伯狀聞適
到，七十二州之中，其中得雨
處，雖未周洽，猶有可望，而其
他邑鎮¹⁰⁹，終未得雨處，言念
民事，尤爲焦悶，特遣御事祈
雨，亢旱猶若此，是誰之愆？
寔由于予，雖服湯靜臥之中，
心在乎南，體予此意，另加虔
誠事，一體分付。”

一. 傳曰：“今覽畿伯狀聞，利
川砥平，皆得甘霖，既撤祈雨，
吾民庶幾，而安山·衿川，則自
初若是靳需，則祈雨祭，宜卽
設行，而初庚已報之後，乃有
祈雨設行之語，其涉太晚，則

108 晚：저본에는 ‘萬’. 문맥을 고려하여 수정

109 鎮：저본에는 ‘塵’. 문맥을 고려하여 수정

뒤에 기우제를 설행하였다는 말은 너무 늦었다. 도신을 신칙하여 엄하게 추고하라. 이것은 10개의 고을 이외의 일인가. 과연 10개 고을에 해당하는데 오랫동안 일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승정원은 즉시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2일

약방이 입진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요즘 삼남의 장계를 보고 마음이 매우 초조하고 근심스러웠는데 지금 경기 감사의 장계를 보니 더욱 애타고 걱정이다. 어찌 장계로 아뢴 일 뿐이겠는가. 당장의 일로 보건대 동풍^{東風}은 날마다 불고 하늘은 높기만 하다. 어제 대신^{大臣}에게 하문하니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초복^{初伏}이 이미 지났으니 더 이상 어찌 해이하게 있겠는가. 오늘 내일 보아 비가 내리지 않으면 1차 기우제를 즉시 설행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늘 내일 보고 비가 오지 않으면 1차 기우제를 즉시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요즘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비가 내릴 기미가 아득하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

飭道臣，從重推考，此乃十邑之外乎？果十邑之中而久幸其生事然乎？政院卽爲問啓。”

壬午六月初二日

一. 藥房入診時，傳曰：“近覽三南狀聞，心切焦悶，今觀畿伯狀聞，其尤渴悶，豈徒狀聞？以目下事觀之，東風日吹，雲漠高高，昨問大臣，其猶默也，初伏已過，復何泄泄？觀今明日，其若不雨，初次祈雨祭，卽爲設行事，分付該曹。”

一. 曹啓曰：“觀今明日，若其不雨，初次祈雨祭，卽爲設行事，命下矣。近日愈炎愈熾，淒風連吹，雨意漠然，前頭民事，誠爲渴悶。依下教，初次祈雨

입니다. 하교대로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4일

예조가 아뢰기를,
“오늘 내일 보고 비가 오지 않으면 1차 기우제를 즉시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비가 내릴 기미가 줄곧 아득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애타고 걱정입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1차 기우제를 삼각산, 목멱산, 한강 등지에 3품 관원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6일

약방의 세 제조가 당제를 가지고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신神을 섬길 적에는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 도의 장계를 연이어 들으니 황해도가 가장 낮다고 한다. 대체로 당장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가뭄이 이처럼 극심한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전에 물을 댄 논도 말라 버릴 것이니, 백성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애타고 걱정이다. 그러므로 방

祭, 不卜日, 來初六日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壬午六月初四日

一. 曹啓曰: “觀今明日, 其若不雨, 初次祈雨祭, 卽爲該行事, 命下矣. 雨意一向漠然, 言念民事, 誠甚渴悶, 依聖教, 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遣三品官, 不卜日, 來初七日設行事, 知委何如?”

壬午六月初六日

一. 藥房三提調持湯劑入侍時, 傳曰: “事神不可瀆褻, 連聞諸道狀聞, 海西最勝, 而大抵以目下事言之, 亢旱若此, 若今不雨, 前日有水根畝, 亦將枯涸, 言念民事, 心切渴悶, 故今方設行祈雨, 海西狀聞, 適到此時, 果若目下而其苦悶

금 기우제를 설행하였는데, 황해 감사의 장계가 마침 이런 때에 도착하였다. 과연 당장 괴롭고 걱정이 라면 기우제를 설행해야 하지만, 풍흉^{豐凶}이 엇비슷 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기우제를 지내더라도 나는 정성스럽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지난번에 추고하였는데 백성을 위하여 또 어찌 글을 올리는가. 황해 감사 서명웅^{徐命膺}을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약방이 입진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가뭄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우리 백성을 돌아보면 무슨 마음으로 밥을 먹겠는가. 그렇지만 모든 일은 미리 하면 되는 법이지만 지금 충청 감사의 장계는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성껏 기우제를 지내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더욱 유념 하라고 하유^{下諭}하였다. 오늘 문에 와서 여러 도^道의 백성을 불러 보았는데, 그중에 소장수가 있었으니 소를 팔려고 서울에 온 자이다. 가뭄이 이처럼 극심 하고 그루갈이가 한창인 때에 올라온 상인을 보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 도신이 성심으로 신척한 것이 장계의 내용만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잘하기를 요구하는 도리에 있어서 신척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 감사 윤동섭^{尹東漚}을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也，宜當設行而已。豐歉相爭之說，雖行祈雨，予則曰不誠，頃已推考，爲民而亦何尋文？黃海監司徐命膺從重推考。”

一. 藥房入診時，傳曰：“早乾之狀，日日尙至，顧我元元，何心玉食？雖然，凡事預則立也，而今者湖西伯之狀，無乃早動¹¹⁰乎？虔誠祈雨，以備不虞，尤爲着意事，下諭，而今日臨門召見諸道民人，其中有牛商矣，賣¹¹¹牛而來京者，亢旱若此，根耕方殷之時，觀其來商，豈不泄泄？無乃道臣誠心以飭，不若狀聞而然乎？其在責備之道，不可無飭，忠淸監司尹東漚從重推考。”

110 動：저본에는 ‘封’.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11 賣：저본에는 ‘買’.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임오년¹⁷⁶² 6월 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촌 4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 오늘이 무슨 날인가. 바로 경자년¹⁷²⁰, 경종즉위 초
 조하고 절박한 때였다.* 아득한 지금에 와서 또 이
 러한 날을 만난 데다가 가뭄이 이처럼 극심하다. 뜻
 대로 예^禮를 펴지 못하였으니 또 무슨 마음으로 다
 른 일을 수응^{酬應}하겠는가. 아, 옛날 조용히 조섭하
 실 때 농사를 근심하시던 모습을 내가 우러러보았
 었다. 애타고 걱정스러운 보고가 계속해서 오는데
 비가 쏟아질 기미는 아득하니, 더욱 어찌 감히 편안
 히 누워 밥을 먹겠는가. 더구나 옛날 송 인종^{宋仁宗}이
 비가 내리려고 하는 날에 친히 기도한 고사를 내가
 항상 그르다고 여겼다. 친히 기도하여 정성을 다하
 기를 기다리다가는 백성이 다 죽을 것이니, 어찌 차
 마 이렇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미 승지에게 기우
 제를 지내라고 명하였으니 친히 지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저녁 이후로 비가 내릴 가망이 있어 이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으므로 지난날의 전례대로 건명문^{建明}

壬午六月初七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
 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三寸四分流下’ 是如爲白臥
 乎事.”

一. 傳曰: “噫, 今日是何日?
 卽庚子年煎迫之日也, 冥然到
 今, 又逢此日, 加以亢旱若此,
 既不能若意展禮¹¹², 又何心酬
 應他事? 而嗚呼, 昔年雖在靜
 攝之中, 眷眷民事, 卽予仰觀,
 渴悶之報沓至¹¹³, 需然之期漠
 然, 尤何敢便臥玉食? 況昔宋
 仁宗某日將雨, 欲行親禱, 予
 常非之, 待親禱而虔誠, 民將
 盡劉, 豈忍爲此? 故既命承
 宣祈雨, 與親行何異? 且夕後
 有其雨其雨之望¹¹⁴, 此心尤切,

112 禮: 저본에는 ‘拜’.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13 渴悶之報沓至: 저본에는 ‘行渴悶
 之報至’.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14 其雨其雨之望: 저본에는 ‘其雨其
 雨其雨之望’.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門에서 이슬을 맞으며 앉아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잠깐 비가 내렸다가 곧바로 개고 끝내 단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실로 나의 허물이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슨 마음으로 3차와 4차 기우제도 계속 설행하라고 명하겠는가. 나에게도 생각이 있으니 조용히 조심하라고 말하지 말라. 이 한 몸을 백성과 나라에 바쳤으니, 더구나 이러한 때 단비가 내려 백성이 소생한다면 내가 다시 몸져 눕더라도 무슨 마음으로 이 한 몸을 돌보겠는가. 공자가 ‘예禮다 예다 하지만 옥백玉帛을 말하는 것이겠으며, 악樂이다 악이다 하는데, 종고鍾鼓를 말하는 것이겠는가.’ 하였으니, 기우제는 말단이고 성실이 근본이다. 아, 관찰사와 수령 또한 덕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의 이러한 뜻을 유념하여 성심껏 비가 내리기를 바라 우리 백성을 구제하라는 내용으로 여러 도에 신칙하라.”

하였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극심한 가뭄은 매우 근심스럽다고 하겠다. 아, 경기와 삼남의 보고가 날마다 오는데 한 번 보면 초조함이 더욱 깊어지고 두 번 보면 더욱 망극해진다. 아, 이것은 누구의 허물인가. 바로 덕 없는 나 때문이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밤부터 아침까지 내리던 비가 끝내 시원하게 쏟아지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 교외를 몸소 살펴보려는 것은 대체로 옛날을 유념해

故依頃日例，露坐建明門，以待祭畢，而雲雨旋霽，終靳甘露，是誰之咎？實予之愆，其若不雨，何心一向命攝於三於四之中？予有量焉，莫云靜攝，身許民國，其況此時得甘露，民若蘇，予雖復臥，何心自顧？子¹¹⁵曰：‘禮云禮云，玉帛云乎哉？樂云樂云，鍾鼓云乎哉？’禱雨未也，誠實本也，咨方伯·守令，亦莫云否德，體予此意，誠心望雨，濟我元元事，申飭諸道。”

一. 大臣·備局堂上入侍時，傳曰：“今之亢旱，可謂切悶，噫，畿甸·三南之報日到，一覽焦灼彌深，再覽尤爲罔極。噫，是誰之愆？即予否德，元元何辜？夜朝之雨，終靳霽然，此正百¹¹⁶聞不若一見，今日何日？而躬審郊外，意蓋體昔，若今得雨，猶有庶幾之望，而回駕

115 子：저본에는 ‘不’. 『송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16 百：저본에는 ‘曾’. 『송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서이다. 지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그래도 백성이 소
생할 가망이 있는데, 환궁한 뒤에 뜨거운 햇볕이 쨍
쨍 내리쬘어 비가 그치고 구름이 흩어지니 더욱 어
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러한 때 어찌 평상시의 규례
를 따르겠는가. 용산강(龍山江)에 재신(宰臣)을 보내고, 저
자도(楸子島)에 중신(重臣)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오는 9
일에 2차 기우제를 설행하라. 이미 나의 허물인지
알았으니 먼저 스스로 신칙하여 푸른 하늘에 답해
야 한다. 내일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

아, 백성이 장차 다 죽으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는
가. 아, 지금 의지할 바는 오직 군사와 백성이다. 생
각이 여기에 이르니 무슨 마음으로 밥을 먹겠는가.
나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나에게 의지하는데,
백성의 근본은 농사이다. 먼저 전라도에서, 다음은
경상도에서, 또 충청도와 황해도에서 풍년이 들 가망
이 있다는 장계가 왔으니, 기우제를 설행하라. 몸은
비록 구중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발두둑에 있다. 향
관(香官)을 각별히 가려 정성껏 기도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9일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
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에 우사

之後, 烈陽杲杲, 雨霽雲散, 采
切罔措, 此時何循常例? 龍山
江遣宰臣, 楸子島遣重臣, 不
卜日, 來初九日, 設行再次祈
雨祭, 而既知予咎, 宜先自飭,
仰答蒼穹, 自明日, 限得雨間
減膳. 噫, 民將¹¹⁷盡劉, 予何疇
托? 噫, 目今所依, 其惟軍民,
思之及此, 何心玉食? 予依於
民, 民依於予, 而民之本農也.
先湖南, 次嶺南, 又湖西而海
西, 其有豐登之望狀聞, 祈雨
祭設行, 身雖在於九重, 心則
在於田¹¹⁸疇, 另擇香官, 虔誠
祈禱事, 分付.”

壬午六月初九日

一. 曹啓曰: “祈雨親祭時, 自
上逮至諸享官, 例有散致之
規, 而今此雩祀壇祈雨親祭,

¹¹⁷ 將 : 저본에는 ‘孜’.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¹⁸ 田 : 저본에는 ‘四’.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단 기우 친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산제는 형세 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과 근시 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친제를 지낼 때 향관享官들은 하루 전날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11일 우사단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10일에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아가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우사단 기우 친제 때 높고 낮은 집사관들은 이번 10일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가 대가大駕가 단壇에 도착한 뒤 높고 낮은 집사들과 중사中使, 근시近侍들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규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

只隔二日，散齋則勢不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傳曰：“允。”

一. 曹單子：“凡親祭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乎，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十一日雩祀壇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初十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一. 曹單子：“今此雩祀壇祈雨親祭教是時，大小諸執事官，今初十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詣享所後，與中使·近侍，以黑團領，依例並爲私習儀，俾無失儀事，知委何

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저께 비록 비가 내렸지만 끝내 시원하게 쏟아지지 않아 동풍이 다시 불고 햇볕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아, 비가 내리더라도 내가 정성스러워서가 아니라 바로 제관祭官이 정성을 다하였기 때문이고,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제관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지금 정사를 새로 시작하는데 가뭄이 이처럼 극심하니, 옛날의 ‘피부인들 어찌 아끼겠는가.’라는 하교를 외우고 있다. 백성이 전부 죽는다면 비록 한 몸으로 만백성을 대신하고자 하나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때에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오늘 하루 비가 내리지 않으면 덕 없는 내가 하루 애타니, 송 경공宋景公이 ‘허물이 임금 한 몸에 있다.’라고 말한 경우와 같다.* 어찌 팔다리 같은 신하만 수고롭게 하겠는가. 『춘추春秋』에 공자께서 특별히 우제雩祭를 썼으니, 옛글에 말하지 않았는가. 이번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1일에 희생을 대신하여 우사단에서 직접 기우제를 지내겠다. 제문은 지어 내릴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약방이 입진하고 공사公事를 가지고 함께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如?”

一. 傳曰：“再昨其雖得雨，終不霈然，東風又吹，烈陽轉甚。噫，其雖得雨，非予之誠，即祭官虔誠，雖未得雨，非祭官之過，即予之過，今當初政，亢旱若此，誦昔年肌膚何惜¹¹⁹之教，民若盡劉，雖以一身代萬民，焉可得¹²⁰也？此時何循常例？目今一日不雨，即涼德一日焦心，若宋景之言咎在一辟，何只勞股肱？『春秋』孔聖特書¹²¹雩，傳亦不云？此祈雨也，不卜日，今十一日當代犧，躬禱于雩祀，祭文當製下，其令儀曹，即爲舉行。”

一. 藥房人診持公事同爲入待

119 惜：저본에는 ‘情’.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20 得：저본에는 ‘復’.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21 書：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지금 함경도에서 농사 형편을 보고한 장계를 보니, 아, 남도와 북도에 비와 별이 알맞지 않은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 또한 나의 잘못이요 이 또한 나의 허물이다. 그 가운데 온성^{穩城}은 사람과 짐승이 죽지는 않았지만 10여 호가 무너졌으니 듣기에 몹시 참혹하다. 본부로 하여금 돌보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병조 판서, 편차인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친제를 지내겠다고 명을 내렸는데 섭행할 때의 제문^{祭文}을 가지고 대령하였으니 이보다 해괴한 일이 없다. 해당 관원은 해당 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조 판서와 병조 판서는 먼저 입시하여 전일 우사단의 제문을 봉입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사전^{祀典}이므로 어제 예조의 추향 단자^{秋享單子}에 대해 섭행^{攝行}하라고 판부^{判付}하였으니, 꼼꼼하게 지내고자 해서였다. 예조에서 써서 들인 뒤에 즉시 계하^{啓下}하면 들이겠다고 말

時，傳曰：“今覽北道農形狀聞，噫，南北雨陽之不適，一何至此？此亦予過，此亦予愆，其中穩城人物，雖不致斃，十餘戶之頽壓，聞甚慘然，令本府顧恤事，分付。”

一．禮判·騎判編次人入侍時，傳曰：“親祭命下，以攝行祭文待令，事之可該，莫此爲甚。當該官員，令該府處之。”

一．傳曰：“禮判·騎判先爲入侍，前日雩祀壇祭文捧入。”

一．傳曰：“予之所敬，卽一祀典，故昨日禮曹秋享單子中，攝行判付，其欲致精，書入後卽奏啓下入來云，故仍命啓下矣，其單子留在於今日，心甚

하였으므로 그대로 계하하라고 명하였는데, 그 단자가 오늘 남아 있어 마음 속으로 몹시 의아하게 여겨 하문하니 밤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승지는 2경부터 파루罷漏가 지난 뒤까지 입시하여 공사를 수응하였으니 밤에 들어왔다는 말은 더욱 터무니없다. 이 또한 중관中官을 처분하라는 하교와 같으니, 여러 날을 밤새느라 중관들이 방자하게도 졸았던 탓이지만 막중한 사전이니 엄히 신칙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중관을 해당 부에서 엄하게 감처하게 하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12일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사직단 기우 친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과 근시 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壚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訝之，問之夜入云。承旨自二更至撤漏後入侍，酬應公事，其夜之說，尤爲無據。此亦若中官處分之教，其關多日徹宵，中官放恣昏睡之致，莫重祀典，不可不嚴飭，當該中官，令該府從重勘處。”

壬午六月十二日

一. 曹啓曰：“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規，而今此社稷祈雨親祭，只隔二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壚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傳曰：“允。”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조복 차림으로 하루 전날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6월 13일 사직단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12일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가 4품 이상은 조복朝服 차림으로,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사직 기우 친제 때 높고 낮은 집사관들은 의례를 연습하는 절차를 면제하고 이번 12일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대차大次에 도착한 뒤 높고 낮은 집사들과 중사中使, 근시近侍들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모두 규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6월 13일 사직단 기우 친제 때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것은 규례대로 친림하여 마련하여 거

一. 曹單子: “凡大祭親行時, 諸享官以朝服, 前一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將至祇迎事, 禮文載錄爲白有昆, 今六月十三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 諸享官十二日質明, 先詣享所, 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黑團領祇迎事, 知委何如?” 傳曰: “允.”

一. 曹單子: “社稷祈雨親祭教是時, 諸執事官, 除隸儀, 今十二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詣大次後, 大小諸執事官與中使·近侍, 以黑團領, 依例並爲私習儀, 俾無失儀事, 知委何如?”

一. 曹啓曰: “今六月十三日社稷祈雨親祭時, 省牲省器, 依例以親臨磨鍊舉行乎? 敢稟.”

행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6월 15일 종묘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
들까지 으레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
데, 이번에 종묘 친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형세
상 산재는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
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
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과 근시
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하루 동
안 향소享所에서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壚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
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
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享官들은 조복 차림으로
하루 전날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
가 도착하면 지영祗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
다. 이달 15일 종묘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14일에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가 4품 이상은 조복朝服 차
림으로,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종묘 문 안에

傳曰：“依爲之。”

一. 曹啓曰：“今六月十五日宗廟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規，而今此宗廟親祭，只隔二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廟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祗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十五日宗廟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十四日質明，先詣享所，四品以上朝服，五品

서 지영하되, 영녕전永寧殿의 향관들도 14일에 미리 흑단령 차림으로 향을 받고 나아가니 전하께서 종묘에 도착할 때 그대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6월 15일 종묘 기우 친제 때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것은 규례대로 친림하여 마련하여 거행합니까? 감히 여쭙습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예문禮文에는 삭제朔祭와 망제望祭가 만약 별제別祭와 겹치면 별제만 지낸다고 실려 있습니다. 이번 종묘 기우 친제가 망제와 겹치니 예문대로 별제만 지내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13일

전교하기를,
“한창 다시 정사를 펼치는 때가 되어 이렇게 극심한 가뭄을 만나 두 차례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내릴 듯 내리지 않고 쏟아질 기미는 더욱 아득하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참으로 나의 허물이다. 지

以下黑團領，廟門內祇迎爲白乎矣，永寧殿諸享官，則十四日既以黑團領受香進去，殿下詣宗廟時，仍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一. 曹啓曰：“今六月十五日宗廟祈雨親祭時，省牲省器，依例以親臨磨鍊舉行乎？敢稟。”
傳曰：“依爲之。”

一. 曹啓曰：“禮文內，朔望若值別祭，則只行別祭事，載錄矣，今此太廟祈雨親祭與望祭相值，依禮文，只行別祭事，知委何如?”

壬午六月十三日

一. 傳曰：“方當復政，雖此亢旱，再次祈禱，其雨其雨，需然逾邇，是誰之愆？寔予之咎，方今不雨，更待何時？焦心悵灼，亦歇後言，三次代犧，焉行

금 비가 오지 않으니 다시 언제를 기다리겠는가. 마음이 불타는 듯하다는 말로는 심정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3차에 회생을 대신하여 직접 기도하는 것을 어찌 머뭇거리겠는가. 15일에 종묘에서 기우제를 직접 지낼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영녕전永寧殿에 같은 날 대신을 보내 섭행하게 하며, 북교에도 이날 1품 종신을 보내 섭행하게 하라.” 하였다.

이번 6월 13일 사직단에 기우제를 직접 지내러 입시하였을 때, 동부승지 이언형李彦衡이 아뢰기를, “위판位版을 단상壇上에 받들어 낼 때에 신실神室에서 종이갑을 먼저 제거하는 일은 체모가 온당치 않으니, 비록 잘못을 답습하였다지만 신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사壇司를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종묘는 친압親押하고 영녕전永寧殿과 북교北郊는 대압代押하려고 하였는데, 내일 영녕전과 북교에는 직접 향향을 전달한 뒤 거동할 것이니 예조는 그만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遲廻?¹²² 十五日而親行祈雨於太廟, 其令儀曹舉行, 永寧殿同日遣大臣攝行, 北郊亦於此日, 遣一品宗臣攝行.”

一. 今六月十三日社稷親行祈雨祭入侍時, 同副承旨李彦衡所啓: “位版奉出壇上時, 先去其紙匣於神室, 事體未安, 雖曰襲謬, 不可無飭, 壇司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一. 傳曰: “太室親押, 永寧殿北郊代押, 明日永寧殿北郊親傳香後, 當爲舉動, 儀曹置之事, 分付.”

122 遲廻: 저본에는 ‘進延’.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전교하기를,

“이번 어영대장이 어영군 3초哨를 거느리고 전상前廂과 후상後廂이 되고, 표하군標下軍은 금위영의 전례와 똑같이 거행하며, 금군 1번番은 수가隨駕하고, 별기사와 훈련도감의 마군馬軍은 그만두라. 협련군挾輦軍은 도감의 쉬는 군병으로 대신하라. 유영留營과 유진留陣은 그만두고, 시위侍衛와 수궁守宮은 그대로 하며, 삼엄三嚴은 이전대로 하라. 길이 조금 머니 백관은 동구洞口까지만 말을 타고 이후에 걸으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14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7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기우제 당일과 그 다음 날에는 내게 묻고 거행하는 것이 규례인데, 이번에는 평상시의 규례를 따를 수 없으므로 당일에 모두 하교하였다. 그리고 종묘 친제는 일의 체모가 중대하다. 비가 한 자 정도도 내리지 않았지만 비가 내렸으니, 규례대로 내일 비가

一. 傳曰：“今番御將率御營軍三哨，爲前後廂¹²³，標下軍一依禁營例舉行，禁軍一番隨駕，別騎士訓局馬軍置之，挾輦軍以都監休軍替行，留營·留陳置之，侍衛·守宮仍，三嚴依前，道路稍遠，百官乘馬，至洞口而步。”

壬午六月十四日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五寸七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傳曰：“祈雨祭¹²⁴正日翌日，稟行例也，而今番不可以循常，故正日皆下教，而太廟親祭，

¹²³ 廂：저본에는 '廊'.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²⁴ 祈雨祭：저본에는 '祈雨祭日'.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오는 형편을 보고 내게 물으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17일

전교하기를,

“우사단^{雩祀壇}과 북교^{北郊}는 으레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지만 천제는 내가 처음 지낸다. 선농단으로 말하자면 기우제를 친히 지낸 전례가 없었는데, 아, 옛날에 새로운 예^禮를 만들고서야 설행하였고 왕위를 계승한 이후로도 많이 설행하였다. 종묘, 사직, 교외의 제단에 두루 제사를 지냈지만 단지 성의가 부족한 탓에 아직도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으니 어찌 그 차례를 돌아보겠는가. 옛날을 본받아 선농단에서는 설행하였으니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선농단에 있다. 아, 백성을 위해 어찌 내 한 몸을 돌보겠는가 마는 마음 속으로 걱정하는 것은 군사들 뿐이다.

오늘 이 제사를 지내도 만약 큰비가 내리지 않으면 삼복^{三伏}도 이미 지났으니 또한 어찌 지체하겠는가. 우리 군사들을 수고롭게 하는지 여부와 우리 백성을 구제하여 살리는 일이 이 한 번의 일에 달려 있으니, 설행을 명하라고 하지 말라. 제사를 지낼 때 군주가 친히 지내어 미친한 정성을 인도하여 기필코 단비가 내리게 할 것이니, 봉심하는 승지로 하여금 헌관에게 선유^{宣諭}하고 집사들을 각별히 신칙하게 하라.”

事體重焉,¹²⁵ 雖不報尺, 既雨, 依例明日觀雨勢以稟.”

壬午六月十七日

一. 傳曰: “雩祀壇·北郊, 例行祈雨, 而其於親祭, 予乃初行, 至於農壇, 祈雨無例. 嗚呼, 昔年義起乃行, 嗣服以後, 其行亦多, 廟社郊壇, 圭璧¹²⁶薦, 只緣誠淺, 尚未周治, 何顧其次? 仰體昔年, 攝事農壇, 身雖在此, 心在壇墀.¹²⁷ 吁嗟爲民, 身何顧哉, 而心¹²⁸所悶者, 其惟三軍. 今日此祭, 若不得雨霽, 三庚已過, 亦何遲待? 吾軍勞否¹²⁹, 吾民濟

¹²⁵ 重焉: 저본에는 ‘尊重’.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²⁶ 璧編: 저본에는 ‘壁編’.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²⁷ 在此心在壇墀: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¹²⁸ 身何顧哉, 而心: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¹²⁹ 吾軍勞否: 저본에는 ‘吾民軍勞否’.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비가 내리니 비록 밤이 되었지만 수표단자를 즉시
들이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촌 5분 높이
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령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 재차 기우제를 지냈
으나 나의 성의가 부족한 탓에 아직 두루 적시지 못
하였다. 비가 내릴 듯하면서 내리지 않아 하늘만 바
라보고 있다. 삼복^{三伏}이 내일이니 가을이 곧 닥칠 텐
데, 지금 큰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를 어찌 바라겠
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내 마음이 애가 탄다.
택일하지 말고 선농단에 예조 판서를 보내고 19일

活, 在此一舉, 莫云命¹³⁰攝, 其
於¹³¹行祀之際, 若其君¹³²之親
行, 能導微誠, 期得甘露事,
令奉審承旨, 宣諭獻官, 另飭
執事.”

一. 傳曰: “雨來雖入夜, 水標
單子, 卽爲入之事, 付分禮曹.”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 ‘今夜下雨, 水標看
審, 則二寸五分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一. 傳曰: “陟降恤民, 再次祈
雨, 而因¹³³予誠淺, 尙未周治,
幾雨幾雨, 惟望雲漢, 三庚在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30 命 : 저본에는 ‘多’.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31 於 : 저본에는 ‘步’.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32 君 : 저본에는 ‘過’.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33 因 : 저본에는 ‘固’.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기우제에는 향을 지영^{祗迎}하고 밤에 이 당^堂에 앉아서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겠다. 시각은 진정^{辰正} 1각^刻으로 하고, 단소^{壇所}는 미리 깨끗이 청소하라. 제관은 각별히 가리고 대축^{大祝}은 시종신으로 채워 차임하라. 이러한 때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래 죄수를 관대히 처벌하라고 의금부와 형조에 분부하라. 이는 평상시와는 다르지만 음식 가짓수는 줄이라고 명하였으니 음악 연주 또한 그만두라. 아, 임금의 귀와 눈 역할을 맡은 신하부터 아래로 사서^{士庶}까지 상언^{上言}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이와 같은데도 나라가 나라답겠는가.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는 온갖 폐단에 이르기까지 초야의 사서를 막론하고 각각 그 속내를 아뢰도록 의정부로 하여금 도성 안팎에 분부하게 하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촌 5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明, 秋節將報, 及今不需, 何望秋穫¹³⁴? 思之及此, 予心悒悒, 不卜日, 先農壇遣宗伯之臣, 十九日祈雨, 而當香祗迎, 夜坐此堂¹³⁵, 以待霈然, 時刻辰正一刻爲之, 壇所預爲治掃, 祭官另擇, 大祝以待從人填差, 此時當靡不用極, 再明日疏決之意, 分付金吾秋曹. 此與常時雖異, 減膳則有命, 亦爲撤樂. 噫, 自耳目下至士庶, 無言久矣, 若此之國爲國乎? 上自袞闕, 下至百弊, 勿論草野士庶, 各陳其蘊事, 令政府¹³⁶分付中外, 祭文當製下.”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四寸五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134 秋穫: 저본에는 ‘姑護’.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35 堂: 저본에는 ‘宮’.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36 府: 저본에는 ‘院’.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임오년¹⁷⁶² 6월 18일

전교하기를,

“아, 하늘에 계신 영령께서 백성을 돌보아 이제 비가 쏟아져 수표^{水標}가 거의 5척이나 된다. 한 달 남짓 애 태우고 걱정한 나머지 마음이 놓여 기우제를 정지하였는데 여러 도에서도 모두 그러하였는가? 경기 감사로 하여금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비가 오는 상황을 도착하는 대로 보고하게 하라. 이는 명을 받고 기우제를 지낸 사람이 정성을 다한 소치이니, 선농단^{先農壇} 헌관 예조 판서 신晦^{申晦}에게 숙마^{熟馬} 1필을, 집사들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찬자^{贊者}와 알자^{調者}에게 각각 현궁^{絃弓} 1장을 내려 주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19일

예조가 아뢰기를,

“엿그제 내리신 전교에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이미 비가 쏟아졌으니 어제부터 규례대로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壬午六月十八日

一. 傳曰：“噫，蒼蒼陟降，眷恤元元，今乃霑然，水標幾至五尺，月餘渴悶之餘，庶可心弛，仍止祈雨，諸道同然否？其令畿伯，不待齊報，雨澤隨到以聞，而此乃受命祈雨之人，其能虔誠之致，先農壇獻官禮判申晦¹³⁷，熟馬一疋，諸執事各兒馬一匹，贊謁者，各弦¹³⁸弓一張賜給。”

壬午六月十九日

一. 曹啓曰：“日昨所下傳教中，限¹³⁹得雨間減膳事，命下矣。今日下雨，既已霑然，自昨日依例復膳之意，敢啓。” 傳曰：

137 晦：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9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138 弦：저본에는 ‘絃’.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1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39 限：저본에는 ‘限’.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16일 기사 등에 근거하여 수정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19일

죄수를 관대히 처벌하기 위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
하기를,

“시원스럽게 적시지는 못하였지만 또 단비가 내렸고
여전히 비가 올 기미가 있으니 기우제는 상황을 보
아 내게 물으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20일

이조 판서와 편차인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오는 1일에 종묘 헌관에는 해춘군^{海春君} 이영^{李瑛}, 영
녕전 헌관에는 함계군^{咸溪君} 이춘^{李樞}, 사직단 헌관에
는 해운군^{海運君} 이연^{李漣}, 남교 헌관에는 우참찬 김치
인^{金致仁}, 북교 헌관에는 판서 이익보^{李益輔}, 선농단 헌
관에는 대사성 서명신^{徐命臣}을 계하하였다. 예차^{預差}
는 해당 조로 하여금 채워 차임하게 하고, 대축^{大祝}
은 모두 시종신으로 하라. 향^香을 전할 때는 지영하

“知道.”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壬午六月十九日

一. 疏決入侍時, 傳曰: “雖未快洽, 又有甘霖, 尙有雨意, 祈雨祭觀勢以稟事, 分付該曹.”

壬午六月二十日

一. 吏曹判書編次人入侍時, 傳曰: “來初一日, 宗廟獻官海春君, 永寧殿獻官咸溪君, 社壇獻官海運君, 南郊右參贊金致仁, 北郊判書李益輔, 先農壇大司成徐命臣, 啓下, 預差令該曹填差, 大祝皆以待從臣爲之, 傳香當爲祇迎, 以此分

졌다. 이런 내용으로 예조에 분부하고, 비가 내렸다고 해서 제물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정결함이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2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촌 7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6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김상희^{金祥喜}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불어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9척이 더 불어났습
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付儀曹，而勿以得雨，祭物凡事欠精，另加申飭.”

壬午六月二十一日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¹⁴⁰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六寸七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壬午六月二十三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金祥喜牒呈內：‘今番雨後，江水漲溢，常流水基¹⁴¹良中，以布帛尺尺量，則九尺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¹⁴⁰ 瑞：저본에는 없음. 문맥에 근거하여 보충

¹⁴¹ 基：저본에는 ‘墓’. 『승정원일기』인조 5년 6월 21일 등의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임오년¹⁷⁶² 6월 29일

전교하기를,

“남교·선농단·북교에 보사제를 지냈다고 말하지 말고 각별히 청결하게 하라고 신칙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벽에 하교하였는데, 아, 지금 또 이날을 만났으니 참으로 천만뜻밖이다. 경자년¹⁷²⁰, 경종즉위를 회상하면 마음이 무너지려 하는데, 오늘날 또 극심한 가뭄을 만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는가. 아, 일이 마음과 어긋나 작년에 전알했던 예를 올해는 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일의 형편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불초한 것이다. 아,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무덤에 매여 있다. 아, 이와 같은 시기에 오늘이 1차 기우제를 지내는 날이다. 비록 조금 비가 내렸지만 비가 내렸다가 바로 그쳐 비가 쏟아지려다가 쏟아지지 않으니 마음이 더욱 초조하다. 아,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여겨야 한다. 『예기禮記』에 말하지 않았던가. 사흘 동안 재계하면 생각하는 바가 모두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다.

아, 옛날에 백성을 사랑하고 돌본 선왕의 훌륭한 덕을 불초한 내가 우리러보았는데, 지금 극심한 가뭄이 들었으니 백성을 위하는 명령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 부덕한 내가 왕위에 오른 지 지

壬午六月二十九日

一. 傳曰: “南郊·先農壇·北郊, 勿謂¹⁴²以報謝祭, 各別致潔之意, 申飭.”

一. 傳曰: “曉已下教, 噫, 今又逢此日, 誠是萬萬料表, 追懷¹⁴³庚子, 心焉欲墜, 豈意今日又值亢旱? 嗚呼, 事與心違, 昨年展禮, 今年莫行, 雖因事勢, 此亦不肖. 噫, 身雖在此, 心懸象設, 噫, 若此之時, 今日即祈雨初次也, 雖得寸雨, 乍雨旋止, 欲需不需, 心尤焦灼. 嗚呼, 人子以親心爲己心, 且禮記豈不云乎? 齋¹⁴⁴三日, 所思者皆親心, 噫, 昔年愛恤元元之盛德, 不肖仰觀, 目今亢旱, 於陟降爲民之心何? 其若

142 謂: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29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143 懷: 저본에는 ‘惟’.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44 齋: 저본에는 ‘當’.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금 거의 40년이 되었다. 노년에 다시 정사를 하는데 또 이러한 가뭄을 만났으니,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 허물은 나에게 있으니 한밤중부터 아침까지 마음이 더욱 녹아내렸다.

아, 서쪽 교외를 바라볼 뿐 몸소 나아가지 못하고, 가뭄에 애태우지만 발두둑을 살피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향축香祝을 맞이하고 전송한 뒤에 돈의문에서 향도香塗를 바라보고 올 생각이었다. 서문 너머로는 고개를 넘지 않으면 농사 형편을 살펴볼 곳이 없으니, 이런 까닭에 소여小輿를 타고 남문 밖 지척에서 농사 형편을 살펴보고 와서 옛날에 백성을 위하던 선왕의 뜻에 부응해야겠다. 시위는 입직만 하고 수가隨駕는 백관을 제외한 대신과 비변사 당상만 시복時服 차림으로 수가하라. 협련군挾輦軍은 입직하는 포수砲手들을 그대로 입직한 복색으로 협련하게 하고, 전상前廂과 후상後廂은 금위영과 어영청의 외영外營에 입직한 군사들을 훈련대장이 모두 거느리되 잡색표하군雜色標下軍을 제외한 신영新營의 전배前排만 거느리고 수가하라. 금군禁軍은 입직한 금군들로 수가하고, 어가가 돌아온 뒤에 다시 입직하라. 마병馬兵, 호위군관扈衛軍官, 국별장局別將, 군기시軍器寺의 수가는 모두 그만두고, 가전 별초와 가후 별초는 성안에 있는 자만 수가하라. 소여小輿를 타고 가기로 했으니 시신侍臣의 절차는 관두라. 수가하는 관원은 한결같이 교외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규례대로 모두 말을 타라. 수궁 승지守宮承旨는 우부승지가 하고, 병문屏門의 파수

思昔，此正今日先思者。嗚呼，否德臨御，今近四紀，暮年復政，又值此旱，元元何辜¹⁴⁵？其愆在予，半夜達¹⁴⁶明，心尤銷¹⁴⁷焉。噫，只望西郊，莫能¹⁴⁸躬詣，悶¹⁴⁹旱焦心，莫省田疇，初意香祇迎後，自敦義門，望觀香塗，觀省而來，西門之外，不踰峴，則無省農之處，當以因此小輿南門外咫尺省農而來，仰副昔日爲民之聖意。侍衛只入直，隨駕，除百官，只大臣·備堂以時服隨駕，挾輦以入直砲手，因以入直服色挾輦，前後廂以¹⁵⁰禁御外營入直

145 辜：저본에는 '靠'.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46 達：저본에는 '建'.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47 銷：저본에는 '惻'.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48 能：저본에는 '然'.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49 悶：저본에는 '憫'.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50 以：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는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7월 4일

전교하기를,

“지금 강원 감사의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를 보니, 각기 여러 고을을 열거하여 여러 도와 차이가 있다. 비록 지나치게 상세하지만 이를 통해 강원도 여러 고을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 아, 비록 다시 정사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전야^{田野}에 있다. 더구나 올해처럼 비가 내리지 않은 일은 근래에 들은 적이 없어 마음이 더욱 해이해졌다. 여러 도에서 보고한 장계 중에는 지나친 경우도 있고 적절한 경우도 있어 한결같지 않으나, 장계에서 또한 수령들이 잘 다스렸는지 여부와 성실하였는지 여부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염문^{廉問}할 때 내가 확인하고 여러 고을에 신칙할 것이니 반드시 진실하게 보고하고 반드시 진실

軍, 訓將都領, 除標下軍雜色, 只率新營前排隨駕, 禁軍以入直禁軍隨駕, 回駕後復入直, 馬兵·扈衛軍官·局將·軍器寺隨駕, 皆¹⁵¹置之, 駕前後只在城內者隨駕, 既以¹⁵²小輿而行, 侍臣節次置之, 隨駕官一依郊外祈雨祭例, 皆乘馬, 守宮承旨右副爲之, 屏門把守, 勿爲舉行.”

壬午七月初四日

一. 傳曰: “今覽東伯雨澤狀聞, 各列諸邑與諸道有異, 其雖過詳, 因此若見同乎關東諸邑, 而噫, 雖非復政, 心在田野, 況今年雨澤之慳闕, 挽近未聞, 心尤弛焉. 諸道報狀中, 或過或中, 其涉不一, 而狀聞之中, 亦可見諸守令之循與否

보충

¹⁵¹ 皆: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¹⁵² 以: 저본에는 ‘已’.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게 다스리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7월 24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
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7월 26일

좌직하는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지낼 때라도 기청제를 지내는 일이 있으
니 지난 무신년¹⁷²⁸, 영조⁴에도 같은 달에 밤새 빗소리
를 듣고도 음식 가짓수를 줄인 일이 있었다. 아, 지
금은 기우제를 지낼 일이 없고 늦벼와 밭곡식은 이
미 익었으니, 만약 비가 많이 내린다면 또한 무엇을
바라겠는가. 어제 내린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아 이
마음이 안절부절한데, 저녁 이후로 비가 갠 듯하다.
백성을 위하는 일에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
가. 사문영제(四門禁祭)를 즉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誠與否，來頭廉問時，予當準
驗，申飭列邑，報必以誠，治必
以誠事，回諭。”

壬午七月二十四日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今夜下雨，水標看
審，則四尺五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壬午七月二十六日

一. 坐直承旨入侍時，傳曰：
“雖祈雨之時，亦有祈晴之事，
頃者戊申此¹⁵³月中，聞徹宵雨
聲¹⁵⁴，有減膳之事。噫，今則無
祈雨之事，晚稻及田穀已熟者，
若有浸淫¹⁵⁵，亦何望乎？昨日

153 此：저본에는 ‘比’.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7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54 聞徹宵雨聲：저본에는 ‘徹宵’. 『승
정원일기』 영조 38년 7월 26일 기
사에 근거하여 수정

155 晚稻及田穀已熟者若有浸淫：저
본에는 ‘晚稻及田穀已熟其若有浸淫’.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7월 26일 기

예조의 단자에,
 “사문영제를 해당 조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 향
 쥬를 받고 전례대로 3일 동안 지낸 뒤에 정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오년¹⁷⁶² 7월 27일

전교하기를,
 “기우제는 기청제든 백성을 위한 일이라는 점은 똑
 같다. 그러나 기청제의 경우는 규례를 따르는 것처
 럼 여겨 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공자께서 ‘체禘
 제사는 강신주를 따른 뒤로부터는 내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다. 하룻밤 제사도 그리한데 사흘간
 제사는 오죽하겠는가. 내가 염문^{廉問}할 것이니, 혹여
 정결함이 부족하면 엄히 다스려서 신에게 사죄할 것
 이다. 해당 조로 하여금 사문을 엄히 신칙하게 하라
 고 전교하라.”
 하였다.

之雨, 尙今不霽, 此心憧憧, 夕
 後便若霽雨, 爲民之事, 豈循
 常例? 四門禋祭, 其令卽爲舉
 行.”

一. 曹單子: “四門禋祭, 其令
 該曹, 卽爲舉行事, 命下矣. 不
 卜日, 來二十七日受香, 依前
 例, 三日而止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壬午七月二十七日

一. 傳曰: “祈雨祈晴, 爲民一
 也, 而至於祈晴, 視若循例,
 欠誠者多, 予¹⁵⁶曰: ‘禘既灌,
 吾不欲觀.’ 一夜猶然, 況三日
 乎? 予當有廉問, 其或有欠潔
 者, 當爲重繩, 以謝其神, 令該
 曹嚴飭四門事, 傳教.”

사에 근거하여 수정

156 子: 저본에는 ‘不’.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7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계미년¹⁷⁶³ 3월 24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 높이로 흘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수표를 어찌 이러한 때를 위해서만 설치하였겠는
 가.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수표단자^{水標單子}를 써서 들
 이라. 재계를 마친 뒤에 선전관을 보내 적간하여 만
 약 깨끗이 내놓지 않으면 해당 준천사 도청^{濬川司都廳}
 을 병조로 하여금 곤장을 치게 할 것이다. 승정원은
 도청^{都廳}을 불러와 분부하고 신칙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3월에 기청제를 지낸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
 고 아뢰라고 예조 판서에게 하교하였으니 즉시 알아
 보라.”
 하였다.

癸未三月二十四日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¹⁵⁷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尺二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水標豈但爲此時而設耶？此後則雖尋常時，水標書入，過齋後，遣宣傳官摘奸，若開滌¹⁵⁸未盡，則當該濬川都廳，當令兵曹決棍，政院招致都廳，分付申飭¹⁵⁹。”

一. 傳曰：“三月祈晴，前例有無，考奏事，下教于禮判矣，卽爲知入。”

¹⁵⁷ 瑞：저본에는 없음. 문맥에 근거하여 보충

¹⁵⁸ 滌：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¹⁵⁹ 分付申飭：저본에는 ‘申飭分付’.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계미년¹⁷⁶³ 3월 27일

유생 전강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5월 기청제는 옛날에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설행하였다. 아, 지금 바라는 것은 오직 밀과 보리 뿐이다. 금년에는 땅이 심었고 또 풍년을 기대하였는데 단비가 장마로 바뀌었으니 애타는 심정을 어찌 말하겠는가. 기우제와 기청제는 모두 백성을 위하는 것이니, 지난번 하문하였으나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지금은 5월 기청제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 하물며 보릿고개는 오죽하겠는가. 사문영제^{四門營祭}를 택일하지 말고 내일부터 설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하라. 오늘 안에 날이 개면 신을 번거롭게 할 수 없으니 다시 내게 물어 거행하라. 헌관^{獻官}은 유신^{儒臣}으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3월 28일

전교하기를,
 “아, 360개 고을의 억만 백성은 옛날에 선왕께서 사랑하고 돌보던 적자^{赤子}로서 과인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부덕하고 무능하여 이렇게 큰 흉년을 만났다. 경기와 삼남^{三南}의 백성이 아무 죄 없이 굶주리고 있으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실로 나 때문이니 밤낮으로 두려워 내 몸이 아픈 듯하다. 지금 전라 감사의 계본을 보니 굶는 백성의 총수가 많게는

癸未三月二十七日

一. 儒生殿講入侍時, 傳曰:
 “五月祈晴, 昔年既已議大臣爲之. 噫, 目今所望, 惟在牟麥, 今年則其植¹⁶⁰多, 且其有望, 時雨成霖, 焦心曷論? 祈雨祈晴, 其皆爲民, 頃者下問而尙默, 今則誠難遲待五月祈晴, 況麥¹⁶¹嶺乎? 四門營祭, 不卜日, 自明日設行, 三日而止事, 分付, 今日內若快晴, 不可瀆神, 更稟舉行, 獻官以儒臣填差.”

癸未三月二十八日

一. 傳曰: “噫, 三百六十州億萬生靈, 以昔年愛恤之赤子, 界與寡躬者, 而否德無能, 值此大歉, 畿甸·三南之民, 無辜飢餓, 是誰之愆? 寔由於予, 夙宵懷惕, 若恫在己, 今覽湖

¹⁶⁰ 植 : 저본에는 ‘損’.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⁶¹ 麥 : 저본에는 ‘牟’.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8만 3,710여 구나 된다. 이것을 보고 무슨 마음으로 밥을 먹겠는가.

아, 53개 고을에서 목숨을 잃은 백성이 많게는 453명이나 된다. 옛날 이윤(伊尹)은 자기 자리를 얻지 못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기 잘못이라고 여겼다. 더구나 임금은 어떻게겠는가. 내가 부덕하여 나에게 주신 백성을 한 도(道)에서 500명이나 죽게 하였으니, 이는 명령을 저버리는 일이고 또한 옛날 선왕의 훌륭한 덕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를 듣고 스스로 경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러러 답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맹자가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이니, 스스로 신칙하고 신칙해야 한다.

아, 무고한 수백 명의 백성이 부덕한 나 때문에 죽었으니, 또한 어찌 차마 무심히 지나치겠는가. 오늘부터 특별히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해당 도의 도신은 3개월 치의 월름(月廩)에서 3분의 1을 줄이라. 아, 이미 하교하였으므로 감히 속이고 감추지는 못하지만, 세전에 진홀을 설행하지 못하였으니, 그 전에 굶어 죽은 시체가 어찌 없겠는가. 굶주리는 백성이 기어와서 미곡(米穀)을 받아 가도 미처 먹지 못하는 자도 있고, 길이 조금 멀어 배고픔을 참고 왕래한 자도 있고, 여러 날 동안 공복 상태인 나머지 미곡이 배 속에 들어가자 속이 뒤집혀 죽는 자도 있으니, 이는 형세상 당연하다. 그런데 그 굶주림을 숨기고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죄를 피하고자 하니, 이는 누구를 속이는 것인가. 더구나 죽은 사람 수

南道臣啓本，飢民總數¹⁶²，多至四十八萬三千七百十餘口，覽此而何心玉食？噫，五十三官，元元殞命者，四百五十三之多，昔之伊尹，以一夫不獲所，爲己¹⁶³過，況爲人君者？而以予否德，畀與¹⁶⁴之赤子，一道之內，未能活半千，此負陟降也，亦孤昔年盛德矣，聞此而若無自警，何以仰答？此正鄒聖所云¹⁶⁵四境之內不治¹⁶⁶者也，宜自飭而飭下，噫，無辜幾百年之民，由我否德而斃，亦何忍惘然¹⁶⁷？自今日特

162 總數：저본에는 '想若'.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63 己：저본에는 '亡'.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64 與：저본에는 '予'.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65 此正鄒聖所云：저본에는 '此正若鄒聖心云'.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66 治：저본에는 '曰'.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67 惘然：저본에는 '悲然'.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십 명 중에 또한 굶어 죽은 자가 어찌 한 사람도 없겠는가. 또한 티무니없다. 그중에 나주羅州 등 네 고을의 수령은 추수 때까지 월름의 3분의 2를 줄이고, 전주全州 등 다섯 고을의 수령은 4개월 동안 월름을 반으로 줄이고, 능주綾州 등 24개 고을의 수령은 진홀을 마칠 때까지 월름의 3분의 1을 줄이라. 옥과玉果와 강진康津은 모두 한 명씩이나, 또한 우연히 생기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번에는 참작하고 진홀이 끝나면 그 근태를 살펴서 장계로 아뢰라.

아, 이를 보고 저녁 수라를 물리려 하였으나 그것은 너무 지나치므로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만 줄이게 하였다. 수령된 자들 중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굶주리는 자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면서 사실대로 아뢰지 않다가 염문할 때 드러날 경우, 해당 수령은 종신토록 금고禁錮하여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 이번의 이 일은 한편으로 영령에게 사죄하고 한편으로는 굶어 죽은 넋을 위로하는 것이다. 아, 비록 성의는 알으나 수령된 자로서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에 만약 소홀히 한다면 이 어찌 우리나라의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하교를 비변사로 하여금 경기와 삼남에 모두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爲減膳三日，該道道臣三朔月廩¹⁶⁸中，減三分之一。噫，既有下教，故雖不敢¹⁶⁹欺隱，未能歲前設賑，其前餓殍，其¹⁷⁰豈無也？或飢餒之民，匍匐受米穀，未及入腸者，或道¹⁷¹路稍遠，忍飢往來者，或累日空腹之餘，穀入腸胃反¹⁷²腸致斃者，其勢固然，而隱其饑餒，巧作名目，欲免罪過，是誰欺哉？況幾十名物故，亦豈無一人餓斃者？亦涉無據。其中羅州等四邑守令，限秋成，減其月廩¹⁷³三分之二，全州等五¹⁷⁴

168 廩：저본에는 ‘廩’.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69 敢：저본에는 ‘能’.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70 其：저본에는 ‘者’.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71 道：저본에는 ‘邑’.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72 胃反：저본에는 ‘胃反’.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73 廩：저본에는 ‘廩’.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74 五：저본에는 ‘六’. 『승정원일기』

邑守令, 限四朔, 月廩¹⁷⁵半減,
 綾州等二十四邑守令, 限畢賑,
 減月廩¹⁷⁶三分之一, 玉果·康
 津, 皆¹⁷⁷一名, 亦不無邂逅之
 弊¹⁷⁸, 今番參酌, 待畢賑, 觀其
 勤慢¹⁷⁹狀聞. 噫, 覽此欲却夕
 膳, 而此則¹⁸⁰過矣, 故只減三
 日之膳, 爲守令者, 聞此以恐,
 若以有爲無人¹⁸¹, 其¹⁸²不以聞,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75 廩 : 저본에는 '癯'.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76 廩 : 저본에는 '癯'.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77 皆 : 저본에는 '聞'.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78 弊 : 저본에는 '斃'.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79 慢 : 저본에는 '勝'.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80 則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
 하여 보충

181 若以有爲無人 : 저본에는 '若有爲
 無'.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182 其 : 저본에는 '而'.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3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見於廉問，當該守令，當禁錮終身，決不饒貸。嗚呼，今者此舉，一以謝陟降，一以慰飢魂。噫，雖誠淺爲守令者，於宿於食，其若放忽，是豈曰青丘臣子？將此下教，令備局，畿甸・三南，一體分付。”

계미년¹⁷⁶³ 5월 6일

전교하기를,

“아, 군주가 백성을 보고 농사를 중시하는 마음이 팔도에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삼남^{三南}의 밀과 보리가 이미 익었기에 마음이 조금 놓였는데, 지금 평안 감사의 장계를 보니 가뭄이 이와 같다. 비록 삼남은 안심하였으나 또 평안도에 마음이 쓰이니 이 또한 임금 노릇하기 어려운 점이다. 지금 같은 때에 어찌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되겠는가. 그중 특히 심한 곳에 정성껏 기우제를 지내라고 즉시 관찰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5월 11일

● 수표단자를 재촉하다.

전교하기를,

癸未五月初六日

一. 傳曰：“噫，人君視民重農，八道奚異？三南牟麥，既已登熟，心少紓矣，今覽關西道臣狀聞，旱乾若此。雖解心於三南，又用心於關西，此亦爲君難矣，此時豈拘常例？其中特甚處，虔誠祈雨事，卽爲分付道臣。”

癸未五月十一日

● 水標催促

一. 傳曰：“下諭後，靜俟霈然，

“하유한 뒤에 비가 내리기를 조용히 기다렸는데, 지금은 먹구름이 끼서 비가 내리니 장차 쏟아질 가망이 있어 우리 백성이 소생할 것이다. 수표를 즉시 보고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6월 1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3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6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인찬기^{印讚起}의 첩정에,
‘이번에 큰비가 내려 장맛물이 불어나 제천정^{濟川亭}의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20척이 더 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今則同雲雨下，將有霑然之望，
吾民庶幾，水標隨即以報事，
分付該曹.”

癸未六月初十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七尺三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癸未六月十一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印讚起牒呈內：‘今番大雨，潦水漲溢，濟川亭常流水基¹⁸³良中，以布帛尺尺量，則二十尺加漲’是如爲白臥乎事.”

¹⁸³ 基：저본에는 ‘臺’. 『승정원일기』 인조 5년 6월 21일 등의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계미년¹⁷⁶³ 6월 12일

주강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단비가 여러 날이 지나도 그치지 않아 장마가 될
 듯하니, 한 번 비가 내리고 한 번 별이 나는 데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해이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이미
 거행였고 전례가 있으니, 오늘 내일 날이 개지 않으
 면 예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사문영제를 설행하게
 하라.”
 하였다.

석강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방금 하교하였는데 날이 저문 뒤 비 내리는 형세가
 여전히 이와 같으니, 만약 지체한다면 때를 놓칠 듯
 하다. 제문을 지어 내릴 테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14일에 거행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 제관은
 시종신을 각별히 가려 뽑고 집사들도 가려서 차임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6월 14일

전교하기를,
 “어제 날이 개어 계속 쾌청하기를 바랐는데 오늘 다
 시 비가 내리니 이 또한 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마음은 부끄럽지만 또한 어찌 신척하지 않겠는
 가. 사문영제에 올리는 제물이 혹시 불결한지, 하속

癸未六月十二日

一. 晝講入侍時, 傳曰: “時雨
 彌日不止, 恐或歸淫, 一雨一
 暘, 何敢少弛? 頃者已行, 且
 有前例, 今明日是若不霽, 令
 儀曹稟行祭.”

一. 夕講入侍時, 傳曰: “才已
 下教, 晚後雨勢猶若¹⁸⁴此, 其
 若遲待, 恐或過也, 祭文製下,
 祭祭不卜日, 十四日舉行, 三日
 而止, 祭官以侍從臣另擇, 諸
 執事更爲擇差事, 分付.”

癸未六月十四日

一. 傳曰: “昨日開霽, 其望仍
 晴, 今日復雨, 此亦由於誠淺,
 心雖自惡, 亦豈無飭? 四門祭
 祭所祭物, 亦或不潔, 下屬亦

184 若 : 저본에는 ‘莫’.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下屬들이 태만한지, 헌관으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게 하라. 헌관과 집사도 몸소 유념하여 정결을 다하고 정성껏 지내라고 각문各門의 제사 지내는 곳에 분부 하라.”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6월 15일

전교하기를,
“내일 위판^{位板}을 도로 봉안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봉안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6월 16일

전교하기를,
“아, 덕 없는 내가 즉위하여 다스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온갖 괴이한 일이 거듭 발생하였다. 근래 가뭄 때문에 밤낮으로 애태웠는데 영령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아, 우리 백성이 장차 소생하게 되었다. 단비가 시원스레 쏟아지니 이 마음도 조금 풀린다. 아, 하늘에 계신 영령께서 이처럼 돌보시는데 아, 부덕하고 무능한 내가 정성이 부족하여 영제를 마쳤는데도 장마가 그치지 않는다. 아, 지난날 단비는 영령께서 내려 주셨는데, 오늘날 장마가 된 것은 내가 불초한 탓이다. 아,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불초한 나

或怠慢，令獻官嚴飭，獻官·執事亦爲身自着¹⁸⁵意，致潔虔誠以行事，分付各門祭所.”

癸未六月十五日

一. 傳曰：“明日位板還安時，敬情奉安事分付.”

癸未六月十六日

一. 傳曰：“噫，否德臨御，治不僊志¹⁸⁶，百怪層生，因近日之旱，夙宵焦心，蒙陟降之攸賜，嗟吾民之庶幾，霈然甘霖，此心小紓。嗚呼，陟降若是眷顧，而吁嗟否德，無能誠淺，祭既畢，霖雨不止。噫，頃日

¹⁸⁵ 着：저본에는 ‘差’.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⁸⁶ 僊志：저본에는 ‘緩者’.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6월 1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속죄하겠는가. 아, 지금 바라는 바는 오직 추수 뿐인데, 이 비가 그치지 않으니 추수를 어찌 바라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애가 타고 근심스럽다[焦悶]’는 두 글자로 심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겠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여 영령과 하늘에 사죄하겠으니, 대전에만 거행하라.”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6월 18일

예조가 아뢰기를,
“그저께 전교에서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3일의 기한이 오늘로 다 되었으니 내일부터는 다시 예전대로 봉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비가 내릴 기미가 있다. 이는 나의 잘못이므로 지금 송구한 마음 간절하다. 다시 3일 뒤에 거행하겠다.”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6월 21일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본조의 초기에 대한 비답에, 다시 3일이 지

甘露, 陟降攸賜, 今日成霖, 不肖攸致. 嗚呼, 眷顧之恩, 因不肖而若此, 何以贖愆? 噫, 目今所望, 惟在有秋, 此雨不止, 秋歲何望? 思之及此, 焦悶二字, 亦歇後語耳. 自今日減膳三日, 仰謝陟降暨倉倉, 而只大殿舉行.”

癸未六月十八日

一. 曹啓曰: “再昨日傳教中, 減膳三日事, 命下矣. 三日之限, 盡於今日, 自明日復舊封進之意, 分付何如?” 傳曰: “祇緣誠淺, 復有雨意, 寔予之過, 方切自悚, 更過三日後舉行.”

癸未六月二十一日

一. 曹啓曰: “頃日本曹草記批答, 有更過三日後舉行之教矣.

난 뒤에 거행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3일의 기한이 오늘로 다 되었으니 내일부터 다시 예전대로 봉진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6월 25일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오늘은 향소를 받는 날인데 재계를 못하였으니, 오늘 목욕 재계 후 내일 향을 받겠다.”

하였다.【사문영제를 지내는 예사관^{禮祀官}이 먼저 제물을 받았고 위판도 배진하였으므로, 문 근처에 그대로 두었다.】

전교하기를,

“오늘 충청도와 강원도의 장계를 보니, 아, 올해 비와 햇볕은 처음에는 비가 오기를 바라면 비가 내리고 날이 개기를 바라면 날이 개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령 덕분이었다. 삼남에 큰 기근이 든 뒤에는 백성을 돌보아 추수를 할 가망이 있었는데, 부덕한 나 때문에 지난번 가뭄이 들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농사를 망친 곳이 많았고, 단비가 쏟아진 뒤에는 도리어 장마가 되었다. 여러 곳의 보고를 보니 눈앞의 상황이 걱정이다. 충청도와 강원도는 장마가 졌다고 할 만하다. 아, 삼남은 보리 수확 전이라서 백성이 몇 달 동안

三日¹⁸⁷之限, 盡於今日, 自明¹⁸⁸日復舊封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

癸未六月二十五日

一. 以承傳色口傳下敎曰: “今日受香日, 不成齋戒, 今日齋沐後, 明日受香.” 【四門禮祀官, 先爲受祭物, 而位版亦陪進, 故仍留門上】

一. 傳曰: “今觀湖西·關東狀聞, 噫, 今年雨暘, 初則幾乎曰雨而雨, 曰暘而暘, 此無他, 蒼天陟降. 三南大饑之餘, 眷顧元元, 庶望有秋, 因予否德, 頃者之旱, 雖非極無, 已愆¹⁸⁹農者多, 甘霖之餘, 反爲成霖, 諸處之報, 目下之見, 已涉悶

¹⁸⁷ 日 : 저본에는 ‘三’.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6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⁸⁸ 明 : 저본에는 ‘昨’.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6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⁸⁹ 愆 : 저본에는 ‘愆’.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6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애타우고 있는데, 가을 농사도 이와 같으면 아, 나의 백성은 어찌한단 말인가. 전라도에서 가뭄을 보고 하니 더욱 애가 탄다. 얼마 전 장계를 보니 비가 내린 줄 알았는데, 충청도에도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진다면 농사는 어찌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먹고 자는 사이에도 어찌 마음을 놓겠는가. 아, 임금은 팔도를 똑같이 보아야 한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이루어진다고 『중용』에서 말하였다. 지금 충청도와 강원도는 어찌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겠는가.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에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7월 16일

전교하기를,

“온 마음이 백성과 나라에만 있는데, 벌써 처서가 왔다. 처음에는 비와 햇볕이 적절하였기에 작년의 뒤를 이어 풍년이 들기를 깊이 축원하였는데 근래 여러 도의 장계를 보니 내가 어찌 마음을 놓겠는가. 직접 농사를 살피고 싶으니 오늘 석우^{石隅}의 관경대^{觀耕臺}에 가겠다. 지난번의 전례대로 직접 살핀 뒤 오정^{午正} 3각^刻에 단엄^{單嚴}하여 돈의문^{敦義門}에서 가교^{駕轎}로 왕래할 것이다. 전상군^{前廂軍}과 후상군^{後廂軍}, 마군^{馬軍}은 외영^{外營}에 입직한 군사로 거행하고, 협련^{挾練} 금군^{禁軍}은 내영^{內營}에 입직한 군사로 거행하며, 어가^{御駕}

焉. 湖西·關東, 可謂極備¹⁹⁰, 噫, 三南則麥¹⁹¹前, 元元幾月 焦心, 秋農復若此, 吁嗟吾民 何? 湖南報旱, 尤切薰心. 頃 覽狀聞, 庶知得雨, 而或若湖 西, 於旱於雨, 其農若何, 思之 及此, 宿食奚弛? 噫, 人君視 八道當若一, 凡事豫則立, 傳 已¹⁹²云, 今湖西·關東, 豈曰 豫哉? 四門禋祭, 不卜日, 來 二十六日舉行事, 分付, 祭文 當製下矣.”

癸未七月十六日

一. 傳曰: “一心惟在民國, 處暑已報, 初則雨暘適¹⁹³中, 昨年之餘, 深祝有年, 近觀諸道

190 備: 저본에는 ‘傷’.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6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91 前: 저본에는 ‘形’.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6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92 傳已: 저본에는 ‘詩’.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6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93 適: 저본에는 ‘過’.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7월 1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가 돌아온 뒤에 다시 입직하라. 시위는 입직으로 거행하고, 운검雲劍과 보검寶劍은 전일에 낙점을 받은 자로 거행하라. 병조, 도총부, 승지, 사관은 궁을 지키되 지난번 전례를 그대로 따르라. 수가隨駕는 비변사 당상만 하되 모두 시복時服을 착용하라. 동궁의 지영은 그만두라.”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7월 22일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어제 평안 감사의 장계를 보니, 가뭄이 특히 심하여 기우제를 칠수할 때 기우제를 설행하였다고 한다. 아, 임금은 팔도의 백성을 똑같이 보거늘, 뒤늦은 비에 간혹 물에 잠긴 곳이 있으나 평안도에서는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아, 어제 내린 비가 비록 미미하였지만 평안도에도 내렸는가. 노년의 온 마음은 백성에게 있으니, 이 장계를 본 뒤에 먹고 자는 사이에도 어찌 마음을 놓겠는가. 장계가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비가 내린 곳이 있으면 즉시 장계로 아뢰라고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狀聞, 予心奚弛? 親欲省乎稼穡, 今日當詣石隅, 依頃日例, 親省以來, 時刻午正三刻以單嚴, 當自敦義門, 以駕轎往來, 前後廂軍·馬軍¹⁹⁴, 以外營入直軍舉行, 挾輦禁軍, 以內營入直軍舉行, 回駕後復入直, 侍衛入直舉行, 雲寶劍前日受點者¹⁹⁵舉行, 騎曹·摠府·承旨·史官守宮, 仍依頃日例, 只備堂隨駕, 皆着時服, 東宮祇迎置之.”

癸未七月二十二日

一. 次對入侍時, 傳曰: “昨覽關西道臣狀聞, 其旱特甚, 撤祈雨祭之時, 設祈雨祭之云. 噫, 人君視民, 八道一也, 晚雨或有水¹⁹⁶沈處, 而至於關西,

¹⁹⁴ 廂軍馬軍: 저본에는 '廊軍'.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7월 1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⁹⁵ 點者: 저본에는 '默人'.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7월 1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⁹⁶ 水: 저본에는 '畝'.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7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3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7월 28일

전교하기를,
“가을비가 이와 같으니 농사가 걱정이다. 더구나 처
서 이후 사문영제를 지낸 옛날의 전례가 있으니, 오
늘 날이 개지 않으면 내일 아침 향^香을 받아 거행하
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소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若是亢旱. 噫, 昨日之雨, 其雖
微也, 西道抑或得也否, 暮年
一心, 惟在元元, 覽此狀之後,
食息奚弛? 不待齊到, 若有
得雨處, 隨即狀聞事, 下諭道
臣.”

癸未七月二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 ‘今夜下雨, 水標看
審, 則四尺三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癸未七月二十八日

一. 傳曰: “秋雨若此, 民事可
悶, 況處暑後祭, 自有¹⁹⁷古
例, 今日若不快晴, 明朝受香
舉行事, 分付.”

一. 召對入侍時, 傳曰: “日已

¹⁹⁷ 有: 저본에는 ‘今日’. 『승정원일
기』 영조 39년 7월 28일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날이 개었으니 기청제는 하교를 기다려 거행하고, 축문은 향실에 봉안하며 위패는 배진하지 말라고 봉상시에 분부하라.”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8월 2일

전교하기를,
“기청제를 지내려고 하면 비가 그치고, 정지하라 명하면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는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4일에 거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고, 헌관과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으라고 또한 신칙하라.”
하였다.

계미년¹⁷⁶³ 8월 4일

소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비가 그쳤다고 마음을 놓지 말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라고 영제 지내는 곳에 신칙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5월 8일

전교하기를,
“올해 초에는 비와 햇볕이 적절하였는데 요즘 가뭄의 징조가 생긴 지 거의 한 달이 되었다. 들판을 돌

快晴, 祈晴待下教舉行, 祝文奉安于香室, 位牌爲勿陪進事, 分付奉常寺.”

癸未八月初二日

一. 傳曰: “欲爲祈晴而雨霽, 命止雨猶不止, 四門祭祭, 不卜日, 以初四日舉行事, 分付儀曹, 獻官·諸執事另擇事, 亦爲申飭.”

癸未八月初四日

一. 召對入侍時, 傳曰: “勿以雨晴而解心, 虔誠行祭事, 申飭祭所.”

甲申五月初八日

一. 傳曰: “今年初, 則雨暘適¹⁹⁸中, 近有旱徵, 幾乎一朔, 顧¹⁹⁹瞻田野, 予心何弛? 因予

¹⁹⁸ 適: 저본에는 ‘過’.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¹⁹⁹ 顧: 저본에는 ‘欲’. 『승정원일기』

아보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놓겠는가. 내가 노쇠하기 때문에 친히 기도를 드릴지 여쭙기가 두려워 매번 때를 놓치니, 오늘 친림하여 본 것은 의도가 있다. 지금의 가뭄은 실로 내가 부덕하고 정성이 얇기 때문이니, 기우제를 지내기를 기다리겠는가. 즉시 그곳에 가서 날이 저물 때까지 하늘에 사죄하였다. 백성의 마음을 막기 어려워 수레를 돌렸지만 마음은 그곳에 있다. 1차 기우제는 삼각산三角山·한강漢江·목멱산木覓山에 규례대로 택일하지 말고 10일에 거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5월 9일

적간한 승지가 전교를 듣고 분부한 내용에, 제사 지낼 곳에 기름 먹인 차일을 설치하라고 분부하였으므로 해당 사司에서 감결甘結을 올렸다.

갑신년¹⁷⁶⁴ 5월 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衰耗，恐乎親禱祈雨之稟，每致愆期，今日親臨觀，意蓋在也。于今之旱，實由否德誠淺，何待其祈？即其地，限日暮，謝蒼穹，衆民之心難遏，其雖回²⁰⁰駕，心則在於其處，初次祈雨，三角·漢江·木覓，依例不卜日，初十日舉行事，分付儀曹。”

甲申五月初九日

一. 摘奸承旨聽傳教分付內，祭所設油遮事，分付，故捧甘該司。

甲申五月初八日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尺二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영조 40년 5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00 회 : 저본에는 ‘同’.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신년¹⁷⁶⁴ 5월 11일

예조가 아뢰기를,

“1차 기우제 이후 단비가 두 차례 내렸습니다.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위로는 구중궁궐의 근심을 풀 어주고 아래로는 농민들의 바람을 위로하였으니, 백 성의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전에도 기우제를 지낸 이튿날에는 2차 기우제를 지낼지 으 레 여쭙었으나, 이미 비가 내린데다 또 비가 내릴 조 짐이 있으니 우선 앞으로의 상황을 보아 다시 여쭙 뒤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 이번 비는 참으로 뜻밖에 내렸으니, 이것이 누 구의 은혜이겠는가. 어제가 무슨 날인가. 실로 우리 선왕의 명령이 백성을 돌본 것이다. 아, 이처럼 돌보 아 주는데도 내가 부덕하고 불초하여 비가 순조롭 고 바람이 순조로운 징험도 없고, 시절이 화평하고 풍년이 드는 효과도 없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쨌 부끄럽기만 하겠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비 록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수표가 1척이 넘었는 데 여전히 비가 내릴 조짐이 있다. 신은 정성으로 섬 겨야 하니 어찌 감히 번거롭게 하겠는가. 다시 형편 을 보아 거행하라.”

하였다.

甲申五月十一日

一. 曹啓曰：“初次祈雨祭後，
兩次甘雨，雖不周洽，上寬九
重之憂，下慰三農之望，言念
民事，誠爲萬幸。在前祈雨翌
日，例稟再次祈雨，而既已得
雨，且有雨意，姑觀來頭，更
爲稟啓後舉行，何如？”傳曰：
“噫，今者之雨，誠是望外，是
誰之賜？昨日何日？寔吾皇陟
降眷顧元元者。於戲，眷顧若
此，而否德不肖，無雨順風調
之驗²⁰¹，亦無時和歲豐之效，
靜以思之，奚獨愧惡？若負大
何。雖未周洽，水標過尺，猶
有雨意，事神以誠，豈敢瀆屑？
更爲觀勢舉行。”

201 驗：저본에는 '驗'.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신년¹⁷⁶⁴ 5월 13일

전교하기를,

“두루 적시지는 못했으나 비가 1척이나 내렸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곧장 기우제를 지내면 신을 섬기면서 번거롭게 하는 일이므로 형편을 보아 하라고 명하였다. 어제 명하였지만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무슨 까닭인가. 또한 내가 부덕한 탓이다. 지난번 내린 비는 밀과 보리 농사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김매기는 아직 어려우니, 하루이틀 형편을 살펴보다가 혹여 때를 놓치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용산강과 저자도에 2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모레 규례대로 설행하고, 헌관과 집사들을 각 별히 뽑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5월 13일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단^{風雲雷雨山川壇}에 대신大臣을 보내고 우사단^{雩祀壇} 등지에 중신^{重臣}을 보내되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甲申五月十三日

一. 傳曰：“雖未周洽，而既聞報尺，輒行祈雨，事神瀆屑²⁰²，故其命觀勢，昨日雖命，尙未一霈，是誠何故？亦由否德。頃者之雨，雖效牟麥，鋤役尙難，一日二日，過爲觀勢，若或愆期，雖悔曷追？龍山江·楮子島再次祈雨祭，不卜日，再明日依例設行，獻官·諸執事另擇事，分付。”

甲申五月十三日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遣大臣，雩祀等處遣重臣，不卜日，來十八日設行事，分付何如？”

²⁰² 屑 : 저본에는 '誠'.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1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신년¹⁷⁶⁴ 5월 16일

전교하기를,

“아, 오늘 하교는 40년 고심과 어린 자식을 위한 깊은 계책이 담겨 있다. 하교를 한 번 내리자 괴이한 일이 거듭 생기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실로 나의 허물이다. 그저 지나치게 융숭한 호칭만 받아 백발의 나이에 황극^{皇極}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실추시켰으니 무슨 낮으로 지하에 돌아가 뵈겠는가. 정성이 신하들조차 감동시키지 못하였는데 어찌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겠는가. 처음에는 내일 대신에게 먼저 명하고 4차 기우제를 친히 지내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아서야 비가 내릴 수 있겠는가. 아, 오늘날 믿을 것은 오직 백성이니, 내일 몸소 남교^{南郊}에 가서 희생을 대신하여 친히 기도할 것이다. 예조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예조의 단자에 대해 하교하려고 했는데, 중관^{中官}이 잘못 내렸으니 중관은 월봉^{越捧} 3등에 처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남교에는 대신을 보내고 우사단에는 증신을 보내라. 제문은 주장 때 지어 내리겠다. 내일 향소를 지영^{祫迎}하겠으니 이렇게 거행하라.”

하였다.

甲申五月十六日

一. 傳曰：“噫，今者下教，收四十年苦心，爲冲子深計，其教一下，怪舉²⁰³踏至，是誰之愆？寔予之過，徒受過隆之號，白首乃墜建極之心，何顏歸拜？誠不孚於羣下，尤何望其上格？初意明日先命大臣，更觀四次，欲爲親行，若是而復能得雨？噫，今日所恃，其惟元元，明日當躬詣南郊²⁰⁴，代犧親禱，其令儀曹，卽爲舉行。”

一. 以承宣色口傳下教曰：“禮曹單子欲爲下教，中官誤下，中官越捧三等.” 又下教曰：“南郊遣大臣，雩祀壇遣重臣，祭文晝講製下，明日²⁰⁵香祇迎，以此舉行.”

²⁰³ 舉：저본에는 ‘輿’.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1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²⁰⁴ 郊：저본에는 ‘壇’.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1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²⁰⁵ 明日：저본에는 ‘當’.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1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신년¹⁷⁶⁴ 5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享官}들은 향소에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祗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남단 친제 때 향관들은 먼저 향소에 나가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남단 기우 친제 때 높고 낮은 집사관^{執事官}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향소로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단^壇에 도착한 뒤 높고 낮은 집사 및 중사^{中使}와 근시^{近侍}는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규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재^{散齋}하고 치제^{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남단에 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형편상 산재는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산재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

甲申五月十七日

一. 曹單子: “凡大祭親行時, 諸享官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將至祗迎事, 禮文載錄爲白有昆, 今此南壇親祭教是時, 諸享官先詣享所, 以黑團領祗迎事, 知委何如?” 啓依允.

一. 曹單子: “今此南壇祈雨親祭教是時, 大小諸執事官, 除隸儀,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詣壇所後, 大小諸執事與中使²⁰⁶·近侍, 以黑團領, 依例並爲私習, 俾無失儀事, 知委何如?” 啓依允.

一. 曹啓曰: “祈雨親祭時, 自上逮至諸享官, 例有散致齋之規, 而今此南壇親祭, 只隔一宵, 散齋則勢不及舉行, 自今日, 殿下散齋不吊喪問疾, 有司不啓刑殺文書, 惟啓享事,

206 使: 저본에는 '史'.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는 향관들과 근시 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향소^{享所}에서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壘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 역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전교하기를,
“3차 기우제는 정성이 알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였다. 어제 비가 내릴 기미가 더욱 아득하였는데 오늘은 중순^{仲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니 비가 더욱 절실하다. 모레 희생을 대신하여 사직^{社稷}에 친히 기도하겠다.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도성 안의 수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였는데 지금까지 지체하였으니 해당 당상을 추고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남단^{南壇}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한데 남북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차하게 단직^{壇直}에 차임하였으니, 해당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다시 가려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致齋享所，陪祭百官諸衛之守衛壘門者，亦爲淸齋事，知委何如？” 啓依允。

一. 傳曰：“三次祈雨，微誠未格，昨日雨意愈邈，今則仲旬隔日，興雨益切。再明日當代犧親，禱於社稷，祭文當製下，分付儀曹。”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欲知城內水標多少，尙今進延，該堂推考。”

一. 傳曰：“南壇事體至重，而以莫卞南北之人，苟差壇直，當該堂上從重推考，以有根着人，其令更爲擇定。”

갑신년¹⁷⁶⁴ 5월 20일

- 기우제 제관이 의례를 연습하지 않아 예조 판서를 파직하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기우제의 의식 연습을 하지 않았으므로 날이 저물 때 승지와 협시挾侍는 올라와 의식을 연습하라. 지난 번 남단南壇과 오늘 모두 하지 않았으니 해당 예조 판서를 파직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예조 판서를 파직하고 그 후임에 판윤 이익보李益輔를 제수하여 패초하라.”

하였다.【사직단 기우제를 친행할 때이다.】

갑신년¹⁷⁶⁴ 5월 21일

육상궁毓祥宮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남교南郊와 사직단社稷壇에서 연달아 친히 기도하였는데, 정성이 얕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았다. 아, 지금 벌써 중순이 지났으니 처음 계획을 생각해 보면 때를 놓쳤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니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뢰고 왔으니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살피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24일에 회생을 대신하여 북교에서 친히 기도하겠다. 아, 근년에 종묘사직에 연이어 지냈기에 이번에도 우리 열성조列聖朝를 슬프게 할 수 없어 북교에서 친히 기도하고 싶었지만 세

甲申五月二十日

- 祈雨祭祭官, 不爲習儀, 禮判罷職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 “祈雨祭無肄儀, 故日晡時, 承旨及挾侍, 陞而習儀, 頃日南壇, 今日俱不爲, 當該禮判罷職.”
又下教曰: “禮判罷職, 代判尹李益輔除授牌招.” 【社稷祈雨親行時.】

甲申五月二十一日

一. 毓祥宮入侍時, 傳曰: “南郊·社稷, 連爲親禱, 而微誠未格, 尙靳一霽. 噫, 今則中旬已過, 以初料計之, 則可謂愆期, 可謂愆期, 及今²⁰⁷不雨, 於民何言? 既奏而來, 觀²⁰⁸今日至明朝, 若不雨, 當二十四日,

207 수 : 저본에는 ‘쑤’.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08 觀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차레나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였다. 내게도 생각하
는 점이 있으니 예조로 하여금 미리 잘 알도록 하라.
내일은 규례대로 거행하고 23일에는 먼저 건원릉(健元
陵)에 향(香)을 지영(祇迎)한 뒤에 복교로 갈 것이니 이렇게
분부하여 행하라. 보군(步軍) 6초, 마군(馬軍) 1초, 금군 2
번은 이번에 수가하지 않은 자로 거행하고, 어영청은
후상(後廂), 금위영은 유진(留陣)하고, 시위(侍衛)와 수궁(守宮)
은 그대로 하고, 세손은 지영하고 각 군문의 유영(留營)
은 그만두고 백관은 규례대로 말을 타라.”
하였다.

代犧於親禱北郊。噫，頃年宗
社²⁰⁹連行，今番不能感²¹⁰我列
朝，其欲祈禱於北郊²¹¹，三次
未格，予亦有料者，其令儀曹，
預爲知悉，明日則依例舉行，
二十三日，當先爲健元陵香祇
迎後，詣北郊，以此分付，其
果行也，步軍六²¹²哨，馬軍一
哨，禁軍二²¹³番，以今番不爲
隨駕者舉行，禦營廳爲後廂，
禁營留陳，侍衛·守宮仍，世
孫祇迎，各軍門留營置之，百
官依例乘馬。”

209 社：저본에는 '廟'.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10 感：저본에는 '憾'.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11 北郊：저본에는 '郊壇'. 『승정원일
기』 영조 4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212 六：저본에는 '三'.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13 二：저본에는 '一'.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신년¹⁷⁶⁴ 5월 22일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내리신 전교에,
 ‘남교와 사직단에서 연달아 친히 기도하였는데, 정성이
 알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아직까지 비가
 쏟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니 백
 성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
 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24일에 친히 기도하겠다.’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비가 내릴 기미가 줄곧 아
 득하니 성상의 하교대로 북교의 기우 친제를 24일에
 거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북교 기우 친제 때 단상을 수리하는 등의 일
 은 규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의 낭청을
 보내어 함께 검사하게 하고, 또한 선공감 별감으로
 하여금 감역관을 따로 정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
 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에 북
 교 친제를 지내는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산재
 는 거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

甲申五月二十二日

一. 曹啓曰：“昨日所下傳教中，
 南郊·社稷，連爲親禱，而微
 誠未格，尙靳一需，及今不雨，
 於民何言？今日明朝，若不雨，
 當二十四日，親禱事，命下矣。
 雨意一向漠然，依聖教，北郊
 祈雨親祭，以二十四日舉行之
 意，敢啓。”傳曰：“知道。”

一. 曹啓曰：“今此北郊祈雨親
 祭時，壇上修理等事，依例遣
 戶曹工曹郎廳及本曹郎廳，眼
 同看檢，而亦令繕工監別定監
 役官，急速舉行何如？”傳曰：
 “允。”

一. 曹啓曰：“祈雨親祭時，自
 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之
 規，而今此北郊親祭，只隔二
 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
 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

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 되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과 근시 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壚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북교가 비록 중사中祀이기는 하지만 예문禮文에 악장이 없으니 이전부터 기우 친제 때 음악을 사용하는 일은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享官들은 하루 전날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祗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달 24일 북교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23일에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가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희한다고 계하하였다.

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官及近待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壚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傳曰：“允。”

一. 曹啓曰：“北郊雖是中祀，禮文既無樂章²¹⁴，自前祈雨親祭時，用樂一款，勿爲舉行矣，今亦依此舉行之意，敢啓。”傳曰：“知道。”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祗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二十四日北郊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二十三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祗迎事，知委何如？”啓依允。

214 禮文既無樂章：지본에는 '祭文既無樂宰'.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예조의 단자에,

“이번 북교 기우 친제 때 높고 낮은 집사관執事官들은 의례를 미리 연습하는 절차를 면제하고 이번 23일에 동틀 무렵 향소로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단壇에 도착한 뒤 높고 낮은 집사執事 및 중사中使와 근시近侍는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규례대로 함께 사사로 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휴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5월 22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관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집의 유선양柳善養이 소회를 아뢰기를,

“오늘은 재계齋戒하므로 전계傳啓할 수 없어 소회를 우러러 아뢰니다. 엇그제 사직단 친제를 위한 의례 연습을 애당초 거론하지 않다가 날이 저물어 성상의 하교가 있는 뒤에야 비로소 거행하였습니다. 제향 때 해야 할 일은 일을 잘 아는 수복守僕이 규례에 의거하여 즉시 거행하는 것이 본디 규례입니다. 그날 해당 수복을 유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일을 잘 아는 수복뿐만 아니라 이 일은 옛 규례에 익숙해야 한다. 가령 예조에서는 의식 연습이 없을지라도 근시近侍·중사中使·헌관獻官·집

一. 曹單子: “今此北郊祈雨親祭教是時, 諸執事官, 除隸儀, 今二十三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詣壇所後, 大小諸執事與中使²¹⁵·近侍, 以黑團領, 依例並爲私習, 俾無失儀事, 知委何如?” 傳曰²¹⁶: “允.”

甲申五月二十二日

一.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執義柳善養所懷: “今日齋戒, 故不得傳啓, 以所懷仰達矣. 再昨日社壇祭親祭習儀, 初不舉論, 至日暮有聖教, 然後始乃行之, 凡係祭享時, 應行之事, 事知守僕, 據例卽行, 自是例規也, 其日當該守僕, 令攸司科治, 何如?” 上曰: “依啓, 非徒事知守僕, 此事古例熟知, 使禮曹, 雖無肄

215 使: 저본에는 ‘史’.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5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16 傳曰: 저본에는 ‘啓傳曰’.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사執事들이 단소壇所에서 의식을 연습하도록 단자單子로 계하啓下받는 것이 바로 옛 규례이다. 예조 관서가 이미 해당 예조 서리를 처분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잘 거행하지 못한 탓이다. 똑같이 담당 관사로 하여금 엄하게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습의 단자習儀單子를 계하한 뒤에 감결을 보내지 않기에 사간원에서 이렇게 엄히 신칙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5월 24일

북교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환궁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세 차례 희생을 대신하여 직접 기도하였으나 정성이 알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우리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바로 나의 허물이다. 지난번 이미 하교했으니 비가 올 때까지 먼저 음식 가짓수를 줄이겠다. 경죄수輕罪囚는 지금 궐문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풀어 주었으니,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처한 부류는 지난번에 사면을 보고하고 풀어준 뒤에 나중에 추가로 기록해야 하는 자가 있으면 내일 의금부와 형조에서 관대히 처벌하라. 친제 뒤에는 규례대로 해당 조에서 감히 여쭙지 못하니, 오늘 내일 보아 규례대로 거행하되 우사단^{雩祀壇}에서 기우제를 지낼 경우 중신을 보내 거행하라.” 하였다.

儀, 近侍·中使²¹⁷·獻官·諸執事於壇所習儀事²¹⁸, 單子啓下, 卽是古例, 判書既已處分當該禮曹書吏, 此專由於不能舉行之致, 一體令攸司從重科治.”

【習儀單子啓下後, 不爲捧甘, 諫司有此嚴飭.】

甲申五月二十四日

一. 北郊祈雨祭還宮時, 傳曰: “三次代犧, 微誠未格, 尙靳一需, 吾民何辜? 寔予之愆, 頃者既已下教, 得雨間爲先減膳. 輕囚今已臨門特放, 徒流之類, 頃者赦啓聞決放後, 如²¹⁹必有追錄者, 明日金吾秋曹疏²²⁰決爲之. 親祭後, 該曹

217 使: 저본에는 ‘官’.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18 事: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219 如: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220 疏: 저본에는 ‘流’.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신년¹⁷⁶⁴ 5월 25일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전교하신 내용 중에,

‘제 차례 희생 대신 직접 기도하였으나 정성이 알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
았다. 오늘 내일 보아 규례대로 거행하되 우사단에
서 기우제를 지낼 경우 중신을 보내 거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연일 비가 내릴 조짐이 있
는데 아직 쏟아지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지극
히 애타고 걱정입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우사단 기
우제를 오는 27일 중신을 보내어 설행하라고 통지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들어와 아될 때 내일 거행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므로 중지하였다.】

● 우사단 기우제 섭행

전교하기를,

“7일에 기우제를 지내려고 했는데, 군사들을 위해
섭행하라 명하였으니 즉시 거행하라. 제문은 전에
지은 것을 사용하고 제관은 각별히 가려 뽑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不敢循例取稟²²¹, 亦觀今日明
日依例舉行, 而其若爲之雩祀,
遣重臣舉行事, 分付.”

甲申五月二十五日

一. 曹啓曰: “昨日所下傳教中,
三次代犧, 微誠未格, 尙靳一
霈, 觀今日明日, 依例舉行, 而
其若爲之雩祀, 遣重臣舉行
事, 命下矣. 連有雨徵, 尙不霈
然, 言念民事, 極爲焦憫, 依聖
教, 雩祀壇祈雨祭, 來二十七
日遣重臣設行事, 知委何如?”

【入啓之際, 有明日舉行之教,
故中止.】

● 雩祀攝行

一. 傳曰: “七日欲爲之矣, 爲
三軍命攝, 卽爲舉行, 而祭文
以前製者用之, 祭官另擇事
分付.”

221 取稟: 저본에는 ‘取以稟’, 『승정원
일기』 영조 40년 5월 24일 기사에 근
거하여 수정

갑신년¹⁷⁶⁴ 5월 28일

전교하기를,

“여섯 차례 기우제를 지냈지만 나의 정성이 얕아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아 쏟아질 기미는 여전히 아득하니 허물이 실로 임금에게 있다. 아,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감히 우리 명령을 더 이상 슬프게 할 수 없기에 교단^{郊壇}에 두루 기도하였다. 지금 기우제를 지내는 것도 차례를 어겼고, 또 사직단에서 친히 기도하면서 종묘에는 설행하라고 명하였으니, 내 마음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어찌 자식된 도리라고 하겠는가.

어제 이미 하유하면서 마음 속으로 예측한 바가 있었다. 아침에 내리는 부슬비가 한 차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교서^{敎書}를 반포하는 예를 마치고 월대^{月臺}에서 기다릴 때에도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그쳤다. 내가 마음속으로 예측한 바가 둘 다 적중하였다. 어찌 다시 내달 1일까지 기다리겠는가. 종묘에서 친히 기도하겠다. 내일 동가^{動駕}하는 시각은 진정^{辰正} 3각^刻에 단엄^{單嚴}으로 하겠고 영녕전^{永寧殿}에도 똑같이 거행하라. 향^香을 지영^{祇迎}한 뒤에 예방 승지^{禮房承旨}가 먼저 모시고 가고 나는 보여^{步輿}를 타고 가서 먼저 진전^{眞殿}에 고유문^{告由文}을 아뢰고, 종묘에 가서 희생과 제기를 살피겠다. 이렇게 예조에 분부하라.

처음에는 세손^{世孫}으로 하여금 왕래할 때 인정문^{仁政門} 밖에서 지영^{祇迎}하게 하여 지영을 보려고 하였다. 다시 생각해 보니 창덕궁에 가는 것은 중요한 점

甲申五月二十八日

一. 傳曰：“六次祈雨，因予誠淺，其雨其雨，霈然猶遜，咎實厥辟，嗟民何辜？不敢更感²²²我陟降，遍禱郊壇。于今祈雨，其亦愆次，且既親禱于社壇，命攝事于太室，非徒予心之悚惕，亦豈日子道？昨已諭，心有仰占者，朝者微雨，望切一霈，頒敎禮畢，月臺以俟，霏霏之雨亦霽，予之仰占者，中於第二件矣。更何²²³遲待初一日？當親禱於太室，明日動駕時刻，辰正三刻單嚴，永寧殿一體舉行，而香²²⁴祇迎後，禮房承旨先爲陪進，予則以步輦而詣，先於眞²²⁵殿奏²²⁶由，詣

²²² 感：저본에는 ‘憾’.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²²³ 何：저본에는 ‘待’.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²²⁴ 香：저본에는 ‘當’.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²²⁵ 眞：저본에는 ‘直’.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²²⁶ 奏：저본에는 ‘輦’.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이 있다. 옛날 하(夏)나라 우왕(禹王)은 치수(治水)에 불과하였지만 세 번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면서 들어가지 않았으니, 나도 중요한 곳에 전배(展拜)하고 종묘에서 친히 기도하겠다. 아헌(亞獻)을 하지 않으니 이 또한 마음을 두 곳에 쓰는 것이다. 지척이지만 지영 등의 일은 내게 묻지 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오늘 날씨를 보아 하교하겠으니 7차 기우제는 하교를 기다리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예문(禮文)에,
‘삭제(朔祭)와 망제(望祭)가 별제(別祭)와 겹치면 별제만 거행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종묘 기우 친제가 삭제와 겹치니 예문대로 별제만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종묘 기우제로 전하께서 재계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재

太室省牲省器，以此分付儀曹。
初意令世孫往來時，祇迎於仁政門外，欲見祇迎。更²²⁷思之，詣昌德，所重在焉。昔之夏禹，不過治水，三過門不入，爲所重展拜，親禱雨於太室，既不亞獻，則此亦二用，其雖咫尺，祇迎等節，勿稟事，分付。”

一. 次對入侍時，傳曰：“觀今日當爲下教，七次祈雨祭，待下教事，分付儀曹。”

一. 曹單子：“禮文內，朔望若值別祭，則只行別祭事，載錄矣。來六月初一日宗廟祈雨親祭，與朔祭相值，依禮文，只行別祭事，知委何如？”

● 宗廟祈雨殿下齋戒

一. 曹啓曰：“宗廟祈雨親祭

여 수정

227 更：저본에는 ‘處’.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5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에 종묘 친제를 지내는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산재는 거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과 근시 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壚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享官들은 하루 전날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祗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6월 1일 종묘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29일에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가 4품 이상은 조복 차림으로,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종묘 문 안에서 지영하도록 하겠습니까. 영녕전의 향관들은 이번 29일에 이미 흑단령 차림으로 향소를 받고 나아갔으니, 전하께서 종묘에 도착할 때 그대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齋致之規，而今此宗廟親祭，只隔二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廟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傳曰：“允。”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教是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祗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來，六月初一日宗廟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今二十九日質明，先詣享所，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團領，廟門內祗迎爲白乎矣，永寧殿諸享官，則今二十九日，既已黑團領受香進去，殿下詣宗廟時，仍以黑團領祗迎事，知委何如？”

갑신년¹⁷⁶⁴ 6월 1일

● 형편을 살펴 8차 기우제를 규례대로 거행하다.

환궁^{還宮}한 뒤 예방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친제를 지낸 뒤에는 해당 조에서 규례대로 감히 내게 묻지 못하니, 내일도 형세를 보아 8차 기우제를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6월 2일

친림하는 유생 제술에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이지억^{李之億}이 아뢰기를,

“어제 8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제사 지낼 곳의 차례로는 벌써 5차를 지냈으니 1차로 설행하는 장소에서 규례대로 거행하고, 내일 향^香을 받고 모레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러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1차에서 설행한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지에 근시^{近侍}를 보내 제사 지내라.”

하였다.

● 8차 기우제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8차 기우제는 삼각산에 좌부승지, 목멱산에 좌승

甲申六月初一日

● 觀勢八次祈雨依例舉行

一. 還宮後, 禮房承旨入侍時, 傳曰: “親祭後, 該曹不敢循例取稟, 明日亦觀勢, 八次祈雨, 依例舉行事, 分付.”

甲申六月初二日

一. 親臨儒生製述入侍時, 禮曹判書李所啓: “昨以八次祈雨祭, 觀勢設行之意, 有下教矣. 祭所次序, 已行五次, 則當以初次設行之所, 依例舉行, 明日受香, 再明日行祭, 故惶恐敢達矣.” 上曰: “依爲之, 以初次設行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遣近侍行祀可也.”

● 八次祈雨

一. 同日入侍時, 傳曰: “八次祈雨祭, 三角山左副承旨, 木

지, 한강에 우부승지가 나아가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6월 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5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6월 5일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비가 내리자마자 그쳐 끝내 한 번 쏟아지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9차 기우제는 용산강과 저자도에
서 전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7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覓山左承旨，漢江右副承旨進
去.”

甲申六月初四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今夜下雨，水標看
審，則五寸五分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甲申六月初五日

一. 曹啓曰：“昨日乍雨旋霽，
終靳一霽，言念民事，不勝渴
悶，九次祈雨祭，當以龍山江·
楮²²⁸子島，依前例舉行矣，遣
重臣，不卜日，初七日設行之
意，分付何如？”傳曰：“允。”

²²⁸ 楮：저본에는 '猪'.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신년¹⁷⁶⁴ 6월 7일

- 저자도 기우제 때 용 그림은 올라가는 것으로 걸다.

약방에서 입진하고 한성부 관윤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들으니, 저자도 헌관이,

‘단 위에 그려진 신룡^{神龍}⁷이 거꾸로 걸렸으므로 제가 의심스러워 따졌지만 모두들 전례가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의도는 비록 용이 내려오는 데 있는 듯 하지만 예법으로는 실로 신을 공경하는 데 흠이 되니, 이후로는 올라가는 용으로 걸도록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봉상시에 감결^{甘結}을 보내어 이대로 거행하라고 벽에 붙여 시행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6월 9일

- 10차 기우제를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10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단^{風雲雷雨山壇}과 우사단^{雩祀壇}에 중신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에

7 신룡(神龍) : 한강·용산강·양주의 양진·저자도는 국가에서 용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한강과 양진은 호랑이 머리를 강물에 넣어 용을 자극하는 침호두(沈虎頭)의 제사를 지내며, 용산강과 저자도는 주로 용의 그림을 그려 놓고 제사를 지내는 화룡제(畫龍祭)였다(최종성, 『용부림과 용부림꾼-용과 기우제』, 『민속학연구』 6, 1999 참조).

甲申六月初七日

- 楮子島祈雨祭畫龍, 以升龍掛之

一. 藥房入診判尹同爲入侍時, 傳曰: “今聞²²⁹ 楮子島獻官以爲壇上所畫神龍倒掛, 故獻官雖疑而爭之, 咸曰前例若此云, 意雖在於似降²³⁰, 禮實欠於敬神, 此後以升龍掛之事, 定式施行, 【以此捧甘奉常寺, 依此舉行事, 付壁施行.】

甲申六月初九日

- 十次祈雨祭稟

一. 曹啓曰: “十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及雩祀壇, 遣重臣, 不卜日, 來初十日設行之意, 知委何如?” 【初七日夜, 璿源殿展拜時, 未及入侍²³¹之前,

229 聞 : 저본에는 ‘問’.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30 降 : 저본에는 ‘凜’.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31 侍 : 저본에는 ‘是’. 문맥을 살펴 바로잡았다.

설행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7일 밤 선원전^{禪源殿}에서 전배^{展拜}할 때, 미처 입시하기 전에 우선 그만두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올리지 않았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10차 기우제를 지낼지 물어야 하는 날이지만 할 일이 있으니 초기는 우선 그만두라.” 하였다.

● 선농단 기우제 친행 전교

이번 6월 8일 인정전 월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아, 오늘 경자년^{1720, 숙종 46} 이날⁸을 추억해보니, 마음이 건디기 어려운 가운데 오늘 가뭄 또한 극심하다. 아, 5월 10일에 내리는 비는 세상에서 무어라고 전하는가. 『국조보감^{國朝寶鑑}』에도 실려 있으니, 해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불초한 탓에 두루 제사를 지냈으나 감응이 거의 없었으니, 더욱 참담하고 부끄럽다. 모든 곳에 기우제를 지냈지만 선농단은 사전^{祀典}에 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난해 특교^{特敎}로 지냈고, 이후에도 전지^{傳旨}를 내리면서 지냈다. 옛날에 선왕께서 특별히 설행하라고 명한 단이니,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 친히 기도드리지

8 이날 : 숙종의 사망일이 1720년 6월 8일이다. 즉 숙종을 추억하는 뜻이다.

有姑置之命, 故不呈焉.】

一. 傳曰: “今日卽十次祈雨祭當稟之日, 有可爲事, 草記姑置之.”

● 先農壇祈雨祭親行傳敎

一. 今六月初八日, 仁政殿月臺入侍時, 傳曰: “嗚呼, 今日追憶庚子, 此日方寸難耐之中, 今者亢旱亦孔之酷. 嗚呼, 五月初十日之雨, 世傳謂何? 亦在寶鑑,²³² 無歲不雨. 因予不肖, 圭璧²³³編舉, 畧無感²³⁴應, 尤切慘惡. 皆行禱雨, 而至於先農壇, 無祀典所載, 故昔年特敎乃行, 伊後亦有旨則行. 昔年特命設行之壇, 于今望

232 寶 : 저본에는 ‘鑑’.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33 圭璧 : 저본에는 ‘奎璧’.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34 感 : 저본에는 ‘憾’.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않고 무엇을 하겠는가.

처음 생각에는 이번에 전^殿에 아뢰고 지낼 때 곧바로
지내려고 하였는데 어제 지휘를 잘못된 것이 있어
막중한 전에서 먼저 거행한 일이 있었으니 마음이
매우 송구하였다. 선농단에서 거행하였다면 또한 배
알하겠다는 뜻을 이미 아뢰었을 것이다. 날이 저문
뒤에 비가 올 기미가 조금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퍼부었다면 선농단에 갈 필요가 없었을 테고 선농
단에 간다면 내일 당장 먼저 배알하겠다는 뜻을 또
한 아뢰었을 것이다. 남은 회포를 아울러 억누르기
어려우므로 지척인 인경전 월대에서 부르는 대로 쓰
게 하면서 기다리겠다는 뜻을 영령께서 이미 들었
을 것이다. 10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10일에 친
행하겠다. 동가할 때 전^殿에 먼저 배알할 것이니, 삼
엄^{三嚴}은 진정^{辰正} 3각^刻 단엄^{單嚴}으로 하며, 시위^{侍衛}와
수궁^{守宮}은 그대로 하고 세손은 지영^{祗迎}하라. 연輦과
여輿는 그대로 두고 의장^{儀仗}은 소여 의장^{小輿儀仗} 가운
데 긴요하지 않은 것을 없애라. 보여^{步輿}를 타고 교외
로 가더라도 백관은 말을 타는 것이 바로 전례이니,
이대로 거행하라고 즉시 분부하라. 제문은 지어 내
리겠다. 집사들은 각별히 가려 뽑으라.”
하였다.

八，非親禱而何？初意則今來
奏殿行時，其欲直行，昨日有
不善指揮者，莫重殿中，有先
爲舉行者，心切悚然，若行農
壇，則亦謁²³⁵之意已奏。晚後，
微有雨意，故其若注下，不必
詣壇，其若詣壇，明當先謁²³⁶
之意亦奏。餘懷兼爲難抑，咫
尺仁政月臺呼寫以待之意，陟
降已聞。十次祈雨祭，不卜日，
初十日，當親行，動駕時，當
先拜于殿，三嚴辰正三刻單
嚴²³⁷，侍衛守宮仍，世孫祗迎，
輦輦置之，儀仗小輿儀仗中不
緊者減去，²³⁸雖以步舉行郊外，
百官乘馬，卽是前例，依此舉
行事，卽爲分付，祭文當製下，
諸執事申飭該曹，別擇。”

235 謁：저본에는 ‘謂’.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36 先謁：저본에는 ‘謂’. 『승정원일
기』 영조 40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237 單嚴：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40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
하여 보충

238 儀仗小輿儀仗中不緊者減去：저
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 사사로이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선농단 기우 친제 때 높고 낮은 집사관^{執事官}들은 의례를 미리 연습하는 절차를 면제하고 이번달 9일에 동틀 무렵 향소로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단^壇에 도착한 뒤 높고 낮은 집사^{執事} 및 중사^{中使}와 근시^{近侍}는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규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 전하께서 재계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에 선농단^{先農壇}에 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산재는 거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과 근시^{近侍} 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繡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私習儀

一. 曹單子: “今此先農壇祈雨親祭教是時, 大小諸執事官, 除隸儀, 今月初九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詣壇所後, 大小諸執事與中使·近侍, 以黑團領, 依例私習儀, 俾無失儀事, 知委何如?” 啓依允.

● 殿下齋戒

一. 曹啓曰: “祈雨親祭時, 自上逮至諸享官, 例有散致齋之規, 而今此先農壇親祭, 只隔二日, 散齋則勢未及舉行, 自今日, 殿下別殿致齋, 不吊喪問疾, 有司不啓刑殺文書, 唯啓享事, 諸享官近侍之官, 應從升者, 並自今日, 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祭百官諸衛之屬, 守衛墻門者, 各於本司淸齋一宿事, 知委何如?” 啓依允.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 선농단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선농단 기우 친제 때 단을 수리하는 등의 일은 규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을 보내 함께 검사하고 또한 선공감에서 감역관을 별도로 정하여 속히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제관이 먼저 향소에 가다.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享官들은 하루 전날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6월 10일 선농단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9일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가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지영祇迎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6월 10일

●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며 음악을 중지하다.

전교하기를,

“올해 극심한 가뭄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으니 비가

● 壇修理

一. 曹啓曰：“今此先農壇祈雨親祭時，壇上修理等事，依例發遣戶工曹郎廳，眼同看檢，而亦令繕工監別定監役官，急速舉行事，分付何如？”傳曰：“允。”

● 祭官先詣享所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六月初十日，先農壇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初九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甲申六月初十日

● 避正殿減膳撤樂

一. 傳曰：“今年亢旱，可謂異常，欲雨不雨，終靳一需，五次親禱，靈應愈邈，靡不用極，今

내리려다 내리지 않아 끝내 쏟아지지 않았다. 다섯 차례 친히 기도하였으나 신령의 감응은 더욱 아득하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오늘 먹구름이 모였다 흠어지는 모습을 보니 애타는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아,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잘못은 실로 임금에게 있다. 하유하려던 뜻은 이미 하유하였으니, 오늘부터 정전(正殿)에 들지 않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이미 명하였으니 음악 또한 그만두라고 즉시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정전을 피하고 음악을 중지하는 절차는 규례대로 하고, 복을 치지 않는 것은 그만두었다.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극심한 가뭄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정전(正殿)에 들지 않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이미 명하였으니 음악 또한 그만두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정전을 피하고 음악을 정지하는 절차는 즉시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며, 복을 치지 않는 일은 근래의 규례대로 그만두겠습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日密雲，聚散觀之，焦迫曷喻？
噫，元元何辜？咎實厥辟，將
論之意已論，自今日不御正殿，
減膳已命，亦爲撤樂事，卽爲
分付儀曹。”

● 避正殿撤樂節次依例，勿擊鼓安徐

一. 曹啓曰：“今年亢旱，可謂異常，自今日不御正殿，減膳已命，亦爲撤樂事，命下矣。避正殿·撤樂等節次，卽令各該司依例舉行，而勿擊鼓一款，依近例安徐之意，敢啓。”傳曰：“知道。”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촌 5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친히 기도드린 뒤 해당 조에서 감히 내게 묻지 못
하는 것이 규례이다. 저문 뒤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
으나 비단 쏟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
라보니 또한 구름이 몰려들어 소나기에 가깝다. 이
러한 때 기우제를 잠시라도 지체할 수 있겠는가. 오
늘밤에 보아 시원스레 쏟아지지 않으면 11차 기우제
는 남교南郊에 대신大臣을 보내고 우사단霽祀壇에 중신
重臣을 보내 13일에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예조에 분
부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6월 11일

● 수표단자를 재촉하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이는 모두 백성을 위한 일이니, 수표단자를 계속해
서 예조에 재촉하라고 분부하라. 동교東郊와 서교西郊
에 선전관을 보내어 똑같이 비가 왔는지 여부를 살
펴보고 오게 하라.”
하였다.

審, 則三寸五分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一. 傳曰: “親禱之後, 該曹不
敢取稟例也, 晚後雖見雨下,
非徒不霽, 瞻望雲漠, 其亦同
雲, 近於聚雨, 此時祈雨, 豈可
一刻遲滯? 觀今夜, 若不甘霽,
十一次祈雨祭, 南郊遣大臣,
霽祀遣重臣, 十三日依例舉行
事, 分付儀曹.”

甲申六月十一日

● 水標催促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 “此
皆爲民之事, 水標單子, 連爲
催促催於禮曹事, 分付, 送宣傳
官於東西郊, 一體雨來與否,
使之看審以來.”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새벽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
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축문을 고쳐 쓰다.

전교하기를,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어제 지어 내린 축문
은 형세를 살펴 고쳐쓰라.”
하였다. 【축문은 11차 기우 제문인데 비가 왔으므로
그대로 정지하였다.】

전교하기를,
“비가 내린 상황을 계속해서 치계^{馳啓}하라고 경기 감
영에 분부하라.”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2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今曉下雨，水標看
審，則一尺三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祝文正書

一. 傳曰：“雨勢如此，昨日製
下祝文，觀勢正書。”【祝文即
十一次祈雨祭文而得雨，故仍
爲停止.】

一. 傳曰：“雨澤形止，連續馳
啓事，分付畿營.”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
審，則二尺二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하였다.

● 정전을 피하고 복을 두들기지 말라.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극심한 가뭄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정전(正殿)에 들지 않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이미 명하였으니 음악 또한 그만두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정전을 피하고 음악을 정지하는 절차는 즉시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고, 복을 치지 말라는 일은 근래의 규례대로 그만두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이 초기는 10일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는 전교 다음에 써야 한다.】

● 기우제를 정지하다.

편차인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오랫동안 가뭄 뒤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누가 주신 것인가. 누가 주신 것인가. 우리 백성이 장차 소생할 것이니 기우제는 정지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보사제는 입추 뒤에 설행하기로 하다.

예방 승지·편차인·세 대신이 함께 입시하고 약방 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나중에 입시하였을 때 예조 관서 이지역이 아뢰기를,

● 避正殿勿擊鼓

一. 曹啓曰：“今年亢旱，可謂異常，自今日，不御正殿，減膳已命爲，亦撤樂事，命下矣。避正殿·撤樂等節次，即令各該司依例舉行，而勿擊鼓一款，依近例安徐之意，敢啓。”傳曰：“知道。”【此草記，當書於初十日減膳傳教下次。】

● 祈雨祭停止

一. 編次人入侍時，傳曰：“久旱之餘，得此甘霖，其誰之賜？其誰之賜？吾民庶幾，祈雨祭停止事，分付儀曹。”

● 報謝祭立秋後設行

一. 禮房承旨·編次人·三大臣同爲入侍，藥房提調持湯劑追後入侍時，禮曹判書李所啓：

“큰비가 쏟아진 뒤에는 전부터 보사제를 설행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경진년^{1760,영조36} 하교에는 입추 뒤에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하교한 대로 입추 뒤에 설행하라.”

하였다.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고 정전으로 가는 등의 일을 복구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본조의 판서가 아뢰니, “입추까지 할 것이니 더 이상 아뢰지 말라.”라고 하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2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6월 12일

● 기우제 헌관에게 상전하다.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선농단 기우 친제 때 아헌관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종헌관 우의정 김상복^{金相福}에게 각각 내구마^{內廐馬} 1필을 면급^{面給}하고, 진폐작주관^{進幣爵酒官} 관윤 조운^{趙雲遠}, 천조관^{薦俎官} 판서 구윤명^{具允明}, 천폐작주관

“既得大霈，自前有報謝祭設行之例，而曾於庚辰年下教，有立秋後舉行之命，則何以爲之²³⁹？敢稟。”上曰：“依前下教，立秋後設行可也。”【同日入侍時，復常膳·還御正殿等節，復舊舉行之意，本曹判書陳達，則下教曰：“限立秋爲之，更勿陳達。”下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五尺二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甲申六月十二日

● 祈雨祭獻官賞典

一. 入侍時，傳曰：“先農壇祈雨親祭時，亞獻官領議政洪，終獻官右議政金，各內廐馬一疋面給，進幣爵酒官判尹趙雲

239 之：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薦幣爵酒官 참의 정상순鄭尙淳, 예의사禮儀使 판서 이지억李之億, 단상 집례壇上執禮 행 부사직 조덕성趙德成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을 내려 주라. 단하 집례 수찬 김노진金魯鎭, 전사관典祀官 정정 조태명趙台命, 승지 윤동섭尹東暹·홍양한洪良漢·김화진金華鎭·이담李潭·홍지해洪趾海·이복원李福源, 대축대祝 수찬 이재간李在簡, 부수찬 이택진李宅鎭에게 각각 반숙마 1필을 내려 주라. 단사 첨정壇司僉正 김영金鏞, 주서 김용金容·심이지沈頤之, 기사관 박사륵朴師崙·이연급李延伋에게 각각 아마 1필을 내려주고, 감찰 이하 여러 집사에게 각각 상현궁上弦弓 1장을 내려 주라.”

하였다.

達, 薦俎官判書具允明, 薦²⁴⁰幣爵酒官參議鄭尙淳, 禮儀使判書李, 壇上執禮行副司直趙德成, 各熟馬一匹, 壇下執禮修撰金魯鎭, 典祀官正趙台命, 承旨尹東暹·洪良漢·金華鎭·李潭·洪趾海·李福源, 大祝修撰李在簡·副修撰李宅鎭, 各半²⁴¹熟馬一匹, 壇司僉正金鏞·注書金容·沈頤之·記事官朴師崙·李延伋, 各兒馬一匹, 監察以下諸執事, 各上弦弓一張賜給.”

갑신년¹⁷⁶⁴ 6월 29일

● 기우제를 다시 지내되, 전례를 살펴 여쭙다.

전교하기를,

“지난번 단비가 쏟아진 뒤에 날이 갠 지 오래되어 가뭄의 징조가 제법 있어 이 때문에 마음이 쓰였다. 요즘 거의 비가 올 듯 올 듯하여 여전히 단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동풍이 갑자기 불어 비가 내릴 기미가 아득해졌다. 만약 이번 달을 넘긴다면 이전의 노력이 아까우니, 예조로 하여금 전례를 자세히 살피고 어전에 나와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을묘년¹⁶⁷⁵, 숙종¹에서 임인년¹⁷²², 경종² 7월 이후

甲申六月二十九日

● 祈雨祭復行, 前例考稟

一. 傳曰: “頃者甘霖之餘, 其霽已久, 頗有旱徵, 以此用心, 而近者幾雨幾雨, 猶待一霑, 今日東風忽起, 雨意邈然, 若過今朔, 前功可惜, 其令儀曹,

240 薦: 저본에는 ‘奠’.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41 半: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까지 다시 기우제를 행한 전례를 살펴 여쭙었다.】

● 기우제는 성상의 뜻을 여쭙어 거행하였다.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상이 이르기를,
“예조 판서가 전례를 살펴보았는데, 봄여름 기우제를 설행한 뒤 다시 7월에 설행한 전례가 있는가?”
하니, 이지역이 아뢰기를,
“등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갑인년^{1734, 영조10}과 을묘년¹⁷³⁵에 모두 잠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시행한 규례가 있었지만 올해는 가을이 아직 멀었으니 어떻게 거행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사나흘 보고 내게 물어 거행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7월 2일

● 1차 기우제를 설행하다.

대신, 수령, 변장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단비가 쏟아진 후 20여 일 동안 또 가물었으니 백성을 생각하면 밤낮으로 어찌 마음이 해이해지겠는가. 초가을이 된 데다가 김을 맨 뒤에 가뭄이 드는 것은 농가^{農家}에서 꺼리는 바이다.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잘못이 내게 있으니 한 몸으로 만백성을 대신

前例詳考，登對以奏。”【乙卯壬寅年七月以後，復行祈雨祭例考稟.】

● 祈雨祭稟旨舉行

一. 同日入侍時，上曰：“禮判考見前例，則春夏祈雨祭設行後，復有七月設行之例乎？”
李曰：“詳考膳錄，則甲寅乙卯年，皆有間撤復行之規例，而今年則秋節尙遠，未知何以舉行矣。”上曰：“姑觀三四日，稟而舉行可矣。”

甲申七月初二日

● 初次祈雨祭設行

一. 大臣·守令·邊將入侍時，傳曰：“甘霖之後，甘旬餘且旱，言念民事，夙宵奚弛？節屆初秋，且鋤後之旱，農家所忌²⁴²，日夜所望，厥由否德，願

²⁴² 忌：저본에는 ‘忘’.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는 것이다. 비가 내릴락말락하면서 이처럼 아득하니 어찌 더 이상 지체하겠는가.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4일에 거행하고, 비가 내리면 형세를 보아 다시 내게 물으라고 분부하라. 이러한 때에 어찌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되겠는가. 삼각산·한강·목멱산의 헌관은 3품 유신^{儒臣}으로 채워 차임하라고 또한 이조에 분부하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7월 5일

● 2차 기우제

차대에 입식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이미 하교하였으니 2차 기우제는 용산강·저자도에 중신을 보내어 7일에 거행하고, 내일은 1차와 마찬가지로 직접 향을 전달하고 머물러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분부하라.” 하였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김홍상^{金興祥}의 첩정에,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강물이 불어나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2척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以一身代萬民，而其雨其雨，若是邈然，復何遲待？初次祈雨祭，不卜日，以初四日舉行，而其若得雨，觀勢更稟事，分付，此時何拘常規？三角山·漢江·木覓山獻官，以三品儒臣填差事，亦爲分付吏曹，祭文當製下矣。”

甲申七月初五日

● 再次祈雨

一. 次對入侍時，傳曰：“既已下教，再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重臣，以初七日舉行，明日親傳香與留待，當如初次，以此分付。”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金興祥牒呈內：‘常流水基²⁴³良中，江水新生，以布帛尺尺量，則二尺許添流’是如爲白臥乎事。”

²⁴³ 基：저본에는 ‘墓’. 『승정원일기』 인조 5년 6월 21일 등의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 용 그림은 오르는 용으로 거행하고, 제물은 각기 싸서 강물에 던지다.

이번 7월 4일 대내로 돌아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물어보니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용 그림을 거꾸로 걸었다고 하였으므로 이미 하교하였다. 이번에는 하교대로 오르는 용으로 거행하라. 또 들으니 제사를 지낸 뒤에는 제사에 올린 거위와 제물을 용 그림에 싸서 강물에 던진다고 하니⁹ 불경하기가 막심하다. 이번에 각각 싸서 강물에 던지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섭행하는 기우제를 위하여 재숙齋宿하였다.

전교하기를,

“아, 하늘의 명령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백성이다. 노년에 다시 정사하면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뭄을 만나니 우리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허물은 임금에게 있다. 아, 하늘과 명령께서 백성을 돌보시어 흔쾌히 단비를 주셨는데, 내가 부덕하기 때문에 곧바로 가뭄이 들었다. 아, 노년에 백성과 나라에 몸을 바쳤건만 재작년 경기와 삼남에 전에 없던 큰 기근을 만났다. 이번에 또 그러하여 이 지경에 이렀으니 이 한 몸으로 백성을 대신하

9 제사에……하니 : 제단에 기를 설치하고 거위 목을 베어 피를 받아 쟁반 속에 넣는다. 버들가지로 용에 물을 뿌린다. 3일 동안 비가 풍족히 내리는 것을 기다려서 수쾌지로 보답하는 제사를 지낸 후 용 그림을 수중에 넣는다. 『文獻通考 卷77 郊社考 雩』

● 畫龍升龍舉行, 祭物各裹

沈水

一. 今七月初四日還內入侍時, 傳曰: “頃者問知, 龍山江·楮子島行祭時, 畫龍倒掛云, 故已爲下教, 此則依下教, 以升龍舉行. 且聞行祭後, 祭鵝祭物, 裹畫龍而沈水云, 褻慢莫甚, 今番各裹沈水事, 分付, 攝行祈雨祭齋宿.”

一. 傳曰: “噫, 蒼蒼陟降, 畀予者何? 卽元元也, 暮年復政, 望八逢旱, 吾民何辜? 咎在厥辟. 嗚呼, 蒼蒼與陟降, 眷顧元元, 快賜甘霖, 而因予否德, 旋又致旱. 噫, 暮年身²⁴⁴許民國之中, 逢再昨年畿甸²⁴⁵三南, 無前大饑, 今若又然, 到此地頭, 知以身代民, 何可得

244 身 : 저본에는 ‘心’.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45 甸 : 저본에는 ‘田’.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고자 한들 어찌 가능하겠는가. 2차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3차 기우제는 내가 정한 바가 있다. 예전에 왕위를 이은 지 3년이 된 가을 가뭄이 들어 종묘와 사직단에서 친히 기도하여 비가 한 차례 쏟아졌다. 지금 노쇠한 나이에 어찌 바라겠는가. 아, 저 명령께서 나에게 준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면 훗날 무슨 낫으로 밟겠는가. ‘하늘을 우리러보니 어찌 그 끝이 있겠는가.’라는 말이 참으로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였다.

이번 7월 4일에 전교하기를,
 “예조 관서는 아까 전교 가운데 3년 가을의 『기우제 등록』을 가지고 주강書講에 함께 입시하라.”
 하였다.【3년 가을은 지금 임금이 즉위한 뒤의 정미년¹⁷²⁷ 7월 기우제 전례이다.】

● 2차 기우제 설행

예조가 아뢰기를,
 “2차 기우제는 성상의 하교대로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也? 再次若不得雨, 三次予有所定, 曾於嗣服三年秋鋤旱, 親禱太室社壇, 俾得一霈, 于今衰年, 其何望也? 卽嗟彼界予之民不恤, 其將他日何顏以拜? 瞻望雲漢, 曷有其極之言, 誠非過語矣.”

一. 今七月初四日, 傳曰: “禮判持俄者傳教中, 三年秋祈雨謄錄, 書講同爲入侍.” 【三年秋卽當寧嗣服後, 丁未秋七月祈雨祭前例.】

● 再次祈雨設行

一. 曹啓曰: “再次祈雨祭, 依聖教, 龍山江·楮子島遣重臣, 不卜日, 來初七日設行事, 知委何如?” 傳曰: “允.”

● 2차 기우제는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용 그림을 강물에 넣고 범 머리를 강물에 넣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이러한 때 경비는 비록 한 장의 종이라도 돌아보아야 하니, 내일 예문관의 종이 1장, 자리 1넝도 쓰지 말고 그런 물건들 또한 대령하라고 호조 낭청에게 분부하라. 선전관 2인은 용산강과 저자도로 달려가서 정결한지 불결한지 살펴보고 오라. 용 그림 역시 위판^{位板}이니 봉상시 관원이 직접 살피고, 화원도 손을 씻고 하며, 봉안할 때도 정결히 하라고 봉상시 관원에게 분부하라. 2차 침호두^{沈虎頭}를 하되 1차라도 내일은 하고, 거위는 민가에서 기른 것은 정결하기 쉽지 않으니 오늘 전생서에 보내어 각별히 깨끗이 씻은 뒤에 사용하라. 아까 이미 하교하였으니 집사들을 가려 차임하여 오늘부터 재숙하고, 이조 낭청이 적간^{摘奸}하여 승정원에 보고하여 아뢰라. 내일은 승정문^{崇政門} 안에서만 금연하고, 승정원은 승정전 월랑으로 장소를 옮기라. 제사는 설행하라고 명하였으나 재숙하고, 제사 지낼 두 곳의 그림은 본조에서 화원을 보내 그려 들이라.”
 하였다.

● 再次龍山江·楮子島圖形
 畫入沈虎頭爲之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此時經費，雖一張紙，宜顧。來日²⁴⁶藝文館紙一張草一立，勿爲之等²⁴⁷，每等物亦爲待令事。分付戶郎。宣傳官二人，馳往龍山江·楮子島，精不精，看審以來，雖畫龍，便亦位版，奉常寺官員親審爲之，畫員亦盥手爲之，奉安時亦精爲之事，分付奉常寺官員。再次沈虎頭爲之，而雖初次，明日則爲之，鵝則人家所畜，未易精，今日送典牲暑，各別精洗後用之。俄已下教，諸執事擇差，自今日齋宿，吏曹郎廳摘奸，報于政院以奏，來日只崇政門內禁草，政院移處于崇政殿月廊。祭雖命攝齋宿，而兩祭所圖形，自本曹遣畫員圖畫以入。”

246 日：저본에는 '則'.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47 等：저본에는 '悤'.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신년¹⁷⁶⁴ 7월 7일

● 남단 기우제에서 친히 기도하다.

가을 전알^{展謁}을 하고 환궁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아,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밤낮으로 이 마음이 위로는 추모하고 아래로는 군사와 백성에게 있다. 아, 내가 불초하기 때문에 밤새 예^禮를 폈으나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내가 부덕하기 때문에 단비가 금새 가뭄이 되었으니, 그 응험이 더욱 아득하다. 아, 백성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도 1차에 그쳤으니 나에게 백성을 맡긴 뜻을 유념하지 못하였다. 만약 관원에게 명한다면 이는 위로는 푸른 하늘을 저버리고 아래로는 백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백발의 나이에 어찌 차마 이렇게 하겠는가. 지금은 이 한 몸으로 백성을 대신하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니, 지금 하지 않는다면 하고 싶어도 언제 하겠는가. 비가 내릴지 여부는 모두 저 푸른 하늘에 달렸으니, 인사^{人事}를 닦는 도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백성이 장차 수확하지 못한다면 내가 장차 누구와 임금 노릇을 하겠는가.

9일 남단^{南壇}에 가서 희생을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겠다. 제문^{祭文}은 지어 내리겠으니 집사들을 해당 조로 하여금 각별히 가려 뽑게 하고, 삼엄^{三嚴}은 진초^{辰初} 3각^刻에 단엄^{單嚴}으로 하라. 교외에서는 보여^{步輿}를 타더라도 백관들은 으레 말을 타니 이대로 거행하라. 아, 대소 신료들은 ‘지금 한여름인데 어찌 6차 기

甲申七月初七日

● 南壇祈雨親禱

一. 秋展謁還宮入侍時, 傳曰: “噫, 望八, 夙宵此心, 上而追慕, 下而軍民. 噫, 因予不肖, 竟夕伸禮, 莫觀莫聞, 因予否德, 甘霖旋早, 其應愈邈. 噫, 爲民祈雨, 止于一次, 莫體界予, 其若命官, 此上負蒼蒼, 而下²⁴⁸負元元, 白首暮年, 豈忍爲此? 今則以身贖民之心, 益切于中, 及今不爲, 欲爲何爲? 其雨與否, 都在彼蒼, 修人事之道, 其宜靡不用極. 噫, 民將無穫²⁴⁹, 予將與誰爲君? 初九日, 當詣南壇, 代犧親禱, 祭文當製下, 諸執事其令該曹另擇, 三嚴辰初三刻單嚴, 郊外雖²⁵⁰步輿, 百官例乘馬, 依此舉行. 吁嗟, 大小臣僚, 莫曰方當

248 下 : 저본에는 ‘不’.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49 穫 : 저본에는 ‘獲’.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50 雖 : 저본에는 ‘就’.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우제를 지내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이미 이런 뜻을 진전眞殿에 아뢰고 왔고, 비가 쏟아지면 정지하겠다는 뜻도 아뢰었다. 신하들이 나를 걱정한다면 모두 성심껏 비를 바라면서 나의 얇은 정성을 보충하라. 『국어國語』에 사람들의 마음이 성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어찌 감응하는 이치가 없겠는가. 세손世孫의 지영祇迎은 그만두라. 보군步軍 3초哨·마군馬軍 1초·금군禁軍 2번番은 이번에 수가하지 않은 자로 거행하고, 협련군挾輦軍도 똑같이 거행하라. 시위侍衛와 수궁守宮은 그대로 하고 유영留營은 그만두고, 부련副輦도 그만두며 의장儀仗은 줄일 부분은 줄이라. 표하군標下軍과 기고군旗鼓軍 중 금고金鼓만 수가隨駕하고, 오방신기五方神旗는 예전대로 그만두라고 똑같이 분부하라. 이번에 어영청이 수가하되, 상번군上番軍 중 절반은 수가하고 절반은 유영하라. 용호영龍虎營, 어영청御營廳, 어영청御營廳의 표하군은 금위영에 유진留陣할 때 표하군은 훈련도감의 예와 똑같이 거행하라.”

하였다.

盛暑，豈行六次？已將此意奏殿來，其若得霈，停行之意亦奏，諸臣若悶²⁵¹我，咸須²⁵²誠心望雨，補予淺誠，衆心猶成城，豈無感應之理哉？世孫祇迎置之，步軍三哨·馬軍一哨·禁軍二番，以今番不爲隨駕者舉行，挾輦軍亦以一體²⁵³舉行，侍衛守宮仍，留營置之，副輦亦置之，儀仗當減者減焉，標下旗鼓中只金鼓隨駕，五方神旗依前²⁵⁴置之事，一體分付，今番御營隨駕，而以上番軍中其半²⁵⁵隨駕，其半留營，龍虎營·御營廳·標下禁營留陣²⁵⁶時，

251 悶：저본에는 '同'.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52 須：저본에는 '得'.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53 一體：저본에는 '休軍'.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54 前：저본에는 '例'.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55 半：저본에는 '果'.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56 陣：저본에는 '待'.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 우사단의 기우제도 설행하다.

전교하기를,

“이번 가뭄에 근심이 전에 비할 바 아니니 백성을 위하는 방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남단南壇에 기우제를 지낼 때 우사단에도 같이 제사 지내는 것이 옛날의 전례이니 우사단에 대신을 보내 같은 날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7월 8일

● 전하의 재계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으레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에 남단에 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산재는 거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致齋하면서 조문弔問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따라 올라가 제사 지내야 하는 향관들과 근시관원들은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소享所에서 하루 동안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유문塲門을 수위하는 여러 위衛에 소속된 자들은 각각 본사에서 하루 동안 묵으면서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標下一依訓局例舉行.”

● 霽祀祈雨攝行

一. 傳曰: “今者悶旱, 非比于前, 爲民之道, 靡不用極, 且南壇祈雨霽祀同祭, 卽是古例, 霽祀遣大臣, 同日攝行事, 分付.”

甲申七月初八日

● 殿下齋戒

一. 曹啓曰: “祈雨親祭時, 自上逮至諸享官, 例有散致齋之規, 今此南壇親祭, 只隔二日, 散齋則勢未及舉行, 自今日殿下致齋, 不吊喪問疾, 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唯啓享事, 諸享官及近侍之官, 應從升者, 並自今日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祭百官諸衛之屬, 守衛塲門者, 各於本司淸齋一宿事, 知委何如?” 傳曰: “允.”

수정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향소에 먼저 가다.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享官들은 하루 전날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달 10일 남단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9일 동틀 무렵 향소에 먼저 나아가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사사로이 의례를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남단 기우 친제 때 높고 낮은 집사관執事官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이번 9일 동틀 무렵 향소로 먼저 갔다가 대가大駕가 단壇에 도착한 뒤 높고 낮은 집사執事 및 중사中使와 근시近侍는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규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단을 수리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남단 기우 친제 때 단상을 수리하는 등의 일

● 先詣享所

一. 曹單子: “凡大祭親行時, 諸享官前一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將至祇迎事, 禮文載錄爲白有昆, 今初十日南壇祈雨親祭教是時, 諸享官初九日質明, 先詣享所, 以黑團領祇迎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 私習儀

一. 曹單子: “今此南壇祈雨親祭教是時, 諸執事官除隸儀, 今初九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詣壇所後, 大小諸執事與中使·近侍, 以黑團領, 依例私習儀, 俾無失儀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 壇修理

一. 曹啓曰: “今此南壇祈雨親祭時, 壇上修理等事, 依例發

에 규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의 낭청을 보내 함께 검사하고, 또한 선공감에서 감역관을 별도로 정하여 속히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7월 9일

● 기우제 지내는 때 본조 판서를 파직하였다.

남단에 봉심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하늘을 공경하는 도리는 말이 불경해서는 안 되는데, 제조 이지억^{李之億}은 말을 가리지 않았다. 하늘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낮은 곳의 말을 다 듣는데, 하늘 물며 신이 지극히 가까운 곳은 어떻게겠는가. 신칙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조 판서를 파직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7월 10일

●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되 비가 내린 뒤에는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다.

전교하기를,
“아, 내가 부덕하므로 이런 극심한 가뭄을 만났고, 내 정성이 얕으므로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였다. 아, 노년에 다시 정사를 하면서 백성과 나라에 마음을 바쳤는데, 백성이 죽게 되었으니 내가 누구에게

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
眼同看檢，而亦令繕工監別定
監役官，急速舉行事，分付何
如?” 傳曰：“允。”

甲申七月初九日

● 祈雨時本曹判書罷職

一. 南壇奉審時，傳曰：“敬天之道，言不可褻慢，提調李之億語次之間不擇，天高聽卑，況神至近之地，不可無飭，罷職本曹判書。”

甲申七月初十日

● 減膳撤樂，得雨後復膳

一. 傳曰：“噫，因予否德，值此亢旱，因予誠淺，未能感孚。噫，暮年復政，心許民國，民若劉矣，予將疇托? 于今一心，只願以身贖民，今則更無祈雨之道，其將束手待雨，其所心

의지하겠는가. 지금 온 마음으로 오직 이 한 몸으로 백성을 대신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기우제를 지낼 방도가 더 이상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하니 애타는 마음이 전보다 갑절이다. 오늘 가을이 되었으니 해당 조에서 규례대로 내게 물어야겠지만, 내가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되 비가 온 뒤에는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7월 11일

● 남단과 우사단에 보사제를 설행하다.

전교하기를,
“비가 내릴 듯 내리지 않으니 애가 타고 애가 탄다. 하늘의 명령이 내려 주셨고 팔다리 같은 신하들의 정성 덕택에 이런 단비를 얻었으니 우리 백성이 거

灼，一陪于前，今日報秋，該曹當循例以稟，予何循常？減膳撤樂，得雨後復常事，分付該曹。”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尺三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甲申七月十一日

● 南壇雩祀報謝祭設行

一. 傳曰：“其雨其雨，焦心焦心，以蒼蒼陟降之賜，股肱諸臣之誠，得此甘露，吾民庶幾，報謝之舉，其豈稽滯？秋

의 소생하게 되었다. 보사제의 거행을 어찌 지체하겠는가. 이미 가을이 되었으니 또한 어찌 지체하겠는가. 보사제를 13일에 거행하되, 신위를 모시고 갈 때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고, 대축은 유신으로 채워 차임하여 반드시 내가 직접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라고 해당 조에 신칙하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남단은 대사大祀에 해당하고 우사단은 중사中祀에 속하는 곳이니 똑같이 거행하라.”

하였다.

● 선농단 보사제

전교하기를,
“선농단 보사제는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으니 내일 똑같이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정전으로 돌아가고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다.

전교하기를,
“가을이 되었으나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였는데 이미 비가 내렸으니, 옛 전례를 따라야 한다. 이미 정전으로 돌아왔으니 음식과 음악도 규례대로 다시 설행하라. 아, 옛 전례를 따라 명하였지만 내 마음이 어찌 감히 비가 내렸다고 해이해지겠는가. 아직 추수가 있으니, 아, 대소신료들은 내 뜻을 유념하여 마음을 놓지 말라.”

하였다.

節已報, 亦何²⁵⁷遲待? 報謝祭, 十三日舉行, 神位奉行時, 諸執事另擇, 大祝儒臣填差, 必若親祭之意, 申飭該曹, 祭文製下, 南壇則大祀, 雩祀中祀, 一體舉行.”

● 先農壇報謝祭

一. 傳曰: “先農壇報謝, 其待秋報, 明日一體舉行事, 分付.”

● 還御正殿復膳

一. 傳曰: “秋節雖報, 得雨爲期, 既已得雨, 古例宜遵, 既御正殿, 膳與樂, 依例復設. 噫, 雖遵古例²⁵⁸而命, 此予心豈敢以得雨而解乎? 猶在秋成, 吁嗟, 大小臣工, 體予意, 其不弛心焉.”

257 何 : 저본에는 ‘爲’.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58 例 : 저본에는 ‘祀’.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신년¹⁷⁶⁴ 7월 12일 밤

- 후직씨 위판 하나를 선농단과 우사단 두 군데에 설행해야 하는데,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우사단은 하루 물러 거행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로 인하여 삼단^{三壇}의 보사제^{報謝祭}의 향을 내일 받으려고 하였는데 방금 봉상시의 보고를 보니, ‘후직씨^{后稷氏}의 위판^{位版}이 하나 뿐인데 배위^{配位}를 선농단에 봉안하고 정위^{正位}를 우사단에 아울러 설치하니 하나의 판^板을 두 곳에 설치하여 봉행^{奉行}하기 헛갈린다.’라고 하면서 이를 본조에 공문으로 보고하였는데, 전례를 살펴봐도 같은 날 함께 제향한 일이 없었습니다. 선농단^{先農壇}의 배향^{配享}을 중시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어느 단으로 봉향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단과 선농단은 오늘 거행하고 우사단은 내일 거행하라. 향축을 지영한 뒤에 원점 유생이 거행하라.” 하였다. 【우사단은 하루 물러 14일에 거행하였다.】

- 보사제 헌관은 단을 오르내리며 삼헌을 올리게 하다.

사도묘^{思悼廟}에 거동하였을 때, 남단 보사제 헌관이 이뢰기를,

“신이 삼가 향축^{香祝}을 받들고 단소^{壇所}에 나아갔는데, 대축^{大祝}이 거행하라는 명으로 인하여 모든 희생

甲申七月十二日夜

- 后稷氏一位版, 兩設於先農壇祀, 不敢擅便, 零祀退行一日

一. 曹啓曰: “因傳教, 三壇報謝祭, 受香在明, 而即接奉常寺所報, 則后稷氏位版, 只是一位, 以配位當奉於先農壇, 又以正位並設於零祀壇, 一版兩設, 眩於奉行, 以此移²⁵⁹報臣曹, 考之前例, 曾無同日並享之節, 所當歸重於先農壇配享, 而自下不敢擅便, 將以何壇奉享乎? 敢稟.” 傳曰: “南壇·先農壇, 今日舉行, 零祀壇明日舉行, 香祇迎後, 圓點儒生舉行.” 【零祀壇退一日, 十四日行.】

- 報謝祭陞降三獻

一. 思悼廟舉動時, 南壇報謝祭獻官啓曰: “臣祇奉香祝, 來詣壇所, 而因大祝²⁶⁰舉行之命,

²⁵⁹ 移 : 저본에는 ‘枚’.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²⁶⁰ 祝 : 저본에는 ‘祀’. 『승정원일기』

과 폐백, 음악을 쓰는 등의 절차를 대사^{大祀}의 규례와 똑같이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삼헌의 예를 갖추어야 하는데 헌관은 신 한 사람뿐이니, 아헌례와 종헌례의 절차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헌관 한 명이 전례대로 오르내리며 삼헌을 행하라.” 하였다. 【선농단의 제례도 남단의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헌관에게 공문을 보냈다.】

갑신년¹⁷⁶⁴ 7월 15일

● 남단 보사제를 절제의 규례대로 거행하다.

상참과 조강^{朝講}에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속대전^{續大典}』에서 동단과 남단의 기우제에 친히 기도한 뒤에 보사제를 지낼 때는 절제^{節祭}의 규례대로 거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절제는 중사^{中祀}이니 삼헌을 갖추어야 하는데, 승지가 자세히 여쭙지 못하여 대사^{大祀}라고 전교에 냈습니다. 대사^{大祀}의 대^大자를 중^中자로 고쳐서 내린 뒤에야 앞으로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이조에서 삼헌관^{三獻官}을 차출하려고 하였으나 승정원에서 또 자세히 살펴 지휘하지 못하여 끝내 헌관 하나만 차출하였습니다. 비록 특교^{特敎}로 인하여 연달아 전^奠을 올리는 의식을 갖추었으나 끝내 구차하게 됐다는 탄식이 있

凡諸牲幣用樂等節，一依大祀例舉行，則宜備三獻之禮，而獻官只是一人，亞終獻之節，何以爲之？敢稟。”傳曰：“獻官一人，前例陞降，行三獻可也。”【先農壇祭禮，依南壇例舉行事，移文于獻官。】

甲申七月十五日

● 南壇報謝，依節祭例舉行事

一. 常參朝講入侍時，領議政洪所啓：“續大典以爲東南壇祈雨親禱後報謝祭時，依節祭例舉行云. 節祭卽中祀，具三獻，而承旨不能詳稟，大祀出於傳敎，大祀之大字，當以中字²⁶¹改下，然後此後可無做錯之慮. 且其時吏曹欲差三獻

영조 40년 7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61 字 : 저본에는 ‘祀’.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으니, 해당 승지를 추고하여 경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7월 21일

● 여러 도는 비가 온 상황을 보고하는 대로 알리라고 하다.

승정전^{崇政殿}에서 주강^{晝講}을 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아, 그저께 밤에 내린 비와 어제 내린 비는 모두 6월에 내린 비와 같았고, 오늘은 단비가 쏟아졌다.

아, 올해 가뭄은 근래에 없던 일인데 이달 초 이후 또다시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밤낮으로 마음을 썼다.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은 누가 주셨는가. 영령께서 주셨다. 우리 백성이 거의 소생할 것이니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비가 내리는 형편을 보고하는 대로 알리라고 여러 도에 분부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8월 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官，而政院亦未能詳考指揮，終至於只差一獻官。雖²⁶²因特教，以備連奠之儀，終有所苟簡之歎，當該承旨，推考警責，何如？”上曰：“依爲之。”

甲申七月二十一日

● 諸道雨澤隨報以聞

一. 崇政殿晝講入侍時，傳曰：“噫，再昨夜雨，昨晝之雨，皆若六月之雨，今日甘雨霑然。噫，今年之旱，挽近所無，而月初之後，又復亢旱，夙宵用心，惟今之霑，是誰之賜？陟降攸賜，吾民庶幾，追慕彌切，雨澤形止，隨報以聞事，分付諸道。”

甲申八月初七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

²⁶² 雖：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7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흘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8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
 로 흘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신년¹⁷⁶⁴ 8월 11일

● 영제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사대문 기청제는 오늘 향품을 받아 3일 동안 지내고
 중지하라. 향을 전한 뒤 예방 승지가 따라가서 적간
 하고 헌관과 집사들을 가려서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
 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甲申八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今夜下雨，水標看
 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甲申八月十一日

● 禋祭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四
 門祈晴祭，今日受香，三日而
 止，傳香後，禮房承旨隨往摘
 奸，獻官·諸執事擇差事，分
 付.”

을유년¹⁷⁶⁵ 5월 1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3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유년¹⁷⁶⁵ 5월 19일

● 영제를 설행하다.

예방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밤낮으로 이 마음은 농사에 있는데, 단비가 장마로
변하였으니 농사가 걱정이다.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지내고 중지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헌관·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아
정성껏 지내라고 또한 신칙하라.”
하였다.

● 기청제를 지내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단비가 장마로 바뀌었으니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기청제를 지내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乙酉五月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
審，則五尺三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乙酉五月十九日

● 禋祭設行

一. 禮房承旨入侍時，傳曰：
“夙宵此心，惟在民事，時雨成
霖，農事可憫，四門禋祭，不卜
日，自二十日，至二十二日，三
日而止事，分付儀曹，獻官·諸
執事另擇，虔誠爲之事，亦爲
申飭。”

● 祈晴祭行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時
雨成霖，自二十日，至二十二日
祈晴三日事，分付禮曹。”

● 사문영제는 하교를 기다리기로 하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계절로 말하자면 지금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고 또
날이 갠 기미가 있다. 번거롭게 할 염려가 있으니 우
선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라. 내일 향쵸를 받는 의례
는 날이 개면 하교를 기다려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사문영제를 그대로 설행하기로 하다.

승정원에서 구전으로 언지시 여쭙기를,
“사문영제의 위판과 제물은 이미 모시고 갔는데, 도
로 모시고 온 예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
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하교를 내릴 것이니 그대로 설행하라.”
하였다.

● 사문영제에서 금언하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오늘 기청제를 지내라고 명을 내렸으니 그제 농사
를 살피는 뜻과 더불어 모두 백성을 위한 의도이다.
여러 날 지내느라 해이해질 듯하니, 3일 동안 모두
오늘처럼 정성껏 지내라고 신칙하고 사문에 나아간
관원은 모두 금언하라.”
하였다.

● 祭待下教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 “以
月令言之, 此是雨下之時, 且
有開霽之意, 瀆屑可念, 姑俟
日暮, 明日受香, 若快晴, 則待
下教舉行事, 分付.”

● 祭仍爲設行

一. 政院口傳微稟曰: “四門祭
祭位版與祭物, 既已陪往, 而
曾無還陪來之例云, 何以爲之
乎? 敢稟.” 傳曰: “將欲下教
矣, 仍爲設行.”

● 祭祭禁草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 “今
日祈晴命下, 與再昨省耕之意,
同皆爲民之意, 累日行之, 似
爲懈怠, 三日皆如今日虔誠事,
申飭, 而四門進去之官, 皆爲
禁草.”

을유년¹⁷⁶⁵ 5월 23일

● 2차 영제를 여쭙니 다시 이틀 동안 보겠다고 한다.

예조가 아뢰기를,

“1차 영제는 특교로 말미암아 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비 내리는 기세가 아직 그칠 기미가 없으니 2차 영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농사가 근심스러우니 비록 여기에 마음이 쓰이더라도 번거롭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루이틀 다시 보고 하교하겠다.”

하였다.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아까 예조에서 올린 초기에 하교하였다. 아, 밤낮으로 이 마음은 농사에만 있으니, 비가 한 번 내리고 별이 한 번 드는 것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영제를 이미 지냈으나 장맛비가 그치지 않는다. 만약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 물이 불어날까 걱정이고, 혹 지나치면 침수될까 걱정이다. 승지를 기다리면서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을 졸였는데, 이러한 때에 예조에서 2차 사문영제를 지내겠다는 초기가 마침 도착하였으니, 어찌 미루겠는가. 그러나 항상 경계할 점은 하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이틀 다시 보겠다고 하교하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시기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어제 군호^{軍號}도 ‘원

乙酉五月二十三日

● 再次祭稟, 更觀兩日

一. 曹啓曰: “初次祭, 既因特教設行, 而雨勢尙無開霽之意, 再次祭,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於農可悶, 雖以此用心, 瀆褻宜戒, 更觀一兩日, 當爲下教.”

一. 承旨入侍時, 傳曰: “俄者禮曹草記下教, 噫, 夙宵此心, 唯在農事, 一雨一暘, 焉可忽耶? 祭已行, 霖雨不霽, 若此不已, 浸淫可悶, 其或過中, 水沈可悶, 以待承宣, 瞻雲憧憧, 此際禮曹再次祭稟草記適到, 其何靳持? 而常戒者瀆褻, 故有更觀一兩日之教, 更而思之, 時不可踰, 昨日軍號, 書以願晴下字, 徹曉呼之, 有所欠敬, 故更以修誠書下, 入直騎堂, 適以特進官入侍, 故

청願晴'이라고 썼는데, 새벽까지 외치면 하늘을 공경하는 데 흠이 될 것이므로 다시 '수성修誠'이라고 써서 주었다. 입직한 병조 당상이 마침 특진관으로 입시하였으므로 하교한다. 이것은 단지 나의 있는 정성을 닦는다는 뜻이다.

아, 글과 마음이 같다면 오늘 어찌 다시 비가 내리겠는가. 하교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신칙하여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유념하였다. 묵묵히 말이 없더라도 아, 저 푸른 하늘이 어찌 항상 비를 내리고 항상 별이 들게 하겠는가. 나의 덕이 부족하여 밀과 보리 농사는 풍년이 들었지만 단비가 장마로 바뀌었으니 어찌 그저 안절부절못할 뿐이겠는가. 마음이 매우 답답하다.

‘다시 날씨를 보겠다[更觀]’라는 두 글자는 백성을 소홀히 하고 정성을 지체하는 것이다. 2차 영제는 제문을 직접 지어 내리겠으니 택일하지 말고 25일에 설행하여 3일 동안 지내고 중지하라. 헌관은 유신儒臣으로 채워 차임하여 보내고, 동문東門은 홍술해洪述海, 남문南門은 박사해朴師海, 서문西門은 구상具庠, 북문北門은 이재간李在簡을 헌관으로 삼으라. 대축大祝은 통청通淸한 사람으로 채워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내일 향향을 전할 때 지영祗迎하지는 않더라도 의관을 정제하고 관위版位에 서서 바라볼 것이니 시위侍衛하는 모든 절차는 지영과 똑같이 거행하라.” 하였다.

下教，此只修在我之誠之意也。噫，書與心若同，則今日豈復下雨？其欲下教自飭，體孔聖過猶不及之訓，其雖泯默，噫，高高彼蒼，豈不欲恒雨恒暘？而因予涼德，牟麥雖登，時雨成霖，豈徒憧憧？心切悶焉，更觀二字，於民近忽，於誠近稽，再次祭祭，親製祭文以下，不卜日，以二十五日設行，三日而止，獻官以儒臣填差遣，而東門洪述海，南門朴師海，西門具庠，北門李在簡爲獻官，大祝以通淸人填差事，分付。明日傳香時，雖無祗迎，其當整衣立版位而望見，侍衛凡節，依祗迎舉行。”

● 헌관 이하는 금연하게 하다.

헌관 이하 집사들은 오늘부터 각별히 금연하라고
답전 하교하였다.

을유년¹⁷⁶⁵ 5월 24일

● 영제의 위판을 정결하게 봉안하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오늘 이처럼 음침하니 이 마음이 안절부절하다.
사문영제의 위판을 정결하게 봉안하라고 봉상시
서원書員을 불러다가 신칙하라. 금루관禁漏官이 사대
문에 나갔는지의 여부도 판위版位에 물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을유년¹⁷⁶⁵ 5월 27일

● 농사 형편을 아뢰다

예방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한창 큰비가 때맞춰 오는 시기를 맞이하여 이미 2
차 영제를 지냈으니 이 또한 백성을 위해서였다. 지
금은 장맛비가 개었으니 이후로 비와 별이 적절하다
면 추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부덕한 몸으로 또한
노쇠하였으니 참으로 무엇을 바라겠는가. 오직 저
하늘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를 기다릴 뿐이다. 어
제 헌납의 글은 내 의도는 몰랐지만 대간의 체모를

● 獻官以下禁草

一. 獻官以下諸執事, 自今日
各別禁草事, 榻前下教.

乙酉五月二十四日

● 祭位版精潔奉安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 “今
日若是沈陰, 此心憧憧, 四門
位版, 精潔奉安事, 招致奉常
寺書員, 申飭, 禁漏官四門進
去與否, 亦爲問啓於版位.”

乙酉五月二十七日

● 農形以聞

一. 禮房承旨入侍時, 傳曰:
“方當大雨時行之時, 其既再
次祭, 而此亦爲民也, 今則
霖雨開霽, 此後其若雨暘時
若, 庶幾有秋. 而噫, 以否德,
其亦衰耗, 誠何望耶? 惟俟彼
蒼蒼, 愛恤元元. 昨日納言之

언었다. 어찌 두 수령을 서용하는 것이 아까워 대번에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겠는가. 특별히 서용하여 가납^{嘉納}하는 뜻을 보이노라. 그리고 나머지 뜻도 유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내가 비록 덕이 부족하지만 지난번 하교에서 송^宋나라 신하 이항^{李沆}을 거론하였으니¹⁰, 이 의리는 익숙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보고가 지나치면 저 하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 보고가 제때 미치지 못하면 백성을 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신칙한 뜻이 대개 여기에 있다. 대체로 면임^{面任}은 수령을 속이고 수령은 도신^{道臣}을 속이며, 도신이 조정을 두렵게 만드는 일은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므로 옛날에 선왕의 하교를 우러러 들었는데, 더구나 써 내려간 장계의 내용이 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찌 신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홍수나 가뭄은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최경흥^{崔景興}의 일¹¹은 수령이 경계해야 한다. 먼저 동요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뜻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 도에 신칙하라.” 하였다.

10 지난번……거론하였으니 : 이는 같은 달 18일 연석에서 한 하교이다. 이항(李沆)은 송 진종(宋眞宗) 때 정승으로, 매일 아침 수한(水旱)의 천재(天災) 등 세세한 일까지 모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정승이었던 왕단(王旦)이 “자질구레한 일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것은 번거롭다.”라고 하자 이항은 “임금은 하루라도 근심하고 두려워할 바를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宋史 卷282 李沆列傳』

11 최경흥(崔景興)의 일 : 같은 달 18일 인천 부사 최경흥이 장계에, 인천 한 고을은 천병만마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것 같아서 바람이 부는 곳마다 꺾이지 않는 물건이 없다고 하였는데, 영조가 재앙을 과장하여 보고하였다고 여겨 그를 파직하였다. 『英祖實錄 41年 5月 18日』

章, 雖未知予意, 其得臺體²⁶³, 豈惜二令之敍用, 遽示弛弛²⁶⁴之色? 特爲敍用, 以示嘉納之意, 而餘意有不可不論者²⁶⁵. 予雖涼德, 頃者下教, 已舉宋臣李沆, 此義其知熟矣, 而其報辭之過中, 卽慢彼蒼也, 而報辭之未及, 亦忘元元, 故其所飭勵, 意蓋此也. 大抵面任欺守令, 守令欺道臣, 道臣恐動朝廷, 古²⁶⁶亦有之, 故昔年仰聞聖教矣, 況馳聘文辭, 不畏彼蒼, 豈可不飭? 於水於旱, 宜卽報之, 而若崔景興事, 守令宜戒之, 其不先動, 亦安吾民之意也, 以此申飭諸道.”

263 體 : 저본에는 ‘諫’.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5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64 弛弛 : 저본에는 ‘不弛’.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5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65 而餘意有不可不論者 : 저본에는 有不可不論者.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5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66 古 : 저본에는 ‘者’.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5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 영제의 헌관 이하에게 상을 준다.

전교하기를,

“승례문崇禮門·돈의문敦義門·숙정문肅靖門에 영제를 지냈을 때, 승례문 헌관 교리 박사해朴師海, 돈의문 헌관 부교리 구상具庠, 숙정문 헌관 수찬 이재간李在簡에게는 각기 반숙마半熟馬 1필을 내려 주라. 대축 주형질朱炯質·김재천金載天·임덕제林德濟에게는 각기 아마兒馬 1필씩 내려 주라. 제감祭監·감찰監察·축사祝史·재랑齋郎 및 찬자贊者和 알자調者에게는 각기 상현궁上弦弓 1장張을 내려 주라.”

하였다.【흥인문 헌관 홍술해洪述海는 본직으로 벌을 받았다.】

을유년1765 7월 2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청제를 여쭈다.

예조가 아뢰기를,

“때아닌 찬 비가 연일 이처럼 내리니, 추수가 가까

● 祭獻官以下賞格

一. 傳曰:“崇禮門·敦義門·肅靖門祭時, 崇禮門獻官校理朴師海, 敦義門獻官副校理具庠, 肅章門獻官修撰李在簡, 各半熟馬一匹賜給, 大祝朱炯質·金載天·林德濟, 各兒馬一匹賜給, 祭監·監察·祝史·齋郎及贊謁者, 各上弦弓一張賜給.” 【興仁門獻官洪述海, 以本職被罪.】

乙酉七月二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二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 祈晴祭稟

一. 曹啓曰:“非時冷雨, 連日如此, 秋成在近, 傷穀可悶,

운 지금 곡식이 상할까 걱정입니다. 기청제의 거행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3일 설행하기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⁷⁶⁵ 7월 22일

- 영제가 끝날 때까지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탄신일에 세손이 백관을 이끄는 사안 및 백관이 하례하는 사안은 묻지 말라고 하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인견을 위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아, 내가 갑술년^{1754,영조30}에 61세의 나이로 신축년^{1721,경종1}을 추모하였고, 올해 72세의 나이로 정축년^{1757,영조33}을 추모한다. 아, 불초하여 성의가 얕으며 부덕하고 무능하니, 왕위를 이어받은 지 40여 년에 나 이도 80세를 바라보지만 효를 다하지 못하고 제梯를 다하지 못하며 백성을 이끌지 못하고 은택이 두루 미치지 못하여 마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듯 마음이 항상 부끄럽고 두려웠다. 더구나 지난번 삼남^{三南} 지방의 큰 흉년은 지금 생각해도 꿈에서도 놀란다. 근년 이래로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작년 농사도 처음 예상과 달랐고, 올봄에는 비와 벌이 맞아 보리 농사가 풍년이 들어 추수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평안도가 가장 걱정스럽고 민을 곳은 삼

祈晴之舉，不容少緩，四門祭祭，不卜日，來二十三日爲始設行，三日而止事，知委舉行，何如?” 傳曰：“允.”

乙酉七月二十二日

- 限祭, 減膳三日, 誕日世孫率百官及百官賀, 勿稟

一.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傳曰: “噫, 予於甲戌六十一歲, 追慕辛丑, 今年七十二歲, 追慕丁丑. 嗚呼, 不肖誠淺, 否德無能, 四紀嗣服, 年又望八, 不能盡孝, 不能盡悌, 不能導率, 不能惠²⁶⁷究, 心常愧懼²⁶⁸, 若隕淵²⁶⁹谷. 況²⁷⁰頃者三南之

267 惠 : 저본에는 ‘細’.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68 懼 : 저본에는 ‘俱’.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69 淵 : 저본에는 ‘烟’.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70 況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남 지역이다. 근래 전라 감사가 보고한 장계를 보니, 비와 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몇 고을의 농사가 고르지 못한 것이 무슨 해가 되겠냐고 말하지 말라. 아, 이 마음에는 360개 고을이 똑같다. 서울의 형편으로는 영제(禳祭)를 지내더라도 얕은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고, 삼남의 경우도 서울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모르겠다. 또 능침에 전알하는 날이 열흘 안이니, 이를 말하고자 하면 마음이 더욱 건디기 어렵다.

아, 재위한 40여 년 동안 여러 능을 두루 배알하였는데, 아, 무신년^{1728, 영조4}에 효장세자에게 교외에서 지영하라고 명하였으나 결국 하지 못하였다. 을묘년^{1735, 영조11} 이후로는 달마다 한 차례만 하였고,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세손과 함께 행차하고 싶은 것이 본디 당연하고, 마음도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태평하다고 두려워한다. 요즘 비 오는 형세를 보니 기일이 다가왔다. 『자성편』에도 말하였으니, 안절부절할 이 마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팔도의 백성을 돌아보건대 행여 작년처럼 막중한 예를 유념하면서 비가 그치지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요즘에도 이 일로 밤낮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 아,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겠으며, 푸른 하늘이 어찌 백성을 돌보지 않겠는가. 이는 내가 불초하고 부덕한 탓이다. 아, 무신년에 밤새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면서도 음식 가짓수를 줄였다. 더구나 올해는 더욱 놀라운 점이 있으

大歉, 尙今追思, 夢裏猶愕. 近歲以來, 其雖稍登, 昨年農事, 已違初料. 今春雨暘適中, 麥事告登, 望切西成, 關西最可悶也, 所恃者三南. 近觀湖南道臣狀聞, 雨暘不適, 莫云數邑不均, 何傷之有? 吁²⁷¹嗟此心, 三百六十州, 卽一也. 以都下事勢, 雖行禳祭, 莫知淺誠能孚, 而至於三南, 亦莫知比京中若何. 且謁陵之期在近一句之內, 其欲言此, 心尤難耐. 噫, 臨御四紀, 遍謁諸陵, 吁嗟戊申命孝章郊外祇迎事未果焉, 乙卯以後, 其所月²⁷²禮, 只有一次, 于今望八, 與世孫, 其欲同行, 固當也, 情亦然矣, 而予則猶恐太康, 觀近雨勢, 期日且迫, 述編旣云, 此心憧憧, 何可勝言? 顧八道之民, 恐或若昨年, 念莫重之禮, 亦恐未晴, 近者以此, 夙宵

271 吁 : 저본에는 '呼'. 『송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72 月 : 저본에는 '同'. 『송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니, 2년 몇 달 사이 세 차례 가례청嘉禮廳을 설치한 것이다. 유사들의 낭비와 연이은 반상盤床이 옛날에 어찌 있었겠는가.

임자년^{1732, 영조8} 기풍군紀豐君 유언국俞彦國이 대책對策에 쓴 ‘술 냄새[酒臭]’ 등의 구절을 홀로 외면서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여겼는데, 이는 그래도 절차상의 일이다. 다스린 지 40여 년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가. 몇 년 동안 강학講學하면서 실천한 것이 무엇인가. 대략 말하자면 옛 사람이 ‘신하는 수고하고 임금은 편안하다.’¹²라고 하였으나 지금 임금은 감히 하루도 쉬지 못하는데 신하가 하루의 수고를 피하려 하고, 몇 달 동안 직임을 맡으면 몇 년처럼 괴로워한다. 하루 대청臺廳에 나오면 이튿날 다시 패초를 어긴다. 심지어 요즘 어떤 대신臺臣은 조례朝禮 시간이 늦가을 같다고 말하니, 나에게서는 정문일침頂門一針이라 할 수 있다. 어제 상소하여 임금을 권면하고 오늘 차대에 패초를 어겼으니, 그 말을 실천하지 않은 것은 대신臺臣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40년 동안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지나친 겸양이겠는가. 훈계하는 말이 그저 겉치레로 돌아가고 강학할 때 말과 행동이 미답지 못해서이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공자가 ‘예禮이다 예이다 하지만 옥백玉帛을 이르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고, 옛사람도 ‘마음으로 비를 얻

用心. 噫, 元元何辜? 蒼蒼亦豈不眷顧? 而寔予不肖, 寔予否德, 吁嗟戊申, 聞通宵之雨聲, 坐以待朝, 其猶減膳, 況今年尤有霏然者, 二年數朔之內, 三設嘉禮廳, 有司之浮費, 盤排之聯翩, 古豈有哉? 自誦壬子年紀豐君俞彦國對策中酒臭等句, 自慙于中, 而此猶節目間事, 臨御四紀, 所爲者何? 幾年²⁷³講學, 實踐者何? 畧以言之, 古人有臣勞君逸之語, 而其君莫敢²⁷⁴一日休, 而其臣欲免一日勞, 數朔居職, 苦若居年, 一日詣臺, 翌復²⁷⁵違牌, 甚至於近者一臺臣朝禮暮秋之說, 於予可謂頂²⁷⁶門一針, 而昨陳章而勉君, 今違牌於次

273 年 : 저본에는 ‘乎’.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74 莫敢 : 저본에는 ‘若欲’.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75 復 : 저본에는 ‘得’.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76 頂 : 저본에는 ‘頃’.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2 신하는……편안하다 : 왕우칭(王禹偁)의 「대루원기(待漏院記)」에 보인다.

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영제를 지내라고 명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크게 신칙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성을 다하겠는가. 우선 나에게부터 하교할 점이 있다. 아, 여든을 바라보는 노년에 풍년이 들까 기대하였는데, 만약 처음 예상과 빗나간다면 무슨 낮으로 하늘을 보겠으며, 무슨 낮으로 백성을 대하겠는가. 오늘부터 24일 영제를 지낼 때까지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여 저 하늘에 사죄하겠다. 임금의 명령은 미더워야 하는데 그 또한 고심이다.

근래 공주가 혼인할 때¹³ 유밀과油蜜果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내가 지나치게 사양한다고 여겨 오히려 내 말을 유념하지 않았다. 관례와 혼례는 마찬가지로 유밀과가 놓인 상을 직접 보았으니,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근래의 일은 신칙해야 한다. 행 부호군 구현겸具顯謙을 월봉越俸 1등 등에 처하고, 이후로는 유밀과를 만들어 오는 것은 일체 금지하라. 이 하교는 바로 내 뜻을 인도하는 한 가지 단서이다.

아, 내가 갑술년에 신축년을 생각하여 비록 몇 그릇의 음식조차 전¹⁴에 아뢰었으나 끝내 받지 않았으니, 아, 그 당시 자성께서 굶어살피셨다. 아, 지금 정축년을 추억하건대, 만약 받는다면 이는 자성을 저버리는 것이니 그 불효가 이보다 심한 것이 무엇이었

13 공주가 혼인할 때 : 영조의 막내딸 화길옹주(和吉翁主)의 혼례를 가리킨다. 남편은 구선행(具善行)의 손자 구민화(具敏和)이며, 이달 12일 혼례를 올렸다.

對, 其言不踐行, 非臺臣之過, 卽予四十年導之者也, 此豈過謙²⁷⁷? 訓²⁷⁸飭之言, 徒歸文具, 講學之際, 言行不孚, 寔予之過, 寔予之過. 子²⁷⁹曰: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古人亦云得之方寸, 今²⁸⁰雖命行祭, 予不大加自飭, 何以致誠? 先自寡躬, 亦有下教者. 嗚呼, 望八暮年, 其豐其豐, 若違初料, 何顏仰蒼蒼? 何顏對元元? 自今日至二十四日, 限祭, 減膳三日, 仰謝彼²⁸¹蒼蒼, 君令當信, 其亦苦心, 近者王姬之婚, 於油蜜果, 切不爲之, 謂予過讓, 猶不體予, 冠婚一也, 而蜜果之

277 謙 : 저본에는 '歉'.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78 訓 : 저본에는 '實'.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79 子 : 저본에는 '不'.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80 今 : 저본에는 '而'.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81 彼 : 저본에는 '猗'.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겠는가. 제갈량의 <출사표>에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은 일체’라고 하였으니 지금 스스로 신칙해야 한다. 어찌 구구하게 하겠는가. 대소를 막론하고 가례^{嘉禮}를 치른 뒤 탄일에는 진찬례^{進饌禮}를 연다. 아, 생각건대 내달 1일 안에는 삼찬^{三饌}이 오겠지만 나이로 말하자면 결코 받을 수 없고, 백성을 위해서는 더욱 받을 수 없으니, 온 마음이 안절부절못하다. 옛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백성이다. 영제를 지내더라도 만약 경들에게 유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요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 이처럼 하교하니 이는 하늘에 호소하는 것이요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내가 고수할 것이다. 내가 고수할 것이다.

이번 가례청^{嘉禮廳}의 여러 물건은 이미 다 만들었고 혼인하는 날도 멀었는데, 청의 이름과 당상과 낭청은 그대로 남아 있다. 부득이 미리 만들었으나 미진한 것을 제외하고 여러 장인들은 추수 때까지 정지하고 원역^{員役}은 원래 요포^{料布} 이외에는 절대로 추가로 주지 말라. 아, 이것은 오히려 말단적인 일이지만 내 스스로 맺었다. 비록 내게 묻더라도 하교하였을 것이니, 지금 어찌 하유하지 않겠는가. 탄신일에 세손이 백관을 이끌고 백관들과 하례하는 사안은 내게 묻지 말라.”

하였다.

床親睹，往者不可追，近者其宜飭，行副護軍具顯謙越俸²⁸²一等，此後以油末造來²⁸³者，一切禁之，此下教，即導予意之一端。噫，予於甲戌，追思辛丑，雖數器之饌²⁸⁴，奏於殿而終不受，吁嗟，其時慈聖²⁸⁵之所下燭者，嗚呼，今年追憶丁丑，其若受焉，此仰負慈聖也，其爲不孝，孰甚於此²⁸⁶？諸葛之表曰宮府一體²⁸⁷，今當自飭，其何²⁸⁸區區？無論大小，過嘉

282 俸：자본에는 ‘捧’.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83 來：자본에는 ‘成’.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84 饌：자본에는 ‘饌’.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85 聖：자본에는 ‘殿’.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86 孰甚於此：자본에는 ‘熟甚於’.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87 一體：자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288 何：자본에는 ‘曰’.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禮後誕日，進饌²⁸⁹禮也。噫，思來月一日之內，三饌²⁹⁰當來，以年言之，決不可受也，爲民言之，尤不可受也，一心憧憧，憶昔一念耿耿吾民，雖行禋祭，若不論卿²⁹¹，此欺蒼也，欺民也，若是下教，此籲蒼也，爲民也，予當固守，予當固守。今番嘉禮廳凡諸等物，同已造成，婚期²⁹²亦遠，廳名與堂郎仍存，不獲²⁹³已預造未盡者外，凡諸工匠，限秋成停止，員²⁹⁴役元料布切外，勿加下。噫，此猶末節，躬自結²⁹⁵之，雖稟，自

289 饌：저본에는 '膳'.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90 饌：저본에는 '膳'.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91 卿：저본에는 '心'.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92 期：저본에는 '欺'.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93 獲：저본에는 '護'.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94 員：저본에는 '欠'.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95 結：저본에는 '詰'. 『승정원일기』

有下教，而今何不論？於誕日，
世孫率百官與百官賀，勿稟。”

정해년¹⁷⁶⁷ 6월 8일

● 경기 농사 형편을 보고 기우제를 지내다.

경기 감사 김충정^{金鍾正}의 장계에,

“도내 각 읍은 한창 농사로 바쁜 계절을 맞이하였는데,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아 모내기하는 일이 점차 늦어지고 있으니, 농사가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각 읍의 영험한 곳에 택일하지 말고 기우제를 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6월 8일

● 돈의문에 가서 농민을 불러 보다.

육상궁에 거둥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아, 비를 바라는 마음이 한창 간절하니 비가 쏟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마음은 여전히 안절부절하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뜻밖에 재숙^{齋宿}하고 지금 여기에 왔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처음에는 비가 쏟아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돌아갈 생각이었다. 지금 비 내리는 소리는 참으로 뜻밖이니 이것이 누구의 은택인가. 내가 비록 이처럼 형편없지만 명령께서 주신 비이다. 날이 저물어 비록

丁亥六月初八日

● 京畿農形祈雨

一. 京畿監司金鍾正狀啓內：
“道內各邑，方當劇農之節，
尚靳霈然之澤，移秧一節，漸致愆期，民事萬萬悶慮，各邑靈驗處，不卜日，祈雨祭設行事”狀。

丁亥六月初八日

● 御敦義門召見農民

一. 毓祥宮舉動教是時，傳曰：
“噫，望雨方切，雖聞霈然，此心其猶憧憧，昨夕今朝，料表齋宿，今來于此，若不得雨，初意留此待霈然而回，今者雨聲，誠是望外，是誰之賜？不肖雖若是不肖，陟降攸賜，限其日

영조 41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들관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마음을 느긋하게 풀고 돌아갈 수 있었겠는가.

문루門樓는 여전히 높으니, 향香을 받는 문에 앉아서 경기 백성을 만나보고 들어갈 것이다. 경기 감사로 하여금 근처의 농민들을 불러 대령하도록 하라. 아, 오늘이 어찌 마음을 놓을 날이겠는가. 이 또한 옛적 선왕께서 ‘살갓인들 아깝겠는가.’라고 하신 하교를 본 받아서이다. 자식된 자가 선조의 뜻을 본받지 않으면 더욱 어찌 효라고 하겠는가. 아, 옛날에도 이렇게 하교하셨으니 여든을 바라보는 불초한 내 마음이 더욱 어떻게겠는가. 아, 이 마음은 오늘 먹구름이 내려 볼 것이다.”

● 전교

전교하기를,

“아, 명령께서 수십 년 뒤에도 백성을 돌보아 주시기를 이처럼 부지런하고 간절히 하는데, 불초한 내가 정성이 미답지 못하여 3촌 정도의 비만 내렸을 뿐 쏟아질 가마가 아직도 막연하니, 이는 내 정성이 얇아서이다. 지금 문에 들어서자 아, 저 하늘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을 위로하니, 어찌 오늘 내 마음이 조금 풀렸을 뿐이겠는가. 실로 만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다. 성인도 고집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았으니, 하물며 나는 어떠하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더 이상 빗방울도 볼 수 없다면 오늘 무슨

暮, 雖不能瞻²⁹⁶野色, 豈可泄泄而回? 門樓猶高²⁹⁷, 當坐受香之門, 當見畿民而入, 令畿伯召近處農民以待. 嗚呼, 今日豈暇²⁹⁸豫之日乎? 此亦體昔年何惜肌膚之教, 爲人子不體先志, 尤豈曰孝乎? 嗚呼, 昔年其猶此教, 望八不肖, 此心尤若何? 吁嗟此心, 今日同雲亦臨.”

● 傳敎

一. 傳曰: “嗚呼, 陟降幾十年之後, 眷顧元元, 若是勤也懇, 而不肖小子, 其誠未孚, 三寸報尺, 其需猶邈, 寔予誠淺誠淺, 今方臨門, 嗚呼彼蒼, 諒此心, 慰元元, 豈特予今日之志小紓? 寔於萬生靈濟活之²⁹⁹—

296 瞻: 저본에는 '膳'.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97 高: 저본에는 '亨'.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98 暇: 저본에는 '可'.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299 於萬生靈濟活之: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마음으로 어가를 돌려 편히 눕겠는가.”
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6월 9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5월 이후로 비가 계속 내리지 않았고, 몇 차례 뿌렸지만 곧바로 가물었습니다. 어제 내린 비는 오랜 가뭄 끝에 내렸는데 밤새 구름이 흐려 한 번 쏟아지기를 바랐지만 도로 날이 개어 아직 비가 내리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1차 기우제는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지에 3품 관원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11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 하늘이 어질고 자애롭게 알려 주니, 어찌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아, 어제 내린 비에 대해서는 엇그제 어제^{御製}에 이미 하유하였다. 이 또한 명령께서 내려 주신 것인데, 내가 부덕하고 정성이 얇은 탓에 끝내 쏟아지지 않으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이 또한 불초한 내가 억지로 어가를 돌리면서 마음은 여전히 소차^{小次}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청은 참으로 예관의 체모에 맞으니, 청한대로 거행하라. 이러한 때에 어찌 평상시

期會也, 毋固毋必, 聖人猶不爲, 況予乎? 雖然, 復³⁰⁰不見點雨, 今日何心回駕便臥乎?

丁亥六月初九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 “五月以後, 雨澤連斷, 雖有數次之霑灑, 旋即曠乾, 昨日之雨, 得於久旱之餘, 竟夕雲陰, 庶幾一霈, 而還復開霽, 雨意尙闕, 言念民事, 誠爲渴悶. 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遣三品官, 不卜日, 來十一日設行之意, 分付何如?” 傳曰: “嗚呼, 仁愛之告, 豈不恤元元? 而嗚呼, 昨日之雨, 三昨御製既諭, 此亦陟降之攸賜, 而因由否德, 亦由誠淺, 竟靳一霈, 是誰之愆? 此亦由不肖勉強回駕, 心猶在於小次. 此時此請, 誠得禮官之體, 依請舉行, 而此時何循常例? 堂下三品中,

300 雖然復: 저본에는 ‘若此後.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3품 당하관 중에서 유신^{儒臣}으로 가려 차임하고 향을 지영^{祇迎}할 때의 의주^{儀註}는 그만두고 일체 거행하라.” 하였다.

● 제관을 가려 차임하다.

비망기에,
“아, 여든을 바라보는 노년에 친히 지영^{祇迎}하니,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모두 정3품 당상관으로 정하라. 시임 승선을 차임해야 하는데 3원은 이미 대신^{大臣}을 데리러 나갔고 또 지영과 겹치니, 모두 예전에 승지를 지낸 사람으로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 위판을 받들고 갈 때 정결함을 다하게 하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이 하교를 반포하러 봉상시가 받들고 갈 때 정결함을 다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以儒臣擇差，當香祇迎，儀注置之，一體舉行.”

● 祭官擇差

一. 備忘記：“噫，望八暮年，親爲祇迎，豈循常例？皆以堂上³⁰¹正三品爲定，差時任承宣，則三員既偕來，且值³⁰²祇迎，皆以曾經承旨擇差。”

● 位版奉往致潔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此下教頒布，奉常寺奉往時，致精事³⁰³，分付.”

301 堂上：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302 值：저본에는 ‘隨’.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03 致精事：저본에는 ‘致潔處’.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정해년¹⁷⁶⁷ 6월 10일

● 경상도 기우제

경상 감사 김응순^{金應淳}의 장계에,

“각 고을의 보고를 연이어 받으니, 지금 하지가 이미 지나 절기가 점점 늦어지는데 뜨거운 햇빛이 계속 내리쬘고 비가 내릴 조짐은 아득합니다. 옮겨 심은 모는 곧바로 말라 손상되는데 천수답이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가망이 없습니다. 농사가 너무나 애타고 걱정이니, 가뭄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고을은 택일하지 말고 기우제를 지내겠습니다.” 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6월 12일

● 황해도 기우제

황해 감사 이담^{李潭}의 장계에,

“지금 하지는 이미 지났고 초복이 머지 않았는데, 며칠 사이에 비가 크게 쏟아지지 않으면 농사가 걱정입니다. 우선 4, 5일 살펴보고 기우제를 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 수본에, ‘오늘 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촌 7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丁亥六月初十日

● 慶尙祈雨

一. 慶尙監司金應淳狀啓內：“連接各邑所報，則目今夏至已過，節序漸晚，而烈陽連曝，雨意邈然，已移之秧，旋即枯損，奉天之地，無望移插，民事萬萬渴悶，被旱最甚邑，祈雨祭，不卜日設行事。”狀。

丁亥六月十二日

● 黃海祈雨

一. 黃海監司李潭狀啓內：“目今夏至已過，初伏不遠，數日之內，如不得大霈，則民事可悶，姑觀四五日，祈雨祭設行事”狀。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夜下雨，水標看審，則六寸七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宰臣}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4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용산강과 저자도를 적간하다.

전교하기를,

“아, 노년의 마음은 오로지 백성에게 있는데 극심한
가뭄이 이와 같다. 나는 햇볕이 쨍쨍 내리쬘는 것보
다 심하다고 여긴다.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고, 비
가 내리더라도 곧바로 그치니, 이는 누구의 허물인
가. 허물은 나 한 사람에게 있다. 올해 농사가 때를
놓치면 어찌 좋은 밥이 달겠는가. 더구나 아무리 정
성이 부족하다지만 이처럼 쇠약하고 기운도 없어 친
히 기우제를 지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다.
침상에서 끙끙거리고 있자니 이 마음이 갑절로 더
한다.

1차 기우제는 이미 특명을 내렸으니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헌관은 정2품 중에서 가려 차
임하고 대축^{大祝} 역시 시임 유신으로 채워 차임하며,
집사들도 각별히 가려 뽑으라. 두 곳 또한 입직한

● 再次祈雨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
山江·楮子島遣宰臣，不卜日，
來十四日設行之意，知委何
如？” 啓依所啓施行。

● 龍山江·楮子島摘奸

一. 傳曰：“噫，暮年一心，其惟
元元，亢旱若此，予則曰³⁰⁴有
甚於烈陽杲杲，欲雨不雨，雖
雨旋止，是誰之咎？咎在一
人，今年穡事，其或愆期，何甘
玉食？況其雖誠淺，衰若此而
氣亦薺，雖欲親行，其勢未由，
涖涖寢席，此心一倍。初次既
有特命，何循常例？獻官以正
二品中擇差，大祝亦以時任
儒臣填差，諸執事亦爲另擇，
而兩處亦令入直部官，今日巡
審，其或不潔處，使之卽爲來
奏。”

304 日：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43년 6월 12일 기사에 근거
하여 보충

부관으로 하여금 오늘 순찰하여 살피고 혹시 불결한 곳이 있으면 즉시 와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저자도를 다시 적간하다.

승전색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저자도에 적간하는 관원을 다시 보내 정결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아뢰라.” 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6월 13일

● 수표를 재촉하다.

전교하기를,
“지난번 수표단자가 지체되었는데, 오늘도 이와 같으니 중간에 지체되어 그런 것인가? 해당 예조 관원은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촌 5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楮子島更摘奸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 “楮子島摘奸官更送, 精潔與否知奏.”

丁亥六月十三日

● 水標催促

一. 傳曰: “頃者水標單子遲滯矣, 今又若此, 中間遲滯而然耶? 當該禮曹官員知悉.”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寸五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전교하기를,

“이번 극심한 가뭄은 햇볕이 쨍쨍 내리쬘는 것보다 심하여 비가 내리다가도 금방 그친다. 아, 1차 기우제를 지냈으나 내 정성이 얇아 하늘의 감응이 없었는데,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가 쏟아질 조짐이 있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그치고 여전히 예전처럼 부슬부슬 내리니, 이는 누구의 허물인가. 실로 나의 허물이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얼마 전에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는 명을 내렸는데 대신大臣이 아뢰어 말로 인하여 형세를 보아 중지하고자 하였다 아, ‘그림자라도 살피기를 바랍니다.’¹⁴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내가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때, 이러한 해에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아, 친히 기도하지도 못하여 누운 채로 마음을 줄이고 있으니, 이는 40년 만에 처음이다. 어찌 걱정스럽지 않겠는가. 성심으로 친히 기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바람도 없이 물결이 일어나 나랏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정승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허물이다. 나의 일 때문에 백성이 폐해를 입으니 이는 나의 허

14 그림자라도 살피기를 바랍니다 : 길으로 드러난 현상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실체를 파악하라는 의미이다. 한 성제(漢成帝) 때 천제지변이 속출하자 매복(梅福)이 왕황후(王皇后)의 동생인 대장군 왕봉(王鳳)이 정권을 농단하기 때문이라 여기고 상소하여, “외척의 권세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그 형제를 보지 못하시면 그 그림자를 관찰하기 바랍니다.[外戚之權, 日以益隆, 陛下不見其形, 願察其景.]”라고 하였다. 『漢書 卷67 梅福傳』

● 減膳

一. 傳曰: “今番亢旱, 有甚於烈陽, 乍雨旋止, 噫, 初次祈雨祭後, 因予誠淺, 尚未冥應, 昨夜今朝, 庶有霈然之徵, 朝來旋止, 霖霖霖霖, 猶若前日, 是誰之咎? 寔予之愆, 元元何辜? 頃者有減膳之命, 因大臣所奏, 其欲觀勢中止. 噫, 願察其影, 此亦予所召, 此等之時, 此等之年, 何循常例? 噫, 親禱亦不能, 臥³⁰⁵之焦心, 此則四十年初也, 豈不可悶可悶? 未能誠心親禱, 寔予之愆. 無風生浪, 國事若此, 寔予之愆. 不能誠孚相臣, 寔予之愆. 因予之故, 吾民受弊, 寔予之愆. 有一於³⁰⁶此, 誠無拜頌之心, 頃者既命中止, 若此何能伸予心? 若不霈然, 食豈下咽? 得甘霈之前, 何受常供? 自今日

305 臥 : 저본에는 ‘臣’.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1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06 於 : 저본에는 ‘分’.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1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물이다. 이중에 하나만 있어도 참으로 선조를 뵈면
 목이 없거늘, 지난번 중지하라고 명하였으니 이렇게
 한다면 어찌 내 마음을 펼 수 있겠는가. 만약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음식이 어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
 는가. 단비가 쏟아지기 전에는 어찌 평소같은 음식
 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음식 가짓수를 줄여
 하늘에 이 마음을 알리겠다고 사옹원에 분부하라.
 오늘은 이미 봉입하였으니 내일부터 거행하되, 대전
 만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6월 14일

● 수표단자를 낭청이 직접 올린다.

전교하기를,

“수표단자를 재촉하여 예조 낭청으로 하여금 직접
 올리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이상 넘쳐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減膳, 諭³⁰⁷ 此心于蒼穹事, 分
 付廚院. 今日已捧³⁰⁸, 自明日
 舉行, 只減膳于大殿事, 分付.”

丁亥六月十四日

● 水標單子郎廳親呈

一. 傳曰: “水標單子催促, 使
 禮曹郎廳親呈事, 分付.”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 ‘今夜下雨, 水標看
 審, 則十尺之上過流’是如爲白
 臥乎事.”

307 諭: 저본에는 ‘謝’.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1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08 捧: 저본에는 ‘封’.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1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기를 청하였지만 윤택하지 않다.

예조의 계사에,

“어제 내린 전교에 단비가 쏟아질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큰비가 한창 쏟아지니 농사가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내일부터 음식 가짓수를 평소대로 회복하는 일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쏟아지는 단비는 실로 뜻밖이다. 이는 실로 저 하늘과 영령이 백성을 위하여 내린 것이니, 우리 백성이 거의 소생할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옛사람이 ‘비가 내렸다고 마음을 놓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경솔히 음식 가짓수를 먼저 회복하겠는가. 여러 도의 장계에서 고르게 적셨는지 여부를 보고 하교하겠다.”

하였다.

● 경기는 계속 기우제를 지낸다.

경기 감사 김종정(金鍾正)의 장계에,

“각 고을의 보고를 연이어 보니, 이달 12일과 13일 재가를 적실 정도나 호미를 적실 정도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 뒤에 연일 비가 내리니 몹시 다행이지만, 남은 풀을 그루같이하기에는 겨우 적실 정도인지라 모내기는 물을 끌어들이는 곳 외에는 모두 하지 못하였습니다. 절기가 점점 늦어져 농

● 請復膳不許

一. 曹啓辭：“昨日所下傳教，得甘露前減膳事，命下矣。大需方降，民事萬幸，自明日復常膳事，依例舉行之意，分付何如？”傳曰：“今者甘露，實是料表，此誠蒼蒼陟降，爲元元賜，吾民庶幾，而雖然，古人云，勿以得雨而解心，復膳豈可輕先？覽諸道狀聞均沾與否，當下教矣。”

● 京畿仍行祈雨

一. 京畿監司金鍾正狀啓內：“連接各邑所報，則本月十二日十三日，或得犁許，或得鋤許，亢旱之餘，連日得雨，爲幸雖切，而餘草根耕，墓得沾潤，而移秧則引水處外，皆未能爲之，節序漸晚，民事渴悶，祈雨

사가 애타고 걱정이니, 기우제를 연이어 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6월 15일

●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다.

약방이 입진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비록 단비가 쏟아졌으나 어제 이미 옛사람의 뜻을
하유하고 예조의 초기^{草記}를 윤택하지 않았다. 지금
이미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였고, 도제조도 간청하니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라고 사옹원에 분부하라.”
하였다.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의 계사에,
“어제 내리신 전교에 기우제는 형편을 보아 거행하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제부터 밤새 큰비가 쏟아
져 지금 이미 두루 적셨으니 농사가 천만다행입니
다. 기우제를 다시 설행해서는 안 되니, 지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 보사제는 입추 뒤에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의 계사에,
“2차 기우제를 지내자 큰비가 내렸으니 보사제를 설

祭連次設行事”狀.

丁亥六月十五日

● 復膳

一. 藥房入診時, 傳曰: “雖得
甘霖, 昨日已諭古人之意, 禮
曹草記漸許, 目今已報過料,
都提調其亦懇請, 復膳之意,
分付廚院.”

● 祈雨祭停止

一. 曹啓辭: “昨日所下傳教,
祈雨祭觀勢舉行事, 命下矣.
自昨大霈通宵, 今已周洽, 民
事萬幸. 祈雨祭不當復行, 今
姑停止, 何如?” 傳曰: “允.”

● 報謝祭立秋後設行

一. 曹啓辭: “再次祈雨, 既得
大霈, 報謝祭當爲設行, 而庚

행해야 합니다. 경진년¹⁷⁶⁰에 입추 뒤에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보사제는 예전 하교대로 입추에 택 일하여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6월 18일

● 평안도 기우제

평안 감사 박상덕^{朴相德}의 장계에,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보니, 봄여름 이후 간간히 몇 차례 비가 내렸지만 아직 쏟아지지는 않았습니 다. 지난달 11일 비가 조금 내린 뒤로 구름이 짙으 나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점점 심해지니, 택일하 지 말고 기우제를 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 황해도 기우제

황해 감사 이담^{李潭}의 장계에,
“도내 각 고을에 지난달 16일 이후 극심한 가뭄이 점점 혹독해져 들판의 논과 골짜기의 논을 막론하고 김매기가 점점 늦어지니 농사가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실행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 강원도 기우제

강원 감사 민백흥^{閔百興}의 장계에,

辰年有立秋後舉行之命矣，報謝祭，依前下教，立秋擇日設行，何如？”傳曰：“允。”

丁亥六月十八日

● 平安祈雨

一. 平安監司朴相德狀啓內：
“即接各邑所報，則春夏以後，間得數次之雨，而一需尙靳，前月十一日小雨以後，密雲不雨，嘆乾轉劇，不卜日，祈雨祭設行事”狀。

● 黃海祈雨

一. 黃海監司李潭狀啓內：“道內各邑，去月十六日以後，亢旱轉酷，勿論野畝谷畝，鋤耘漸愆，民事渴悶，祈雨祭，使之不卜日設行事”狀。

● 江原祈雨

一. 江原監司閔百興狀啓內：

“각 고을의 보고를 연이어 보니, 영동^{嶺東}과 영서^{嶺西}를 막론하고 가을같이한 밀과 보리는 베었고 봄보리는 거의 다 여물었습니다. 원주^{原州}와 이천^{伊川} 등 8개 고을은 극심한 가뭄이 매우 참혹한데 비가 끝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점차 늦어져 모내기할 시기를 놓쳤으니 기우제를 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 충청도 기우제

충청 감사 이중호^{李重祐}의 장계에,
“지금 초복이 머지 않았는데 절기가 점차 늦어져 농사가 애타고 걱정이니, 기우제를 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 전라도 기우제

전라 가도사 전주 판관 김광묵^{金光默}의 장계에,
“올해 절기가 조금 늦다고 하지만 소서가 다가왔는데도 아침에는 흐리고 저녁에는 짙어져 이미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내기하는 때를 놓치면 농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7월 1일

비망기에,

“連接各邑所報，則勿論嶺東西，秋耕兩麥刈取，春牟幾皆登熟，至於原州伊川等八邑段，亢旱孔慘，終靳斯需，節序漸晚，移秧愆期，祈雨祭設行事”狀.

● 忠淸祈雨

一. 忠淸監司李重祐狀啓內：
“顧今初庚不遠，節序漸晚，民事渴悶，祈雨祭設行事”狀.

● 全羅祈雨

一. 全羅假都事全州判官金光默狀啓內：“今年節序，雖曰差晚，小暑將迫，而朝陰暮暘，旱氣已成，移秧一事，若是愆期，民事萬萬罔措，祈雨祭不卜日設行事”狀.

丁亥七月初一日

一. 備忘記：“今予此心，惟在

“지금 나의 이 마음은 오직 백성에게 있으니, 지난번 비가 쏟아진 뒤 며칠이 지났는가. 지금 이미 반 달이 지났다. 지난번 가뭄에는 연달아 가랑비나마 내렸는데, 이번에는 열흘 가까이 해가 짹짹하니 장계를 보면 걱정이다. 이 또한 내가……그중에 땅에 모를 쫓자마자 이처럼 되었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오늘은 비가 내릴 기미가 제법 있으니, 간절히 바란다. 만약 비가 쏟아진다면 우리 백성이 소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위를 가시게 하는 약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는데 전례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으니, 수표단자가 와야 문후에 답하겠다.” 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7월 11일

● 보사제

예조의 단자에,
“용산강과 저자도의 보사제는 입추 뒤에 거행하라고 이미 계하하셨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日官}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15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元元，頃者霈然之後，其幾日，今已半朔，頃者之旱，連有微雨，今則烈陽幾十日，其狀聞視之可悶，此亦予³⁰⁹……其中纔插土³¹⁰若此，何言？今日頗有雨意，其望其望，其若霈然，吾民庶幾，若靳，清暑之劑何益？方寸爲民，豈有前例？予則自修人事，待水標宜答問候矣。”

丁亥七月十一日

● 報謝祭

一. 曹單子：“龍山江·楸子島 報謝祭立秋後舉行事，已爲啓下矣。報謝祭吉日，令日官推擇，則今七月十五日爲吉云。以此日設行之意，分付何如？” 啓依所啓施行。

³⁰⁹ 이 또한 내가 : 『승정원일기』의 용례에 근거한 바 이 뒤에 결락된 문장이 있는 듯하다.

³¹⁰ 插土 : 저본에는 ‘押出’,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7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 보사제는 정2품을 차임하여 보낸다.

약방이 입진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보사제는 원래 해당하는 품계가 있는데, 이번에 내린 비는 실로 저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당시 이미 정2품에게 정성껏 보사제를 지내라고 명하였으니, 그 품계대로 예조에 분부하라. 그날 향을 지영_{祇迎}할 것인데 마침 망제_{望祭}와 겹치니 일체 향을 지영_{祇迎}하라고 또한 분부하라.”
 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윤7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_{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해년¹⁷⁶⁷ 윤7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_{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 報謝祭正二品差送

一. 藥房入診時, 傳曰: “報謝自有當品, 而今番得雨, 寔由彼蒼, 其時既命正二品, 虔誠報謝, 宜從其品, 分付儀曹, 其日當香祇迎, 而適值望祭, 當一體香祇迎, 亦爲分付.”

丁亥閏七月二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 ‘今夜下雨, 水標看審, 則二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丁亥閏七月二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 ‘今夜下雨, 水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다.

● 기청제

비망기에,

“가을장마가 이와 같으니 기청제를 지내야겠다. 오늘 먼저 차임하고 내일 나아가라. 헌관은 유신으로 차임하여 정하고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오늘 모두 채워 차임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다리다가 내일 향을 전달하겠다.”

하였다.

● 기청제는 29일 설행하기로 하다.

예조의 단자에,

“가을장마가 이와 같아 기청제를 지내야 하니 내일 향을 전달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는 오는 29일 설행하기 시작하여 전례대로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기청제는 다시 하교를 기다리라고 하다.

비망기에,

“기청제는 다시 하교하면 하라.”

하였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내일 다시 하교하겠으니 우선 기다리라.”

● 祈晴

一. 備忘記：“秋霖若此，當爲祈晴，今日先差，明日進詣，獻官以儒臣差定，祭文當製下矣。今日盡爲填差，致虔以待，明日傳香。”

● 祈晴二十九日設行

一. 曹單子：“秋霖若此，當爲祈晴，明日傳香事，命下矣。四門祭祭，來二十九日爲始設行，而依前例，三日而止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 祈晴更待下教

一. 備忘記：“祈晴，更待下教爲之，”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當待明日，更爲下教，姑待之。”

하였다.

무자년¹⁷⁶⁸ 4월 8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비가 온 양에 따라 즉시 장계를 올리라.

비망기에,

“올해 내 마음으로 다시 가뭄이 든다면 내가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옛적 이해^{1708, 숙종 34}의 일기를 보았더니 마음은 비록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안절부절 마음을 썼다. 어제 내린 비는 뜻밖이었는데 그래도 부족하였다. 바람이 그치기는 했지만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은 오히려 간절하다. 오늘 새벽에 예를 거행하였는데 아침에 빗소리를 들었고, 지금 1척 남짓 내렸다고 들었다. 어제 내린 비는 누가 내려 주었는가. 오늘 내린 큰비는 누가 내려 주었는가. 노쇠한 내가 어찌 감히 이렇게 하였겠는가. 첫 번째도 내려 받고 두 번째도 내려 받았으니, 이처럼 돌보아 주시거늘 덕 없는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지금 1척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여러 도^道에서 비 내

戊子四月初八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五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 雨澤隨多少卽爲狀聞

一. 備忘記: “今年予心復若嘆乾³¹¹, 予將若何? 見昔年此歲日記, 心雖默默, 憧憧用心, 昨日雨已是料表, 而其猶欠足. 風雖止, 望雲猶切, 今曉行禮, 朝聞雨聲, 今聞尺餘, 昨日雨是誰之賜? 今日之霖, 是誰之賜? 以予之衰, 何敢致此? 一則受賜, 二則受賜, 若是眷顧, 以予涼德, 何以仰報? 今則報尺, 諸道雨澤狀聞, 隨多少卽聞之意, 自政院卽爲下諭于八

311 嘆乾: 저본에는 ‘漢江’. 『승정원일기』 영조 44년 4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를 올릴 때 비의 양에 따라 즉시 보고하라고 승정원에서 즉시 팔도와 양도兩都에 하유하라. 내 마음이 이와 같으니, 도신이 되어 머무는 이들이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똑같이 하유하라.” 하였다.

비망기에,
“3척이나 내렸으니 우리 백성에게 다행이다. 어찌 나의 백성이겠는가. 옛 선왕의 백성이다. 백성을 위하여 마음이 조금 놓이지만 올해 마음을 어찌 감히 놓겠는가. 이번 비는 과중하기에 거의 충분하니 팔도가 어찌 다르겠는가. 여전히 보답을 바라니 도신이 봉심하더라도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는 도사로 하여금 규례대로 대신 하게 하라.” 하였다.

무자년¹⁷⁶⁸ 4월 30일

● 북도에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를 내려보내다.

전교하기를,
“함경 감사가 지난번에 비답을 공경히 받고서 장계를 올린 뒤에 막중한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를 가도사로 하여금 대신 거행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다. 농사에 관한 장계이므로 읽어

道·兩都. 予心若此, 爲道臣居留之人者, 焉敢忽也? 一體下諭.”

一. 備忘記: “三尺已報, 吾民可幸, 豈予民乎? 卽昔年民, 雖爲民少弛心, 今年之心, 何敢弛耶? 此雨付種庶足, 八道何異? 猶望其報, 道臣雖奉審, 雨澤狀聞, 其令都事, 依例替行.”

戊子四月三十日

● 北道雨澤狀聞下送

一. 傳曰: “北伯頃者批答祇受, 既已狀聞後, 莫重雨澤, 令假都事替行, 事之寒心, 莫此爲甚. 既來民事, 故雖令讀奏, 北關雨澤, 尙未齊到, 此狀聞下送, 從重推考, 其令一

아뢰도록 하였으나, 북관北關에 비가 온 상황에 대한 장계가 아직 일제히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 장계는 내려보내고 엄하게 추고하여 똑같이 다시 작성하여 아뢰게 하라. 이후로는 엄히 신칙하여 현縣과 도道를 통해 올리는 상소라도 내게 묻지 말고 곧바로 내려 보내라.”
하였다.

무자년¹⁷⁶⁸ 5월 10일

● 강원도에 비가 내렸으니 즉시 장계로 아뢰게 하라.

전교하기를,

“지난번 비가 충분히 내린 뒤에 요즘 단비가 내렸으니 추수할 가망이 거의 있었다. 방금 강원 감사의 장계를 보니, 요즘 내린 비가 여전히 적시지 않은 곳이 또한 몇 고을 있다고 하였다. 몇 고을이라 하지 말라. 모두 우리 백성이니 그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후로 과연 비가 쏟아졌는가.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묻고 비가 쏟아졌으면 즉시 장계로 아뢰라고 하라.”

하였다.

體更爲修啓，此後嚴飭，雖有縣道封章，勿稟，直爲下送。”

戊子五月初十日

● 江原得雨卽爲狀聞

一. 傳曰：“頃者雨備³¹²之後，近得甘露，庶有其望，今覽東伯狀聞，近者之雨，尙未霑潤者，亦有數邑云。莫云數邑，皆亦吾民，其悶勝言？伊後其果得霑乎？令道臣詳問，其得霑然，卽爲狀聞。”

312 備 : 저본에는 '■'. 『승정원일기』 영조 44년 5월 1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무자년¹⁷⁶⁸ 7월 1일

● 기우제를 설행하다.

비망기에,

“지금은 이미 초가을이라서 남은 달이 5개월뿐인데 나는 5년이나 남은 듯하다. 내가 이처럼 가뭄을 근심하니 ‘비가 내릴까 비가 내릴까.’ 역시 으레 하는 말이다. 나는 마음이 초조하니, 올해 마음이 초조한 것은 농사철을 놓쳐서이다. 백성이 의지하는 것은 먹을 것이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의지할 바는 백성 뿐이다. 가뭄이 이와 같고 더구나 말복이 가까우니 소홀히 한다면 백성은 어찌하겠는가. 백성은 어찌하겠는가.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먹을 것에 의지한다. 아,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마음을 어찌 견디겠는가.

1차 기우제를 모레 거행하고 내일 향^향을 받도록 하라. 이러한 때에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삼각산^{三角山}은 좌승지, 목덕산^{木覓山}은 우승지, 한강은 우부승지로 채워 차임하라. 제문을 지어 내리겠으니 내일 연화문^{延化門}에서 지영^{祗迎}하겠다.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으라.”

하였다.

무자년¹⁷⁶⁸ 7월 3일

● 비가 올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비망기에,

戊子七月初一日

● 祈雨祭設行

一. 備忘記：“今已初秋，餘朔只有五朔，而予則若五年，此中若是悶旱，其雨其雨，亦例語。予則心焦，心焦於今年，農事其愆，民依者食，望八攸依，其惟元元，其旱若此，況三庚在近，其若泛忽，於民何？於民何？國依於民，民依於食，嗚呼望八，此心何耐？初次祈雨祭，以再明舉行，其令明日受香，此時豈循常例？三角山左承旨，木覓山右承旨，漢江右副承旨而填差，祭文當製下，明日延化門，當爲祗迎，諸執事另擇。”

戊子七月初三日

● 得雨間減膳

一. 備忘記：“今予此心，一則

“지금 나의 이 마음은 한편으로는 추모하는 것인데, 지금 초가을을 맞이하여 아직도 다섯 달이 남았다. 무슨 일을 추모하겠는가. 무슨 일을 추모하겠는가.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한 것인데, 내일이면 말복이라 가뭄이 한 달이나 되었으니 무슨 일로 백성을 위하겠는가. 무슨 일로 백성을 위하겠는가. 제문을 직접 지어야 하는데 근사_{近侍}는 조섭하라고 하니 ‘비가 내릴까, 비가 내릴까.’ 해도 기미가 아득하기만 하다. 참으로 한 사람에게서 비롯하였으니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지영_{祗迎} 또한 중지하였으니, 성실하다고 하겠는가. 두 가지 보리는 이미 익었으니, 풍년이 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가뭄이 이와 같은데, 무슨 일을 추모하며 무슨 일로 백성을 위하겠는가. 지영을 중지하라고 명한 것도 나의 허물이니,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여 하늘에 사죄하겠다. 아, 이것이 어찌 옛날에 ‘무엇을 애석하게 여기겠는가.’라고 하셨던 하교를 우리러 본받는 것이겠는가. 아,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뻐하는 것은 팔도의 남은 백성이다. 소회가 여기에 미치니 어찌 감히 홀로 편안하겠는가. 차대_{次對}도 오늘로 앞당겨 정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것은 대전만 거행하라.”

하였다.

追慕,而今當初秋,猶有五朔,何事追慕?何事追慕?一則爲民,而三庚在明,其旱浹月,何事爲民?何事爲民?親製其文,近侍將攝,其雨其雨,漠然漠然,良由一人,民何辜乎?以此心祗迎亦寢,其曰誠乎?兩麥既登,望深有年,其早若此,此何追慕?何事爲民?命寢祗迎,亦予之愆,得雨間減膳,仰謝蒼蒼.噫,此³¹³豈仰體昔年何惜之乎?噫,望八欣喜者,惟在八道遺民,興懷及此,何敢自便自便?次對亦爲進定於今日.”

一. 傳曰:“減膳,只大殿舉行.”

313 此 : 저본에는 ‘此身’. 『승정원일기』 영조 44년 7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 수표를 신칙하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처음에 1촌이었는데 아까 비가 내렸는데도 1촌인
이유는 무엇인가. 매우 놀랍다. 해당 당상관은 추고
하고 너무 느슨하다고 신칙하라.”
하였다.

비망기에,
“오늘 방금 비가 쏟아졌으니 뜻밖이라고 하겠다. 경
기 감사의 장계를 보았지만 마음은 안절부절못하였
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를 듣고 풍기風旗를 물으니 서
풍西風이라 하였다. 지금 비가 갠다면 어찌 두루 적시
기를 바라겠는가마는, 또 오랜 가뭄 끝에 또한 마음
을 썼다. 서풍일지라도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어 이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안절부절못하니 세
곳에 신칙하여 각별히 정성껏 지내게 하라.”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3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水標申飭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初
則一寸矣，俄者雨則一寸³¹⁴如
何？極爲駭然，該堂推考，太
緩申飭。”

一. 備忘記：“今日霈然，其於
目下，可謂料表，而雖覽畿伯
狀聞，餘心憧憧，忽聞風聲，
問其風旗，曰以西風，其若今
霽，何望周治？且久旱之餘，
其亦用心，其雖西風，且聞霏
下，此心少紓，而其猶憧憧，申
飭三處，另加虔誠。”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
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
審，則二尺三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314 一寸：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44년 7월 3일 기사에 근거하
여 보충

●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다.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새벽에 내리신 비망기에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겠다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빗소리가 시원하니 즉시 음식 가짓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어찌 음식 가짓수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조 판서 신회申晦가 아뢰기를,

“음식 가짓수를 줄이겠다는 하교는 대신大臣도 아뢴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단비가 이처럼 쏟아지니, 즉시 음식 가짓수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예조 판서의 청을 특별히 윤허한다.”

하였다.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음식 가짓수를 평소대로 회복하라고 답전 하교하였다.

무자년¹⁷⁶⁸ 7월 4일

● 기우제를 지낸 헌관에게 시상하다.

비망기에,

“한 달 내내 가문 뒤에 2척 남짓 비가 내렸으니 참으로 뜻밖이다. 저문 뒤에 그쳤지만 밤새 내렸다. 요즘

● 復膳

一. 次對入侍時, 領議政金致仁所啓: “曉下備忘, 有得雨間減膳之教, 而今則雨聲霑然, 宜卽復膳, 故敢達矣.” 上曰: “今日何可復膳乎?” 禮曹判書申晦曰: “減膳下教, 大臣亦有所奏, 而今則甘霑如此, 宜卽復膳矣.” 上曰: “特允大臣禮官之請焉.”

一. 次對入侍時, 復常膳事, 榻前下教.

戊子七月初四日

● 祈雨獻官施賞

一. 備忘記: “浹月旱餘, 二尺餘下雨, 誠是料表, 晚後雖止, 徹宵下雨, 近欲³¹⁵禱雨, 昨日

³¹⁵ 欲: 저본에는 ‘畿’. 『승정원일기』

기우제를 지내려고 하였고 어제 경기 감사의 장계를 듣기는 하였으나 여러 곳에 모두 고루 내렸는가? 이미 1척 정도 비가 내렸으니 2차 기우제는 비가 오는 형편을 다시 보고 거행하겠다. 세 곳의 헌관에게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집사들에게 현궁^{弦弓} 1장을 내려 주라.” 하였다.

비망기에,
“근시는 체모가 중하니, 헌관에게는 모두 숙마^{熟馬} 1필을, 감찰과 집사들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인의에게는 각기 현궁 1장을 내려 주라.” 하였다.

무자년¹⁷⁶⁸ 7월 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박인서^{朴麟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7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보사제

예조의 계사에,

畿伯狀聞雖聞，諸皆均霑乎？
既得報尺之雨，再次祈雨，更觀雨勢舉行，三處獻官，已有前例，各兒馬一匹，諸執事弦弓一張賜給。”

一. 備忘記：“近侍體重，獻官皆熟馬一匹，監察·諸執事，各兒馬一匹，引儀各弦弓一張賜給。”

戊子七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朴麟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二尺七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 報謝祭

一. 曹啓辭：“初次祈雨之後，

영조 44년 7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1차 기우제 이후 이렇게 단비가 쏟아졌으니, 농사에 천만다행입니다. 보사제를 설행해야 하여 길일을 일관(日官)에게 잡게 하였더니 이번 7월 7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헌관은 작년 전례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축(大祝)은 유신을 역임한 자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도 각별히 가려 뽑으라. 비가 내린 뒤에는 사람 마음이 소홀해지기 쉬우니, 1차 기우제처럼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단 내에서는 금연하고 훈채(葷菜)를 금지하라고 똑같이 신칙하라.”

하였다.

무자년¹⁷⁶⁸ 7월 11일

● 경상도의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를 신칙하다.

전교하기를,

“5월 10일의 비는 예로부터 무어라 불렀는가.¹⁵ 올해

¹⁵ 5월……불렀는가 : 5월 10일은 태종의 기일이며, 이날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고 한다.

得此甘露，民事萬幸，報謝祭當爲設行，吉日令日官推擇，則今七月初七日爲吉云。以此日舉行之意，分付，何如？”傳曰：“依爲之，祭文製下，獻官依昨年例舉行。”

一. 傳曰：“大祝以曾經儒臣填差，諸執事另擇，得雨之後，人心易忽，若初次，必也致誠，壇內禁草禁茹葷，一體申飭。”

戊子七月十一日

● 嶺南雨澤狀申飭

一. 傳曰：“五月初十之雨，自古其稱何？今年因予否德誠淺，不若乎昔，此誠陟降，雖欲爲民，由予誠淺，由予否德而然，雖逾月，其猶悚然。今日

는 내가 덕이 없고 정성이 얇아 예전만 못하다. 이는 참으로 영령이 백성을 위하고 싶어도 내가 정성이 얇고 덕이 없어 그러한 것이니, 한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두렵다. 오늘은 기신제에 향을 받은 뒤 비가 내렸으니 또한 어찌 우연이겠는가. 하지만 지척에 있는 강화도에는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았고 경상도에서도 기우제를 설행하니, 어찌 서울에 비가 내렸다고 보사제를 지내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경상도에 비가 내렸다는 장계를 들은 뒤에야 마음을 놓을 것이다. 굳이 72개 고을에서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비가 오는대로 즉시 장계로 아뢰라고 비변사로 하여금 본도에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5월 8일

비망기에,
“어제는 먹구름만 꺾던 것은 군인들을 위해서요, 오늘 쏟아지는 비는 백성을 위해서이다. 지금 내리는 비는 때맞춰 내리는 비이니 예조로 하여금 수표단자를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정희열^{丁希說}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7촌 높이로 흘

忌辰受香後雨下，亦豈偶然乎哉？然咫尺沁都，尙不需然，於嶺南亦設祈雨，豈可以京中得雨報謝弛心乎？聞嶺南得需狀聞，然後心可弛也。不待七十二州齊報，隨得雨卽爲狀聞事，令備局分付本道。”

己丑五月初八日

一. 備忘記：“昨日只密雲，而爲軍也，今日只滂沱，爲民也，此時雨可時雨，令禮曹報水標單子。”

一. 曹單子：“節呈水標直丁希說手本內：‘今日下雨，水標³¹⁶

³¹⁶ 標：저본에는 없으나 문맥을 살펴 보충하였다.

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5월 7일

비망기에,
 “때맞춰 비가 시원스레 적시니 백성을 위해 마음이
 기쁘다. 그렇지만 3척의 비가 내렸으나 보리는 아직
 수확 전이라 날이 개기를 바라니, 뜻대로 갠다면 이
 는 모두 하늘이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팔도도 각기
 그러한지 보고를 기다리겠다.”
 하였다.

예조의 감결에,
 “선농단·선잠단·풍운뇌우단·우사단·사한단·한강
 단·기우단은 제향하는 장소라서 일의 체모가 자별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칙교도 너무나 엄격하고 명
 백합니다. 근래에 기강이 해이해져 막중한 제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빈 땅으로 만들고 무너지게 내
 버려두었으니, 공경하고 삼가는 도리에 있어서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부터 각 部部 소속 제단은 해
 당 부의 관원이 직접 가서 살펴 무너진 곳이 있으면
 하나하나 수리하게 하고, 단소^{壇所}의 아래위 및 근처
 또한 각별히 청소한 뒤 상황을 본조에 첩보^{牒報}하여
 적간할 바탕으로 삼으십시오. 만약 미진한 폐단이

審看, 則三尺七寸流下’是如爲
 白臥乎事.”

己丑五月初七日

一. 備忘記: “時雨快洽, 爲民
 心欣, 雖然, 既報三尺, 麥猶
 穫³¹⁷前, 望其晴矣, 若意而晴,
 是皆蒼蒼, 爲元元, 八道各然
 乎? 以待其報.”

一. 曹甘結: “先農壇·先蠶壇
 ·風雲雷雨壇·雩祀壇·司寒
 壇·漢江壇·祈雨壇, 乃是祭
 享處所, 事體自別岔不喻, 前
 後飭教不啻嚴明是去乙, 近來
 紀綱解弛, 莫重祭壇, 視若尋
 常, 便作空虛之地, 任其頽圯,
 其在敬謹之道, 極爲未安. 自
 今爲始, 各部所屬祭壇, 該部
 官員躬進看審, 如有頽圯之
 處, 則使之一一修補爲旂, 壇
 所上下及近處, 亦爲各別修掃
 後, 形止牒報本曹, 以爲摘奸

317 穫: 저본에는 ‘獲’.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5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있으면 해당 관리를 입계入啓하여 논책論責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예스럽게 하지 말고 유념하여 거행하십시오. 각 단壇의 단직壇直과 호보戶保는 모두 이름과 거주지를 책으로 작성하여 하나하나 본조에 올리라고 단직과 유사 등에게 똑같이 분부하여 시행하십시오.……”
하였다. 【오부에 감결을 보냈다.】

기축년¹⁷⁶⁹ 6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정희열^{丁希說}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7촌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안윤기^{安允基}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불어나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5척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之地爲乎矣，若有未盡之弊，則當該官吏，入啓論責，斷不饒貸，除尋常，惕念舉行爲跡，各壇壇直戶保，並以小名居住成冊，一一修呈本曹之意，壇直有司等處，一體分付施行云云.” 【捧甘五部.】

己丑六月十七日

一. 曹單子：“節呈水標直^{丁希說}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二尺七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安允基牒呈內：‘今番雨後，江水漲溢，以布帛尺丈量，則常流水基³¹⁸良中，五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318 基：저본에는 ‘墓’. 『승정원일기』 인조 5년 6월 21일 등의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기축년¹⁷⁶⁹ 6월 24일

● 수표교의 지평을 살펴보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오늘 내린 비는 3촌 8분 남짓 넘은 듯하다. 수표단
 자^{水標單子}가 이제야 들어왔으니 개양문^{開陽門}은 유문^留
 門하고 선전관 1원이 수표교^{水標橋}로 달려가서 ‘경진지
 평^{庚辰地平}¹⁶ 4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살펴보고 오
 라. 문은 계속 유문하여 선전관이 들어오기를 기다
 리라.”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7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안윤기^{安允基}의 첩정에,
 ‘이번에 큰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 포백척으로 측량
 하니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7척 가량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16 경진지평 : 1760년(영조36) 영조가 대대적으로 청계천을 준천한 이후 교각에 ‘경진지평(庚辰地平)’이라는 글씨를 새겨 하천 범람의 기준으로 삼았다. 『萬機要覽 財用編 濬川』

己丑六月二十四日

● 水標橋地平看審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今日下雨，似過三寸八分餘，而水標單子，今始入之，開陽門留門，宣傳官一員，馳往水標橋，庚辰地平四字，填與不填，看審以來，門則仍留，以待宣傳官入來。”

己丑七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別將安允基牒呈內：‘今番大雨，江水漲溢，以布帛尺尺量，則常流水基³¹⁹良中，七尺許添流’是如爲白臥乎事。”

319 基 : 저본에는 ‘墓’. 『승정원일기』 인조 5년 6월 21일 등의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기축년¹⁷⁶⁹ 7월 7일

● 기청제

전교하기를,

“단비가 장마로 바뀌었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으니 기청제를 거행하는 일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사문영제를 9일에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고 헌관과 집사들을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예조의 계사에,

“단비가 장마로 바뀌었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으니 기청제 거행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사문영제를 9일에 규례대로 거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문영제를 전교하신 대로 9일에 설행하여 3일 동안 지내고 정지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제관을 신칙하다.

예방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단비가 장마로 바뀌어 하루 이틀 매일 빗소리를 들으니 어찌 달게 먹고 자겠는가. 특명으로 영제를 지내라고 하였다. 제문은 직접 지을 것이고 헌관은 모두 유신으로 명하니, 이는 참으로 만년에 백성을 위해서이다. 이는 참으로 만년에 백성을 위해서이다. 처음 예상을 벗어난다면 어찌 밥을 먹겠는가. 제물

己丑七月初七日

● 祈晴

一. 傳曰：“時雨成霖，秋節已報，祈晴之舉，其何忽也？四門祭祭，初九日依例舉行事，分付，獻官諸執事另飭。”

一. 曹啓辭：“時雨成霖，秋節已報，祈晴之舉，其何忽也？四門祭祭，初九日舉行事，命下矣。四門祭祭，依傳教，初九日設行，三日而止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 祭官申飭

一. 禮房承旨入侍時，傳曰：“甘霖成霖，一日二日，每聞雨聲，豈甘宿食？特命祭祭，祭文親製，而獻官皆命³²⁰儒臣，此誠暮年爲民，此誠暮年³²¹爲

320 皆命：저본에는 ‘此’.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21 此誠暮年：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祭物은 정결하게 준비하고 헌관·대축·집사들의 옷도 정결하게 하도록 각별히 신칙하라. 신여神輿를 봉안할 때 본시의 관원이 각기 모시고 가는 것은 소홀한 듯하다. 이 또한 백성을 위해서이니, 그 자신을 영원히 금고禁錮하여 사류士類에 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내가 적간하겠다고 똑같이 신칙하라.”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7월 8일

● 기청제 헌관은 비가 그치는 것을 보고 물러가
라고 하다.

전교하기를,

“이를 통해 들으니, 각 관사의 관원이 모두 꺾 밖에서 대령하고 있다고 한다. 관원은 한 사람이지만 하인이 몇 사람인가. 이들은 사옹원의 입직이 아니니 모두 즉시 물러가게 하고, 사대문에 진배해야 할 것과 수정관修井官 또한 실직 관원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라. 지금 내가 안절부절못하는 것은 바로 기청제 때문이다. 기청제를 위해 향燭을 받으면 곧 기우제가 되니, 속담에 ‘기청제를 지냈는데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그 임금이 부덕한 가운데 노쇠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니, 이 마음을 어찌 견디겠는가. 잠깐 내린 비로 풍년을 바랐는데 곡식이 한 번 손상되고, 한때 내린 비로 풍년을 바랐는데 곡식이 두 번 손상되었다. 피곤하여 누워있는 가운데 이

民，若違初料，何心玉食？祭物精備，獻官·大祝·諸執事服潔，另加申飭，奉神輿時，本寺³²²官員，其各陪進，其若忽也，此亦爲民，當永錮其身，不齒士類，予當摘奸，以此一體申飭。”

己丑七月初八日

● 祈晴獻官見雨止退去

一. 傳曰：“因此以聞，各司官員，皆闕外待令云，官員雖一人，下人其幾人，此非廚院直，皆令卽爲退去，四門應進排與修井官，亦令實官進去。今予憧憧，卽祈晴也，祈晴受香，便爲祈雨，諺云，祈晴得而³²³猶若此，此皆由於其君否德中衰耗之致，此心何耐？一刻之雨，望大登，其穀一損，一時之

322 寺：저본에는 ‘時’.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23 而：저본에는 ‘事’.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마음이 오직 백성에게 있으니 이와 같은데도 이 음식이 더욱 어찌 달겠는가. 영제의 헌관을 신칙하여 제사를 지내더라도 비가 그치는 것을 보고 물러가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7월 10일

● 기청제를 정성껏 지내다.

비망기에,
“지금 이미 말복이니, 마음은 추수에 있다. 기청제를 유념하여 정성껏 지내게 하라.”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7월 12일

● 기청 보사제

내국이 저녁에 입진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제문을 직접 짓고 유신에게 기청제를 지내도록 명하였으나 그 효과가 아직도 아득하니, 이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였다. 지금은 개었으니 이는 모두 하늘이 백성을 위하는 뜻이다. 3일 안에 보사제를 지내야 하니 내일 향소를 받고 모레 지내는데 그 앞의 이틀이 두 달처럼 느껴진다. 모든 일을 정결하게하기를 기청제의 규례와 똑같이 각별히 신칙하라. 헌관이득일^{李得一}·조종현^{趙宗鉉}·서호수^{徐浩修}·심이지^{沈願之}에

雨, 望大登, 其穀二損. 億臥³²⁴
中此心, 惟在元元, 若此其食,
尤何甘? 申飭禋祭獻官, 雖行
祭見雨止退去事, 分付.”

己丑七月初十日

● 祈晴虔誠

一. 備忘記: “今已三庚, 心在西成, 其令着意虔誠.”

己丑七月十二日

● 祈晴報謝祭

一. 內局夕入診時, 傳曰: “親製祭文, 命儒臣祈晴, 而其效猶遜, 此心憧憧, 今則晴焉, 此皆蒼穹爲民之意. 卽是三日之內報謝, 明日受香, 再明日爲之, 其前猶兩月, 凡諸致潔, 一依祈晴例, 另飭, 獻官李得一

324 臥: 저본에는 '臥'.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7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게 각기 아마^{兒馬} 1필씩, 집사들에게는 현궁^{弦弓} 1장씩 내려 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보사제도 본래 같은 등급이니 기청제와 보사제가 어찌 다르겠는가. 임희교^{任希教}·홍용한^{洪龍漢}·서유원^{徐有元}·홍상간^{洪相簡}은 전례대로 헌관에 차례대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 보사제 지낼 때 사대문을 열다.

전교하기를,
“보사제는 기청제와 다르니 문을 닫으면 맑은 날씨에 사례하는 뜻이 아니다. 사대문을 닫지 말라고 분부하고 불결한 것만 금지하라.”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7월 1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정희열^{丁希說}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이상 넘쳐흐릅니다.’
하였습니다.”

·趙宗鉉·徐浩修·沈頤之, 各兒馬一匹, 諸執事弦弓一張賜給.”

一. 傳曰: “報謝本來同品, 祈晴報謝, 豈可異焉? 任希教·洪龍漢·徐有元·洪相簡, 依前獻官次第填差.”

● 報謝時開四門

一. 傳曰: “報謝與祈晴有異, 門閉非謝晴之意, 勿閉四門事, 分付, 只禁不潔.”

己丑七月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丁希說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十尺之上過流’是如爲白臥乎事.”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7월 17일

● 수표직을 태거하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전 수표직의 수표단자는 잘 하였다. 오늘 1촌이나
비가 쏟아졌는데 단자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니,
수표직을 태거하고 다른 사람으로 가려 정하라.”
하였다.

● 열흘간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비망기에,
“오늘 빗소리를 들으니 이 마음이 안절부절못하다.
이는 내게 덕이 없어서이다. 이는 내게 덕이 없어서
이다. 열흘간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
하였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모레가 초일^{初日}이므로 어제 물선^{物膳}도 아울러 줄
이라.”
하였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모레가 초일이므로 어제 물선도 아울러 줄이라 하
였는데, 이는 대전만 거행하라.”

己丑七月十七日

● 水標直汰去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前
水標直水標單子善爲之，今日
雨注爲一寸，單子尙今不至，
水標直汰去，他人擇定.”

● 減膳十日

一. 備忘記：“今聞雨聲，此心
憧憧，此予涼德，此予涼德，減
膳十日.”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再
明日卽初日也，昨日物膳兼
減.”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再
明日卽初日也，昨日物膳兼減，
只大殿舉行.”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7월 20일

약방이 입진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경상도의 장계를 보니, 비가 과다하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가들도 이처럼
많으니, 농사와 백성을 위하여 내 마음이 어떠하겠
는가. 도신은 거행하였다고 하지만 떠내려가거나 무
너진 곳에는 본관의 홀전 외에 특별히 더 돌보아 보
수하여 안주하도록 즉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7월 25일

●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다.

예조의 계사에,
“이번 7월 17일에 내린 전교에, 열흘 동안 음식 가짓
수를 줄이는데 모레가 초일이므로 어제 물선도 아
울러 줄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어제 물선
을 아울러 줄이라는 전교가 있었는데 16일부터 계
산해 보니 열흘의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
규례대로 복구하여 봉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己丑七月二十日

一. 藥房入診時, 傳曰: “今覽
嶺南狀聞, 非特雨水過多, 人
家漂沒頽壓, 若是夥然, 爲農
爲民, 予心若何? 道臣雖舉行
云, 漂沒頽壓處, 本官恤典外,
另加顧助, 使之修補安接事,
卽爲回諭.”

己丑七月二十五日

● 復膳

一. 曹啓辭: “今七月十七日所
下傳教中, 減膳十日, 再明日
卽初日也, 昨日物膳兼減事,
命下矣. 既有昨日物膳兼減之
教, 自十六日計之, 則十日之
限, 止於今日, 自明日, 依例復
舊封進之意, 分付何如?” 傳
曰: “允.”

기축년¹⁷⁶⁹ 7월 2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한복기^{韓福基}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2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7월 27일

● 기청제

비망기에,
“바람 때문에 비가 이처럼 오니 이 마음이 안절부
절못하다. 기청제를 내일부터 거행하겠으니, 헌관은
서명선^{徐命善}·이세연^{李世演}·정창순^{鄭昌順}·윤동승^{尹東昇}
으로 삼으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 금연하고 금주하다.

예방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공자가 말한 옥백^{玉帛}과 종고^{鍾鼓}는 정성에 달려 있
다. 헌관을 이미 임명하였으니 집사들을 각별히 가
려 뽑고, 위관이 왕래할 때 본시의 관원이 모두 나가
고, 제물은 반드시 정결해야 하니 금연과 금주 등의
일을 규례대로 신칙하라.”

己丑七月二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韓福
基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
審，則五尺二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己丑七月二十七日

● 祈晴

一. 備忘記：“因風作雨若此，
此心憧憧，祈晴祭，自明日舉
行，獻官徐命善·李世演·鄭
昌順·尹東昇爲之，文則當製
下矣。”

● 禁草禁酒

一. 禮房承旨入侍時，傳曰：
“子云玉帛鍾鼓，其在誠也，獻
官既命，諸執事另擇，位版往
來時，本寺官員皆進，祭物必
也精潔，禁草禁酒等節，依例
申飭。”

하였다.

전교하기를,

“홍 봉조하의 집에 예관이 거행하는 것은 영제를 지내고 3일 뒤에 거행하라.”

하였다.

예조의 계사에,

“기청제는 내일부터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사문영제를 29일 시작하여 3일 동안 지내고 정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7월 29일

향을 지영하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두 차례 지영하러 풍덕^{豐德}에 가면서 경신년을 추억하니 그리운 마음이 갑절이나 든다. 헌관과 집사들에게 정성껏 지내라고 반드시 신칙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기청제를 근시에게 명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붉은 해를 보니 우리 백성이 소생할 것이고 추수도 기약

一. 傳曰：“洪奉朝賀家，禮官舉行者。過禁祭三日後，舉行。”

一. 曹啓辭：“祈晴自明日舉行事，命下矣。依聖教，四門禁祭，二十九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何如?” 傳曰：“允。”

己丑七月二十九日

一. 香祇迎入侍時，傳曰：“兩次祇迎，進詣³²⁵豐德，追惟庚申，此心一倍，獻官諸執事，必飭虔誠之意，分付畿伯。”

一. 傳曰：“祈³²⁶晴，命近侍，今朝見紅日，民吾其庶幾，西成

³²⁵ 進詣：저본에는 ‘遙瞻’.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7월 2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³²⁶ 祈：저본에는 ‘初’.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8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날씨가 한 번 흐렸다 한 번 개었다 할 때마다 마음이 긴장됐다 풀렸다 하니, 어찌 갠 날씨를 보았다고 하겠는가. 반드시 정성껏 지내라고 헌관들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금주와 금연을 이전 하교대로 신칙하라.”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8월 2일

비망기에,
“기청제가 끝나가는데 바람이 여전히 잠잠하니 하교하고자 하였다. 바람은 그쳤지만 관상감의 초기가 왔다. 여든 가까운 나이에 이러한 보고도 참으로 나 때문이니, 어찌 부덕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예조의 초기에 대한 답이 어찌 효도이겠는가. 비록 백성을 위한다지만 농사를 알 수 없으니 어찌 정성이겠는가. 또 관상감의 보고는 실로 나 때문이다. 여든 가까운 나이에 어찌 이런 보고를 듣겠는가. 오늘이 초일^{初日}이니 음식 가짓수를 회복해야 하지만 덕을 닦지 못하였으니 또한 어찌 묵묵히 있겠는가. 이어서 엿새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여 두려운 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근년에 이 보고를 듣고 관상감의 관원을 불러 직접 기후를 관측하였는데, 지금은 정신이

且可期. 然一陰一晴, 惟在一心弛與張, 何云見晴? 必也虔誠之意, 申飭諸獻官.”

一. 傳曰: “禁酒禁草, 依前下教申飭.”

己丑八月初二日

一. 備忘記: “祈晴將畢, 風勢猶止, 欲爲下教. 風則雖止, 雲觀之草至, 近八有此報, 誠由予, 而奚云涼德? 禮草之答, 是豈孝? 其雖爲民, 年事莫知, 亦豈誠乎? 且雲館之報, 寔由予, 寔由予³²⁷, 近八聞此報哉? 今日初日, 其當復膳, 不能修德, 亦何泯默? 因爲減膳六日, 以表悸慄之意. 頃年聞³²⁸此

327 寔由予: 저본에는 '之'.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8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28 聞: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8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흐릿하니 이 마음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비록 겉치레에 가깝지만 의도는 깊다. 지금 음식 가짓수를 줄 일 것이니 즉시 분부하되 대전만 거행하라.” 하였다.

비망기에,
“3일 동안 과연 날이 개고 바람도 금방 멈췄으니 백성을 위해 마음이 기쁘다. 2차 보사제는 신을 번거롭게 하는데 가까워 헌관에게 상을 베풀었으니, 이 또한 보사제를 지내는 뜻이다. 근신^{近臣}의 신분으로 그 정성이 가상하니 헌관들에게 각각 반숙마^{半熟馬}를, 집사들에게 각각 아마^{兒馬}를 내려 주라.” 하였다.

기축년¹⁷⁶⁹ 8월 7일

예조의 계사에,
“이번 8월 2일에 내린 전교에 6일간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6일의 기한이 오늘까지이니, 내일부터 규례대로 복구하여 봉진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報, 召雲館官員, 亦自測候, 今則現昏, 此心曷喻? 雖近文具, 意則深也. 今將減膳, 卽爲分付, 只大殿舉行.”

一. 備忘記: “連三日果霽³²⁹, 風亦旋止, 爲民心欣, 再報謝近瀆, 獻官施賞, 此亦報謝之意. 身爲近侍, 其誠可嘉, 諸獻官各賜半熟馬, 諸執事各賜兒馬.”

己丑八月初七日

一. 曹啓辭: “今八月初二日所下傳教中, 減膳六日事, 命下矣. 六日之限, 止於今日, 自明日, 依例復舊封進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329 霽: 저본에는 '齊'.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8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경인년¹⁷⁷⁰ 5월 1일

● 측우기를 팔도와 양도에 만들어 설치하다.

좌직하는 승지와 편차청 낭청이 입시하였을 때, 전 교하기를,

“지금 실록을 상고하던 중에 측우기^{測雨器} 한 조항을 듣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가 앉았다. 비가 내릴 때 그릇에 담는 것을 어렸을 때 시험해 봤는데, 지금 이 말을 들으니 과연 그렇다. 요즘 기우제를 지내는 때가 아니지만 수표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깊이 알고 싶어서다. 그러나 이것은 흐르는 물이니 마음으로 항상 어떨지 모르겠다고 여겼다. 이 제도에 지극한 이치가 들어 있고 또 힘을 들일 만한 것이 아니니, 이 제도대로 관상감에서 만들어 설치하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이대로 만들어 설치하라.

이는 쟁기날을 적실 만한 비라거나 호미날을 적실 만한 비라는 보고에 비해 제법 자세할 것이다. 비가 내린 상황에 대한 장계는 ‘영하읍^{營下邑}에서 본 바로는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입니다.’라고 말을 마무리하여 아뢰라. 이 기구와 이 척^尺¹⁷을 지금 호조에서 2개를 만들어 들여 하나는 창덕궁에 설치하고 하나는 경희전에 설치하여 먼저 살핀다면 이 또한 비가 내리는 상황을 중시하는 한 가지 방도이다.

또 쥔 안의 관상감에 모두 풍기^{風旗}가 있으니, 이는

17 이 척 : 같은 날 『영조실록』에 의하면, 이 자는 경신년에 삼적부(三陟府)에 있는 세종조의 포백척을 가져다 『경국대전』을 참고해서 새로 만든 일명 경신년 신제척(新製尺)이다.

庚寅五月初一日

● 測雨器造置於八道兩都

一. 坐直承旨編次廳郎廳入侍時, 傳曰: “今實錄考來中, 測雨器一條, 聞來不覺蹶然而坐. 凡下雨時, 以器受盛, 幼時試焉, 今聞此果然. 近者雖非祈雨時, 令報水標, 欲知淺深, 而此則流水, 心常若何. 是制至理存焉, 且非費力者, 因此制, 令雲觀造置, 八道·兩都依此造置. 此比諸³³⁰一犂一鋤之報頗詳, 凡雨澤狀聞, 以³³¹營下所見測雨器尺寸幾³³²何, 結語以聞. 此器此尺, 今³³³度支二件造入, 一置昌³³⁴德, 一置慶熙殿中, 先審, 此亦重雨澤之一道也. 且

330 比諸 : 저본에는 ‘只憑’.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31 以 : 저본에는 ‘若’.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32 幾 : 저본에는 ‘若’.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33 今 : 저본에는 ‘畧’.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34 昌 : 저본에는 ‘正’.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예로부터 바람을 점치려는 의도이다. 옛날에는 나무 위에 풍기를 묶었으니 아름답고 훌륭하였지만 간혹 나무가 손상되었다. 창덕궁 통제문^{通濟門} 안에 석대^{石臺}를 두고서 풍기죽^{風旗竹}을 안치하고 경희궁 서화문^{西華門} 안에 석대를 두고서 풍기죽을 안치하였다. 지금 옛 규례를 따라 경희궁과 창덕궁에 모두 측우기를 설치할 테니, 한편으로는 바람 한 번 비 한 번도 살피라고 명한 선왕의 뜻을 유념하고, 한편으로는 비와 바람에 감히 소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바람이 잔잔하고 비가 순한 것은 나라에 중요한 바이니 이번에 이 명은 또한 깊은 뜻이 있다.” 하였다.

闕中雲觀，皆有風旗³³⁵，此乃自古占風之意也，古則束風旗³³⁶於木上，猗歟盛哉，木或傷焉。昌³³⁷德通濟門內，設石而安³³⁸風旗³³⁹竹，慶熙西華³⁴⁰門內，設石³⁴¹而按風旗³⁴²竹，今者遵古例，慶熙·昌德皆置測雨器，一則體昔年一風一雨命審之聖意，一則於風於雨，亦不敢放忽之志也，風調雨順，國之所重，今者此命意亦深也夫。”

335 旗 : 저본에는 '棋'.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36 旗 : 저본에는 '棋'.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37 昌 : 저본에는 '正'.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38 安 : 저본에는 '按'.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39 旗 : 저본에는 '棋'.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40 華 : 저본에는 '蓍'.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41 石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42 旗 : 저본에는 '棋'.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실록에, 세종 24년 측우기를 제조하였다. 구리로 주조하여 기구를 만들어 측우測雨라고 이름지었다. 길이는 1척 5촌, 지름은 7촌이다. 관상감에 석대石臺를 만들어 석대 위에 측우기를 두고 비온 뒤 서운관 관원이 주척周尺으로 수심이 얼마인지 재고 즉시 아뢰었다. 또 측우기 및 주척의 형식을 각 도에 반포하여 여러 고을에서 각기 1건씩 만들어 객사의 뜰에 두고 비온 뒤마다 수령이 직접 깊이를 재고 아뢰었다.

경인년¹⁷⁷⁰ 5월 3일

● 측우기는 석대를 마련하여 설치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 측우기에 대해 실록을 살펴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니, 돌을 마련하여 설치하였는데 이 또한 하늘을 공경하는 성왕의 뜻이었다. 이번에 만들어 들일 때 두 궤闊과 두 관상감의 측우기에 모두 높이는 포백척으로 1척尺, 남북의 너비는 포백척으로 8촌寸의 석대石臺를 만들고, 석대 위에 둥근 구멍을 파고 측우기를 안치하는데 구멍의 깊이는 포백척으로 1촌 이고, 때에 따라 빼도록 한다. 관상감의 일영원철日影圓鐵과 지금 하교한 척촌尺寸은 모두 경신년에 새로 만든 황종척黃鍾尺을 사용하라.”

하였다.

一. “實錄，世宗二十四年，製測雨器，鑄銅爲器，名曰測雨，長一尺五寸，圓經七寸。築臺書雲觀，置器臺上，雨後本觀官員，以周尺量水深分寸。隨即啓聞。又以測雨器製及周尺式，頒于諸道，使列邑各造一件，置于客舍庭中，每雨後，守令親審分寸，啓聞。”

庚寅五月初三日

● 測雨器設石以置

一. 傳曰：“今番測雨器，更問³⁴³實錄奉考，設石以置，此亦欽敬之聖意也。今番製入時，兩闕·兩雲觀測雨器，皆造石臺，高布帛尺一尺，南北廣布帛尺八寸，而石臺上造圓穴，以安測雨器，而穴深以布帛尺一寸，其令隨時拔之，雲觀日影圓鐵，今下教尺寸，皆用庚申新製黃鍾尺。”

343 問：저본에는 ‘聞’.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경인년¹⁷⁷⁰ 5월 4일

전교하기를,

“이번에 측우기가 도착하는 대로 석대를 마련하여
안치하되 높이와 길이, 너비는 서울과 똑같이 하
라고 예조로 하여금 팔도와 양도^{兩都}에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경인년¹⁷⁷⁰ 5월 12일

● 측우기는 영문에만 만들어 두다.

친림하는 한역녹관^{漢譯祿官}의 제술^{製述}에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원인손^{元仁孫}이 아뢰기를,

“측우기를 8도와 양도^{兩都}에 지금 전교하신 대로 만
들어 설치하였습니다. 실록에서 고찰해 낸 것 중에
는 ‘여러 고을에서 각각 1건^件을 만들었다.’라는 내용
이 있어서 호조가 실록에서 고찰한 내용을 베껴서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도에서는 여러 고
을에 만들어 둘지 여부를 본조에 물었으니, 본조에
서 성상께 한번 여쭙어 정한 뒤에 통지할 수 있습니
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문^{營門}에만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庚寅五月初四日

一. 傳曰：“今番測雨器，隨到
設石以安，而高與長廣，一從
京中之意，令禮曹，分付八道
兩都。”

庚寅五月十二日

● 測雨器只造置營門

一. 親臨漢譯祿官製述入待
時，禮曹判書元仁孫所啓：“測
雨器八道·兩都，今方依傳教
造置矣，實錄考出中，有列邑
各造一件之文，而戶曹謄實錄
考出者，行會之，故各道以列
邑造置與否，問于臣曹，一番
稟定後，可以知委矣，敢達。”
上曰：“只造置營門可也。”

경인년¹⁷⁷⁰ 7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안윤기^{安允基}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넘쳐 평상시 수위 기
 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측량하니, 5척이 불어났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인년¹⁷⁷⁰ 8월 5일

● 기청제

예조의 계사에,
 “가을비가 열흘 넘게 내렸는데, 어떤 곳은 그치고
 어떤 곳은 비가 내려 아직도 개일 기미가 없습니다.
 추수가 임박하였는데 곡식이 상할까 걱정스럽습니
 다. 기청제 거행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
 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일에 시작하여 3일 동안 지
 낸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하교하려고 하였는데 과연 이렇게 청하였다.
 이대로 거행하고, 헌관은 시임 유신^{時任儒臣}으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도 각별히 가려 뽑으라.”
 하였다.

좌직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庚寅七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安允基牒呈內：‘今番雨後，江
 水漲溢，常流水基良中，以布
 帛尺尺量，則五尺添流’是如爲
 白臥乎事。”

庚寅八月初五日

● 祈晴

一. 曹啓辭：“秋雨浹旬，或止
 或雨，尙無開霽之意，秋成已
 迫，傷穀可悶，祈晴之舉，不容
 少緩，四門禱祭，不卜日，來初
 七日爲始，三日而止事，分付何
 如？”傳曰：“予欲下教，果此
 請矣，依此舉行，獻官以時任
 儒臣填差，諸執事其亦另擇。”

一. 坐直承旨入侍時，傳曰：
 “秋雨成霖，此心奚弛³⁴⁴？位

344 弛：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가을비가 장마로 바뀌었으니 이 마음이 어찌 풀리지겠는가. 위판^{位板}을 받들어 오갈 때 반드시 공경하고 삼가도록 태상시^{太常寺}에 신칙하고, 또 헌관들에게 금주하고 금연하여 정성껏 기청제를 지내도록 신칙하며, 제관이 아니더라도 사흘 동안 대령하는 것은 제관과 다름이 없으니 진배관^{進排官}들에게 다시 한꺼번에 신칙하라. 내가 수시로 염문하겠다.” 하였다.

경인년¹⁷⁷⁰ 8월 6일

비망기에,
“근래 오늘 처음으로 날이 개었는데, 쾌청해졌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찌 풀리지겠는가. 대저 사람의 성품은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풀어지니, 각별히 여러 문에 신칙하여 반드시 정성을 다하게 하라.” 하였다.

경인년¹⁷⁷⁰ 8월 9일

● 기청제의 보사제

영희전^{永禧殿}에 거둥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신을 섬기는 도리가 어찌 어제 오늘이 다르겠는가. 가을장마가 참으로 걱정이었는데 오늘의 맑은 날씨를 누가 주었는가. 모레 보사제를 지내야겠다. 제문은 지어 내리겠으니 예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板奉詣奉來時³⁴⁵, 申飭太常, 必也敬謹, 亦飭諸獻官, 其令虔誠祈晴, 禁酒禁草, 雖非祭官, 三日待令, 無異祭官, 諸進排官, 更³⁴⁶一體申飭, 予當無時廉問矣.”

庚寅八月初六日

一. 備忘記: “近者日晴於今初也, 其雖快晴, 心則何弛? 大抵人品見此心怠, 另飭諸門, 必也虔誠.”

庚寅八月初九日

● 祈晴報謝祭

一. 永禧殿舉動入侍時, 傳曰: “事神之道, 昨今豈異? 秋霖誠悶, 今者之晴, 是誰之賜?

기』 영조 46년 8월 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³⁴⁵ 位板奉詣奉來時: 저본에는 ‘神位版奉詣奉神位版往來敬謹來時’.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8월 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³⁴⁶ 更: 저본에는 ‘吏’.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8월 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헌관은 심관지沈觀之·조창규趙昌逵·이득신李得臣으로 삼고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으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경인년¹⁷⁷⁰ 8월 11일

●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비망기에,
“만약 정성이 있다면 보사제 날에 어찌 이처럼 하겠는가. 무신년 가을처럼 오늘부터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겠다.” 하였다.

비망기에,
“맑은 날씨는 백성을 위해서고 비는 한 사람 때문이다. 보사제를 지내자마자 빗소리가 다시 들리니 임금의 마음이 풀어져서인가, 정성이 게을러서인가. 나 스스로 면려할 테니 봉안을 정성스럽게 하라.” 하였다.

경인년¹⁷⁷⁰ 8월 13일

●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다.

예조의 계사에,
“이번 8월 11일에 내리신 전교에, 3일 동안 음식 가

再明日當爲報謝，祭文製下，令儀曹舉行，獻官沈觀之·趙昌逵·李得臣³⁴⁷，諸執事另擇事，分付該曹.”

庚寅八月十一日

● 減膳

一. 備忘記：“其若有誠，報謝日，豈若此乎？若戊申秋，自今日減膳三日.”

一. 備忘記：“其晴爲民，其雨一人，報謝纔爲，復聞雨聲，君心弛乎？其誠怠乎？予自勉焉，奉安宜誠.”

庚寅八月十三日

● 復膳

一. 曹啓辭：“今八月十一日所下傳教中，有減膳三日之命矣. 三日之限，止於今日，自明日，

³⁴⁷ 李得臣: 이후 '趙瑗爲修撰'이란 구절이 있는데, 문맥에 맞지 않고 『승정원일기』에서도 보이지 않아 연문으로 보아 삭제하였다.

짓수를 줄이겠다고 명하셨습니다. 3일의 기한이 오늘로 다 되었으니 내일부터 규례대로 복구하여 봉진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4월 24일

● 가뭄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충분하다고 하지만 연이어 비가 내린다. 어제 충청도의 장계를 보니, 이 도는 형편이 낫지만 황해도가 가장 걱정이다. 대체로 근래 가뭄의 징조가 있으니 이러한 때에 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참으로 걱정이다.”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4월 30일

● 1차 기우제에 승지를 보내다.

향^향을 지영^{祗迎}하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내가 밤낮 이런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추모하고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한다. 지금 한창 가뭄을 근심하여 안절부절못하고 있으니 어찌 날을 허비하겠는가. 일은 미리 하면 성립한다고 성인이 가르쳤으니, 1차 기우제를 오는 2일로 정하라. 헌관은 유신에게 명하러 하였지만 나에게는 지금 유신이

依例復舊封進之意，分付何如?” 傳曰：“允.”

辛卯四月二十四日

● 悶旱

一. 備忘記：“雖云足矣，連有雨澤，昨聞湖西狀聞，此道雖勝，海西最憫，大抵近日有旱徵，此時此心若何？誠悶矣.”

辛卯四月三十日

● 初次祈雨祭遣承旨

一. 香祇迎入侍時，傳曰：“今予夙宵此心，一則追慕，一則爲民，今方悶旱憧憧，何可曠日？豫則立，聖人既訓，初次祈雨祭，定於來初二日。獻官雖欲命乎儒臣，於予今無儒臣，況爲民何循常例？獻官三

없다. 더구나 백성을 위해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헌관으로 삼각산에 좌승지, 목맥산에 좌부승지, 한강에 동부승지를 보내라. 제문은 지금 지어 내릴 것이니 제관을 각별히 가려 뽑도록 전조에 신칙하라.”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5월 2일

● 가뭄을 걱정하여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인다.

비망기에,

“아, 올해는 만고에 듣기 어려운 것이 많다. 아, 만년에 마음은 더욱 쇠약해지고 기운은 더욱 고단하니 조용히 조섭하기 참으로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게다가 지금 가뭄이 걱정이니 어찌 건디겠는가. 첫 가뭄이라고 말하지 말라. 가뭄이 이미 이루어졌다. 천즉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은 내가 부덕해서이며, 환관이 설치하는 것은 내가 부덕해서이며, 당인^{黨人}이 강성한 것은 내가 부덕해서이며, 신하가 임금을 저버린 것은 내가 부덕해서이며, 5품 관원이 놀라는 것은 내가 부덕해서이며, 시종^{侍從}이 눈치보는 것은 내가 부덕해서이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해도 스스로 부끄러운데, 더구나 여섯 가지나 된다. 지금 이 달을 만난 것도 이미 예상 밖인데, 이 가뭄을 만난 것 또한 어찌 예상하였겠는가. 기미를 보고 떠난다고 했는데, 하물며 만년의 내 심기^{心氣}를 어찌 이렇

角山左承旨, 木覓山左副, 漢江同副, 祭文今製下, 另擇祭官事, 申飭銓曹.”

辛卯五月初二日

● 閏旱減膳三日

一. 備忘記: “嗚呼, 今年, 萬古罕聞者多, 而嗚呼, 暮年, 心益衰氣益薺, 從容調攝, 誠難誠難. 且見閏旱, 何堪何堪? 莫云初旱, 其旱已成. 莫能敦族, 卽予涼德, 閣豎作用, 卽予涼德, 黨人強盛, 卽予涼德, 爲臣負君, 卽予涼德, 五品駭然, 卽予涼德, 侍從顧瞻, 卽予涼德, 有一於此, 自惡自惡, 其況六年? 今逢此月已料表, 逢此亢旱, 亦豈攸料³⁴⁸? 見幾而作, 其況暮年, 以予心氣³⁴⁹, 何云

348 料: 저본에는 ‘表’.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49 氣: 저본에는 ‘旱氣’. 『승정원일기』

다 저렇다 하겠는가. 지금 이 가뭄의 원인은 첫째도 나 때문이요, 둘째도 나 때문이다. 제문은 직접 짓겠으니 근시가 대신 선행하라. 이러이러한데도 어찌 지체할 것이며 또 어찌 규례를 따르겠는가. 이는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이다. 하늘에 사죄하고 또한 스스로 힘쓰겠다. 우선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3일 안에 비가 내리더라도 3일을 채우라. 만약 비가 내릴 기미가 아득하다면 어찌 3일 뿐이겠는가. 비가 내린 뒤에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라.”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5월 3일

● 2차 기우제에 재신을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宰臣}을 보내되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일 선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비망기에,
 “1차 기우제에 근시가 비를 빌었는데 비가 내릴 기
 미가 아득하니 백성을 위해 근심이 깊다. 2차 기우
 제는 저자도에 중신^{重臣}을, 용산강에 재신을 보내되,
 5일에 하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집사들을 각별

其此? 今者此旱, 一則予, 二則予. 親製其文, 近侍替³⁵⁰攝, 若此若此, 其何稽滯? 亦何循例? 此予誠淺誠淺, 宜謝蒼蒼, 亦且³⁵¹自勉, 爲先減膳三日, 雖三日內得雨, 宜準三日, 其若漠然, 奚特三日? 得雨後復膳.”

辛卯五月初三日

● 再次祈雨遣宰臣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山江·楮子島遣宰臣, 不卜日, 今初五日設行之意,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一. 備忘記: “初次近侍祝雨, 雨意逾漠, 爲民深悶, 再次祈

영조 47년 5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50 替: 저본에는 ‘贊’.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51 且: 저본에는 ‘此’.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히 가려 뽑으라.”
하였다.

● 용 그림은 망료한 뒤 제물과 싸서 강물에 던지
도록 정식으로 삼다.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2차 기우제는 용 그림을 걸어 제사를 지내고 제사
를 마친 뒤에는 그 종이에 제물을 싸서 강물에 던졌
다고 들은 적이 있으니, 비록 토룡제土龍祭와는 차이
가 있지만 매우 신을 깔보는 것이다. 예전 석척제蜥
蜥祭를 지냈을 때도 동자童子의 축어祝語가 조리가 전
혀 없었는데 어제御製에 실렸으므로 이후 동자로 하
여금 이 12자를 외워 규례를 만들게 하였다. 하물며
이 경우이겠는가. 이번부터는 제사를 지낸 뒤에 그
용 그림과 축문을 함께 망료望燎하라. 불사른 뒤에는
먼저 종이에 싸고 보자기 하나에 제물祭物과 함께 싸
서 전례대로 강물에 던지도록 정식으로 삼아 시행
하라.”

하였다. 【이 제문에는 폐백이란 말이 없으므로 4일
향을 지영할 때 승지가 던지시 물어 ‘급폐백及幣帛’ 3
자를 지웠다.】

雨，楮子島重臣，龍山江宰臣，
初五日爲，文則當製下矣，諸
執事另擇.”

● 畫龍望燎後，祭物裹沈事，
定式.

一. 次對入侍時，傳曰：“曾聞
再次祈雨祭，畫龍而³⁵²祭，祭
畢後，卽其紙裹祭物，中流沈
水云，雖與土龍祭有異，³⁵³ 慢
神則甚矣，曾前蜥蜴祭，其童
子祝，太無論理，御製既載，
故此後令童子誦此十二字，以
成³⁵⁴規例，況此乎？今番爲始
行祭，其畫龍與祝文，同爲望
燎，已燎後，先爲裹紙與祭物，
同裹一布袱，依前中流沈水，
定式施行.” 【此祭文，無幣帛，
故初四日香祇迎教是時，承旨
微稟，及幣帛三字抹去.】

352 而：저본에는 ‘向’.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53 雖與土龍祭有異：저본에는 ‘雖守
命許土龍祭有異’.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54 成：저본에는 ‘來’.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신묘년¹⁷⁷¹ 5월 4일

● 남교와 북교의 선농단 단직의 일로 예조 당상과 선전관을 추고하다.

향^향을 지영^{祗迎}할 때 전교하기를,
 “하교하려다 못하였는데, 남교^{南郊}와 북교^{北郊}의 선농단^{先農壇}에는 단직^{壇直}이 모두 8명씩 있다고 하는데, 선전관이 아뢴 말을 들으니 남교는 3명뿐이고, 북교는 6명이라고 한다. 교대 근무하더라도 모두 4명이어야 하니, 남교 선전관 3명이 교대로 번^番을 선다는 것은 모두 거짓으로 아뢴 것이다. 지금 가뭄이 걱정스러우니 엄히 추고만 하였다. 북교 선전관이 6명이 모두 대령하였다고 한 말 또한 거짓으로 아뢴 것이다. 이와 같다면 시사^{試射}할 때 화살 5발을 1순^巡으로 하거나 3발을 1순^巡으로 하는가. 흐리멍덩하기가 막심하다. 이와 같은데도 영장이 되고 방어사가 되었는가. 이번에는 모조리 추고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형에게 물어 인사를 알도록 하라. 그리고 근시가 선농단에 가셔도 모두 점고^{點考}를 빠트렸다. 어제 이 단^壇에만 명하였으므로 이처럼 되어 선잠단에서는 모르게 된 것이다. 평상시 검척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해당 예조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辛卯³⁵⁵ 五月初四日

● 南北郊先農壇壇直事, 禮堂宣傳官推考

一. 香祇迎時, 傳曰: “欲爲下教而未果, 南北郊先農壇, 皆壇直八名有云, 而聞宣傳官所奏, 南郊只有三名, 北郊六名云. 其雖輪回宜皆四名, 而南郊宣傳官三名替番云者, 見欺瞞奏, 而今番悶旱, 只從重推考, 北郊宣傳官之以六名, 若皆³⁵⁶待令云, 其亦瞞奏. 若此, 於試射時, 或五矢爲一巡, 或三矢爲一巡乎? 朦然³⁵⁷莫甚, 若此而爲營將, 爲防禦使乎? 今番只一體推考, 此後當問於父兄知人事, 而近侍至於先農壇, 皆闕點, 昨日只命此壇, 故若此, 而先蠶壇不³⁵⁸知, 常時

355 卯 : 저본에는 '丑'.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56 皆 : 저본에는 '令'.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57 然 : 저본에는 '然'.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58 不 : 저본에는 '可'.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 가뭄을 걱정하여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전교하기를,

“문후에 대한 비답에서 나의 마음을 유지하였지만 나의 기운으로 나라 안을 둘러보아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임금은 백성에 의지하고 백성은 임금에게 의지할 뿐인데, 어찌 한 차례 가뭄이 한 달이 되도록 더욱 심해지리라고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삼남은 그나마 낮고 충청도 역시 그러한데, 두 차례 지영_{祗迎}하였으나 비가 내릴 기미는 더욱 아득하고 백성을 위해 친향_{親享}하는 것도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구름만 바라보자니 더욱 초조하고 절박하다. 뜻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아침이 되어 공상_{供上}을 받을 때에는 전에 이미 3일을 명하였으니, 다시 3일을 더하여 6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되 대전만 거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 비어 있는 각 단직의 후임을 즉시 차출하고 팔도와 양도의 사직단은 문을 설치하여 정결하게 하라고 하다.

내국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남교_{南郊}와 북교_{北郊} 두 단_壇과 선농단_{先農壇}과 선잠단_{先蠶壇} 두 단을 설치한 것은 의도가 모두 중요하니,

其若檢飭，豈至此乎？當該禮堂，從重推考。”

● 悶旱減膳

一. 傳曰：“問候批，雖論以予心，以予氣，環顧國中，無一可恃，而惟君依於民，民依於君而已，豈料一早，浹月滋甚？三南猶勝，湖西亦然，再次祇迎，雨意逾邐，爲民親享，未能若意，只自望雲，采切焦迫，既不能若意，則亦何循常例？待朝捧供時，前既命三日，復加三日，六日減膳，而只大殿舉行事，分付。”

● 各壇直有關代，卽爲差出，八道兩都社稷壇設門致潔

一. 內局入侍時，傳曰：“南北郊二壇，先農·先蠶二壇設置，意皆重也，而況此時乎？宣傳

하물며 이러한 때는 어떠하겠는가. 선전관에게 적간하게 한 것도 의도가 있어서이다. 단직^{壇直}의 숫자가 들쭉날쭉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늘 선전관에게 적간하라고 다시 명하였다. 그 숫자는 모두 8명인데 간혹 채우지 못한 곳이 있고, 선농단은 모두 비었다고까지 하니 이보다 한심한 일이 없다.

예조로 하여금 오늘 내로 단소 부근의 토박이를 일제히 차임하여 초기^{草記}를 올리게 하고, 한성부로 하여금 모든 잡역^{雜役}을 부과하지 말도록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라. 지방의 사직단은 대부분 소와 말을 기르는 곳으로 삼았기에 신칙한 적이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가물을 근심하는 때는 어떠하겠는가. 또한 예조로 하여금 팔도와 양도에 문을 설치하여 정결하게 하도록 신칙하라.

아, 임금은 사직을 지키고 여러 도^道의 360개 고을에는 모두 읍사^{邑社}가 있다. 막중한 임금도 사직을 지키는 의리가 있으니 중요하지 않겠는가. 각별히 신칙하라. 내가 무작위로 선전관을 뽑아 적간하겠으니, 문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결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해당 수령은 잘 다스리더라도 3년간 금고하겠다. 일체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 가물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옛날에 은^殷나라 성탕^{成湯}은 여섯 가지 일¹⁸이라고만

官摘奸，意蓋在也。壇直之數，或有參差，亦有無者，故今日更命宣傳官摘奸，其數皆八，而或有未充定者，至於先農壇，皆闕云，事之寒心，莫此爲甚。其令禮曹，今日內壇所附近處，而有根着人，一齊差定草記，而亦令京兆凡諸襍役，一切勿侵事，定式施行。外方社壇，作爲牛馬場者多，故曾已申飭，而況當此閏旱時乎？亦令禮曹，申飭八道·兩都，設門致潔。噫，國君守社稷，諸道三百六十州，皆有邑社，以國君之重，猶有守社之義，可不重歟？另加申飭。予當令宣傳官抽性摘奸，或有不設門，不致潔者，當該守令，其雖善治，當禁錮三年，一體嚴飭。”

● 憫旱

一. 備忘記：“昔殷成湯，只稱六事，而今予有十。享禮久闕，

하였는데, 지금 나에게는 열 가지나 있다. 향례享禮를 오랫동안 빠뜨렸고, 종친과의 화목이 부끄럽고, 사치 풍조는 여전히 성행하고, 기강이 날로 무너지고, 우리 백성은 곤궁하고, 근습近習은 방자하고, 시종侍從은 거만하고, 당습黨習은 다시 일어나고, 온갖 법도는 해이해졌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일삼는다. 아, 옛날 성탕에게 어찌 여섯 가지 일이 있었겠는가마는 또 희생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 단비가 내렸다. 지금 나는 과연 열 가지 허물이 있는데도 편히 누워 있으니 어찌 비가 내리기를 바라겠는가. 게다가 심신이 삭막하니 어찌 방촌우方寸雨를 말하겠는가. 내가 정성이 부족하지만 수치를 참고 억지로 약물을 마시는 것을 어찌 차마 하겠는가. 경들은 그만 청하여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달라.” 하였다.

● 단직을 차임하여 정하다.

예조의 제사에,

“성상의 하교대로 비어 있는 선농단 단직의 후임에 선농단 근처에 사는 백성을 하나하나 차임하여 정하고 그 외에 채우지 못한 각 단의 단직 또한 일체 차

18 여섯 가지 일 :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즉위한 뒤에 7년의 가뭄을 만났을 때 상림의 들에서 하늘에 기도하면서, ‘정사가 절도를 잃었습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었습니까. 궁핍이 너무 컸습니까. 여인의 청탁이 성행했습니까. 뇌물이 횡행했습니까. 참소하는 자가 많았습니까.’라고 자신을 책망하였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비가 내려 수천 리를 적셨다. 『荀子 大略』

敦宗自惡, 侈風猶盛, 綱紀日虧, 吾民困窮, 近習縱恣, 侍從慢褻, 黨習復³⁵⁹起, 百度解弛, 浮囂爲事, 噫昔成湯, 豈有六事? 其且代犧, 能得甘露, 而今予果有十愆, 其亦便臥, 何望其雨? 加以心神索邈, 方寸奚言? 予雖誠淺, 忍羞強飲, 豈忍爲也? 爲也何等? 休請休請, 少安予心予心.”

● 壇直差定

一. 曹啓辭: “依聖教, 先農壇壇直有關, 代以壇所附近處居民, 一一差定, 其外各壇壇直未充定者, 亦爲一體差定之意, 敢啓.” 傳曰: “允.”

359 復 : 저본에는 ‘浮’.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임하여 정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3차 기우제 장소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지에 중신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이번 8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중신을 보낸다.

예조의 계사에,
“2차 기우제는 특교로 인하여 저자도에 중신을 보냈는데, 이번 3차 기우제 현관 또한 중신으로 차임하여 보내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5월 5일

● 3차 기우제에 1품 중신을 보낸다.

약방이 저녁에 입진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비가 내릴까 비가 내릴까 하였지만 비가 내릴 기미는 더욱 아득하니 백성을 위하여 몹시 애타고 걱정이다. 3차 기우제는 오늘을 넘긴 뒤로 어찌 해당 조에서 물어보기를 기다리겠는가. 남교에 1품 중신을 보내고 우사단에 중신을 보내어 규례대로 거행하라.

● 三次祈雨處所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遣重臣，不卜日，今初八日設行事，知委何如？” 啓.

● 遣重臣

一. 曹啓辭：“再次祈雨祭，因特教，楸子島既遣重臣，今此三次祈雨祭獻官，亦以重臣差遣之意，敢啓.”

辛卯五月初五日

● 三次祈雨，遣一品重臣

一. 藥房夕入診時，傳曰：“其雨其雨，雨意逾邇，爲民渴悶. 三次祈雨，過今日後，奚待該曹之稟？南郊遣一品重臣，雩祀遣重臣，依例舉行，而祭文當製下矣.”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예조의 계사에,

“3차 기우제를 위해 남교에 1품 중신을 보내고 우사단에 중신을 보내어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3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번 8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5월 6일

● 지방의 사직단 제사는 대신 지낼 수 없다.

약방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경기 감사가 하교대로 거행하였다는 장계와 관련하여, 지방 사직단의 제사 중에 간혹 대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는 석채^{釋采}와 사직단 제사가 이틀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교한 뒤에 수령된 자가 어찌 감히 아무 이유 없이 대신 지낼 수 있겠는가. 해당 조로 하여금 모조리 신칙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옛날 선왕께서 가뭄을 걱정하여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어가^{御駕}를 돌릴 때 상언^{上言}을 받으라는 하교가 있었고, 또 대가^{大駕}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라는 어시^{御詩}가 있었다. 지금 건명문^{建明門}에 나온 의

一. 曹啓辭：“三次祈雨，南郊遣一品重臣，雩祀遣重臣，依例舉行事，命下矣。三次祈雨祭，不卜日，今初八日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辛卯五月初六日

● 外方社壇祭不得替行

一. 藥房入侍時，傳曰：“以畿伯下教舉行狀聞，乃聞外方社壇祭，或有替行者多云。此釋菜與社壇祭，在於二日之內故也。若是下教之後，爲守令者，焉敢無故替行乎？令該曹一體申飭。”又傳曰：“昔年閏旱，社壇祈雨，回駕時有捧上言之教，亦有訴駕前之御詩，今臨門意，遵昔也，詳細分付，俾有實效焉。”

도는 옛일을 준수하기 위해서이다. 상세하게 분부하여 실효가 있게끔 하라.” 하였다.

● 가뭄을 걱정하여 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전교하기를,

“문후^{問候}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하유하였다. 예제는 비가 내릴까 비가 내릴까 하였지만 밤새 무덤기만 하고 비가 내릴 기미는 막막하였다. 몸소 기도하지 못하고 누워서 애태웠으니, 신을 섬기는 막중한 일에 어찌 날을 안배할 수 있겠는가.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단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겠다. 비록 전좌^{殿座}와 동가^{動駕}가 겹치더라도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기 전에는 음악을 중지하라고 사옹원에 분부하라. 사옹원에서 도성 밖 백성의 폐해를 묻고자 하므로 내가 문에 나올 것이니 도성 백성 중 나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자, 지방에서 도성으로 온 백성, 근기에서 백성의 폐해를 가지고 기일에 맞춰 올 수 있는 자들은 기다리라고 한성부와 경기 감영에 분부하라. 건명문^{建明門}에 전좌^{殿座}하겠으니 승지는 시복^{時服}으로 입시하고 시위^{侍衛}는 입직만 시위하라.” 하였다.

● 수표

비망기에,

● 憫旱限得雨減膳

一. 傳曰：“問候批答既論，而昨日則欲雨欲雨，徹宵蒸鬱，其雨邈邈，莫能祈禱，臥而焦心，莫重事神，豈可排日？勿拘日限，得甘霈間減膳，雖值殿座動駕，復膳前徹樂事，分付廚院。該院欲問京外民瘼，予將臨門，京中³⁶⁰可以籲予者，外方民人來京者，近畿抱民瘼，可以及期以來者以待事，分付京兆·畿營。當建明門殿座，承旨以時服入侍，侍衛只入直侍衛。”

● 水標

一. 備忘記：“心喜纔踰³⁶¹一尺

360 中：저본에는 ‘外’.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61 心喜纔踰：저본에는 ‘寸諭’. 『승정

“1척을 겨우 넘겼다는 보고가 또 와서 마음이 기뻐다. 이는 하늘이 백성을 돌보아서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마음이 풀어진다면 이는 하늘을 저버리는 셈이니 이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이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하고, 또 비망기에,

“노년에 가뭄 걱정이 실로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으니, 근심스럽고 초조한 마음이 전보다 만 배나 더하다. 지금 수표의 보고에서는 5촌이 불어났다고 했는데, 5척이 내렸다면 이대로 두루 적서주길 깊이 바랐을 것이다.”

하였다.

비망기에,

“오늘 이 비는 반드시 고루 적실 테지만 마음은 아직 안절부절못하니, 비가 내린 상황을 어찌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리겠는가. 경기 감사로 하여금 듣는 대로 장계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3차 기우제는 하교를 기다리다.

비망기에,

“이번 가뭄 걱정이 어찌 지난해에 비하겠는가. 아, 우리나라는 오직 백성에게 의지하는데, 백성은 먹을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가뭄을 근심한 지 한 달이 다 되었으니 초조하고 절박하다는 말도 심정을 다

報且來³⁶², 此是蒼蒼, 眷顧元元, 其若³⁶³因此弛心, 此負蒼蒼也, 益切此心此心矣.” 又備忘記: “暮年憫旱, 寔由一人, 悶心焦迫, 比前萬倍, 今聞五寸水標報, 其若五尺, 深望仍此周洽矣.”

一. 備忘記: “今日此雨, 必也均霑, 然心猶憧憧, 雨澤何待齊報? 令畿伯隨聞狀聞.”

● 三次祈雨待下教

一. 備忘記: “今者憫旱, 豈比前年? 嗟哉海東, 惟依於³⁶⁴民

원일기』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62 來: 저본에는 ‘成’. 『승정원일기』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63 其若: 저본에는 ‘元元其若’. 『승정원일기』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64 於: 저본에는 ‘者’. 『승정원일기』

표현하지 못한다. 전처럼 비가 내리지 않으면 3차 기우제는 몸소 기도해야겠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어찌 감히 전례대로 지영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친히 기도하는 예禮에 따라 먼저 목욕하고 글을 짓고 내일 아침에 지영하고자 하였다. 엿그제 묵었던 곳에 묵고자 하였는데 중관^{中官}이 ‘비가 내리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아뢰는 말을 들었다. 도제조 이하가 전殿의 섬들을 내려가자마자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또한 큰비가 내릴 줄 어찌 알았겠는가. 첫 번째 보고에서는 1촌, 두 번째 보고에서는 5촌, 세 번째 보고에서는 1척이라고 수표^{水標}에서 연이어 알린데다가, 1척이라는 보고를 들으니 참으로 뜻밖이다.

나는 본래 정성이 얇은데다 노쇠하였으니 이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지금 나라의 형세에 어떤 일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인심^{人心}과 세도^{世道}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이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기우제는 모두 섣행만 명하고 편전^{便殿}에 쓰러져 누워 있었으니 이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아침에 누런 안개가 끼고 날이 저문 뒤에 서늘한 바람이 부니 이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지금 다섯 가지를 겸하였으니 어찌 비가 쏟아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비는 고故 중신^{重臣} 이정제^{李廷濟}가 회정당^{熙政堂}에서 아뢰는 것처럼 참으로 얻기 어려운 비이니, 이는 높다높은 하늘이 백성을 돌보아서이다. 어찌 감히 우러러 사례하겠는가. 어찌 감히 우

也, 民以食爲本, 悶旱浹月, 其心焦迫, 亦歇後語也. 其若前, 三次當躬禱, 以此心, 何敢循例祇迎? 今日其欲依親禱禮³⁶⁵, 先沐浴綴文, 明朝祇迎, 欲宿再昨宿處, 聞中官奏, 雖知下雨, 今日亦將若何云? 都提調以下, 纔下殿階, 聞注下聲, 亦安知得霑? 水報一寸, 再報五寸, 三報一尺, 水標連聞, 且聞其報一尺, 誠是料表. 予本誠淺, 加以衰耗, 此一也. 目今國勢, 何事可恃? 此一也. 人心世道, 日以益甚, 此一也. 只皆命攝, 頽臥便殿, 此一也. 朝者黃霧, 晚後淒風, 此一也. 於今兼五, 何望其霑? 今者此雨, 若故³⁶⁶重臣李廷濟熙正堂奏, 誠難得雨³⁶⁷, 此高高恤民,

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65 禮 : 저본에는 ‘例’.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66 故 : 저본에는 ‘起’.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67 雨 : 저본에는 ‘而’.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러려 사례하겠는가. 백성을 소홀히 한다면 어찌 우
러러볼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이 더욱 절실하니 3차
기우제는 다시 하교를 기다리라.”
하였다.

● 수표를 적간하다.

비망기에,
“이번에 참으로 쏟아지고 쏟아지니, 누가 주신 것인
가. 누가 주신 것인가. 두 선전관으로 하여금 동교와
서교를 보고 전좌할 때 아뢰게 하라.”
하였다.

●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다.

예조의 계사에,
“오늘 내리신 전교에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단비가
내릴 때까지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명을 내리셨습
니다. 큰비가 한창 내리니 농사에 천만다행입니다.
내일부터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일을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단비는 높은 하늘이 백성을 돌보아 그러한 것
이다. 옛사람이 이미 말했지만 어찌 감히 비가 내렸
다고 마음이 풀어지겠는가. 여러 도에 골고루 내렸
는지 지금 어찌 알겠는가. 충청도와 황해도에서 골
고루 비가 내렸다는 장계가 도착한 뒤에 다시 내게
물으라.”

蒼蒼恤民也，何敢仰謝仰謝？
若忽元元，豈此仰睹³⁶⁸？此心
采切，思之三次，更待下教。”

● 水標摘奸

一. 備忘記：“此誠霈然霈然，
是誰賜誰賜？令兩宣傳見東
西郊，殿座時以奏。”

● 復膳

一. 曹啓辭：“今日所下傳教，
勿拘日限，得甘霈間，減膳事，
命下矣。大霈方降，民事萬幸，
自明日復常膳事，依例舉行之
意，分付何如？”傳曰：“今者
甘霈，則蒼蒼高高，愛恤元元
而然也，古人既云，何敢得雨
而解心？諸道均霈，今何知
乎？待湖西·海西均得雨狀聞
來到後，更稟。”

368 豈此仰睹：저본에는 ‘此仰睹’.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6일 기사
에 근거하여 수정

하였다.

● 보사제

예조의 제사에,

“재차 기우제를 지내고 큰비가 내렸으니 보사제를
설행해야 합니다. 경진년^{1760,영조36} 하교하신 대로 입
추 뒤에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이번 보사제는 이달 초 지낸 기우제와는
차이가 있다. 보사제를 지낼 때 지방^{紙榜}으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친 뒤에 축문^{祝文}도 함께 태워 제
물과 함께 종이에 싸서 강물에 던지라. 이후 저자도
와 용산강의 보사제는 이 규례대로 하도록 정식으
로 삼고, 제문을 지어 내리겠으니 향실^{香室}에 잘 두었
다가 보사제를 지낼 때 잘 쓰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다.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내 생각은 하유하였고 정승에게도 하교하였다. 전
에 음식 가짓수를 줄인 경우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음식 가짓수를 줄였다가 어찌 대뜸 회복하겠는가.
내일부터 규례대로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고, 중지
한 음악을 회복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키라고 두
원院에 분부하라.”

하였다.

● 報謝祭

一. 曹啓辭：“再次祈雨，既得
大霑，報謝祭，當爲設行，依庚
辰下教，立秋後擇日舉行，何
如？”傳曰：“依爲之，此報謝，
今初與祈雨時有間，報謝時，
以紙榜³⁶⁹行祭，而祭畢後，與
祝文並燎，紙裏與祭物，中流
沈水。此後楮子島·龍山江報
謝，依此例爲之事，定式，祭文
製下，精置香室，報謝時善寫
事，分付。”

● 復膳

一. 次對入侍時，傳曰：“予意
已諭，相臣既有下教，與前減
膳有異，而然已減膳，豈可遽
復？自明日，依例復膳，而撤
樂之復，同在此中，分付二院。”

369 榜：자본에는 '榜'.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 강화도에는 기우제를 설행하지 말라고 하다.

약방이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양도兩都에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가 모두 도착
했는데, 강화도에서는 기우제를 설행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송도에는 이미 비가 내렸으니 기우제를 지
내는 것은 성실함이 부족하다. 강화도의 규례대로
설행하지 말라고 즉시 분부하라.”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5월 8일

● 보사제를 즉시 설행하다.

비망기에,
“1차 기우제에서 비가 내린 일은 옛날에도 있었지
만 2차 기우제에도 단비가 내렸다. 이번 첫 보고에
거의 5척이 내렸다고 하였으니, 위판을 새로 만들고
축문을 써서 두는 것도 성실함이 부족하다. 내일 친
히 전달하겠으나 또 하지夏至와 겹친다. 10일에 보사
제를 지내고 헌관은 1차 기우제대로 하되, 저자도에
는 중신을, 용산강에는 재신을 채워 차임하라. 이번
에 이 예식을 거행하면 노년의 나머지 의식이 다 거
행될 것이다.”
하였다. 【위판을 사용하지 않으니, 위판을 새로 만들
었더라도 저절로 없애게 된다.】

● 江華勿設祈雨

一. 藥房次對入侍時, 傳曰:
“兩都雨澤狀啓皆到, 而江華
則祈雨祭不設云, 而松都其既
有雨, 祈雨其欠誠實, 依沁都
例, 勿設事, 卽爲分付.”

辛卯五月初八日

● 報謝祭卽爲設行

一. 備忘記: “初次得需, 古
雖有, 再次甘霖, 今初報幾五
尺, 位版新造, 祝文製置, 亦
欠其誠, 明日當爲親傳, 且值
夏至日, 初十日爲報謝, 獻官
皆依³⁷⁰初, 楮子島重臣, 龍山
江宰臣填差. 今修此禮, 暮年
餘儀畢³⁷¹舉矣. 【位版既不爲
之, 則位版新造, 自在其抹³⁷²
去中.】

370 依: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71 畢: 저본에는 ‘棄’.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72 抹: 저본에는 ‘株’. 문맥을 살펴
바로잡았다.

● 보사제 지방은 대축이 겸하여 쓰다.

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원인손^{元仁孫}이 아뢰기를,

“저자도와 용산강의 보사제는 지방^{지방}으로 지내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지방을 쓰는 관원은 대축이 겸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7월 14일

● 기우제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이 이와 같아 백성을 위해 애가 타니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1차 기우제는 삼각산·목덕산·한강에 당상 시종신을 보내어 16일에 설행하도록 분부하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으니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고 제물도 각별히 깨끗하게 하라.”

하였다.

● 報謝祭紙榜³⁷³, 大祝兼書

一. 藥房入診入侍時, 禮曹判書元仁孫所啓: “楮子島·龍山江報謝祭, 以紙榜³⁷⁴行過事, 下教矣. 紙榜³⁷⁵書寫官, 使大祝兼行, 何如?” 上曰: “依爲之.”

辛卯七月十四日

● 祈雨祭

一. 次對入侍時, 傳曰: “今旱若此, 爲民焦悶, 豈循常例? 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 遣堂上侍從, 十六日設行事, 分付, 祭文製下, 諸執事另擇, 祭物另加致潔.”

373 榜 : 저본에는 ‘榜’.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74 榜 : 저본에는 ‘榜’.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75 榜 : 저본에는 ‘榜’.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신묘년¹⁷⁷¹ 7월 16일

● 지방에 포제 및 기우제를 지내다.

내국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도의 장계를 들으니, 비를 바라던 끝에
마음이 더욱 절박하다. 서울에는 이미 기우제를 설
행하였으니 도내의 영험한 곳에서 택일하지 말고 정
성껏 기우제를 지내라고 하유하였다. 포제^{醮祭}를 청
한 곳도 어찌 회계^{回啓}를 기다리는가. 향축을 즉시
내려보내도록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7월 17일

● 기우제를 설행하다.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저자도 등에 재신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이번 19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제관

비망기에,
“백성을 위해 답답하니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
겠는가. 저자도에는 김시묵^{金時默}을, 용산강에는 윤
득우^{尹得雨}를 보내라. 대축은 모두 유신으로 차임하
고 나머지도 모두 각별히 뽑으라. 제문은 지어 내리

辛卯七月十六日

● 外方醮祭及祈雨祭

一. 內局入侍時, 傳曰: “今聞
諸道狀聞³⁷⁶, 望雨之餘, 心悶
采切, 京中既設, 道內靈驗處,
不卜日, 虔誠祈雨事, 下諭. 醮
祭所請處, 何待回啓? 香祝即
爲下送事, 一體分付.”

辛卯七月十七日

● 祈雨祭設行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
山江·楮子島等處, 遣宰臣, 不
卜日, 今十九日設行事, 知委
何如?”

● 祭官

一. 備忘記: “爲民沓沓, 何循
常例? 楮子島金時默, 龍山江
尹得雨, 大祝皆儒臣, 餘皆另
擇, 文當製下矣.”

³⁷⁶ 狀聞: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47년 7월 16일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췌다.”
하엿다.

● 금연을 삼가지 않은 일로 논죄하다.

전교하기를,

“아, 백성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니 그 임금의 마음이 어떻췌는가. 또한 승지가 명을 전하엿다면 그곳에 대령한 사람 또한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해당 헌관에게는 서용하지 않는 법을 특별히 시행하고, 해당 감찰은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라. 명을 받든 승지가 엄히 신칙하엿다면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엿췌는가. 체차하라. 금령을 어긴 사람에게 임금의 신칙이 얼마나 지극하엿는가. 이 무리들의 담배 도구를 엄히 금지하엿다면 또한 어찌 이런 일이 있엿췌는가. 모두 신문하지 말라.”

하엿다.

신묘년¹⁷⁷¹ 7월 19일

● 비가 내린 뒤 상을 주다.

약방이 입시하엿을 때 전교하기를,

“아침과 밤에 두 차례 단비가 내린 것은 귀신의 은혜이니 보사제를 지내야 한다. 그러나 어찌 농민에게만 물어볼 뿐이췌는가. 내 뜻이 이와 같고 비도 내렸으니 어찌 감히 번거롭게 하췌는가. 하루 이틀 보고 만약 두루 적시면 기우제를 중지해야 하고, 그렇지

● 不謹禁草事論罪

一. 傳曰: “噫, 爲民祈雨, 其君之心若何? 承旨亦爲傳命, 則待令其處之人, 亦敢爲此? 當該獻官, 特施³⁷⁷不敘之典, 當該監察, 刊名仕版. 奉命承旨, 其若嚴飭, 豈容若此? 遞差. 犯禁人, 人君飭勵何至? 此輩草具嚴禁, 亦豈有是事? 並勿問.”

辛卯七月十九日

● 得雨後賞格

一. 藥房入侍時, 傳曰: “於朝於夜, 兩得甘露, 惟神之惠, 其宜報謝, 而然豈特問農民? 予意若此, 而既得需, 何敢瀆褻?”

377 施: 저본에는 ‘旋’.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7월 27일 등의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않으면 복명해야 하니, 용산강과 저자도의 보사제는 이를 기다리고 또한 제문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하라. 이번에 두 차례 비가 내린 것은 본디 귀신의 은혜이지만 또한 제관의 공로이기도 하다. 또 전례가 있으니 두 곳의 헌관에게 숙마^{熟馬} 1필을, 대축^{大祝}·전사관^{典祀官}·감찰^{監察}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그 나머지 집사에게는 현궁 1장씩 내려 주라.”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7월 21일

● 3차 기우제

경봉각^{敬奉閣}에 들러 임어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이러한 때 어찌 잠시라도 기우제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3차 기우제를 남교와 북교에 1품 중신을 보내 23일에 설행하라. 대축은 유신으로 차임하고, 집사들도 각별히 가려 뽑으라. 지영은 전례대로 거행하겠다.”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7월 23일

● 단직을 적간하다.

내국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안절부절못하는 마음으로 두 선전관으로 하여금 두 단^壇을 봉심하고 단직^{壇直}을 점고^{點考}하게 하였다.

觀一兩日，若快洽，則其祈將撤，不然則將復命，龍山江·楮子島報謝待此，亦待祭文下爲之。今番兩次得雨，其本神惠，亦祭官之功也，且有前例，兩處獻官熟馬一匹，大祝·典祀官·監察各兒馬一匹，其餘執事弦弓一張賜給。”

辛卯七月二十一日

● 三次祈雨祭

一. 敬奉閣歷臨時，傳曰：“此時豈可一刻其曠？三次祈雨祭，南北郊遣一品重臣，二十三日設行，而大祝儒臣，諸執事另擇，當祇迎依前例舉。”

辛卯七月二十三日

● 壇直摘奸

一. 內局入侍時，傳曰：“以憧憧心，令兩宣傳官奉審兩壇，點考壇直。南壇則只有本守

남단에서는 본디 직소를 지키는 단직 2명만 있고 6명은 뒤미처 도착하여 점고하였다고 한다. 여기는 제례가 이미 끝났으니 일의 형편상 본디 그러하다. 북교에서는 직소를 지키는 단직 외에 2명이 아직 남아 있어 8명을 채워 점고하였다고 한다. 추가로 남아 있었던 자들은 비록 미천하지만 남은 정성을 알 수 있으니, 선혜청으로 하여금 쌀을 상으로 주어 단직들을 고무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비망기에,

“정신이 아득하여 저녁에 비가 온 줄은 알았지만 밤에 비가 온 줄은 몰랐는데, 아침 먹을 때야 과연 비가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5분 정도 내린 줄 알았는데 수표와 측우기는 2분이었다. 이러한 때 비를 기다리느라 그 정성이 만 배나 들었으니,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밤낮으로 두 차례 내려 부덕한 나를 권면하였다. 그러나 비가 여기에 그쳤으니 참으로 내 정성이 부족하여 두루 적시기에는 막막하다. 걱정을 견디더라도 무슨 마음으로 밥을 먹겠는가. 억지로 건공탕(建功湯)을 마시는 것 또한 구차하다. 특별히 두 선전관으로 하여금 즉시 가서 두 단의 단직 8인을 점고하고, 근처의 정결하지 않은 곳을 자세히 살피고 오게 하라.” 하였다.

直二名，六人追到逢點云，此祭禮已畢，事勢固然，而於北郊，守直壇直³⁷⁸外，二名尙留，準八名逢點云。加在者渠雖下賤，餘³⁷⁹誠可見，令惠廳斗米賞給，聳勸諸壇直。”

一. 備忘記：“精神索莫，只知³⁸⁰夕雨，莫知夜雨，乃覺朝³⁸¹食時果雨，五分，水標雨器二分。此時待雨，其誠萬倍³⁸²，雖有多少，兩次晝夜，勸勉涼德，而若是靳止，而固予誠淺，周洽漠然，心悶雖勝，何心玉食？強飲建功，其亦苟³⁸³

378 直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79 餘 : 저본에는 ‘謹’.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80 知 : 저본에는 ‘去’.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81 朝 : 저본에는 ‘夕’. 문맥을 살펴 바로잡았다.

382 倍 : 저본에는 ‘陪’.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83 苟 : 저본에는 ‘苟’.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내국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충청 가도사^{忠淸假都事}가 장계로 아뢰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찌 도사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영하의 고을에 비가 내렸다는 것은 이미 알았다. 나라의 체모에 관계되니 대신 하게 한 관찰사는 엄히 추고하고 장계에 전^前자를 쓰지 않았으니 도사 또한 추고하라. 계자인^{啓字印}을 지워서 내려보내고 도신으로 하여금 장계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보사제

예방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두 차례 단비가 내려 보사제를 지내라고 명하였으니, 지금 어찌 날을 허투루 보내는가. 엇그제 내린 비도 신이 주셨으므로 보사^{報謝}라고 하니 어찌 많고 적음을 따지겠는가. 제문은 지어 내리겠으니 남교와 북교에 1품 중신을 보내고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내어 설행하라. 위관은 지방으로 쓰는 것도 이전의 정식으로 하라. 대축^{大祝}은 유신으로 차임하고 집사들도 각별히 가려 뽑으라고 신칙하라. 보사제를 지내기로 했으니 어찌 날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이렇게 하교하였으니 내일 향을 받고 25일에 설

且, 特令兩宣傳, 卽詣點考兩壇壇直八人, 傍近處欠潔處, 詳審以來.”

一. 內局入侍時, 傳曰: “今聞湖西假都事狀聞, 此豈都事代行者? 營下得需, 業已知矣, 關係國體, 令替行道臣, 從重推考, 狀聞中不書前字, 都事亦爲推考, 啓字爰周下送, 其令道臣狀聞.”

● 報謝祭

一. 禮房承旨入侍時, 傳曰: “兩次甘霖, 旣命報謝, 今何曠日? 再昨雨澤, 且神之賜, 名曰報謝, 何論多少? 祭文製下, 南北郊遣一品重臣, 龍山·楸子島遣重臣設行. 位版紙³⁸⁴榜書³⁸⁵寫, 亦依前定式, 大祝儒臣, 諸執事另擇事, 申飭. 旣

384 紙: 저본에는 '祭'. 『송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85 書: 저본에는 '而'. 『송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행하라.”
하였다.

이후 기우제와 보사제의 헌관 단자는 단^壇의 이름만
쓰고 신의 이름은 쓰지 말라고 하교하였다.

전교하기를,
“신을 섬기는 도리는 기우제나 보사제나 마찬가지이
다. 신여^{神耆}를 받들고 오갈 때 착실히 공경을 다하고
폐백과 제물도 각별히 정결하게 하라고 태상시에 신
칙하라.”
하였다.

비망기에,
“지금 나는 덕도 식었고, 마음도 식었고, 기력도 식
었고, 정성도 식었고, 정사도 식었다. 어제 내린 비
는 쏟아지다시피 하였는데 밤이 되자 그쳤으니, 어
디에서 비롯하였는지 특별히 드러났다. 실로 나의
마음과 기운이 모두 식었으니 비를 바란들 무슨 이
로움이 있겠는가마는 건궁당을 억지로 마셨다. 경
자년¹⁷²⁰, 경종즉위과 경술년^(1730, 영조6)을 추억하면 이번
달은 두 번째 달이니, 무슨 마음으로 이 당에 누워
있겠는가. 자정전^{資政殿} 서랑^{西廊}에 가서 저녁이 되기
를 기다렸다가 돌아왔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면
감히 옛날 희우정^{喜雨亭}의 예¹⁹에 따라 우문각^{右文閣}의
이름을 바로잡고 오겠다. 이것이 어찌 헤아려 생각

已報謝, 何待定日? 以此下教,
明日受香, 二十五日設行.”

一. 此後祈雨報謝祭獻官單子,
只書壇號, 勿書神名事, 下教.

一. 傳曰: “事神之道, 祈雨報
謝一也, 神舉奉詣奉來時, 着
實致敬, 幣帛祭物, 另加致潔
事, 申飭太常.”

一. 備忘記: “今予德已冷, 心
已冷, 氣已冷, 誠已冷, 政已
冷, 昨日之雨, 幾乎其³⁸⁶霈, 宵
止, 特著³⁸⁷由何. 寔予心氣俱
冷, 望雨何益? 而強飲³⁸⁸建功
矣. 追憶庚子·庚戌, 今月即第
二朔也, 何心臥此堂? 詣資政

386 其: 저본에는 ‘甘’.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87 著: 저본에는 ‘暑’.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88 飲: 저본에는 ‘欲’. 문맥을 살펴
바로잡았다.

한 것이겠는가. 참으로 답답하여 그런 것이다.”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7월 27일

-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종묘와 사직에 대신을 보내어 기우제를 지내다.

승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호방 승지와 예방 승지가 입
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명해야 하지만 비가 내리려고 하니 어찌
감히 명령을 슬프게 할 수 있겠는가. 오직 기다리고
기다릴 뿐이다. 이제는 계절이 이미 늦었는데 비가
쏟아질 기미는 더욱 아득하다. 아, 옛날 선왕께서
보살핀 백성이니 어찌 감히 기다릴 수 있겠는가. 29
일에 종묘와 사직단에 대신을 보내어 기우제를 섭행
하게 하라. 제문은 직접 짓겠다. 내일 아침 지영^{祗迎}
한 뒤에 그대로 전설사^{典設司}에 가서 하룻밤 자고 돌
아오겠다. 대축^{大祝}은 규례대로 유신^{儒臣}으로 차임하
고 집사들도 각별히 가려 뽑으라고 해당 조에 신칙
하라.”

하였다.

19 회우정의 예 : 회우정은 서교(西郊)에 있던 정자의 이름으로 세종이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마침 큰비가 폭작 내려서 잠간 사이에 사방
들에 물이 흠족하니, 그 정자의 이름을 ‘회우정(喜雨亭)’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世宗實錄 7年 5月 13日』

西廊，待夕以回，而俾若得霈，
敢依昔年喜雨亭例，正名右文
閣而來，此豈度思也？是誠沓
沓然矣。”

辛卯七月二十七日

- 不拘次序，太室·社稷，遣
大臣祈雨

一. 崇政殿月臺，戶禮房承旨
入侍時，傳曰：“當爲命禱，而
欲雨欲雨，何敢憾陟降？唯待
唯³⁸⁹待。於今節序已晚，霈然
逾邈，嗟哉，昔年愛恤者，何
敢遲待？二十九日，太室社
稷遣大臣，攝行祈雨祭，文當
親製³⁹⁰，而明朝祇迎後，仍詣
典設司經宿而回。大祝依例
儒臣，諸執事另擇事，申飭該
曹。”

389 唯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47년 7월 27일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390 製 : 저본에는 ‘祭’.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신묘년¹⁷⁷¹ 7월 30일

● 우사단 기우제의 향을 지영한 뒤 태상시에 거동하다.

향^향을 지영^{祗迎}하기 위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아, 내가 덕이 없고 무능하여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은혜가 아래에 미치지 못하여 마음이 항상 깊은 골짜기에 떨어질 것처럼 두려웠다. 지금 흑심한 가뭄은 참으로 뜻밖인데 몇 차례의 기우제를 모두 설행하라 명하였으니, 어찌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고 탄식할 뿐이겠는가. 두 차례 단비가 내렸으니 처음에는 신이 주셨고 또한 제관도 공을 세웠다. 그러나 고루 적시기가 쉽지 않고 태양은 더욱 쨍쨍하다. 어제 ‘등을 쬔다.[炙背]’는 하교가 어찌 차마 형식적으로 한 말이겠는가. 밤낮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 한 사람이 만백성을 대신하겠다는 뜻으로 종묘와 사직에 미미한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만 정성이 얇고 지금도 날로 노쇠해지므로 영령의 감응이 더욱 아득하여 또다시 기도하라고 명하였으니, 실로 내가 불효하기 때문이며 또한 내가 불초하기 때문이다.

아, 2차, 3차 기우제도 모두 보사제를 지내야 하니, 두루 적시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두 차례나 내렸다. 오늘 삭제^{朔祭}는 보사제를 겸해야 하는데 삭제의 지영^{祗迎}만 하였으니, 이는 위로는 영령들을 저버리고 아래로는 백성을 저버린 것이다. 누가 입시하였

辛卯七月三十日

● 祈雨祭零祀壇香祗迎後，太常舉動

一. 香祗迎入侍時，傳曰：“嗚呼，以否德無能，誠不能感乎，惠不能下究，心常慄惕，若隕淵³⁹¹谷。今者鋤旱，誠是料表，而幾次祈雨，其皆命攝，奚特不祭之歎？兩次甘霖，始也神賜，亦祭官效功，而均洽未易，太陽愈杲，昨日炙背之教，豈忍文具？夙宵一心，其惟以一人代萬人之意，而左廟右社，其於微誠，靡不用極，而只緣誠淺，今又日衰，冥應逾邈，又復³⁹²命禱，寔予不孝，亦予不肖。嗚呼，再次三次，其皆報謝，雖未周洽，猶若兩次，今日朔祭，宜兼報謝，而只行³⁹³朔祗迎，此仰負陟降，下孤元元。

391 淵：저본에는 ‘烟’.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92 復：저본에는 ‘須’.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93 行：저본에는 ‘待’.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는가. 약간 명의 승지와 사관이 시위하니 더욱 부끄러운 마음 간절하다. 누가 눈이 어둡겠는가. 얼굴을 대할 면목이 없다.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사람이 할 일은 해야 한다. 5차 기우제를 지내는 우사단은 전례로는 본디 4차 기우제를 겸행하는 곳인데 지금 남겨두었다. 아, 몇 년 전 의義에 맞도록 예禮를 새로 만들어 몇 차례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 『춘추春秋』를 보아야 하니, 가뭄을 걱정하여 우사단에 기우제를 지내는 것 또한 삼대三代之 예법다. 택일하지 말고 오는 2일에 대신을 보내어 섭행하게 하라. 아, 참으로 나 한 사람 때문인데 모두 섭행하도록 명하였다. 한 사람이 홀로 편안하니 어찌 감히 달라지겠으며 어찌 비가 쏟아지겠는가. 제문祭文은 방금 친히 지었으니 내일 향을 지영祇迎하고 그대로 전설사典設司에 묵겠다. 예방 승지는 잘 알아서 해당 조에 신칙하고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으라. 부르는 대로 다 썼는데, 제지하는 바람에 배위단配位壇의 사안은 중지하였다. 누구의 단인가. 신농씨神農氏의 단이다. 더구나 이 단壇은 예전에 의義에 맞도록 예禮를 새로 만들고 시행하라 명하였다. 지금 비록 중지하였으나 한 번 정위正位로 삼아 본단本壇에서 시행하였는데 중지하라 명하였으니 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내일 향을 지영한 뒤 태상시太常寺 신실神室에 가서 신농씨에 배알하고 오겠다. 협련군挾輦軍 60명은 궐内の 입직으로 하고, 전상군前廂軍과 후상군後廂軍 60명은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 군사 중 궐외의 입직으로

其誰入侍? 畧干承史侍衛, 采切愧慙. 其誰³⁹⁴視昏? 對顏無面. 莫³⁹⁵曰誠淺, 人事宜修. 五次祈祭雩壇, 前例本是四次兼行者而今留. 嗚呼, 頃年義起, 幾次親禱. 須看春秋, 閔旱祭³⁹⁶雩, 亦是三代之禮, 不卜日, 來初二日遣大臣攝行. 嗚呼, 誠由一人, 而皆命攝行, 一人自便, 焉敢異也? 又何得需? 祭文今方親製, 而明日香祇迎, 仍宿典設司, 禮房知悉, 申飭該曹, 諸執事另擇. 呼寫以畢, 因掣肘配位壇中止, 其壇誰? 卽先農也. 況此壇, 昔年義起命行者, 而於今雖止, 一爲正位而行於本壇, 有命中止, 予心若何? 明日香祇迎後, 詣太常神室拜³⁹⁷神農氏而來.

394 誰 : 저본에는 '雖'.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95 莫 : 저본에는 '若'.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96 祭 : 저본에는 '奈'.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97 拜 : 저본에는 '拜第'.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하라. 훈련대장은 신영^{新營}의 표하군^{標下軍}을 거느리
되, 금군만 수가^{隨駕}하라. 세손^{世孫}을 수가하는 협여
군^{挾輿軍} 20명 역시 내영^{內營}에 입직한 사람으로 배위
陪衛하되 같은 패군^{牌軍}이 수가하라. 시장원과 익위사
는 입직만 거행하고, 유영^{留營}과 유진^{留陣}은 하지 말고
비면사 당상만 삼간석교^{三間石橋}에서 지영하라.”
하였다.

신묘년¹⁷⁷¹ 8월 1일

비망기에,
“지금 비는 누가 주셨는가. 지금 비는 누가 주셨는가.
기도는 하루 이틀 다시 보고서 신실^{神室}에 배알하겠
다. 하교하면 시각 단자를 들이되 정시만 들이라.”
하였다.

● 보사제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지금은 기도를 정지하였지만 보사제는 3일에 하겠
다.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挾輿軍六十名，以內入直，前
後廂軍六十名，以禁·御³⁹⁸兩
營外入直，訓將率新營標下軍
都領，只禁軍隨駕。世孫隨駕
挾輿³⁹⁹軍二十名，亦以內營入
直陪衛而同牌中隨駕。春桂坊
只入直舉行，留營·留陣⁴⁰⁰安
徐，只備堂三間石橋祇迎。”

辛卯八月初一日

一. 備忘記：“今雨誰賜，今雨
誰賜？祈禱更觀一兩日，拜神
當爲，時刻待下教，只入正時。”

● 報謝祭

一. 以承傳色口傳下教曰：“今
則祈禱停止，報謝祭初三日當
爲，祭文當製下矣。”

수정

398 御：저본에는 ‘禦’.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399 輿：저본에는 ‘輦’.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00 陣：저본에는 ‘陳’.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전교하기를,

“어제 저녁에 마음을 써서 밤중에 단비가 내렸으니 참으로 천만뜻밖이다. 누가 주신 것인가. 누가 주신 것인가. 명령께서 주신 것이니 보사제를 감히 지체할 수 있겠는가. 모레 대신에게 명하여 종묘와 사직에 보사제를 지내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비가 내렸다고 말하지 말고 제물은 정결하게 하고 집사들도 각별히 가려 뽑으라.”

하였다.

● 보사제를 지낸 제관에게 상을 준다.

전교하기를,

“옛사람이 ‘비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을 풀지 말라.’ 하였으니 참으로 오늘을 두고 한 말이다. 이처럼 비가 쏟아지지 않아 5차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데 지금 비가 내릴 기미가 막연하니, 어찌 5차만 지내겠는가. 아, 오늘 쏟아진 비를 어찌 소나기라고 하겠는가. 참으로 두루 적셨다. 그러나 어찌 감히 보사제를 지내라고 하고서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내일 지영하고 그대로 전설사에서 묵어 명령에게 사례하겠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더 이상 조물주가 시기하지 않으면 건공탕을 예전처럼 먹겠지만 어찌 나 자신을 위해서이겠는가. 이 또한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뜻에 우리러 사례하는 것이다. 보사제를 지냈으니 공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종묘 헌관에 게 구마_{廐馬} 1필을 직접 주고, 전사관_{典祀官}과 대축_{大祝}

一. 傳曰：“昨夕用心，夜中甘露，誠是千千萬萬料表，是誰之賜？是誰之賜？陟降攸賜，報謝敢稽？再明日命大臣，宗社報謝。祭文製下，莫云得雨，祭物致潔，諸執事另擇。”

● 報謝祭祭官賞格

一. 傳曰：“古人云，勿以得雨而解心，正謂今日也，若是不需，其將五次，觀今漠然，奚特五次？嗚呼，今者之需，豈云霎時？誠洽誠洽，然何敢曰報謝而弛心乎？明日祇迎，仍宿典設司，仰謝陟降。雖然，自此以後，若復無造物，建功將依前，豈爲自⁴⁰¹己？其亦仰謝眷恤之意，既已報謝，何無酬功？宗廟獻官，廐馬一匹面給，典祀官·大祝，半熟馬一匹，其餘諸執事，各兒馬一匹賜給。”

401 自：저본에는 ‘月’.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8월 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에게 반숙마^{半熟馬} 1필을, 그 나머지 집사들에게 각각
아마 1필을 내려 주라.”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4월 11일

비망기에,
“아, 비록 회포는 풀었지만 가뭄 걱정은 한창 간절
하다.”
하였다.

● 1차 기우제

전교하기를,
“아,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먹을 것에 의
지한다. 겨울에 눈이 비록 적지 않게 내렸으나 봄
부터 여름까지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쳤다. 여러 도
가 장계로 아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매우 근심스럽
다. 날마다 서풍^{西風}이 불고 가뭄이 예사롭지 않으니
어찌 농민 뿐이겠는가. 보리도 걱정스러우니 백성을
위하는 도리에 있어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어찌 내게 묻기를 기다리겠는가.
삼각산·한강·목멱산에 1차 기우제를 지낼 것이니,
3품 당상관을 보내 내일 향을 받고 집사들도 각별히
가려 뽑고 제물과 단을 청소하는 등의 일도 각별히
신척하라.”
하였다.

壬辰四月十一日

一. 備忘記：“噫，其雖伸懷，
方切悶旱矣。”

● 初次祈雨

一. 傳曰：“噫，國依於民，民
依於食⁴⁰²，而冬雪雖不少，自
春至夏，雨涉愷閏而止者，聞
諸道狀聞，心甚悶也。日下西
風。旱氣異常，豈特三農？牟
麥可悶，其在爲民之道，何敢
少忽？亦何待其稟？三角山·
漢江·木覓山，初次祈雨祭，遣
三品堂上官，明日受香，諸執
事另擇，祭物掃壇等事，另加
申飭。”

402 食：저본에는 ‘國’.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전교하기를,

“지금 한창 가뭄을 근심하여 1차 기우제를 지내라고 명하자마자 경기 감사가 마침 입시하였다. 그러므로 도내의 영험한 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라고 또한 하교하였다. 지금 황해 감사의 장계를 들으니 그 또한 걱정스럽다. 기우제를 똑같이 설행하라고 회유^回論하라.”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4월 13일

약방이 입진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흠뻑 적시지는 못했지만 뿌리는 것보다는 낫다. 2차 기우제는 비가 내리는 형편을 다시 보고 내게 물어보라.” 하였다.

비망기에,

“저녁 내내 기다리다가 밤을 새기까지 하였지만 옷이 축축해질 뿐 여전히 시원하게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밤 이후로는 더욱 적게 내렸으니 2차 기우제를 어찌 감히 머뭇거릴 수 있겠는가. 이는 ■■■ 마음의 근심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예방 승지는 손을 씻고 실^室에 가고 월령 충의위^{月令忠義衛}를 시켜 손을 씻고 베껴 쓰게 하라. 이어 대압^{代押}하고 내일 아침에 똑같이 지영하라. 또한 태상시와 이조로 하여금 즉

一. 傳曰：“今方悶旱，纔命初次祈雨，畿伯適入侍，故道內靈驗處祈雨事，亦爲下教，今聞海伯狀聞，其亦可悶，祈雨祭一體設行事，回論。”

壬辰四月十三日

一. 藥房入診時，傳曰：“雖未浹洽，於灑猶愈，再次祈雨，更觀雨勢以稟。”

一. 備忘記：“竟夕以待，至於徹宵，而沾濕而已，猶靳快洽，夜以後以渺然，至於再次，何敢逡巡？此■■■，心悶曷諭？禮房盥水詣室，令忠義盥水繕⁴⁰³寫，仍爲代押，來朝一體祇迎，亦令太常吏曹，卽爲預

403 繕：저본에는 ‘繕’.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1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시 미리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4월 15일

● 5곳에서 보사제를 지내다.

예방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심한 가뭄은 나 한 사람이 초래한 것이니 두려운 마음을 어찌 형언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2차 기우제를 지내자 비가 내린 것은 참으로 뜻밖이다. 임금은 덕이 부족하더라도 명령께서 백성을 돌보아 주어 비가 쏟아졌다. 그렇지만 1차 기우제에서는 옷이 축축해질 정도였고, 2차 기우제에서 쏟아져 내렸으니 이는 누가 주신 것인가. 누가 주신 것인가. 5, 6월에 지내는 기우제와는 다르니 어찌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신에게 사례하겠는가. 또한 오래된 규례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상서^{尙書}』에서 말한 ‘우리 임금님을 기다린다.[^{俟我后}]’라는 말과 같다.

제문은 지어 내릴 것이니, 삼각산·한강진·목멩산에 1차 기우제의 규례대로 3품 당상관을 헌관을 삼고 저자도·용산강에도 중신을 보내어 내일 향^향을 받아 보사제를 지내라. 모든 일은 비가 내리기 전과 후에 사람 마음이 다르니, 또한 정성껏 지내라. 용산강과 저자도는 예전에 정식으로 삼았으니 이번에는 위관으로 지방을 쓰라고 똑같이 분부하라. 지영은 하겠지만 의주^{儀註}는 하지 말라. 입직만 시위하고, 정시

待.”

壬辰四月十五日

● 五處報謝祭

一. 禮房承旨入侍時, 傳曰:
“今者亢旱, 一人所召, 悚惕曷諭? 雖然, 再次得雨, 誠是料表. 君雖否德, 顧恤元, 其得其需. 雖然, 初次也已得其需, 再次也能得其需, 是誰之賜之賜? 五六月祈雨有異, 其所謝神, 何待報秋? 亦有故例, 此正若尙書所云⁴⁰⁴我后者也. 祭文製下, 三角山·漢江·木覓山, 依初禱例, 堂上三品爲獻官, 楸子島·龍山江, 亦遣重臣, 明日受香, 行報謝. 凡事得雨前後, 人心異焉, 亦爲虔誠. 龍山江·楸子島, 曾所定式, 今番位版紙⁴⁰⁵書寫事, 一體分

404 俟 : 저본에는 ‘經’. 『서경』에 근거하여 수정

405 紙 : 저본에는 ‘祭’.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시각단자時刻單子만 들이는 것은 모두 예전대로 하라.” 하였다.

● 기우제 헌관 이하에게 상을 준다.

전교하기를,

“아, 대한大寒 뒤에 또 양춘陽春이 있고 또한 양춘 이후에는 가뭄이 없다. 아, 이 가뭄은 내가 너무 편하게 지냈기 때문이다. 50주년이 내일이니, 백성을 위해 마음을 쓰는데, 어찌 평상시의 규례에 구애받겠는가. 마음이 몹시 안절부절못하던 차에, 1차 기우제에서 옷이 축축해질 정도로 비가 내린 것도 예상 외였고, 2차 기우제에서 땅을 적실 줄 또한 어찌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한편으로는 천지신명이 우리 백성을 돌보셨고 둘째는 헌관이 정성을 다하여서이다. 옛날 은殷나라 탕왕湯王은 상림桑林에서 친히 기도하였는데 지금 노쇠한 임금은 누워서 섭행을 명하였으니, 이러이러한데도 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미 신에게 보사제를 지냈으니 어찌 신하들에게 상을 빠뜨리겠는가. 1차 기우제의 헌관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감찰 이하 집사들에게 각각 현궁弦弓 1장張을 내려 주라. 2차 기우제 관원들에게 내리는 상과는 또한 다르니, 어째서 다르다고 하는가. 예조 판서와 호조 판서가 비를 내리게 하였으니 헌관에게 각각 반숙마半熟馬 1필을, 감찰과 집사들에게 각각 아마 1필을 내려 주라.” 하였다.

付, 當爲祇迎, 儀註安徐, 入直侍衛, 只入正時, 皆依前.”

● 祈雨獻官以下賞格

一. 傳曰: “噫, 大寒之餘, 又有陽春, 陽春之後, 亦無其旱. 嗚呼, 此旱由予太康, 五紀在明, 爲民用心, 何拘常例? 心切憧憧, 初次霑濕, 已是料表, 再次其洽, 亦豈夢想? 一則神祇, 恤我元元, 二則獻官, 恪⁴⁰⁶勤其誠, 粵昔股湯桑林親禱, 於今衰君臥而命攝, 若此若此, 能得此雨? 既報謝于神, 何闕賞⁴⁰⁷于臣? 初次祈雨祭獻官, 各兒馬一匹, 監察以下諸執事, 各絃弓一張, 於再次, 其亦異矣, 何云異乎? 宗伯·度支之能得雨也, 獻官各半熟馬一匹, 監察·諸執事, 各兒馬一匹賜給.”

406 恪 : 저본에는 '愼'. 『송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07 賞 : 저본에는 '實'. 『송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임진년¹⁷⁷² 4월 17일

- 교외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헌관은 임시 가옥을 만들어 들어가 지내게 하다.

4월 12일 봉심한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지내더라도 축축하게 젖는 것은 막아야 한다. 더구나 축문이 축축하게 젖는다면 어떻게 태우겠는가. 신위^{神位}를 봉안한 세 곳에 기름 먹인 차일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이대로 거행하라. 몇 해 전에 친히 제사 지낼 때 헌관에 대신^{臺臣} 한 명이 있어서 천막에 초둔^{草屯}을 덮고 아뢰었으므로 당시 문답이 다 실려있다. 지금 헌관과 집사가 모두 한데 앉아 있다고 하니, 예를 거행할 때 한데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전에 이처럼 축축하게 젖는다면 그 불경함이 어떠한가. 지금 비가 내릴 기미가 막연하지만 비가 내린다면 막중한 제관의 모습이 한심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교외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헌관이 들어가 거처할 곳에 임시 가옥을 설치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壬辰四月十七日

- 凡郊壇祭獻官，設假家入接

一. 今四月十二日，奉審承旨入侍時，傳曰：“其雖祈雨，宜遮沾濕，況沾濕祝文，則何以望燎？三處奉神位處，⁴⁰⁸ 設油遮日，此後亦依此舉行，而頃年親祭時，一臺臣有獻官，依幕蓋草屯⁴⁰⁹以聞，故其時間答備載，今聞獻官·執官，皆露坐⁴⁰⁹云，行禮時，露禱可也，其前若而沾濕，其不敬若何？今雖漠然，其若下雨，莫重祭官，景像⁴¹⁰寒心，自今凡郊壇祭獻官入接處，設假家事，分付。”

408 則何以望燎三處奉神位處：저본에는 ‘乎何以三處奉神位望燎處’.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09 坐：저본에는 ‘處’.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10 像：저본에는 ‘色’.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임진년¹⁷⁷² 4월 20일

● 가뭄을 걱정하다.

전교하기를,

“요즘도 여전히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밤
낮으로 구름을 바라보는데, 가만히 누워 있다가도
문득 알아차렸으니 마음이 건널 수 없다. 어찌서인
가. 한^漢나라와 당^唐나라를 보아야 한다. 한 무제^{漢武帝}
는 50년간 재위하였으니 14세에 즉위하였기 때문
에 그런 것이다. 아, 가만히 누워서 무엇을 생각하였
는가. 7세에 봉작된 해를 다시 만나고 8세에 조정이
다시 밝아진 해를 거듭 만났다. 그 나이를 헤아려
보면 그래도 으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갑술년¹⁷⁵⁴,
영조³⁰ 회갑^{回甲} 때 신축년¹⁷²¹, 경종¹을 추념하였는데, 내
마음이 어떠하였겠는가. 가슴이 철렁하였다는 말로
는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 후 20세에 관례 치른 해
와 21세에 혼인한 해도 모두 다시 만났다. 갑신년이
어떤 해인가. 아, 내가 두 번 만난 해이니, 한 번은
11세이고 한 번은 71세이다. 올해는 어찌 그리도 자
주 겹치는가. 2월은 바로 사저^{私邸}에 나갔던 달이고,
또 도총부에 처음 입직한 달이며, 오는 5일은 종부
시 정^宗宗簿寺正이 된 달이다. 아, 이는 을유년 이전에 듣
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기억나노라.

아, 내년 봄이면 내 나이가 여든이다. 재위 기간은
나는 49년이라고 하지만 신하에게는 반드시 50년이
라고 한다. 어찌 다만 이것뿐이겠는가. 주량^{舟梁}²⁰도
15년이니 어찌 그리도 어리석은가. 더구나 올해는

壬辰四月二十日⁴¹¹

● 悶旱

一. 傳曰：“近者猶有望雨心，
夙宵望雲漢，靜臥忽覺，心⁴¹²
不能耐，何則？須看漢·唐，漢
武雖在位五十年，因十四即位
而然。嗚呼，靜臥以思者何？
七歲封爵重逢，八歲重光再
逢，計其年，猶可謂例也。甲
戌回甲，追憶辛丑，予心若何？
其曰心隕，亦歇後語也。其後
二十歲冠禮，年二十一歲執
贄，年皆重逢，甲申何年？嗟，
予再逢，一則十一歲，一則
七十一歲，其於今年，一何稠
疊？二月卽就邸月，亦初直摠
府月，來初五日爲宗正月。嗚
呼，此未聞於乙酉前者，因此
以憶。嗚呼，明春予年八十，於
在位，予則雖稱四十九，於臣
則必曰五十，豈特此也？亦舟

411 二十日：저본에는 '二十一日'.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12 心：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북한산성에 수가隨駕했던 해²¹를 다시 만나 행궁行宮에 앉고 장대將臺에 올랐으니 이렇게만 해도 스스로 너무 편하다고 여겼다. 너무 편하다고 여겼다. 더구나 60년 전 올해 초겨울에는 내가 처음으로 동향제冬享祭를 섭행하였고, 이듬해 늦봄에는 강화도에 봉안하러 갔고, 그해 8월에는 처음으로 능의 헌관에 차임되기를 구하였다.²² 그렇지만 이제는 강화도가 웬 말인가. 오늘 서교에 가는 것도 확실하기 어려운 데, 하물며 동교에는 어느 겨를에 가겠는가. 이와 같으므로 지척의 의릉懿陵에도 오랫동안 예를 거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추모하는 점은 조정 신하와 근시들 중에 복제를 마치고 다시 입시한 이가 많으니, 이를 미루어 보면 나의 무지함으로…… 갑신년에서 6년이면 무술년^{1718, 숙종44}이고, 2년 뒤 경자년에는 선왕이 승하하시고 형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나의 젊은 시절이었다. 선왕이 회갑이 된 해 승하하시고 왕위를 이은 것은 뜻밖이나, 이 두 해를 만났으니 효라고 하겠다. 효라고 하겠다. 아, 무심한 것은 세월이고, 어리석은 것은 나이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이 분발하려고 한다. 더구나 이러한 때 마음 또한 안절부절못하니, 내가 말을 바로 해야

20 주량 : 제왕이 후비를 친영(親迎)하는 일로 1759년(영조35) 영조가 정순왕후 김씨를 맞이한 일을 가리킨 듯하다.

21 북한산성에 수가했던 해 : 1712년(숙종38) 5월부터 6월까지 북한산성에 행궁을 쌓았다. 『肅宗實錄 38年 5月 3日, 6月 9日』

22 더구나……구하였다 : 영조는 19세 임진년에 잡자로 가서 그해 동향제에 차임되었고, 20세 계사년 겨울 아헌관에 차임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43年 7月 1日』

梁十五年, —⁴¹³何冥然冥然?
況今年重逢北漢隨駕年, 坐行宮登將臺, 斯猶自謂太康太康. 況今年初冬, 予冬享初攝祀, 明年暮春, 沁都奉安行, 仲秋初求差於陵獻官, 雖然, 沁都何言? 今日西郊, 亦難期必, 況何暇東郊? 若此故咫尺懿陵, 曠禮已久, 亦因此追慕者. 朝臣近習闕服復侍者多⁴¹⁴, 以此推之, 以予冥然⁴¹⁵, 若六年即戊戌, 越二年即庚子, 重光藏樂, 即予少年時, 回甲爲國初藏樂, 已是料表, 若逢此二年, 曰孝曰孝. 嗚呼, 無心者歲月, 冥然者即予, 興惟及此, 心欲⁴¹⁶奮焉. 況於此際, 心亦憧憧, 予當正言, 初次雖早, 已

413 —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14 多 : 저본에는 '留'.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15 以予冥然 : 『승정원일기』의 용례에 근거한 바 이 뒤에 결락된 문장이 있는 듯하다.

416 欲 : 저본에는 '若'.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졌다. 1차 기우제는 비록 가물었으나 실로 백성을 위하여 지냈다. 두루 적시지는 않았더라도 1척에 가깝다고 보고하였다. 대엿새 지나 날이 개었으니 어찌 몹시 애타고 걱정하지 않겠는가. 어제 「권학문勸學文」의 ‘오늘 배우지 않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하유하지 않았던가. 곧바로 산삭하라 명하였지만 이 어찌 마음만 속일 뿐이겠는가. 신도 속이는 것이다. 이미 부르는 대로 적게 하였고 신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찌 감히 속이겠는가. 이는 내가 옛날을 생각하고 분발하고자 하는 가운데 돌연 모퉁이 송연해지는 점이니 지난 임진년과 똑같이 거행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4월 2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한복기^{韓福基}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분 높이로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實爲民，雖未周洽，既報近尺，
雖五六日開霽，豈渴悶乎⁴¹⁷?
而昨日豈不論勸學文今日不
學有來日乎? 既命旋刪，此豈
特欺心? 亦欺神也，既已呼寫，
神祇監臨，何敢欺欺欺? 此予
憶昔欲奮之中，蹶然悚然者，
一依昔壬辰舉行事，分付儀
曹.”

壬辰四月二十三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韓福
基手本內: ‘今日下雨，水標看
審，則一尺三分流下’是如爲白
臥乎事.”

⁴¹⁷ 豈渴悶乎: 저본에는 ‘豈乎渴悶’.
문맥을 살펴 바로잡았다.

임진년¹⁷⁷² 4월 24일

● 가뭄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아래에서 인사를 닦으면 위에서 호응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처럼 정성을 들였거늘 쏟아지던 비가 어찌 그치는가. 옛저녁에는 곧 그쳤지만 밤새 비가 내리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 태양이 창을 비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임금은 비를 얻었다가 곧 그쳤는데, 신하가 이를 계기로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라고 청하고자 하니, 내가 아무리 노쇠하였지만 이 점은 익숙히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을 보니, 한편으로 내 마음을 비추었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권면하였다. 어째서 내 마음을 비추었다고 하는가. 이는 나의 굳은 마음을 헤아려서이다. 어째서 내 마음을 권면하였다고 하는가. 이는 내 마음이 풀어질까 두려워서이다. 아, 내가 어찌 한 차례 비가 쏟아졌다고 해서 마음이 풀어지겠는가. 아, 권면하는 사람이 천명이라도 내 마음이 어찌 흔들리겠는가. 그렇지만 하늘은 높기만 하니 어떻게 호소하겠는가. 비가 내릴 기미는 막막하니 어떻게 감동시키겠는가.

지금 시임, 원임 대신이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비를 얻었다고 하례하기 위해 오는 것인가, 이 일로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라고 청하려고 오는 것인가. 어찌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는 데 있겠는가마는 의도가 반반이다. 이와 같으니 어제 가랑비가 내린 것도 마땅하고 오늘 해가 뜬 것도 마땅하다. 이와 같

壬辰四月二十四日

● 悶旱

一. 備忘記：“予聞修於下有於上，予若有誠，需何止焉？昨夕雖旋止，猶冀徹宵，今朝太陽照窓，其何由乎？於君得需而旋止，其臣欲因此而請復膳，予雖衰，知此熟矣。今朝見太陽，一則照予心，一則勉予心，何謂照予心？此諒予固心也，何謂勉予心？此或恐懈⁴¹⁸其心也。嗚呼，予心何敢一得需而解？嗚呼，予心，勸者雖千，其何動也？雖然，高高何籲？漠漠何孚？今聞時原任來，爲予賀得需而來乎？因此請復膳而來乎？豈在復膳？意在五五，若此昨日霏霽宜也，今朝太陽亦宜也，若此而而勉予是也，勉予是也。今見太陽，由予誠淺，其況此時，抑何若此？臨時下教，端午帖皆停。”

418 恐懈：저본에는 '解'.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으니 나를 권면하는 것이다. 나를 권면하는 것이다. 오늘 태양을 본 것은 나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러한 때 또한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때 가서 하교하겠으니, 단오첩端午貼을 모두 정지하라.” 하였다.

● 가뭄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효제孝悌 뿐이니, 옛날을 추억하면 억만 가지 생각이 든다. 나라가 나라다운 까닭은 옛 제도를 따르는 것 뿐이다. 아, 이 가뭄에는 비록 이런 일이 없더라도 신하들이 내게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라고 한 이상 가을이 된 뒤에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는 것이 300년을 내려온 오래된 규례이다. 아, 올해가 우연히 같겠는가. 이는 비록 임금의 마음을 위하려고 그 미덕을 따르려고 해서이지만, 공자孔子가 말하였으니,²³ 막중한 옛 규례를 어찌 감히 종부사에서 이랬다저랬다 한단 말인가.

어제 단비가 쏟아졌다가 저녁에 다시 가랑비가 내렸고 오늘 아침은 쾌청하니 어찌 드러난 현상만 보기를 바라겠는가. 또한 어찌 안절부절못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참으로 두렵고 부끄러워서이다. 다시 옛 사

23 공자(孔子)가 말하였으니 : 자공(子貢)이 초하룻날에 종묘에 고유(告由)하면서 바치는 희생양을 없애려고 하자, 공자가 “너는 그 양을 아까워하느냐. 나는 그 예를 더 아끼고 싶다.爾愛其羊 我愛其禮”라고 말한 고사를 가리킨 듯하다. 『論語 八佾』

● 悶旱

一. 備忘記：“人之所以爲人，孝悌而已，追憶昔年，予懷萬億，國之所以爲國，遵古例而已。嗚呼，於此旱⁴¹⁹，雖無此事，既曰復膳，則報秋後復膳，三百年古規。噫，今年偶同者乎？此雖由於爲君心，將順其美，孔聖既云，莫重古例，何敢爲宗簿⁴²⁰低仰？昨得甘霖，夕復霽，今朝快晴，奚特願⁴²¹察其影？亦豈云憧憧？誠瞿然惡然。欲復詣舊邸，仰⁴²²謝

419 於此旱：저본에는 ‘前此年’.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20 簿：저본에는 ‘쭈’.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21 願：저본에는 ‘運’.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22 仰：저본에는 ‘何’.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저私邸에 가서 하늘에 사죄하고 싶었지만 군사들을 위해 이곳에 머물렀으니, 이 마음을 펼 수 있었고 모든 일이 다 편하였다. 그런데 모두 밤새 함문閤門을 지키면서 임금으로 하여금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모두 나의 정성이 알아서이니, 무슨 낮으로 신민을 대하겠는가. 승정원에서는 왕명의 출납을 미답게 하고 유신儒臣은 경서를 인용하여 의리를 말하지만 노년의 나는 우스울 뿐이니, 해가 서쪽에서 뜨더라도 내 마음이 어찌 바뀌겠는가. 올해도 이와 같은데 내년 봄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하루 두 끼는 모두 몇 숟갈 뜨고 만다. 봄에도 너무 편하였는데 여름에 어찌 다시 하겠는가. 이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이다. 내 마음은 옛일을 따르려고 하였는데, 신하들에게 곤란을 당하여 억지로 따르게 되었으니, 무슨 낮으로 하늘을 우리르겠으며 무슨 낮으로 훗날 배알하겠는가.

아, 두 임금을 모신 상신相臣도 오히려 임금과 형을 저버리니, 노쇠하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어찌 차마 하늘을 버리고 옛날을 저버리겠는가. 임년壬年과 계년癸年 두 해가 서로 같더라도 지켜야 마땅하거늘 하물며 같은 해 같은 달의 경우는 오죽하겠는가. 이 청이 종식된 뒤에야 내가 신하들을 응대하고 건공탕을 마시겠다. 아, 갑술년^{1754, 영조30}에도 그러하였으니, 더구나 올해 그제에는 백성을 위해 안절부절못하지만 나의 도리를 하였다. 그러므로 억지로 건공탕을 마시기는 했지만 지금 나의 마음이 금석과 같으니

蒼蒼，而爲三軍留此，此心可伸，萬事皆⁴²³便，則皆竟夕守閤，使其君莫能一刻交睫，此皆予誠淺，何顏對臣民？政院惟允，儒臣引經，暮年予哂，日雖西昇，此心豈更？今猶若此，明春勝道？因此兩時皆數匙，春已太康，夏豈復爲？此猶第二件事，予心則遵昔，困於臣而強從⁴²⁴，何顏仰蒼穹？何顏拜⁴²⁵他日？噫，兩代相臣，其猶⁴²⁶負君負兄，莫云其衰，予豈忍負蒼穹負昔年？壬癸兩年，雖相同，宜守宜守，況同年同月乎？此請息，然後予當酬應諸臣，當飲建功矣。噫，甲戌猶然，況今年再昨爲民憧憧，惟修予道，故雖強飲建功，

423 皆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24 從 : 저본에는 '濫'.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25 拜 : 저본에는 '相'.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26 猶 : 저본에는 '雖'.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누가 감히 나를 이기겠는가.”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4월 26일

● 가뭄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어찌 계속 맑은 날씨 뿐이겠는가. 바람은 어떠한가.
아, 나뭇가지를 울리는 바람은 바로 잘 다스려지는
세상의 바람이니, 바람 소리를 듣고 풍기^{風旗}를 물어
보니 서풍이었다. 장맛비에 서풍이 불어 비가 내릴
듯 하였는데, 오늘 과연 쟁쟁하니 바람의 재해를 어
떻게 하겠는가. 바람 소리가 어지러우니 내 마음도
어지러워진다. 어찌 비가 올 기미만 막연하겠는가.
바람도 이와 같다. 신시^{申時}가 되려 하는데 비가 올
징조는 아득하고 바람소리 또한 근심스러우니, 누
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
이다. 이를 듣고서 어찌 내 탓이 아니겠는가. 지난번
에 어찌 가뭄만 걱정하였는가. 이번에 음식 가짓수
를 줄여야겠다. 비를 품은 바람도 아니고 비를 흠뻑
리는 바람도 아니니 여기서 정사가 어지럽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세상이 어지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뭄을 근심하여 마음을 쓰면 비가 내렸으니,
바람 소리에도 마음을 쓰겠다. 아, 노쇠한 임금은 언
제 마음을 풀겠는가.”
하였다.

於今予心，若金石，孰敢勝
予？”

壬辰四月二十六日

● 悶旱

一. 備忘記：“豈特爲仍霽？風
色若何？噫，鳴⁴²⁷條卽治世風，
聞風聲問風旗，卽西風，於霖
雨，西風若下雨，而今日果晴
晴，何以風難？風聲亂而心亦
亂，豈特雨漠然？風亦若此，
將報申牌，雨徵⁴²⁸漠然，風聲
亦難，是誰是誰？卽予卽予，
聞此豈非已？頃者奚特悶旱？
此可以減膳也。旣非釀雨風，
亦非散雨風。此可見政亂，此
可見世亂。悶旱用心而得雨，
風聲亦用心。嗚呼哀君，何時
用心弛？”

427 鳴：저본에는 '鳴'.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28 徵：저본에는 '往'.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임진년¹⁷⁷² 4월 28일

● 가뭄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그 그림자를 봐야 하는 법이니 내 모습을 보아야
 한다. 어젯밤 가랑비는 지난날과 같았으니 어째서인
 가. 어째서인가. 노쇠한 임금을 면려하니 이 한 가지
 일에도 남은 뜻이 있다. 막중한 용정^{龍亭}과 고취^{鼓吹}
 는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기 전에 헌가와 고취를 모
 두 정지하라. 아, 천 사람이 모두 잠든 밤에 얼굴에
 빗방울이 적시니 나 한 사람과 협시 중관^{挾侍中官}, 견
 여 내시^{肩輿內侍} 뿐이었다. 삼공^{三公}이 아는가, 구경^{九卿}
 이 아는가. 아, 도위^{都尉}와 부위^{副尉}가 초경^{初更}에 예
 를 마쳤으므로 가랑비가 내리는 것은 알았지만 3경
 更 3점^{三點}에 부슬비가 내린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이
 는 바로 임오년¹⁷⁶² 여름 영모당^{永慕堂}에서의 경우와
 같다. 아, 예전에 자전의 하교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효^孝를 드러냈다. 아침에 관상감에서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때에 이런 소식을 들으니 비 1분^分이 1척^尺과
 같다. 지금 어찌 애타고 걱정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
 는가. 걱정하고 걱정하지만 노년이라 정성이 얇다.”
 하였다.

壬辰四月二十八日

● 悶旱

一. 備忘記：“宜見其影，卽予
 卽⁴²⁹予，昨夜霖霖，其若前日，
 是何是何？其勉耗君，惟此一
 事，其猶餘意，只莫重龍亭⁴³⁰
 鼓吹復膳前，軒架鼓吹皆停。
 噫，千人皆睡時，夜面沾雨，惟
 予一人，與挾侍中官·肩輿內
 侍，三公知乎？九卿知乎？嗟，
 都尉·副尉，初更禮畢，霖霖
 雖知，三更三點微雨，其豈知
 也？此正若壬午夏永慕堂。噫，
 前則受慈教，今予見孝，朝聞
 雲觀以報，此時此聞⁴³¹，一分
 若一尺，今豈渴悶而然？其悶
 其悶，暮年誠淺也。”

429 卽：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30 龍亭：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31 聞：저본에는 ‘中’.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4월 2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임진년¹⁷⁷² 5월 9일

● 가뭄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날씨가 참으로 이상하니 바로 나 때문이다. 아침에
 는 더러 지나치기는 했지만 빗방울도 없이 쾌청하
 니, 지금 어찌 애타고 걱정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
 로 기미를 보고 일어나는 경우²⁴이니, 어찌서인가.
 나를 면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대해지면 사망 천
 리에서 올 것이다. 가뭄의 징조가 두렵고 두려우니
 어찌 감히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할 수 있겠
 는가. ‘굳게 지킨다.[固守]’라는 두 글자가 지금 나에
 게 부적이다.”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5월 11일

비망기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니, 나는 나 때문이라고 여겨
 현정軒庭에 불러 정승이 아뢴 말을 들었는데 오로지
 오늘날 조정 신하들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
 으니 마음이 천번 만번 무너진다. 어찌 단비라고 말
 하는가. 이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

24 기미를……경우 :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 5장에 나오는 말로, “군자는 기미를 보고 일어나서 하루가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君子見幾而作, 不俟終日.]”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즉 현명한 이는 시국의 기미를 살펴서 떠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하루도 미적거리지 않고 즉시 떠난다는 말이다.

壬辰五月初九日

● 悶旱

一. 備忘記: “日候誠異常, 卽予卽予, 於朝其或過矣, 無點雨而快晴, 今何渴悶? 而此正見幾⁴³²而作⁴³³者, 何則? 勉予⁴³⁴予. 此其若張大, 方千里而來, 其旱之⁴³⁵徵兆, 悚然慄然⁴³⁶, 何敢少弛? 固守二字, 爲今予二守符也.”

壬辰五月十一日

一. 備忘記: “今者靳需, 予以謂予, 召軒庭, 聞相臣所奏, 專由於今日廷臣, 聞此, 心千

432 幾 : 저본에는 ‘機’.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33 作 : 저본에는 ‘昨’.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34 勉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35 之 : 저본에는 ‘其旱’.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36 慄然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아, 세 차례 사저私邸에 갔다가²⁵ 경자년¹⁷²⁰, 경종즉위에
입궐하였다. 내가 옛 사저에 누울 적에는 좋은 때였
다고 할 만하다. 나를 위해 지금 조정 신하들에게
말하니, 이 마음이 모두 해소된 뒤에야 단비가 내릴
것이다. 임금이 돌아가려고 하니 나를 위해 대신과
경재卿宰에게 말하라. 지금 이 광경에 마음이 이미
풀렸으니 무엇을 듣겠는가.”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5월 17일

● 보사제 이후 기우제는 하교하면 거행하라고 하다.

상참과 조강朝講에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구윤옥
具允錫이 아뢰기를,

“어제 삼가 들으니, 성상께서 보사제를 지낸 뒤에도
기우제를 설행한 전례가 있는지 여부를 하문하셨다
고 하였습니다.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보사제를
지낸 뒤에도 연이어 기우제를 설행하였고 작년에도
지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형세를 보고 할 것이니, 하교하면 설행하라.”

하였다.

²⁵ 세 차례……갔다가 : 영조는 1712년(숙종38), 1714년(숙종40), 1720년(경종즉위) 세 번 궐 밖 사저에서 지냈다. 『承政院日記 英祖 45年 3月 16日』

隕氣萬墜. 何云甘露? 聞此,
予⁴³⁷心益固. 嗚呼, 就邸第三,
庚子入闕, 予臥舊邸, 可謂得
其時得⁴³⁸其時. 爲予言于於今
廷臣, 此心皆消, 然後得甘露.
君將回, 爲予言于大臣卿宰,
於⁴³⁹今此光景, 心已解矣, 何
聞何⁴⁴⁰聞?”

壬辰五月十七日

● 報謝後祈雨, 待下敎舉行

一. 常參朝講入侍時, 禮曹判
書具允錫所啓: “昨伏聞自上
下⁴⁴¹問報謝祭後, 亦有祈雨祭
設行之例與否云, 取考臚錄,

⁴³⁷ 此予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⁴³⁸ 得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⁴³⁹ 於 : 저본에는 '卿宰使'.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⁴⁴⁰ 何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1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⁴⁴¹ 下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則報謝後，連爲設行，昨年亦行之矣。”上曰：“予欲觀勢爲之，待下教設行可也。”

임진년¹⁷⁷² 5월 25일

● 3차 기우제

예조 판서, 병조 판서, 예방 승지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이러이러하다가 한 달이 다 되었으니 더 이상 어찌 지체하겠는가. 제문은 지어 내리겠으니, 기일에 앞서 치재^{致齋}하고 모래 향^香을 받고 28일 남교^{南郊}에 대신^{大臣}을 보내고 북교^{北郊}에 중신^{重臣}을 보내어 3차 기우제를 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대축^{大祝}은 유신^{儒臣}으로 채워 차임하고, 집사들은 각별히 가려 뽑으라. 모래에는 지영^{祗迎}할 것이니 역석와^{憶昔窩}²⁶에서 계속 묵겠다. 의주^{儀註}는 하지 말라. 정시 시각단자時刻單子만 들고 입직이 시위하는 것은 모두 예전대로 하라.”

하였다.

● 기우제를 진행하다.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아, 정성으로 신을 섬겨야 한다고 명하고자 하였

²⁶ 역석와 : 영조가 7년간 시탕(侍湯)할 때 머물 던 곳으로 경희궁 연화문 동쪽 사알방(司諫房)을 가리킨다. (안장리, 2006, 『영조(英祖) 궁궐 인식의 특징』, 『정신문화연구』 29)

壬辰五月二十五日

● 三次祈雨祭

一. 禮兵曹禮房承旨同爲入侍時，傳曰：“若此若此，月將晦矣，復何遲待？祭文製下，前期致齋，再明受香，廿八日，南郊遣大臣，北郊遣重臣，三次祈雨祭爲之事，分付儀曹，大祝以儒臣填差，諸執事另擇，再明當爲祗迎，仍宿憶昔窩，儀註安徐，只入正時，入直侍衛皆依前.”

● 祈雨祭進行

一. 同日入侍時，傳曰：“嗚呼，事神宜⁴⁴²誠，欲命此，今日其雨其雨，一倍于前，其命三明，呼寫祭文，其猶若前. 凡祈雨

⁴⁴² 宜 : 저본에는 '以'.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다. 오늘 비가 내릴 기미가 전보다 갑절이어서 글피에 기우제를 명하고 제문을 부르는 대로 쓰게 하였는데 여전히 이전과 같았다. 기우제는 택일하지 않지만 이처럼 날을 넉넉하게 잡은 것은 송나라 황제가 아무 날에 비가 내리면 기우제를 지내겠다고 한 고사와 같다. 내가 노쇠하였으나 차마 이런 짓을 하겠는가. 오늘 지영하고 내일 설행하게 하였으니 모든 절차는 처음 하교한 대로 하라고 잘 알아서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 대축은 입직한 유신으로 삼다.

승전색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즉시 지영하고 즉시 정돈해서 대기하라. 대축은 입직한 유신으로 삼고 집사들은 모두 입직한 관원으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 한강진 수표를 늦게 보고한 별장을 태거하다.

같은 날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대신이 아뢴 말을 들었는데, 한강이 불어났으니 수표단자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의아하던 차에 이제야 도착했다. 지난번 관상감의 관원이 측우기를 늦게 보고한 일은 도감으로 하여금 곤장을 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치재致齋하고 있어서 태거만 하였다. 이처럼 하였는데 어

祭, 卽不卜日, 若是寬日, 若宋宗某⁴⁴³日雨者也, 雖衰忍爲此? 其令今日祇迎, 明日設行, 而凡諸等事, 依初下教知悉, 另飭另飭.”

● 大祝以入直儒臣爲之

一. 以承傳色⁴⁴⁴口傳下教曰:
“卽爲祇迎, 卽爲整待, 大祝以入直儒臣爲之, 諸執事皆以入直填差.”

● 漢江水標晚報別將汰去

一. 同日次對入侍時, 傳曰:
“今聞大臣所奏, 漢江加漲, 則宜有單子, 而尙無消息疑訝, 今乃是⁴⁴⁵焉. 若頃者雲觀官員測雨器晚報⁴⁴⁶事, 當令都監決

443 某 : 저본에는 ‘其’.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44 色 : 저본에는 ‘承’.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45 是 : 저본에는 ‘로’.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46 報 : 저본에는 ‘晚納’.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찌 이처럼 지체하여 이제 도착했는가. 해당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5월 26일

● 구대한 당상관을 현직에서 해임하다.

비망기에,
“대체로 이러한 일들은 규례대로 하는 것 같지만, 특교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찌 이런 규례에 구애받겠는가. 대신^{大臣}에게 섭행하라고 명한 경우는 내가 친히 지내는 경우와 같으니 먼저 해야 할 일도 뒤에 해야 하니, 전례가 모두 그러하다. 지금 마음을 써야 할 시기에 예조 판서가 구대^{求對}하였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는가. 물어보니 놀랍다. 구대한 해당 예조 판서는 참으로 평안 감사 때처럼 지레 먼저 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현직에서 해임하라.”

하였다.【3차 기우제를 지낼 처소에 우사단이 누락되었다. 제관의 품계는 재신으로 하였는데 전교에서 대신과 중신을 보낸다고 하였으므로 판서 구윤옥^{具允錫}이 구대하였다.】

비망기에,
“요즘 이 같은 경우가 많으니 어찌 구대할 일인가. 참으로 놀랍다. 비록 차례대로 하교를 기다리더라도

棍,而其方⁴⁴⁷致齋,只汰去,若此則其何今到而若是遲滯乎?該堂從重推考.”

壬辰五月二十六日

● 求對堂上解見任

一. 備忘記: “凡此等事, 若循例爲焉, 雖然, 於特教, 豈拘此例? 於命大臣攝處, 其猶親爲, 於先處其亦後也. 前例皆然, 則於今用心時, 聞禮判求對, 心動若何? 問也駭然, 當該求對禮判, 正若關西道臣時, 其涉輕先, 特解見任.”

【三次祈雨祭處所中, 雩祀壇落漏, 祭官品則以宰臣爲之, 而傳教內, 遣大臣重臣, 故判書具求對.】

一. 備忘記: “近者若此者多, 豈求對事乎? 良可駭也, 雖當次待下教, 亦有前例, 則焉敢

447 方: 저분에는 ‘當’.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전례가 있는데 어찌 감히 이처럼 한단 말인가. 또한 한심한 일이다. 또한 막중한 하교를 무릎에 두는 것과 똑같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승지도 예조 판서와 같은 생각이라면 해당 승지를 체차하라.”

하였다.

● 예조 판서의 하교를 놔두다.

전교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 일의 형편이 그러한 듯하다. 예조 판서에게 내린 하교와 승지에게 내린 하교는 그만두라. 내일 입시는 하교하면 거행하라.”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5월 27일

● 4차 기우제

숭정전 월대에 전좌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오늘 가뭄 근심은 만고에 처음이다. 비록 삭제^{朔祭}를 겸하여 지내고 싶지만 아, 명령께서 백성을 돌보시는데, 어찌 감히 명령을 슬프게 하겠는가. 게다가 삭제가 다가왔으니 또한 어찌 감히 명령을 번거롭게 하겠는가. 1차 기우제는 분배하여 하교하였는데, 가

若此? 亦涉寒心也, 其亦莫重下教, 置膝者同也.”

一. 傳曰: “承旨其若禮判, 當該承旨遞差.”

● 禮判下教置之

一. 傳曰: “更思之, 事勢似然, 禮判下教, 承旨下教, 置之, 明日入侍, 待下教舉行.”

壬辰五月二十七日

● 四次祈雨祭

一. 崇政殿月臺殿座時, 傳曰: “今者悶旱, 萬古其初, 雖欲兼爲, 嗚呼, 陟降恤元, 何敢戚我陟降? 且朔祭在近, 亦何敢瀆褻? 初次分排下教, 靜而思之, 事神之道, 豈敢計較? 雖

만히 생각해 보니 귀신을 섬기는 도리를 어찌 감히 계산하겠는가. 비록 하루 지체되었지만, 제문을 지어 내리겠다고 하교하였으니 오늘 향^향을 받고 내일 기우제를 지내라. 나는 주장^{晝講}에서 시골 백성을 만나 본 뒤에 그대로 이곳에 머물다가 향을 지영^{祇迎}하고 나서 오패^{午牌}를 들인 뒤 전설사^{典設司}에 가서 재숙하겠다. 모든 절차는 사흘 전의 규례대로 사직단에 제사를 지내되, 헌관은 정1품으로, 대축은 입직한 유신으로 삼으라. 집사들은 남교와 북교의 예와 똑같이 입직한 관원으로 채워 차임하고, 제물은 각별히 가려 고르라. 금연과 금주도 각별히 신척하라.”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5월 28일

● 5차 기우제

전교하기를,
“종묘에 5차 기우제를 삭제^{朔祭}와 겸하여 지내라고 분부하고, 헌관은 대신^{大臣}으로 삼고, 대축은 유신으로 삼고, 집사들은 각별히 뽑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모래 지영할 것이니 어제 규례대로 나는 전설사에 서 재숙하겠다. 모든 절차는 전례와 똑같이 하고 의주^{儀註}는 하지 말라. 정시 시각단자^{時刻單子}만 들이고

一日差遲，已下敎祭文製下，今日受香，明日行祭。予則晝講見鄉民後，仍留於此，香祇迎後，入午牌⁴⁴⁸後，當詣典設司齋宿。凡諸等事，依三昨例，當祭於社壇，獻官正一品，大祝以入直儒臣，諸執事一依南北郊例，以入直官填差，祭物另擇，禁酒禁草，另加申飭。”

壬辰五月二十八日

● 五次祈雨祭

一. 傳曰：“太室五次祈雨祭，朔祭兼行事，分付，獻官大臣，大祝儒臣，諸執事另擇。”

一. 傳曰：“再明當祇迎，依昨日例，典設司齋宿。凡節一依

448 午牌：저본에는 '午報牌'.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입직만 시위하라.”
하였다.

임진년¹⁷⁷² 6월 2일

● 6차 기우제

비망기에,
“아, 두루 기우제를 지냈지만, 모두 백성을 위해 효
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비가 아직도 쏟아지지 않으
니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다. 내가 무슨
낮으로 신료들을 보겠는가. 우사단에만 기우제를 지
내야 하니 높은 품계의 중신^{重臣}에게 오늘 향^香을 받
으라고 명하였다. 제문은 친히 지을 것이고 지영한
뒤에 억석와^{憶昔窩}에서 재숙할 테니 예방 승지는 잘
알도록 하라. 모든 절차는 모두 전례대로 하고 시각
단자는 하교하면 정시 시각 단자만 들이라. 대축은
입직한 유신으로 삼고 집사들도 각별히 뽑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위관은 천천히 봉안하라고 봉상시에 분부하라.”
하였다.

前例，儀註安徐，只入直侍衛，
只入正時。”

壬辰六月初二日

● 六次祈雨祭

一. 備忘記：“嗚呼，牲幣遍舉，
其皆沒示爲民，霈然猶邈，是
誰？誰則予。予何顏對臣庶？
只須祈雨雩壇，命崇品重臣，
今日受香，而文當親掇，祇迎
後齋宿憶昔窩，禮房知悉。凡
諸等節，皆依前例，時刻待下
教，只入正時。大祝以入直儒
臣，諸執事另擇。”

一. 傳曰：“位版徐徐奉安事，
分付奉常寺。”

임진년¹⁷⁷² 6월 4일

● 보사제

상참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금 시원하게 비가 쏟아지니 참으로 천만뜻밖이다. 1차 기우제 때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지금은 어떨겠는가. 기우제를 지내느라 영령을 번거롭게 할까 두려웠지만 보사제를 지내는 데 어찌 여러 날 지체할 수 있겠는가. 제문은 지어 내리겠으니 종묘에는 대신^{大臣}을 보내고 우사단에는 1품 중신을 보내며 모두 오늘 향^香을 받게 하라.”
하였다.

● 기우제를 정지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이미 두루 적서 보사제를 지냈으니, 기우제는 규례대로 정지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홍성귀^{洪成龜}의 첩정에, ‘이번 비에 강물이 넘쳐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측량하니, 5척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壬辰六月初四日

● 報謝祭

一. 常參入侍時, 傳曰: “今者特霈, 誠是萬萬料表, 初次猶然, 況今乎? 於祈雨, 恐或瀆褻, 而於報謝, 豈滯多日? 祭文製下, 太室遣大臣, 雩祀遣一品重臣, 皆令今日受香.”

● 祈雨祭停

一. 傳曰: “今已周治, 既爲報謝, 祈雨祭依例停止事, 分付儀曹.”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洪成龜牒呈內: ‘今番之雨, 江水漲溢, 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尺量, 則五尺許添流’是如爲白臥乎事.”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한복기^{韓福起}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9촌 높이로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사년¹⁷⁷³ 4월 13일

● 1차 기우제

전교하기를,
“하루 이틀 지날수록 가뭄이 날로 심해지니 어찌 지
체하겠는가. 더구나 옛날 선왕께서는 비가 내리면
향^香을 전하는 날이라도 섭행하라고 명한 전례가 있
었다. 제문은 지어 내리겠으니, 1차 기우제를 삼각
산·한강·목멱산에 택일하지 말고 15일로 정하여 지
내라. 제관은 시임 유신^{儒臣}으로 채워 차임하라. 내
일 지영^{祗迎}하고 이어서 그 지역 서민들을 불러보고
억석와^{憶昔窩}에서 재숙하겠다. 모든 절차는 모두 전
에 하교한대로 하되 모든 일은 간략하게 해야지 지
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부^{五部}의 방민^{坊民} 중에 나
라와 백성에 대해 깊이 탄식하는 자는 와서 대령하
게 하라. 제물은 각별히 신칙하고 집사들도 가려 차
임하라.”
하였다.

● 水標

一. 曹單子：“節呈水標直韓福
起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
審，則三尺九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癸巳四月十三日

● 初次祈雨

一. 傳曰：“一日二日，其旱日
甚，其何遲待？況於昔年，若
得雨，雖傳香日，亦有命攝之
例⁴⁴⁹，祭文製下，三角山·漢江
·木覓，初次祈雨祭，不卜日，
以十五日定行. 祭官以時任儒
臣填差，明當祗迎，仍其地召
見庶民，憶昔窩齋宿. 凡諸等
節，皆依前下教，凡事宜簡，而
不宜濫. 五部坊民中，於國於
民，漆室深嘆者，其令來待. 祭
物另加申飭，諸執事亦爲擇
差.”

449 例：저본에는 ‘齋’.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계사년¹⁷⁷³ 4월 14일

● 가뭄 근심으로 월령봉진은 정지하다.

비망기에,

“금년에 보리와 밀이 거의 큰 풍년이 들었지만, 근래의 극심한 가뭄은 실로 나에게서 비롯한다. 더구나 경기가 특히 심하니, 이달 진정^{賑政}이 끝났지만 백성이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애타는 마음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아, 올해 기운이 너무나 노쇠하니 몸은 지금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전대^{前代}에 있다. 게다가 이 가뭄까지 겹하니 나 한 사람으로 만백성을 대신하려는 마음이 속에서 갑절이나 된다. 또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려고 하였고 저 물고 나서도 아침과 같았으니 조금 내린 비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미 하교하였지만 감선 제조^{監膳提調}는 비록 신하의 도리라지만 경솔하였고 중관은 임금의 마음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말았으니, 이와 같아서야 어찌 비가 쏟아지기를 기대하겠는가. 경기 감사의 오늘 장계는 체모를 얻었다고 할 만하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가뭄에 대한 근심이 참으로 예전보다 갑절이나 되니, 한편으로는 내가 어찌 친히 기도하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는 일차 공상^{日次供上}은 봉진하더라도 월령 봉진^{月令封進}은 비가 내릴 때까지 봉진을 정지하라고 분부하라.”

癸巳四月十四日

● 以閏旱，凡諸月令封進停封

一. 備忘記：“噫，今年兩麥，庶幾大登，近者亢旱，寔由於予，其況畿甸特甚，今月賑政⁴⁵⁰雖畢，民將若何？興懷⁴⁵¹及此，焦心曷論？噫，今年氣衰莫甚，身雖在於今世，心則在於前世，且兼此⁴⁵²旱，以一代萬心，一倍于中。且朝來其將霈然，晚後若前，分雨其何益？是誰是誰？即予即予。既已下教，而監膳提調，雖臣子道輕着，中官莫知君心，惟揚揚自⁴⁵³任，而若此而何期霈然？畿伯今日狀聞，可謂得體，其心可諒。雖然，今番閏旱，誠

⁴⁵⁰ 政：저본에는 ‘廳’.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⁴⁵¹ 懷：저본에는 ‘惟’.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⁴⁵² 此：저본에는 ‘且’.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⁴⁵³ 自：저본에는 ‘此’.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였다.

비망기에,

“비가 쏟아졌지만 수표는 1척이 못 되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이 알지만 비가 내렸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돌아누워 기다렸지만 태양이 창에 비치니 이 마음이 부끄럽다. 신시^{申時}가 다 되었는데 또한 어찌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가. 바로 나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가교^{駕橋}로 옛 잠저^{潛邸}에 가서 두루 적시기를 기다렸다가 어가를 돌리겠다. 이 때문에 어제의 하교를 거두어달라 청하였는데 나도 하교할 것이 있으니 승정원은 그리 알라.”

하였다.

계사년¹⁷⁷³ 4월 15일

● 비가 내린 뒤 제관에게 상을 준다.

전교하기를,

“몇 해 전처럼 1차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쏟아져 측우기는 몇 촛^寸이라고 보고하였고 수표 역시 1척^尺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백성이 장차 소생할 것이다. 나는 하늘을 믿지만 가뭄이 모두 나에게서 비롯되었으니 어찌 감히 비가 내렸다고 해서 마음을 놓겠는가.

倍于昔，一則何能親禱矣？一則良由於予者。畿旬日次供上雖封，凡諸月令封進，皆限得雨前停封事，分付。”

一. 備忘記：“雖得霈然，水標其猶欠尺，予雖誠淺，豈可得雨而弛心？回臥以待，太陽照窓⁴⁵⁴，此心覲然，至申牌報，其亦何⁴⁵⁵此？卽予卽予，以駕輜當詣舊邸，待周治回駕，以此其所⁴⁵⁶請寢昨日下午教，予亦有下教者，政院知悉。”

癸巳四月十五日

● 得雨後祭官賞賜

一. 傳曰：“若頃年初次祈禱得霈，測雨器報寸，水標亦一

454 窓：저본에는 ‘空’.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55 何：저본에는 ‘若’.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56 所：저본에는 ‘若’.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이러한 경우에 전례가 있으니 세 곳에서 기우제를 지낸 헌관에게 각각 아마^{兒馬}를 내려 주고 전사^{典祀} 이하 집사들과 감찰에게는 상현궁 1장^張씩 내려 주라.” 하였다.

● 보사제

예조의 계사에,
“1차 기우제를 지내고 단비가 두루 적셨으니 보사제를 설행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입추 뒤에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 초기는 올리지 않고 같은 날 차대^{次對}하였을 때 판서 대감이 연석에서 성상께 여쭙어 기우제는 특별히 정지하고 보사제는 가을이 되면 거행하라는 하교를 직접 받들었다.】

예조의 계사에,
“1차 기우제를 지내고 단비가 적셨으니 농사에 천만 다행입니다. 기우제를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이경호^{李景祐}가 아뢰기를,
“오늘 비가 내렸으니 이후의 기우제는 정지해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尺，吾民庶幾。予則恃⁴⁵⁷，然皆由於予，何敢得雨而解心？此有⁴⁵⁸前例，三處獻官，各兒馬賜給，典祀以下諸執事·監察，以上弦弓一張賜給。”

● 報謝

一. 曹啓辭：“初次祈雨祭，甘露周洽，報謝祭，當爲設行，依定式，立秋後擇日舉行，何如？”【此草記不爲入呈，同日次對時，判書大監筵稟，祈雨祭特停，報謝祭待秋舉行事，親承下教.】

一. 曹啓辭：“初次祈雨，甘露既洽，民事萬幸，祈雨祭停止，何如？”

一.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禮曹判書李景祐所啓：“今

457 恃：저본에는 ‘雖’.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58 有：저본에는 ‘已’.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일단 정지하라.”

하였다.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이경호가 아뢰기를,

“단비가 내렸으니 보사제를 설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을이 되면 하라.”

하였다.

계사년¹⁷⁷³ 4월 16일

전교하기를,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끝에 가서는 나태해진다.”²⁷

라고 옛사람이 말하였으니, 비가 내렸다고 마음을 놓지 말고 신하 또한 임금을 권면하라. 기우제도 그러한데 하물며 보사제는 어떻겠는가. 보사제가 더욱 중요하니, 제관을 각별히 가려 반드시 정성껏 지내야 한다. 내가 헌관과 집사들에게 단壇에 가라고 하고서 누워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번 여름에 비가 내린다면 어찌 곤란하다고 하겠는가.’라고 하고서 사헌부로 하여금 교외의 제단에서 금주와 금연을 엄히

²⁷ 처음에는……나태해진다 :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 주석에 보인다.

既得雨, 此後祈雨祭, 似當停止, 何以爲之乎?” 上曰: “姑爲停止.”

一. 同日入侍時, 禮曹判書李所啓: “既得甘霖, 報謝祭設行, 何以爲之乎?” 上曰: “待秋爲之.”

癸巳四月十六日

一. 傳曰: “始勤終怠, 古人既云, 勿以得雨解心, 臣亦勉君. 祈雨猶然, 況報謝乎? 其於報謝, 所重愈甚, 祭官另擇, 必也虔誠. 予云: ‘獻官·諸執事詣壇.’ 臥而自言曰: ‘今夏得雨, 此何其困云?’ 於郊壇, 禁酒·禁草, 令臺監嚴加禁飭. 孟子謂齊宣王曰: ‘四境之內, 不治則何?’ 齊王顧左右. 曰予雖衰矣, 豈效乎? 此雖命替攝, 既已祇迎, 莫云獻官, 其本一人.

금지하고 신척하게 하였다. 맹자가 제 선왕(齊宣王)에게, ‘나라 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제 선왕이 좌우를 돌아보았다. 내가 비록 쇠약하지만 어찌 본받겠는가. 이번에는 대신 섭행하라고 명하였지만 이미 지영(祗迎)하였으니 헌관 때 문이라고 하지 말라. 나 한 사람에게 근본한다. 내가 편전(便殿)에 누워서 명관(命官)에게 신척하였으니, 무슨 낮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겠는가. 내일 지영한 뒤에 역석와에서 묵을 것이다. 사흘 전 봉안을 들려야 한다고 들었으니 예방 승지는 잘 알아두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제 예조 판서가 내게 물어 규례대로 가을이 되면 하라고 하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근래 만들어진 규례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신을 섬기면서 계으를 수 있겠는가. 제문은 지어 내릴 것이니 내일 유신을 보내어 세 곳에서 보사제를 지내고, 나는 지영(祗迎)하겠다. 모든 절차는 전례대로 하라.

아, 『시전(詩傳)』을 보건대 파리 소리를 닭 울음으로 여기고 달빛을 햇빛으로 여긴 것은²⁸ 바로 옛 현명한 군주가 날마다 조정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의 옛일을 보건대 매일 상찬을 어떻게 할지 여쭙었으니, 의도가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승정

28 파리……것은 : 『시경(詩經)』 <계명(鷄鳴)에 “닭이 운 것이 아니라 파리 소리로다.[匪鷄則鳴, 蒼蠅之聲.]”라는 구절과 “동방이 밝은 것이 아니라 달이 떠서 빛남이로다.[匪東方則明, 月出之光.]”라는 구절을 가리킨다.

予臥便殿, 所飭命官, 何敢望彼蒼? 明日祗迎後, 當宿憶昔窩, 若三⁴⁵⁹昨, 聞奉安當入, 禮房知悉.”

一. 傳曰: “昨日禮判有稟, 依例待秋爲之, 更惟已成近例, 事神何敢慢也? 祭文製下, 明日遣儒臣三處報謝, 予當祗迎, 凡節皆依前. 噫, 以『詩⁴⁶⁰傳』觀也, 蒼蠅爲鷄, 月光爲明, 卽古賢君逐日臨朝, 以國朝古事觀也, 每日常參取稟, 意蓋此也. 『政院日記』只書停常參爲經筵, 『經筵古事』停夜

459 三: 저본에는 ‘再’.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60 詩: 저본에는 ‘待’. 문맥을 살펴 바로잡았다.

원일기』에는 ‘상참을 정지하고 경연을 하다.’라고만 썼고 『경연고사』에는 ‘야대夜對를 정지하였다.’라고 썼으니, 이 또한 서산西山 진덕수陳德秀가 ‘야대夜對가 주강畫講보다 낫다.’²⁹⁾라고 말한 의미이다.

아, 마음은 날로 더욱 고단해지고 기운은 날로 더욱 쇠약해지니, 옛날 위 무공衛武公이 <억抑>시를 외올 때 제齊나라 시를 외웠는가. 아, 요즘 하늘에 사죄하려는 생각뿐이니, 어찌 감히 날로 노쇠해진다고 해서 스스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이후로는 옛날의 규례대로 삭제와 망제, 상참을 규례대로 하여 조정 신하들의 졸음을 깨우도록 하라. 아, 지금 여든의 나이에도 오히려 이처럼 하는데 하물며 나이가 된 이하인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계사년¹⁷⁷³ 4월 26일

● 가뭄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요즘 졸음이 너무 심하여 몇 장의 장계 중 황해도
의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는 승지에게 읽게 하
였다. 승지가 2경에 입시하였는데 요즘 또 특히 귀

29 야대가……낫다 : 이는 진덕수(眞德秀)가 『대학연의(大學衍義)』에서 한 말로, 열성조(列聖祖)들이 명유(名儒)를 선발하여 밤에 야대를 하는 것은 낮에는 천신(鵬紳)들이 엄숙하게 늘어서서 정론을 말하지만 밤에는 환관[貂璫]이나 빈첩[嬪御]들만 접하여 쉽게 눈이 현혹되고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밤에 소대(召對)하는 이로움을 강조하였다. 『大學衍義 卷4』

對亦書⁴⁶¹，此亦眞西山夜對勝於畫詩之意。噫，心日益蓊，氣日益衰，昔衛武誦抑詩時，能誦齊詩耶？嗚呼，近日卽謝蒼穹意，而何敢日衰而自便乎？此後依古例，朔望常參，依例爲焉，以醒朝臣之睡。噫，今八旬，其猶若此，況年五十以下乎？其宜當勉也。”

癸巳四月二十六日

●悶旱

一. 備忘記：“近者昏睡特甚，狀聞數張，而爲海西雨澤狀聞，令承旨讀焉。二更入侍，近者其且重聽特甚，莫然詳察，仍以入睡。睡覺承旨尚在，問其更，至五更，此豈穩睡而然

461 書 : 저본에는 ‘云.’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1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가 너무 어두워 자세히 듣지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자다 깼는데 승지가 아직 그대로 있어서 시간을 물어보니 5경^更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어찌 편안히 잠들어서 그러한 것이겠는가. 참으로 졸음 때문이다. 기운이 더욱 고단해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으므로 이처럼 졸린 것이다. 아, 이와 같으면 영단^{靈丹}이 과연 효과가 있겠지만, 이러한 때에 한결같이 비가 내리지 않아 마음이 안절부절못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하였다.

계사년¹⁷⁷³ 5월 4일

비망기에,
“관상감의 보고를 들으니 가뭄을 걱정하던 중에 1분 내린 비도 1척 내린 것과 같다. 언제 비가 쏟아져 나의 초조하고 근심스런 마음을 씻어주려는가. 자리에 앉아 기다릴 것이니 수시로 알리게 하라.”
하였다.

계사년¹⁷⁷³ 5월 6일

- 지방에서 지내는 기우제는 반드시 사직단에서 먼저 지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오늘 내가 생각한 바가 있어 하교하려고 하였는데,

乎? 誠昏睡也, 氣益蓊而莫然提⁴⁶²醒, 故若是其昏, 噫, 若此靈丹果有功, 此際一靳霈然, 心憧憧誠沓沓⁴⁶³.”

癸巳五月初四日

一. 備忘記: “聞雲觀報, 悶旱中, 雖一分若一尺, 何時霈然, 滌我焦悶? 貼席⁴⁶⁴以待, 其令隨聞.”

癸巳五月初六日

- 外方祈雨必先社壇

一. 傳曰: “今日予有所思, 將

462 提: 저본에는 ‘挹’.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4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63 沓沓: 저본에는 ‘沓沓’. 문맥을 살펴 바로잡았다.

464 席: 저본에는 ‘待’.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5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나의 정신과 기운이 노쇠하였으므로 갑자기 잊어버렸다. 지금 강원 감사의 장계를 들으니 사직단에서 기도하였다고 하기에 이로 인하여 깨달았다. 아, 임금은 사직을 지키고, 팔도의 여러 현縣에도 모두 사직이 있다. '사물은 근본과 말단이 있다.'라고 『대학大學』에서 말하였다. 기우제를 지낼 때 반드시 명산名山의 영험한 곳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일의 형세상 그러한 것이지만 서울에서 지내는 기우제 또한 이와 같다. 내 생각에 서울에서 지내는 기우제는 차례가 있으므로 이처럼 하지만, 여러 도의 주현州縣에서는 반드시 사직단에서 먼저 지내야 한다. 영험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기우제는 반드시 사직단을 중시하라고 승정원에서 여러 도에 하유하라.” 하였다.

계사년¹⁷⁷³ 5월 12일

● 한강진 수포단자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홍성귀洪聖龜의 첩정에,
‘이번 큰비에 강물이 불어 넘쳐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측량하니, 2척 정도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欲下教，以予神氣，頓然忘却。
今聞江原道臣狀聞，祈禱於社稷壇云，因此乃覺。噫，國君守社稷，八道諸縣亦皆有社稷，物有本末，大學所云，曾聞其祈雨，必也名山靈驗處，事勢雖然，京中祈雨亦若此，而予則曰於京中有次序故若此，於諸道州縣，必先社壇，其表以⁴⁶⁵靈驗處外，凡祈雨必以社壇爲重事，自政院下諭諸道。”

癸巳五月十二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洪聖龜牒呈內：‘今番大雨，江水漲溢，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尺量，則二尺許添流’是如爲白臥乎事。”

465 以：저본에는 '異'.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5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계사년¹⁷⁷³ 5월 14일

비망기에,
 “아, 여든의 노쇠한 임금이라 전야도 구분하지 못하
 지만 비가 두루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억지
 로 일어나 어가를 대령하라 명하여 보았다. 농사를
 권면하라고 하교하였으니 관찰사가 어찌 감히 선화
 당^{宣化堂}에 편히 누워 있겠는가. 어제 강화 유수의 장
 계를 들으니, 온 섬에 비가 내려 전야를 살폈다고 한
 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정성을 볼 수 있다. 특
 별히 숙마^{熟馬} 1필을 내려 주고, 이 하교로 유서^{諭書}를
 지어 함께 전달하여 내가 밤낮 한결같은 마음으로
 농사를 위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

비망기에³⁰,
 “오늘 기쁜 비는 참으로 예상 밖이다. 비가 그친 뒤
 에 흠뻑리기는 하였지만 옛새 안에 다시 쏟아졌으
 니 이 비는 한풀 꺾인 마음에 기쁨을 주었으니 풍년
 이 들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는 누가 주었는가. 누가
 주었기에 두루 적셔주었는가. 비 내린 상황에 대해
 경기·양도^{兩都}·동도^{東道}와 서도^{西道}에서는 계속해서
 연이어 장계로 아뢰었다. 북도는 이제 막 장계가 왔
 다. 삼남에 하유하여 장계로 아뢰게 하라.”
 하였다.

30 비망기에 : 이는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5월 15일 기사이다.

癸巳五月十四日

一. 備忘記：“噫，八旬衰君，
 莫卜田野，而聞浹洽，其猶強
 起⁴⁶⁶，命駕臨見焉。已有田峻
 教，雖道臣，焉敢便臥宣化堂？
 昨聞江都狀，都得需觀審田野
 云，此人誰知？可見其誠，特
 賜熟馬一匹，此下教爲諭書
 同⁴⁶⁷傳，以示予夙夜一心爲三
 農意。”

● 雨澤狀聞

一. 備忘記：“今日喜雨，誠是
 料表，霽後雖霏霏，六日內復
 爲霈然，此則霽然中心欣，可
 知大有。是誰賜？是誰⁴⁶⁸賜？
 其皆遍洽乎？雨澤形止，畿甸

466 起 : 저본에는 ‘記’.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5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67 同 : 저본에는 ‘回’.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5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68 是誰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49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
 하여 보충

·兩都·東西道連續狀聞，北道纔來，下諭三南，其令狀聞。”

계사년¹⁷⁷³ 7월 3일

● 1차 기우제

전교하기를,

“아, 노년에 의지할 바는 오직 백성이다. 전라도와 충청도가 이와 같으니 경중의 구분은 있지만 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전라도와 충청도, 서울의 기우제는 어찌 되었는가. 경기도 가뭄이라고 하는데 경기는 왕도^{王都}이다. 어찌 여기 뿐이겠는가. 현재 가뭄이 극심하니 기우제를 지내지 않는다면 어찌 백성을 위하는 뜻이겠는가. 이러한 때 기우제는 나도 할 것이다.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5일에 설행하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이러한 때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기우제를 지내겠는가. 근시^{近侍}를 지냈던 사람으로 채워 차임하라. 내일 지영^{祗迎}한 뒤에 전설사^{典設司}에서 묵을 것이니, 모든 절차는 예전대로 하고 의주^{儀註}는 그만두라.”

하였다.

癸巳七月初三日

● 初次祈雨

一. 傳曰：“嗚呼，暮年攸依⁴⁶⁹，其惟元元。兩湖若此，雖有輕重之分，此心若何？而然爲兩湖·京中祈雨若何？而畿甸亦告旱，邦畿王者都也，而豈特此也？目下見亢旱，若不祈雨，豈爲民之意？此時祈雨，予⁴⁷⁰亦爲焉。初次祈雨，不卜日，初五日設行，而祭文當製下。此時祈雨，何循常例？以曾經近侍填差。明日祗迎後，當宿典設司，凡諸等節，依前爲之，儀註安徐。”

469 依：저본에는 ‘懷’.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70 予：저본에는 ‘兩府’.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 기우제 장소

예조의 단자에,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5일에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진 등지에 근시를 지냈던 관원을 보내어 5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동쪽 월대月臺에 전좌殿座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기우제 헌관은 모두 오늘 재숙齋宿하고, 제물은 정결하게 준비하여 신위神位에 받들고 나갈 때 공경을 다 하도록 하라. 집사들과 진배관進排官의 금주와 금연 등의 일은 사헌부로 하여금 착실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계사년¹⁷⁷³ 7월 5일

● 2차 기우제

비망기에,

“지금 나는 몹시 걱정스러운 심정이 전보다 갑절이다. 처서處暑가 내일이니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또 여러 도道에 신칙하였는데, 더구나 도성은 오죽하겠는가. 2차 기우제는 모래 사직단에서 하되, 1품 중신重臣을 헌관으로 삼으라. 제문은 입시하면 짓겠다. 내일은 똑같이 지영祇迎하고, 그대로 희

● 祈雨祭處所

一. 曹單子：“初次祈雨祭，不卜日，初五日設行事，命下矣。依聖教，初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遣曾經近侍，來初五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一. 東月臺殿座時，傳曰：“祈雨祭獻官，皆令今日齋宿，祭物精備，奉詣神位時，其令致敬，諸執事·進排官禁酒·禁草等事，臺監着實申飭。”

癸巳七月初五日

● 再次祈雨

一. 備忘記：“今予最悶，一倍乎前，處暑在明，何循常例？且諸道申飭，其況國中？再次社稷再明爲，以一品重臣爲獻官，文則入侍當製，明日一體祇迎，仍宿喜雨廊，儀註安徐。侍衛入直，時刻待下教，只入

우랑喜雨廊(전설사典設司)에서 묵겠다. 의주儀注는 그만두라. 시위는 입직이 하고, 시각 단자는 하교하면 정시 시각 단자만 들이라. 대축大祝은 유신儒臣으로 삼고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뽑으라고 전조銓曹에 신칙하라.”
하였다.

계사년1773 7월 7일

● 보사제 헌관에게 상을 준다.

비망기에,
“수표가 3척이라고 하니, 왕위를 이은 지 3년이었을 때의 전례대로 해야겠다.³¹ 이달 보사제 제문에 문구를 써넣어야 하는데 지금 기다리는 것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장계이다. 서울에서 기우제를 어찌 다시 지낼 수 있겠는가. 마음에 기쁜 점은 하늘이 우리 백성을 돌보아 전라도가 이와 같은 것이니 노년에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진다. 참으로 예상 밖이니 누가 주었는가. 누가 주었는가. 사흘 내 기쁜 뜻을 먼저 보여야 하니 1차 기우제를 세 곳에서 지낸 헌관에게 반숙마半熟馬 1필을, 대축大祝·전사관典祀官·축사祝史·재랑齋郎에게 각기 아마兒馬 1필을, 찬자贊者와 알자謁者에게 현궁絃弓 1장을 주는 것을 어찌 아

31 왕위를……해야겠다 : 영조 3년 농작물이 다 타 죽은 가뭄이 들어 종묘와 사직단에서 친히 기도를 드려 비가 한 차례 쏟아졌다. 이에 헌관인 낙창군(洛昌君) 이당(李愷) 등에게 말을 내려 주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25日, 29日』

正時, 大祝儒臣, 諸執事另擇事, 申飭詮曹.”

癸巳七月初七日

● 報謝祭獻官施賞

一. 備忘記: “水標三尺, 依嗣服三年, 今月報謝句當添書, 其猶待者, 兩湖狀聞, 京中祈雨, 豈可復爲? 心喜者蒼蒼恤我元元, 湖南若此, 暮年心可少舒, 誠料表表, 是誰賜? 是誰⁴⁷¹賜? 此是, 三日內, 先示志喜, 初次三處獻官, 半熟馬一匹, 大祝·典祀官·祝史·齋郎, 各兒馬一匹, 贊謁者弦弓一張, 豈可兼爲? 先爲賞給.”

471 是誰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5월 15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올려 주겠는가. 먼저 상으로 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제의 일은 선후가 있으니, 미처 예식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1차 기우제 헌관 이하에게 먼저 상을 내렸다. 이제 예식이 끝나고 헌관이 향^향을 받자 다행히 단비가 내렸다. 두 곳의 시상은 이미 왕위를 이은 지 3년이었을 때의 옛 전례가 있다. 사직단 헌관에게 숙마^{숙마} 1필을, 단사 대감^{壇司臺監}·전사관·대축·축사·재랑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찬자와 알자에게 각각 현궁^{絃弓} 1장을 내려 주라. 보사제 제문에는 문구를 써넣었으니 보사제는 지금 논할 것이 없다. 석달 내로 헌관 이하에게 특별히 상을 주겠다. 신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니, 세 곳에서 보사제를 지내는 일은 그만두라.”
하였다.

계사년¹⁷⁷³ 7월 23일

좌직한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이번의 극심한 가뭄은 처음에는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뿐이었는데 경상도로 말하자면 지난번 장계를 들으니 가뭄이 든 곳이 있더라도 전라도와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예전에 하교하였지만 나는 이미 걱정하였다. 지금 장계로 아뢴 말을 들으니 전라도와 다

一. 傳曰：“於昨日事有前後，未及禮成，故先賞初次獻官以下矣。今報禮畢獻官受香，幸得甘露，兩處施賞，已有嗣服三年故例，社壇獻官，熟馬一匹，壇司臺監·典司官·大祝·祝史·齋郎，兒馬一匹，贊謁者各弦弓一張賜給。報謝句既添入，報謝一節，今無可論，以三月⁴⁷²內，獻官以下，特⁴⁷³施賞。神不可瀆褻，三處報謝安徐。”

癸巳七月二十三日⁴⁷⁴

一. 坐直承旨入侍時，傳曰：“今番亢旱，初則只以兩湖畿

472 月：저본에는 ‘日’.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73 特：저본에는 ‘雖’.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74 二十三日：저본에는 ‘二十日’.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름이 없다고 한다. 아, 처서^{處暑} 뒤에 기우제를 설행하면서 저 경상도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초조하고 절박하다. 아, 전라도에 비가 내리자마자 경상도가 또 이와 같으니, 아, 노년의 마음을 언제쯤 놓겠는가. 아, 올해 이처럼 가문 짓은 오로지 나 한 사람 때문이다. 봄부터 너무 편안했던 탓에 내심 두려웠던 가운데 사옹원과 충훈부에서 연일 억지로 청하였다. 옛사람이 ‘그림자를 살피소서.’³²라고 하였고, ‘처음에 잘 도모해서 일을 하라.’³³ 하였으니 또한 옛사람이 경계한 말이다. 두 곳이 이와 같은데 한쪽만 허락하면 필시 이어서 제기할 것이니 내가 이미 예상하였으므로 굳이 거부하였다. 오늘 들으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을 들은 뒤 내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 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의 장계를 보았으니 숫자가 적다고 하지 말라. 섭이중^{聶夷中}의 전가시^{田家詩}³⁴를 읊으니 한톨 한톨이 모두 백성의 노고이다. 하물며 임금이 되어 그 애석함을 어찌 건디겠는가. 이 장계

甸,而至於嶺南,頃聞狀聞,雖有被⁴⁷⁵旱處,不若湖南,而曾已下教,予已聞焉.今聞狀聞,無異湖南.噫,處暑後設祈雨祭,瞻彼嶺南,予心焦迫.噫,湖南纔得雨,而嶺又若此.嗚呼,暮年心,何時弛?噫,今年若此,專由乎一人,自春太康之致,心竊⁴⁷⁶慄然之中,廚院·勳府連日強請.古人云,願察其影,作事謀始,亦古人之戒,兩⁴⁷⁷處若此,其若一許,則必將繼起,予已料,故固拒⁴⁷⁸者此也.今日聞焉,果然,聞此之後,予心益固.噫,以關東·兩湖狀聞觀之,莫云數少,誦聶夷中田家詩,粒粒皆辛苦,況

32 그림자를 살피소서 :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실체를 파악하라는 의미이다. 한 성제(漢成帝) 때 천재지변이 속출하자 매복(梅福)이 왕후후(王皇后)의 동생인 대장군 왕봉(王鳳)이 정권을 농단하기 때문이라 여기고 상소하여, “외척의 권세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그 형체를 보지 못하시면 그 그림자를 관찰하기 바랍니다.[外戚之權,日以益隆,陛下不見其形,願察其景.]”라고 하였다. 『漢書 卷67 梅福傳』

33 처음에……하라 : 〈송괘(訟卦) 상(象)〉에서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감이 송이니, 군자가 보고서 일을 하되 처음을 잘 도모한다.[天與水違行 訟君子以 作事謀始]”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34 처음에……하라 : 〈송괘(訟卦) 상(象)〉에서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감이 송이니, 군자가 보고서 일을 하되 처음을 잘 도모한다.[天與水違行 訟君子以 作事謀始]”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475 被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476 竊 : 저본에는 ‘切’.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77 兩 : 저본에는 ‘而’.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78 拒 : 저본에는 ‘執’.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의 날짜를 보니 15일이다. 비가 내렸더라도 제때 미치지 못하였을 근심이 없지 않다. 또 이 도道에 뒤늦게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들었으니, 관찰사가 정성껏 기우제를 지냈더라도 어찌 제때 미칠 수 있었겠는가. 아, 경기, 전라도와 충청도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 놓였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들었다. 아, 저 하늘이 팔도 백성을 고루 아끼거늘 부덕한 나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한 바퀴 돌아 얼마 안 되어 또 이 소식을 들었다. 이 또한 내가 노년에 조물주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니, 적게 먹지만 더욱이 어찌 달겠는가. 조금 잠을 잔들 어찌 편하겠는가. 더구나 이러한 때 음식 마련을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본도의 물선物膳은 줄이라고 명하고 싶었지만 임금은 일처리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다시 소식을 듣기를 기다리는데 이러한 때 이러한 청을 하면 어찌 내 마음이 서글플 뿐이겠는가. 참으로 적절 한 시기가 아니다. 너무 편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으니 무슨 마음으로 음식을 먹겠는가. 만약 다시 청한다면 내가 음식 가짓수를 줄일 테니 모두 잘 알도록 하여 여든의 임금이 노년에 애태우는 가운데 걱정을 더하게 하지 말라. 아, 지난번 한 중신重臣의 말처럼 오늘도 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이 또한 나를 완전하게 성취시켜주기 위해 그런 것이다.” 하였다.

爲其君，其惜⁴⁷⁹曷勝？以此狀聞年月見之，卽十五日也，雖得雨，不無未及之⁴⁸⁰悶。且此道，晚被亢旱之若是孔酷，道臣其雖虔誠，亦何及也？噫，畿甸·兩湖，少弛此心，今聞此報。嗚呼彼蒼，均愛⁴⁸¹八道，而因予否德，亢旱之報，一旋，已而⁴⁸²又聞此，此⁴⁸³亦於予暮年造物，既小之食，尤何甘也？廬數點之睡，亦何便也？況此時設饌⁴⁸⁴，其何可論？本道物膳，欲命減焉，而人君處事宜審，故雖待更聞，此時此請，豈

479 惜：지본에는 '情'.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80 雖得雨不無未及之：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481 愛：지본에는 '是'.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82 已而：지본에는 '而已'.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83 此：지본에는 '正'.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84 饌：지본에는 '膳'.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特予心? 誠非其時, 因太康而致旱, 抑何心而受饑⁴⁸⁵? 其若復請, 予當減膳, 皆令知悉, 使八旬其君, 暮年焦悶之中, 不加其悶. 噫, 若頃日一重臣, 今者若此, 故此亦玉成予而⁴⁸⁶然也.”

계사년¹⁷⁷³ 7월 22일

비망기에,

“올해 초봄에는 비와 햇볕이 거의 알맞아 모두 파종하였다. 기우제는 1년 안에 세 차례 기도하였는데, 가뭄이 든 때가 많아 모래와 자갈이 있는 곳과 지대가 높은 곳은 이미 말라 버렸으니 논에 비가 내리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가뭄은 경기가 먼저 들었고, 전라도는 특히 심하다. 충청도 역시 그러하였는데 방금 비가 내렸다. 경상도는 처음에 약간의 고을이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대체로 경기와 삼남에는 밀과 보리가 풍년이 들었으며, 서남^{西南}의 경우도 처음에 풍년의 징조가 있었으니, 이처럼 가뭄이 든 것은 누구 때문이겠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너무 편안해서 그런 것이니, 그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마음으로 풍년을 즐기겠는가. 지금 빗소리를 들으며 경상도에서도 빗소리를 들을까 하고 생각하니, 걱정스럽고 답답한

癸巳七月二十二日

一. 備忘記: “今年初春, 雨暘幾乎⁴⁸⁷時若, 其付種, 祈雨一年內祈禱三次, 而其旱者多, 沙石與高處已枯, 畝雖得需何益? 而今旱畿甸先焉, 湖南特甚, 湖西亦然, 而僅以⁴⁸⁸得需, 嶺南初則若干郡, 若是亢旱. 大抵畿甸三南, 兩麥已登, 至

485 饑: 저본에는 ‘饑’.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86 而: 저본에는 ‘心’.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87 乎: 저본에는 ‘日’.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88 僅以: 저본에는 ‘董’.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감정이 마음 속에 더욱 간절하다.”
하였다.

비망기에,
“노년의 내 마음은 한편으로는 추모하고 한편으로
는 백성을 위하고 있다. 추모한다고 하였는데 다음
달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 마음에 천만 가지 생각이
든다. 이달에 무슨 예를 올리겠으며, 다음 달에 무
슨 배알을 하겠는가. 백성을 위해 가뭄을 걱정한다
고 하였는데 경기, 충청도, 전라도에 비가 내리자마
자 경상도에 이처럼 가뭄이 드니, 아, 나는 언제쯤
마음을 놓겠는가. 비가 쏟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뒤
에야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비가 경
상도에도 내렸는가. 비록 몇 개 현^현일지라도 비가
내린 상황을 먼저 장계로 보고하라고 오늘 승정원에
서 경상 감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於西南，初有豐徵，若此是誰？
卽予何云？卽予太康而然，其
悶曷勝？何心豐⁴⁸⁹享？今聞雨
聲，自謂嶺南亦然乎？憧憧沓
沓⁴⁹⁰，采切乎中矣。”

一. 備忘記：“暮年予心，一則
追慕，一則爲民，謂以追慕，來
月在近，予懷千萬，而今月何
禮⁴⁹¹？來月何⁴⁹²拜？謂以爲民
悶旱，畿甸兩湖，僅以得霑，嶺
南若此，嗟哉予心，何時弛乎？
聞得霑報，然後庶可弛心。今
日此雨，嶺南亦得乎？雖數縣
得雨形止，先爲狀聞事，今日
自政院，下諭于嶺伯。”

489 豐：저본에는 '曲'.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90 沓沓：저본에는 '畚畚'. 『승정원일
기』 영조 49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491 禮：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49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
하여 보충

492 何：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
기』 영조 49년 7월 22일 기사에 근거
하여 보충

계사년¹⁷⁷³ 7월 26일

전교하기를,

“경상 감사가 장계에서 양산^{梁山}에 비가 내렸다고 하였지만 온 도에 고루 적셨는지는 모르겠다. 이 마음이 안절부절못하였는데, 지금 장계를 들으니 두루 적셨다고 할 만하다. 경주^{慶州}에 이틀간 비가 내렸는데, 같은 날 충청도의 비 내린 상황에 대한 장계를 들으니 충청도에도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지금 이로 보건대 경상도 역시 장차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전에 내린 비는 예상 밖이었는데 그 뒤에 또 비가 쏟아졌으니, 아, 경상도의 농사가 거의 소생할 것이다. 대체로 지금 가뭄은 전라도와 충청도가 특히 심하고 경기도 그러하다. 경상도는 처음에 이처럼 특히 심한지 몰랐고, 뒤늦게 극심한 가뭄이 들었으니 그 근심을 어찌 말하겠는가. 이번에도 비가 쏟아진다면 이는 누가 준 것이겠는가. 높고 높은 하늘이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러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말라 죽은 이미 말할 것도 없다고 하였지만 이제 도가 모두 그러하니, 그 애석함을 어찌 견디겠는가. 오늘 세 도에 모두 비가 쏟아졌으니 우리 백성이 거의 소생할 것이다. 그러나 보고를 들은 뒤에야 마음이 놓일 것이다.”

하였다.

癸巳七月二十六日

一. 傳曰：“嶺南道臣梁山得雨狀聞，雖聞⁴⁹³，莫知一道均沾耶。此心憧憧，今聞狀本，可謂遍洽，而二日雨，卽慶州所得，同日聞湖西雨澤狀本，二十二日湖西亦霈然。今以此觀之，嶺南一道，其將同然。前得雨，是料表，其後且霈然。嗚呼，嶺南民事，其可庶幾。大抵今旱，兩湖特甚，畿甸亦然，嶺南初則莫知若是特甚，晚後亢旱，其悶曷論？於今亦得沛然，是誰賜？高高蒼穹，恤我元元而然，雖然，已被枯損者，已無可謂云⁴⁹⁴，此三道皆⁴⁹⁵然，其惜曷勝？今日三道，其皆沛然，吾民庶幾，然聞報登，然後心可弛。”

493 聞：저본에는 ‘聞’.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94 謂云：저본에는 ‘爲之’.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95 皆：저본에는 ‘聞’.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7월 26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홍성귀^{洪聖龜}의 첩정에,
‘이번 7월 24일 물이 4척가량 불었는데 이번에 비가
내린 뒤 포백척^{布帛尺}으로 다시 측량하니 4척가량이
더 불었고,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도합 8
척가량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사년¹⁷⁷³ 8월 4일

약방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놓였
지만 경상도의 늦은 가뭄 때문에 밤낮으로 안절부
절못하였다. 요즘 장계를 들으니 이 마음이 조금 놓
이고, 지금 경상 감사의 장계를 듣고서 경상도에 대
해서도 마음을 놓았다. 아, 금년에 여러 도에서 비가
내렸는데 이는 누가 주셨는가. 높고 높은 하늘이 이
처럼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데, 부덕하고 무능한 내
가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
찌 감히 비가 내렸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오직 추수를 바랄 뿐이다.”

하였다.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
將洪聖龜牒呈內：‘今七月
二十四日，水漲爲四尺許，今
番雨後，以布帛尺更爲尺量，
則四尺許加漲矣。常流水基
良中，合爲八尺許添流’是如
爲白臥乎事。”

癸巳八月初四日

一. 藥房入侍時，傳曰：“畿甸·
兩湖，此心雖⁴⁹⁶弛，於嶺南晚
旱，夙宵憧憧。近⁴⁹⁷聞狀聞，此
心少弛，今聞嶺⁴⁹⁸伯狀聞，於
嶺南其亦弛心。嗚呼，今年諸
道得雨，是誰賜？高高蒼穹，
若是恤民⁴⁹⁹，涼德無能，何以
謝報？興惟及此，何敢得雨而

496 雖：저본에는 ‘隆’.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8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97 近：저본에는 ‘連’.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8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98 嶺：저본에는 ‘湖’.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8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499 民：저본에는 ‘哉’.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8월 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弛心? 唯望西成也.”

갑오년¹⁷⁷⁴ 5월 3일

● 비가 내린 상황의 장계를 신칙하다.

비망기에,

“이번에 단비가 내린 것은 참으로 천만뜻밖이지만 수표는 6촌에 그쳤다고 하니, 어제 비가 내렸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아, 지금 내 마음은 옛사람의 말과 같으니 어찌 비가 내렸다고 해서 마음을 놓겠는가. 그런데 어제 음식 가짓수를 회복하기를 청하고 또 물선^{物膳}을 봉진하기를 청하니, 이와 같아서야 어찌 비가 충분히 내리겠는가. 아, 어찌 가을걷이를 말하겠는가마는, 봄보리가 <금등^{金騰}>의 ‘크게 익었다.’^{大熟}³⁵라는 구절처럼 황색에서 갑자기 청색으로 변하였으니, 봄보리도 추수한다고 한 뒤에야 이 마음이 조금 놓일 것이다. 경기 감사와 양도^{兩都}의 유수로 하여금 이를 살피 장계로 아뢰라고 하유하라.”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5월 9일

● 1차 기우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1차 기우제에 모두 근시^{近侍}를 보내되, 삼각산에는

35 크게 익었다 : 『서경』 <주서(周書) 금등(金騰)에 “가을에 곡식이 무르익어 아직 수확하지 않았다.[秋大熟未穫]”라는 구절을 가리킨다.

甲午五月初三⁵⁰⁰日

● 農形狀聞申飭

一. 備忘記: “今番甘霈, 誠是千千萬萬料表, 然水標六寸而止, 昨雖下, 其猶欠足. 噫, 今予心, 若古人言, 豈得雨解心? 而昨請復膳, 亦請封物膳, 若此而雨何足也? 噫, 豈云西成? 春牟色黃者頓青, 若金騰⁵⁰¹大熟, 聞春⁵⁰²牟亦登場云, 然後此心小紓, 令畿伯·兩都留守, 察此狀聞事, 下諭.”

甲午五月初九日

● 初次祈雨祭

一. 大臣·備局堂上入侍時, 傳

500 三 : 저본에는 ‘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01 騰 : 저본에는 ‘滕’.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02 春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3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좌승지, 목덕산에는 우승지, 한강에는 동부승지를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11일에 설행하라.”
라고 답전 하교하였다.

● 기우제를 설행하다.

같은 날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대사간 임희증^{任希曾}이 소회를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들었으니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본디 일반적인 전례^{典禮}인데, 지금 명철하신 성상께서 위에서 근심하고 수고하시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죄수를 너그러이 처결하는 일들이 모두 수신하고 반성하는 실질적인 정사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는 일이 산천단^{山川壇}에만 미치지 못하고 해당 조에서도 거행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우선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내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마침내 거행해야 할 전례를 지체시킨다면 이는 도리어 의도가 있는 사사로움에 가깝고 하늘을 공경하는 의리에도 흠이 됩니다. 천도^{天道}는 깊고 멀어서 진실로 일시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또한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늘을 감동시킬 방도를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기우제를 제때 거행하게 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구구한 소회가 있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뢰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曰⁵⁰³：“初次祈雨祭，皆遣近侍，三角山左承旨，木覓山右承旨，漢江同副承旨，不卜日，十一日設行”事，楊前下教。

● 祈雨祭設行

一. 同日次對入侍時，大司諫任希曾所懷：“方旱禱雨，自是典禮之常，今聖明憂勞於上，減膳^{減膳}·疏決，無非修省之實政，而牲幣之薦，獨不及山川，該曹亦無舉行之節。未知有何姑待，而或慮其禱雨不必得，而⁵⁰⁴遂稽於應行之典，則此反涉有意之私，亦欠敬天之義。天道幽遠，固不可取⁵⁰⁵必於一時，而亦不當以其不可必，而不思所以孚格之道。令該曹祈雨祭，及時舉行，恐不可已也。既有區區之懷，敢此仰達矣。”

503 傳曰：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504 而：저본에는 '우'.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05 取：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대저 요즘 이러한 청에 대해 머뭇거리라는 것은 내가 이미 헤아렸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모두 가뭄을 걱정하는데 해당 조에서는 요청하지 않았다. 아, 임금이 음식 가짓수를 거의 1말⁵⁰⁶이나 줄일 때 어찌 느긋하게 기다리는가. 지금 소회는 대간의 체모를 얻었다. 요즘 비가 쏟아지지 않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도가 모두 그러한데, 강원도에서 이미 기우제를 설행하였으니 서울은 오죽하겠는가. 1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11일에 설행하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임금이 이와 같은 때에 어찌 평상시의 규례를 따르겠는가. 모두 근시를 보내되, 삼각산에는 좌승지, 목멱산에는 우승지, 한강진에는 동부승지를 보내라. 내일 예를 거행한 뒤에 친히 향⁵⁰⁷을 전달할 것이다. 입직한 관원만 시위⁵⁰⁸하고, 의주⁵⁰⁹는 그만 두고, 하교하면 정시 시각 단자만 들이라.” 하였다.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대사헌 송형중^{宋瑩中}이 소회를 아뢰기를,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아 성상께서 노심초사하시니, 엇그제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신 것도 실로 최선을 다하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죄수들 중 녹계^{錄啓}에 실린 자들은 대부분 용서를 받았지만, 지방에서 오랫동안 적체되었는데도 미처 녹계에 실리지 못한 죄수들의 경우는 성상께서 심리하는 은택을 입을 길이 없었습니다. 신은 여러 도의

上曰：“大抵⁵⁰⁶近者於此請遲回，予已量矣。雖然，凡諸舉措，皆悶旱，而該曹所請漠然。噫，人君近一斗減膳時，其何⁵⁰⁷遲待？今者所懷，可得臺體。近者靳需，非徒京中，諸道皆然，而關東既設祈雨祭，則況京中乎？不卜日，初次祈雨祭，十一日設行，祭文當製下。爲人君若此之時，何循常例？皆遣近侍，三角山左承旨，木覓山右承旨，漢江同副承旨，明日展禮後，當親傳香，侍衛入直，儀註安徐，待下教，只入正時。”

一. 同日入侍時，大司憲宋瑩中所懷：“雨澤愆期，聖心焦慮，日昨疏決，寔出於靡不用極之意，京外囚推之載⁵⁰⁸在錄

506 抵：저본에는 ‘祇’.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07 其何：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508 載：저본에는 ‘減’. 『승정원일기』

관찰사에게 속히 결말을 내도록 신칙하여 죄수들이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뢰는 말이 대간의 체모를 얻었으니 여러 도에 신칙하여 이대로 거행한 뒤에 장계로 아뢰게 하라.”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5월 12일

● 2차 기우제

비망기에,

“어제 해야 했는데 오늘 하교에서 내 뜻을 하교하였다. 연석에서 글은 지어서 내리겠다. 2차 기우제는 저자도와 용산강에 재신을 헌관으로 삼으라. 내일 지영하겠다.”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5월 14일

● 가뭄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아, 지금 가뭄 걱정은 모두 나 때문이다. 본디 정성이 알았으니 지금 어찌 하늘을 감동시키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모두 부덕한 나 때문이니 하물며 노년에는 오죽하겠는가. 이것이 두 번째 이

啓者, 多蒙恩宥, 而至於外方之未及錄啓積久滯囚者, 無由得霑審理之澤矣. 臣以爲請申飭諸道之臣, 趁⁵⁰⁹速究竟, 俾免向隅之歎宜矣.” 上曰: “所奏得臺體, 申飭諸道, 依此舉行後, 狀聞可也.”

甲午五月十二日

● 再次祈雨

一. 備忘記: “當昨日而今日下教, 意諭, 筵中文當製下, 二次祈雨祭, 楮子島·龍山江, 宰臣爲⁵¹⁰獻官, 明當祇迎.”

甲午五月十四日

● 憫旱

一. 備忘記: “噫, 於今閔⁵¹¹旱,

영조 50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09 趁: 저본에는 ‘珍’.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10 爲: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2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511 於今閔: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

유이다. 10일에 비가 왔어야 했는데 오지 않은 것은 내가 기우제를 빠트렸기 때문이니 이것이 세 번째 이유이다. 백성을 위해 탕척하였지만 그 효과가 막연하니 이것이 네 번째 이유이다. 재차 기우제를 지냈는데도 하늘이 감응하지 않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이다. 어제 거조를 하였지만 비가 조금 내렸다가 금방 그쳤으니 이것이 여섯 번째 이유이다. 근심스럽다고 말하였지만 누워서 비가 내리기만 바랐으니 이것이 일곱 번째 이유이다. 초봄에는 적당하였는데 여름 들어서 이와 같았으니, 이것이 여덟 번째 이유이다. 나의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오직 나 한 사람 때문이니, 이것이 아홉 번째 이유이다. 지금 극심한 가뭄은 바로 내가 초래한 것이니 이것이 열 번째 이유이다. 밥이 어찌 달겠으며 저 푸른 하늘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임금의 자리가 뜬 구름과 같고, 만사萬事가 멀게만 느껴지니 나 한 사람으로 만백성을 대신한다는 말이 바로 지금을 말한다. 오늘 이 거조도 문답하는 것과 같다. 두 군데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빗방울만 떨어지니 어찌 비가 내린 것이겠는가. 애타고 애타니 모두 나 때문이다.” 하였다.

皆由於予，本來誠淺，今何相孚？此一也。皆由於涼德，其況暮年？此二也。應雨初十日，因予闕焉，此三也。爲民蕩滌，其效漠然，此四也。再次祈禱，冥應愈漠，此五也。昨日舉措，小雨旋止，此六也。其雖曰悶，臥以冀霈，此七也。春初適中⁵¹²，入夏若此，此八也。吾民何辜？惟在一人，此九也。今者亢旱，卽予攸召，此十也。玉食何甘？彼蒼何效？千乘浮雲，萬機楚越，以一代萬，正謂今也。今日此舉，亦若問答，兩處祈禱，點雨豈得？焦心⁵¹³焦心，卽予卽予。”

일기』 영조 50년 5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512 中 : 저본에는 ‘聞’.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13 心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4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갑오년¹⁷⁷⁴ 5월 15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에 재신을 보내어 택일하지 말고 17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같은 날 승지들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이번 3차 기우제는 남교·우사에 헌관을 보내되 모두 정경^{正卿}으로 채워 차임하라.”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5월 17일

● 4차 기우제

전교하기를,
“세 차례 기우제를 지냈는데 신령한 응험은 더욱 아득하다. 어제 아침에는 그래도 비가 내릴 가망이 있었는데, 오늘 햇볕이 쨍쨍 비추니 아직도 매우 답답하다. 규례상 제사를 마친 뒤에는 당일에 내게 물었는데, 1차 기우제는 이르지도 늦지도 않았지만 거동하는 날과 겹쳤으므로 2차 기우제가 조금 지체되어 하루아침에 멎하였고 3차 기우제 또한 그러하였다. 전에 비하면 모두 지체되어 하루아침에 이처럼 하였으니 어찌 하늘을 감동시키겠는가. 4차 기우제는 모

甲午五月十五日

● 三次祈雨祭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遣宰臣，不卜日，今十七日設行事，分付，何如？” 啓依所啓施行。

一. 同日諸承旨入侍時，傳曰：“今番三次祈雨，南郊·雩祀獻官，皆以正卿填差。”

甲午五月十七日

● 四次祈雨祭

一. 傳曰：“三次祈雨，靈應愈邈，於昨朝，猶有其雨之望⁵¹⁴，今日太陽杲杲，猶⁵¹⁵切沓沓。例⁵¹⁶於祭畢後，其日稟也，而

514 有其雨之望：저본에는 ‘爲其雨云望’.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15 猶：저본에는 ‘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16 例：저본에는 ‘謝’.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레 사직단에 대신을, 북교에 정1품 중신을 헌관으로 차임하라. 대축과 집사들은 정간井間에 구애받지 말고 각별히 가려 뽑으라. 내일 지영할 것이니 사직단에서는 월대에서 용정龍亭을 받들라. 의주儀注는 그만 두고, 입직한 관원만 시위侍衛하고, 정시 시각 단자만 들이는 것은 모두 예전대로 하라.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5월 18일

● 5차 기우제

비망기에,
 “아, 오늘 거의 비가 쏟아지려고 하였는데, 피꼬리 소리를 듣고 마음이 저절로 움직였다. 어째서 그런가. 비가 그친 듯하니 이렇게 새가 우는구나. 아, 수표단자에는 겨우 몇 분分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소식이 막연하니 5차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 5차 기우제는 마음이 매우 답답하다. 부덕한 탓에 영령께 근심을 끼쳤으니 부덕한 나 때문이지만 향소享所를 신칙해야 마땅하다. 대상시太常寺를 신칙하여 반드시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하라.”
 하였다.

初次不先不後，相值動日⁵¹⁷，故再次差遲，一日⁵¹⁸命下，三次亦然，比前皆差遲，一日⁵¹⁹若此，而何能感孚？四次祈雨祭，再明日，社壇大臣，北郊正一品重臣差獻官，大祝諸執事，勿拘井間另擇，明日當祇迎。社壇自月臺奉龍亭，儀註安徐，侍衛入直，只⁵²⁰入正時，皆依前，祭文製下矣。”

甲午五月十八日

● 五次祈雨祭

一. 備忘記：“嗟，今日幾霈然，聞鶯聲，心自動，何以然？其若霽，此鳥聲。嗟水標，堇數分，後漠然，將五次，於五次，

517 日：자본에는 ‘動’.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18 日：자본에는 ‘一’.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19 日：자본에는 ‘一’.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20 只：자본에는 ‘直’.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같은 날 비망기³⁶에,

“아, 81세인데도 계속해서 이처럼 마음을 써서 몇 차례나 기우제를 지냈지만 정성이 얕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였다. 하루 세 번 탕제를 먹어도 기운이 특히 심하게 고단한데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퍼붓지는 않는다. 이 탕제를 억지로 마시고 있지만 그 쇠약함이 더욱 확실하다. 조선을 보라. 누가 감히 임금의 뜻에 응할 수 있는가. 모두 형식적인 말만 하니 어찌 탄식을 견딜 수 있겠는가. 모레 5차 기우제를 지낼 것이니 예조는 잘 알도록 하라. 제문은 지어서 내리겠다. 내일 지영^{祗迎}할 것이니 모든 절차는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같은 날 비망기에,

“올해 같은 가뭄은 처음 본다. 비가 내렸지만 어찌 두루 적셨겠는가. 묵은 곳에서 소리를 어찌 들었겠는가. 경기 감사의 장계를 듣고자 이 당에 돌아오니 갑절이나 애타고 걱정이다. 군호^{軍號}를 보면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 돌아올 때 비가 뿔에 뿌렸으니, 비록 가랑비지만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다. 태양에 비하자면 똑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81세 노령에 얼마나 근심스러운가. 이 점을 생각하면 죽고 싶다. 아,

36 같은 날 비망기 : 이 비망기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9일 기사에 실려 있다.

心切悶，因涼德，貽陟降，雖由涼德，宜飭享所，申飭太常，必誠必潔。”

一. 同日備忘記：“嗚呼，八十一，何⁵²¹若是用心，幾次祈禱，誠淺莫孚。日三服⁵²²湯，氣鬱特甚，其雖下雨，尙靳霑治。強飲此湯，其衰益判，須看朝鮮，孰敢應旨⁵²³？其皆文具，曷勝其歎⁵²⁴？再明五次祈禱，春曹知悉，文當製下，明當祗迎，凡節依前。”

一. 同日備忘記：“今年旱，見初也，雖得雨，豈周治？其宿舍，何聞聲？畿伯狀，其欲聞，回此堂，倍焦悶，觀軍號，知

521 何 : 저본에는 ‘仍’.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22 服 : 저본에는 ‘駭’.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8월 9일 등의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23 旨 : 저본에는 ‘否’.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24 歎 : 저본에는 ‘勤’.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19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나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 이미 관가름났으니, 두 곳에서 정성껏 기우제를 지내라.”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5월 21일

● 가뭄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올해 가뭄은 실로 내가 다스린 지 50년이 되었기 때문이고, 올해 가뭄은 실로 내 나이가 81개이기 때문이고, 올해 가뭄은 실로 내가 부덕하기 때문이고, 올해 가뭄은 실로 내가 혼미하기 때문이고 올해 가뭄은 실로 내가 소란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여섯 가지를 겸하였으니, 이번에 가뭄이 드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다. 비가 내리는 사이에는 모든 한만한 공사^{公事}를 모두 승정원에 보류해 두고, 명에 응한 소장과 농민에 대한 장계는 즉시 들이며, 규례대로 올린 상소는 감히 승정원 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요즘 모두 보았을 것이다. 오후에도 다시 이와 같으면 의관을 정제하고 정자각에서 밤을 새 것이니, 승정원에서는 잘 알도록 하라. 아, 이것이 무슨 의도인가. 한편으로는 장빙제^{藏氷祭}를 추억하고 한편으로는 옛날 선정전^{宣政殿}을 추억해서이다. 아, 어째서인가. 임진년 선정전^{宣政殿} 정자각^{丁字閣}이 기억나서 그런 것

予心, 回來時, 灑雨腮, 其雖微, 若解渴, 比太陽, 同日語? 八十一, 一何悶? 興惟此, 欲溘然, 嗟一人, 今已判, 令兩處, 虔誠祈.”

甲午五月二十一日

● 閏旱

一. 備忘記: “今者亢旱, 良由⁵²⁵五十載, 今者亢旱, 良由八十一, 今者亢旱, 良由涼德, 今者亢旱, 良由昏耗, 今者亢旱, 良由撓攘, 一人兼六, 此旱固有. 得雨間, 凡閑漫公事, 皆留院, 應旨章, 農民狀, 卽入, 循例陳章者, 莫敢⁵²⁶售於政院門. 瞻漢惟冀, 近來皆⁵²⁷見, 午後而復⁵²⁸若此, 當整衣丁閣竟

525 良由: 저본에는 ‘良有’.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이하 ‘良由’는 모두 ‘良由’로 수정

526 敢: 저본에는 ‘能’.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27 皆: 저본에는 ‘尙’.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28 而復: 저본에는 ‘雨後’. 『승정원일기』

이다.³⁷⁾

하였다.

● 가뭄을 걱정하다.

같은 날 전교하기를,

“평상시라도 이처럼 해야 하는데, 하물며 가뭄을 근심하는 때이겠는가. 단군묘檀君廟부터 전조前朝, 고려의 묘廟까지 아직까지 제례를 지내니, 감영에 속한 능陵은 관찰사가 직접 봉심하고 각기 본 고을에 있는 능은 수령으로 하여금 봉심하게 하라. 송도에는 고려의 능이 있고, 강화도에도 유수가 있으니 일체 봉심하고 보수할 것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라. 이러한 때에 어찌 농민을 쓸 수 있겠는가. 모두 모군募軍을 쓰고 저치미儲置米로 회감會減하라고 오늘 팔도의 관찰사와 양도兩都의 유수에게 하유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37 임진년……것이다 : 1712년(숙종38) 숙종이 선정전 정자각과 자정전 정자각에 거둥하고 돌아가는 길에 빗방울이 안면을 적셨다고 하는데, 이를 가리키는 듯하다. 『承政院日記 英祖 48年 4月 13日』.

夕, 政院知悉. 噫, 此何意? 一憶藏氷時, 一憶昔年宣政殿, 嗟, 何則? 憶壬辰宣政丁閣然也.”

● 悶旱

一. 同日傳曰: “雖常時宜乎若此, 況悶旱時乎? 自檀君廟, 至前朝, 尙今祀⁵²⁹⁾典, 陵在監營者, 道臣親爲奉審, 各在本官者, 令守令奉審. 松都宜有⁵³⁰⁾諸陵, 沁都亦有留守, 一體奉審, 若有修補者, 趁卽修補, 而此時何用農民? 皆用募⁵³¹⁾軍, 以儲置米會減事, 今日下諭于八道道臣·兩都留守, 以示予靡不用極之意.”

기.』 영조 5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29 祀 : 저본에는 ‘祠’.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30 有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531 募 : 저본에는 ‘募’.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1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오년¹⁷⁷⁴ 5월 22일

● 6차 기우제

비망기에,

“초복^{初伏}이 다가왔는데 가뭄이 아직 이와 같으니 노년에 백성을 위해 초조하고 절박하다. 또한 규례대로 하되 선농단에는 예전에 의^義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禮를 만들라고 명하였다. 6차 기우제는 내일 원임대신^{原任大臣}이 섭행하되 용정^{龍亭}만 봉안^{奉安}하고 의장^{儀仗}은 그만두라. 지영^{祗迎}할 것이니 의주^{儀注}는 그만두고 입직한 관원만 시위하고 정시 시각 단자만 들이는 것은 모두 전례대로 하라. 내일 향^香을 받으라.”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5월 23일

● 가뭄을 걱정하다.

비망기에,

“아, 이번 가뭄은 만고에 처음 본다. 어찌 비가 내리지 않겠는가마는 두루 적실 기약이 막연하니,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81세이니 임금이 되어 무엇을 하였는가. 가뭄이 드는 것이 마땅하다. 아, 부덕한데다가 정신까지 혼미하니 가뭄이 드는 것이 마땅하다. 기우제를 몇 차례나 지냈는데 편히 누워 섭행^{攝行}을 명하였으니, 가뭄이 드는 것이 마땅하다. 아, 이 탕제가 날마다 먹는 음식보다 낫다고 하루에도 몇 첩씩 마시니 가뭄

甲午五月二十二日

● 六次祈雨祭

一. 備忘記：“初庚在近，旱猶若此，暮年爲民焦迫，其亦循例，先農壇昔年義起命者，六次禱雨，再昨原任大臣攝爲，只龍亭奉而儀仗安徐，當爲祇迎，儀註安徐，只入正時，只入直侍衛⁵³²，皆依前，明日當受香。”

甲午五月二十三日

● 悶旱

一. 備忘記：“嗚呼今旱，萬古初見，其豈莫雨？周洽杳然，是誰是誰？即予即予。八十一歲，何事爲君⁵³³？其旱宜也。嗟哉涼德，加以昏耄，其旱宜也，幾次祈禱，便臥命攝，其

⁵³² 侍衛：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⁵³³ 君：저본에는 ‘矣’.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이 드는 것이 마땅하다. 억지로 참고 견디지만 대소 신료들은 속으로 풍요롭고 안락하니 가뭄이 드는 것이 마땅하다. 이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가뭄이 드는 것이 마땅하다. 가뭄이 드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다섯 가지나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한 명이 만 명을 대신한다고 내가 옛날 들었는데, 참으로 오늘날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이것이 어찌 조물주 때문이었는가. 마음이 매우 송구스럽고 정신이 아득하다. 올해 명일^{名日}은 탄일^{誕日}이 생각났는데, 하교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 또한 동지^{冬至}가 있으니 물선과 방물도 모조리 봉진을 정지하고 육조의 물선도 봉진을 정지하고 들어오라. 동쪽 창문에 비치는 햇빛이 내 오장육부를 말릴 듯하니, 아, 내일이 무슨 날인가. 오늘 간지^{干支}는 어떻게 되는가. 이 어찌 명하게 지탱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우리러 사죄하겠는가. 음식을 줄이고 탕약을 먹지 않은 뒤에야 저 하늘이 내 마음을 알아줄 테니, 내국과 세 정승은 모두 유념하라.”

하였다.

旱宜也。嗟哉此湯，勝於常膳，日飲幾貼，其旱宜也。其雖強忍，大小臣僚，豐亨⁵³⁴有中，其旱宜也。有一於此，宜早宜早，況五乎？以一代萬，予聞乎昔，正謂今予，是豈造物？心切悚然，精神索漠，今年名日，其憶誕日，下教更思，亦有冬至，物膳方物，一體停封，六曹物膳，亦爲停封入來。東牖日⁵³⁵照，欲乾⁵³⁶臟腑。嗚呼，明日何日？今日干支其何？此豈冥然支撐而然？何以仰謝？少食闕湯，然後彼蒼，庶可照心，內局與三相，其皆體焉。”

534 豐亨：저본에는 ‘蓋亨’.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35 日：저본에는 ‘牖’.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36 乾：저본에는 ‘執’.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오년¹⁷⁷⁴ 5월 25일

● 7차 기우제를 설행할 장소 및 제관을 상에게 여쭙어 정하다.

예조의 계사에,

“6차 기우제 장소는 삼각산·목멱산·한강진이고, 7차 기우제 장소는 용산강·저자도입니다. 헌관은 으레 근시^{近侍}와 중신^{重臣}을 차례대로 채워 차임하였는데 6차 기우제는 특교^{特敎}로 인하여 대신을 보내어 선농단^{先農壇}에서 설행하였습니다. 7차 기우제는 모레 설행해야 하는데 제향하는 장소에 가는 헌관의 품계를 본조에서 감히 규례대로 마련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단비가 내렸으니, 형편을 보아 하교하겠다. 하교를 기다리라.”

하였다.

● 제관에게 상을 준다.

비망기에,

“수표는 지금 거의 1척이고 측우기는 지금 거의 1촌이니, 이번 여름 초부터 가뭄으로 근심하던 가운데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바로 3일 내로 선농단 헌관을 맡은 원임 대신에게 숙마^{熟馬} 1필을 직접 주겠다. 대축과 단사^{壇司}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을, 축사^{祝史}와 재랑^{齎郎}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찬자^{贊者}와 알자^{謁者}에게는 현궁^{絃弓} 1장을 내려 주라.”

甲午五月二十五日

● 七次祈雨祭設行, 而處所及祭官稟定

一. 曹啓辭: “六次祈雨祭處所, 三角山·木覓山·漢江, 七次祈雨祭處所, 龍山江·楮子島, 獻官則例以近侍重臣次第填差, 而六次祈雨祭, 因特敎, 遣大臣, 設行於先農壇矣. 七次祈雨祭, 再明日, 當爲設行, 祭享處所, 獻官職品, 臣曹不敢循例磨鍊,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今得甘霖, 當觀⁵³⁷勢下教, 以待下教.”

● 祭官賞格

一. 備忘記: “水標今幾一尺, 測雨器今近一寸, 此今夏初而悶旱中, 其喜曷勝? 正在三日內, 先農壇獻官原任, 熟馬一匹面給, 大祝壇司半熟馬一匹, 祝史·齋郎兒馬一匹, 贊謁者絃弓一張賜給.”

537 觀: 저본에는 ‘執’.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하였다.

비망기에,
“밤새 단비가 내렸으니 기우제는 특별히 정지하고
수의^{首醫} 또한 그만두라.”
하였다.

● 보사제

같은 날 약방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오전에 비가 내릴 줄은 예상 밖이었다. 상쾌하게 적
서주기를 바랐지만 지금도 참으로 만족스럽다. 푸른
하늘이 이처럼 우리 백성을 돌보시니, 노년이지만
우러러 사례해야겠다. 헌관 이하는 이미 시상하였
으니, 선농단에서 보사제를 지내라. 제문은 지어 내
리겠다. 내일 향^香을 받을 때 지영^{祇迎}할 것이니 모든
절차는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5월 26일

● 한강진 수표단자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홍성귀^{洪聖龜}의 첩정에,
‘이번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넘쳐 평상시 수위 기준에
서 포백척^{布帛尺}으로 측량하니, 4척가량이 불어났습
니다.’

一. 備忘記：“通夕甘露，祈雨
特停，首扁鵲亦安徐。”

● 報謝祭

一. 同日藥房入侍時，傳曰：
“晝前其雖料表，惟望快浹，於
今誠足矣。蒼蒼若是眷佑吾
民，暮年其宜仰謝。獻官以下
已施賞，先農壇報謝，祭文製
下，明日受香，當祇迎，凡諸等
節，其皆依前。”

甲午五月二十六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洪聖龜牒呈內：‘今番雨後，江
水漲溢，常流水基良中，以布
帛尺丈量，則四尺許添流’是
如爲白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5월 27일

● 비가 내린 후 청대하다.

비망기에,

“어떻게 형체를 대하는가. 그림자를 먼저 살펴야 한다. 여든이지만 내가 예전에 들었다. 1차 기우제를 지내라는 명에 비가 쏟아졌고 가뭄이 특히 심하였는데도 2차와 3차 기우제를 명하여 비가 내렸으니 옛날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이와 같으면 나중에 첫번째 명을 어찌 내리겠는가. 이번에 비가 쏟아지니 참으로 뜻밖이고, 비가 내렸다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 밭두둑의 싹이 1촌 자란 것을 보려고 중문으로 들어와 대문에서 앞장섰다. 내가 옛날 일을 들었으니 어찌 감히 하겠는가. 이처럼 요란스럽게 한다면 장차 다시 가뭄이 들 것이다. 이제 마음을 쓰자니 실로 두려워진다. 지금 가뭄은 풍요롭고 안락하기 때문이니 만약 다시 청한다면 연융대^{鍊戎臺}로 갈 것이다. 어제^{御製}에 이것을 빠뜨렸기에 특별히 써서 내리니 모두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甲午五月二十七日

● 得雨後請對

一. 備忘記：“何對形？先察影，雖八旬，予聞昔，初命得霈，其旱特甚，再命三命，古豈有乎？若此後，何初命？今霈然，誠料表，曰得雨，心蕩然，須見疇，苗猶寸，入中門，先大門，予聞古，何敢歟⁵³⁸？若是撓，將復旱，今用心，實悚然，今者旱，由豐亨⁵³⁹，若復請，有鍊戎。御製中，猶遺此，特書下，咸知悉。”

538 歟：저본에는 ‘歎’.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39 亨：저본에는 ‘享’.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5월 2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갑오년¹⁷⁷⁴ 6월 2일

● 수표를 신칙하다.

전교하기를,
“지난번의 비는 몇 촌이라고 보고해도 괜찮았지만,
오늘 내린 비는 사방 1천 리라고 할 수 있는데 수표
단자에 몇 분分이라고 보고하였으니 놀랍다. 관상감
도 감감무소식이니 예조 낭청과 관상감 관원을 불러
와 신칙하라.”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6월 20일

● 한강진 수표단자.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홍성귀^{洪聖龜}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넘쳐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측량하니, 13척 정도 불어났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6월 22일

● 사문영제

전교하기를,
“아, 지금 내 마음은 한편으로는 추모하고 한편으로

甲午六月初二日

● 水標申飭

一. 傳曰：“頃者之雨，報寸猶可，而今日之雨，可謂方千里，水標以分爲⁵⁴⁰報駭然，雲觀亦寥寥，禮曹郎廳·雲觀官員招來申飭。”

甲午六月二十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洪聖龜牒呈內：‘今番雨後，江水漲溢，以布帛尺丈量，則常流水基良中，十三尺許添流’是如爲白臥乎事。”

甲午六月二十二日

● 四門禳祭

一. 傳曰：“嗚呼，今予一心，一

⁵⁴⁰ 爲：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6월 2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는 백성을 위한다. 추모에 지금 마음을 쓰더라도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오직 비와 별이 고르기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랐는데 사흘 동안 바람이 불고 5일 동안 비가 내렸다. 내가 부덕하기 때문이니 어찌 감히 바라겠는가. 지난번 보리 농사도 가뭄이 들어 마음이 이미 고갈되었다. 이제 단비가 장마로 바뀌어 과연 지나치게 되었으니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어제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 명한 것은 날씨가 개기를 바라서였는데, 어제 저녁에도 그리하였고 오늘도 빗소리를 들으니 애타고 걱정하는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어제 경기 백성에게 물었는데 만약 다시 비가 내린다면 과연 지나치게 될 것이라 하였으니, 이제 어찌 다시 기다리겠는가.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24일에 설행하라. 제문이 있어야 한다면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 사문영제

예조의 계사에,

“봉상시奉常寺의 신실神室에 비가 새는 곳을 수리하겠다는 고유제告由祭를 이달 24일에 설행하도록 이미 윤허를 내리셨는데, 지금 특교特敎로 인하여 사문영제를 24일 같은 날로 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봉상시의 보고를 보니 신실 위판位版 34위位 중 사문영제 때 산천山川의 4위位를 받들어 꺼내면 형세상 똑같

則追慕，一則爲民，於追慕，今雖用心，其何及也？於爲民，夙夜一心⁵⁴¹，惟在雨暘，三日風，五日雨，以予涼⁵⁴²德，何敢望也？而頃者牟旱，心已渴矣，甘霖成霖，於今果過，是誰是誰？卽予卽予。昨命減膳，惟冀其晴，昨夕亦然，今聞雨聲，渴悶曷諭？昨問畿民，若復則果過，於今其何復待？四門行祭，不卜日，二十四日設行，而若有祭文，則當製下。”

● 四門祭

一. 曹啓辭：“奉常寺神室雨漏處，修改告由祭，今二十四日設行事，已爲允下，而今因特敎，四門祭以二十四日同日設行矣，卽接奉常寺所報，則神室位版三十四位，祭祭奉出山

541 心：저본에는 ‘則’.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6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42 涼：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6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이 고유제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전에도 이와 같은 때 고유제를 조금 물린 예가 있으니 즉시 다시 택일하여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7월 16일

● 기청제를 실행하다.

비망기에,
“비록 비가 내리지 않은 때도 있었으나 올해 비는 과연 뜻대로 내렸는데, 요즘에는 지나쳐서 침수된 곳도 있으니 노년에 이 마음이 어찌 조금이나마 풀어진 적이 있겠는가. 어제는 날이 갠 기미가 있어 말끔히 개리라고 여겼는데, 아침에 빗소리를 들으니 내 몸이 젖는 듯하였다. 아침에 빗소리가 긴박하였는데 처서^{處暑}가 내일이니 어찌 지체하겠는가. 기우제든 기청제든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니 기청제를 예조로 하여금 내일부터 지내고 3일 뒤에 정지하게 하라. 부르는 대로 다 적자마자 또 빗소리가 들리니 근심을 어찌 견디겠는가. 제문은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7월 17일

비망기에,
“노년의 온 마음이 오직 농사에 있는데, 그 임금은

川四位, 勢不得一體告由, 而
在前如此之時, 有告由祭差
退之例, 卽爲改擇日設行, 何
如?” 傳曰: “允.”

甲午七月十六日

● 祈晴祭設行

一. 備忘記: “雖或靳閏, 今年雨水, 果若意焉, 近者過也, 沈水者亦有, 暮年此心, 奚嘗⁵⁴³少弛? 昨日晴意, 謂快霽, 朝聞雨聲, 其若身沾, 朝來聲緊, 處暑在明, 其何遲待? 祈雨·祈晴, 皆有其時, 祈晴令該曹, 自明日三日而止, 呼寫纔畢, 且聞雨聲, 曷勝其悶? 有文當製下.”

甲午七月十七日

一. 備忘記: “暮年一心, 惟在三農, 而其君頽臥, 何云其

⁵⁴³ 嘗: 저본에는 ‘常’.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월 12일 등의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누워 있으니 어찌 정성스럽다고 하겠는가. 동서남북의 문에 물으라. 기청제인가, 기우제인가. 각별히 신칙하라.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7월 18일

● 영제의 제관을 신칙하다.

내국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예로부터 속담에 ‘우리나라는 기청제를 지내면 호과를 본다.’라고 하는데, 과연 날이 개려고 할 때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아, 올해 농사는 처음부터 믿는 곳이 있었으니 1차 기우제 때는 가물었고, 2차 기우제 때는 비가 내렸다. 수십 집이라고 하지 말라. 이 또한 우리 백성이다. 또한 약간 침수되었다고 하지 말라. 아, 한 알의 곡식도 옛날 사람들은 일컫는 말이 있었는데, 하물며 몇 이랑 밭의 곡식은 어떠하겠는가. 3일 뒤에 마치는데 날이 개겠는가, 비가 오겠는가. 이 어찌 신하 때문이라고 하겠는가. 나 한 사람 때문이다.

나도 예전에 들었으니, 옛사람이 초헌관이 되자 가뭄을 걱정하던 때였는데도 비가 내렸다. 또 어떤 헌관은 그 부인이 한밤중에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고 한다. 지금 내가 임금인데 관원에게 명하였으나 밤낮으로 쇠약하여 누워 있으니, 근본이 혼탁한데 말단이 어찌 맑겠는가. 그렇지만 사문의

誠? 須問東西南北門, 祈晴乎? 祈雨乎? 另飭另飭.”

甲午七月十八日

● 祭祭官申飭

一. 內局入侍時, 傳曰: “自古諺云, 我國祈晴得此, 果晴時故也. 嗚呼, 今年農事, 自初特焉, 初則旱, 再則雨, 莫云數⁵⁴⁴十家, 此亦吾民, 亦莫云若干水沈. 噫, 一粒食, 昔人有稱⁵⁴⁵, 況數⁵⁴⁶頃田? 三日將訖, 其晴乎? 其雨乎? 此豈謂臣? 卽一人, 而予亦聞昔, 昔人爲初⁵⁴⁷獻官, 雖悶旱時得雨. 且聞一獻官, 其夫人中夜共禱, 故能得雨云. 今予其君, 雖命官, 晝

544 數 : 저본에는 ‘數’.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45 稱 : 저본에는 ‘稔’.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46 數 : 저본에는 ‘數’.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47 初 : 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헌관에게 깊이 바라는 점이 있다. 대체로 시일이 오래되면 정성이 줄어들니 제관에 차임된 헌관은 임금이 쇠약해져서 누워 있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들이 참으로 백성은 나의 형제이고 만물은 나와 함께한다고 믿게 할 수 있을지는 <서명西銘>에 실려 있다. 임금이 이처럼 노쇠한 때 신하가 정성을 다하여 효과가 있다면 어찌 평소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 것에 비할 수 있겠는가. 해당 방^房의 승지로 하여금 하유하게 명한 것 또한 형식적이므로 특별히 유시^{諭示}하여 두루 알린다. 내일 아침 효과가 있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내가 이미 생각한 바가 있으니, 3일 동안 신칙하여 산천의 신들에게 사죄하겠다.

아, 헌관들이 3일 동안 고생하니 음악의 절주^{節奏}가 없어서이다. 일각이면 예^禮를 마칠 수 있는데, 예를 마친 뒤 어찌 새벽복이 울리기를 기다렸다가 문 밖으로 나가겠는가. 어찌 제복^{祭服}만 벗겠는가. 반드시 편복^{便服}으로 갈아입고 바빠 돌아가 새벽이 되기 전에 오히려 잠을 잔다. 이와 같은데 높고 높은 하늘이 이처럼 나태하다고 하지 말라. 기청제가 어찌 응험이 있겠는가. 오늘밤 반드시 정성껏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맑은 날씨를 보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 감히 편복을 입지 못할 테니, 반드시 향^香을 받을 때의 옷차림으로 집에 돌아가도록 영제 지내는 곳에 신칙하라.

아, 예전 같았으면 묵묵히 재계하였으니 오늘밤 기청제 때 어찌 온돌에서 편히 자겠는가. 아, 여든 먹

夜衰臥，本已濁⁵⁴⁸，末何清⁵⁴⁹？雖然⁵⁵⁰深有望者，四門獻官，且大抵日久，則誠衰，差祭諸獻官，莫云君衰而臥，吾輩誠何能孚民吾同胞⁵⁵¹物吾與也？載於〈西銘〉。君衰若此之時，臣能至誠有效，豈比恒日⁵⁵²事君以忠？令該房命諭，此亦應文，故特諭遍示。來朝果有效則已，不能，予已量，當三日自飭，以謝諸山川神。嗟，諸獻官，三日抱苦，此無樂節奏。一刻自可禮畢，既禮畢後，奚待曉鼓下門下？豈特釋祭服？必着便服。慙忙而回，撤漏前其猶宿也。若此而莫云高高若

548 濁：저본에는 '瀉'. 『송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49 清：저본에는 '請'. 『송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50 然：저본에는 '能'. 『송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51 胞：저본에는 '飽'. 『송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52 比恒日：저본에는 '非恒'. 『송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은 노쇠한 임금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헌관이 된 자는 어떻겠는가. 내가 어찌 신칙하겠는가. 그저 잘 알도록 할 뿐이다. 만약 재소에서 편복 차림으로 있는 자는 감찰로 하여금 정과^{呈課}하게 하라. 아, 지금은 더욱 쇠약해져 탕제도 효과가 없으니, 오직 신^神을 섬기는 뜻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만 있다. 저 푸른 하늘이 굽어보니 내가 어찌 감히 말을 꾸미겠는가.”
하였다.

갑오년¹⁷⁷⁴ 8월 5일

● 기청제

예조의 계사에,
“가을에 찬비가 내렸다 그쳤다가 하면서 아직까지 날이 갠 기미가 없으니 곡식이 손상될까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거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9일 시작하여 3일 뒤 정지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도 이와 같으니 기청제를 지내는 것이 옳다.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是懈怠，祈何有應？今夜盍⁵⁵³
必虔誠？見其晴，各⁵⁵⁴自回家，
而莫能着便服，必也受香衣回
家事，申飭祭所。嗚呼，若前
默齋，今夜祭時，其何便睡溫
煖？嗚呼，八十衰君，猶若此，
況爲獻官者乎？予何飭？只令
知悉，若齋所便服者，令監察
呈課。嗚呼，今益衰，湯莫效，
惟有事神意⁵⁵⁵，爲民心，彼蒼
照臨，予何敢飾⁵⁵⁶？”

甲午八月初五日

● 祈晴祭

一. 曹啓辭：“秋節冷雨，或止
或雨，尙無開霽之意，傷穀可
悶，祈晴之舉，不容少緩，四門

553 盍：저본에는 ‘益’.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54 各：저본에는 없음.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555 意：저본에는 ‘宜’.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556 飾：저본에는 ‘飾’.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祭，不卜日，今初九日爲始，三日而止事，分付何如？”傳曰：“予意若此，祈晴是矣，依例爲之。”

정묘조

병신년¹⁷⁷⁶ 6월 14일

비망기에,

“택일하지 말고 즉시 기청제를 지내라고 강원 감사^{江原監司} 김하재^{金夏材}에게 회유하라.”

하였다.

● 기청제

같은 날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단비가 장마로 바뀌어 한 달이 넘도록 개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애타고 걱정스럽다. 더구나 지금 외재궁^{外粹宮}을 모시고 오는 것도 기일에 할 수 없으니 더욱 안타깝고, 전례를 살펴보면 또한 근거가 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은 입추까지 천천히 기다릴 수 없으니 택일하지 말고 15일에 설행하고, 재관^{齋官}을 각별히 가려 뽑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기청제

예조의 계사에,

“전교하기를,

‘단비가 장마로 바뀌어 한 달이 넘도록 개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애타고 걱정이다. 기청제를

正廟朝

丙申六月十四日

一. 備忘記: “不卜日, 卽爲祈晴事, 回諭于江原監司金夏材.”

● 祈晴

一. 同日次對入侍時, 傳曰: “時雨成霖, 跨朔不霽, 言念農事, 極爲焦慮, 況今外粹宮奉詣, 亦不能如期, 尤庸悶然, 考之前例, 亦有可據. 祈晴之舉, 有不可遲待立秋, 不卜日, 十五日設行, 齋官另擇事分付.”

● 祈晴

一. 曹啓辭: “時雨成霖, 跨朔不霽, 言念農事, 極爲焦慮, 祈晴之舉, 有不可遲待立秋, 不卜日, 十五日設行, 齋官另擇

지내는 일은 입추까지 천천히 기다릴 수 없으니 택일하지 말고 15일에 설행하고, 재관^{齋官}을 각별히 가려 뽑으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전교대로 사문영제를 이달 15일에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4월 24일

● 기우제

예조 당상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가뭄이 이와 같은데 단비는 막연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몹시 애타고 걱정이다. 효종조부터 지금 선조^{先朝} 원년^{1725, 영조1}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미 전례가 있고, 4월에 기우제를 지낸 일 또한 숙종 원년^{1675, 숙종1}에 이미 전례가 있으니, 택일하지 말고 이달 26일에 기우제를 설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기우제의 향을 내일 받아야 하니, 헌관과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차임하고, 술을 금지하고 담배를 금지하는 등의 일 역시 재관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事，命下矣。依聖教，四門禱祭，今十五日爲始，三日而止事，分付何如？”傳曰：“允。”

丁酉四月二十四日

● 祈雨祭

一. 禮堂入侍時，傳曰：“旱氣如此，甘霖漠然，言念民事，殊甚焦悶，自孝廟朝，至于先朝元年，皆有已例，四月祈雨，亦有肅廟元年已例，不卜日，今二十六日祈雨祭設行。”

一. 傳曰：“祈雨祭，明日當受香，獻官·諸執事另加擇差，禁酒·禁草等節，亦爲申飭於齋官。”

정유년¹⁷⁷⁷ 4월 27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달 29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1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단 등지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달 3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3일

● 가뭄을 근심하다.

비방기에,

“덕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내가 외람되게 크나큰 기업을 이어받았으니 밤낮으로 삼가 두려워하며 편안히 지낼 겨를이 없다. 조정이 안정되지 않아 정치는 뜻대로 되지 않고, 나라의 근본이 견고하지 않아 은혜는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하니, 생각할 때마다 씩

丁酉四月二十七日

● 再次祈雨祭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宰臣，不卜日，今二十九日設行之意，知委何如?”

丁酉五月初一日

● 三次祈雨祭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遣宰臣，不卜日，今初三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丁酉五月初三日

● 閔旱

一. 備忘記：“顧予寡昧，叨承丕基，夙宵寅畏，不遑寧謐，朝著未靖，而治不彞志，邦本未固，而惠不下究，每一思惟，凜乎朽索之六馬，尙是歇後語也。昨年東北告歉，幾乎頷顙，

은 밧줄로 여섯 마리의 말을 끈다는 것도 오히려 가벼운 비유이다.

작년에 동북 방면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거의 부황이 들었다가 어렵게 구제하여 다행히 시신이 도랑에 구르는 참상은 없었다. 올해는 비와 햇빛이 처음부터 알맞아 농사가 가뭄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봄과 여름 사이에 한 달이 넘도록 가뭄이 들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팔도가 마찬가지로, 팔도 가운데 삼도가 더욱 심하며, 삼도 가운데 경기가 더욱 심하다. 보리농사는 이미 흉년으로 결정 났고 논농사도 때를 놓치게 되었다. 하지가 머지않았으니 추수를 알 만하다. 관원에게 명하여 정성껏 기우제를 지내라고 한 것도 이미 세 차례이다. 간혹 가랑비가 내렸으나 아직까지 비가 쏟아지지 않았고, 비가 내릴 듯하면서도 내리지 않는다. 구름이 서쪽 교외 쪽에서 올라오면 내가 우러러보는데 마음이 타는 듯하다. 속담에 ‘7년 동안 큰 가뭄이 들려고 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의 날씨가 혹시 큰 가뭄의 조짐이 아니겠는가.

아, 재앙은 헛되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초래한 원인이 있다.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렸는데 올해에는 너무 내리지 않는데, 모두 내가 즉위한 초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늘의 경고가 어찌하면 이렇게도 간곡하고 정성스러워서 귀에 대고 말하고 마주 보고 명하여 자애로운 아버지가 어리석은 자식을 가르치는

艱辛接濟，幸無溝壑之慘，而所賴今年，雨暘初適，田疇有望，夫何春夏之交，閱月嘆乾，一至於此哉？道臣之報，八路同然，而八路之中，三道尤甚，三道之中，畿內尤甚。麥事已判，畚農亦將愆期，夏至不遠，秋成可知。命官虔禱，已至三次，間或霏灑，尚靳沛然，欲雨不雨，雲自西郊，予時仰覩，心焉如焚。諺曰：‘七年大旱，無日不雨。’近者日候，無或大旱之兆歟？噫，災不虛生，必有所召，昨年之極備，今年之極無，俱在臨御之初，皇天警告，何若是諄復丁寧，無異耳提面命，而慈父之詔迷子耶？嗚呼，寡人有罪，災在寡躬，蠹彼蒼生，于何有辜？成湯聖人也，猶以六事自責，而寡人凡主也，其所反省之道，奚至於六？而試以大者言之，則一心爲出治之原，而存養未篤，根基不立，七情最難制者怒，而省察未至，偏急是勝，主勢愈孤，而稚陽未長，國是靡定，而羣陰尙

것과 다름이 없단 말인가. 아, 과인에게 죄가 있으니 재앙이 과인의 몸에 있어야 한다. 어리석은 저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성탕^{成湯}은 성인인데도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하였다. 과인은 평범한 군주이니 반성하는 도리가 어찌 여섯 가지에 그치겠는가.

시험 삼아 큰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마음은 다스림을 내는 근원인데 보존하고 수양하는 공부가 돈독하지 못하여 근본이 서지 않았다. 칠정^{七情} 가운데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분노인데, 성찰이 지극하지 못하여 몹시 편벽하고 성급하다. 군주의 형세가 갈수록 외로워 막 생기기 시작한 양^陽이 자라지 못하고, 국시가 정해지지 않아 여러 음^陰이 아직도 숨어 있다.

언로가 막혀서 침묵이 습관을 이루고, 경비가 고갈되어 남은 저축이 없다. 정성과 예의가 부족하여 산림은 돌아올 가마가 없고, 형세상 부득이하지만 토목 공사를 너무 자주 일으켰다.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는데 사람들은 법을 모르고, 가난한 백성이 굶주리고 있지만 정사로 재산을 정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몇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재앙을 부르고 이변을 초래하여 위로는 하늘의 화기를 해치고 아래로는 인심을 거스를 만하다.

아, 백관은 만백성의 근본이고 조정은 백관의 근본이다. 또한 그 근본을 미루어 보면 곧 군주의 마음이다. 대저 천하의 모든 일은 근본이 바르지 않은데 말단이 잘 다스려진다는 말은 과인이 듣지 못하였

伏. 言路枳塞, 而含默成習, 需費匱乏, 而儲畜無餘, 誠禮有欠, 山林無蟠然之望, 事勢不已, 而土木涉興作之嫌, 紀綱之漸解, 而人不知法, 部屋之呼庚, 而政未制產, 凡此數者, 苟有一焉, 足可以召災而致異, 上以干天和, 下以拂人心. 嗚呼, 百官爲萬民之本, 朝廷爲百官之本, 又推其本, 卽人主之一心而是已, 大抵天下萬事, 有本不正而未治者, 寡人未之聞也. 倘欲探微而溯原, 雖不外乎自省自察, 思所以感回天心, 轉災爲祥之道, 而亦微我左右匡弼之言, 其何能隨症投藥, 隨事儆予哉? 其令廚院, 自今日減膳三日. 咨爾三司之臣, 勤攻予厥失, 無或有隱, 亦越諸道方伯·列邑守宰, 凡係下民之疾苦·庶獄之幽鬱, 不拘恒式, 或以狀啓, 或以疏章, 纖悉條陳, 無或有蔽. 又如百執事, 執藝而諫, 古有其訓, 各隨其職掌, 所以蘇弊而求瘼之方, 其宜登聞, 無負寡人宵

다. 은미한 것을 찾고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늘의 마음을 감동하시켜 재해를 상서로 바꿀 방도를 생각하니, 또한 나의 좌우에서 보필하는 신하들의 말이 아니라면 어찌 증세를 따라 약을 쓰고 일에 따라 나를 경계시킬 수 있겠는가. 사옹원으로 하여금 오늘부터 3일 동안 음식 가짓수를 줄이게 하라. 아, 너희 삼사^{三司}의 신하들은 부지런히 나의 잘못을 비판하여 혹시라도 숨김이 없도록 하라. 또한 여러 도의 관찰사와 여러 고을의 수령들은 백성의 고통과 옥사의 억울함에 관계된 것이라면 일반적인 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장계 또는 소장으로 자세히 조목별로 아뢰어 혹시라도 감추지 말라. 또 모든 백관이 자신의 업무를 가지고 간언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다. 각각 맡은 직무에 따라 폐단을 없애고 병폐를 구제할 방도를 아뢰어 과인이 밤낮으로 도움을 구하는 뜻을 저버리지 말라. 승정원은 나를 대신하여 교서의 초고를 작성하되, 간절하고 측은한 뜻을 나타내도록 힘써 서울과 지방에 하유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4일

● 비가 내린다.

예조가 아뢰기를,

旣求助之意. 政院代予草教, 務從懇惻, 下諭京外.”

丁酉五月初四日

● 得雨

一. 曹啓曰: “今曉始雨, 雖未

“오늘 새벽에 비로소 비가 내렸는데 비록 충분히 적시지는 못하였으나 비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구름이 남쪽에서 몰려오고 서늘한 바람이 또 부는데 비가 쏟아질 기미는 아직도 막연하니, 규례대로 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4일

●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거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한 비답에 전례대로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4차 기우제는 사직단에 중신을 보내고 북교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달 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먹구름이 끼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을 보아도 아득하니, 정성껏 기도하는 일은 평상시의 규례를 고집할 수 없다. 모레 북교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

周洽，雨勢若此，祈雨祭觀勢舉行，何如？”傳曰：“雲湊于南，淒風又至，霈意尙邈，依例爲之。”

丁酉五月初四日

● 四次祈雨祭

一. 曹啓曰：“祈雨祭觀勢舉行事，草記批答，依例爲之事，命下矣，四次祈雨祭，社稷遣重臣，北郊遣宰臣，不卜日，今初六日設行事，知委何如？”

一. 傳曰：“密雲不雨，視天夢夢，虔禱之舉，不可膠守常例，再明日北郊祈雨祭，遣大臣攝行。”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5일

● 복선^{復膳}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5월 3일에 내리신 비망기에 3일 동안 음식 가
짓수를 줄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3일의 기한이 오
늘 그치니, 내일부터 규례대로 복구하여 봉진하라
고 분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기우제를 지내는 때에 담배를 금하지 않기로 하다.

전교하기를,

“서계^{誓戒}와 서문^{誓文}을 받을 적에 비록 술을 마시지
말고 훈채를 먹지 말라는 조항이 있으나 담배를 피
지 말라는 글은 없다. 삼갈 것은 재계보다 더한 것
이 없는데 재계라는 말은 가지런하다는 뜻이다. 가
지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런히 하려면 진실로 마
음을 고요하게 가지고 공경을 다해야 하는데, 매번
기우제를 지낼 때 허다한 하인들에게 담배를 금하
여 도리어 분란을 일으키는 단서가 된다. 더구나 평
상시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재계하는 날마다 피
우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가슴 속에 있어 마음이
쓰이는 한 가지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을

丁酉五月初五日

● 復膳

一. 曹啓曰：“今五月初三日所
下備忘記中，有減膳三日之命
矣，三日之限，止於今日，自明
日依例復舊封進之意，分付何
如？”傳曰：“允。”

● 祈雨祭時，不爲禁草

一. 傳曰：“受誓戒誓文，雖有
不飲酒·不茹⁵⁵⁷葷之條，而未
見不飲草之文。所慎莫過於
齋，而齋之爲言，齊也。欲齊其
不齊之心，固當主靜而致敬，
每於禱雨之時，輒以許多下屬
之禁草，反致紛擾之端。況有
常時所嗜之人，每當齋日，欲
飲之心，先着胸中，不特爲役
心之一端，亦非齋心之道。向
欲以此下教，昨考前例，禁草

557 不茹：저본에는 '不茹'. 『승정원일
기』 정조 1년 5월 5일 기사에 근거하
여 수정

가지런히 하는 방도가 아니다. 예전에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였는데, 어제 전례를 살펴보니 담배를 금하는 일은 수십 년 전에 시작하였고,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었으니 또한 정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앞으로는 술만 금지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7일

● 사직단에서 5차 기우제를 친림하기로 하다.

도승지 홍국영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아, 근래의 가뭄은 매우 참혹하다고 할 만하다. 여러 차례 기우제를 지냈으나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찢찢하고 서늘한 바람이 이어지니 농사를 생각하면 마치 내 몸이 아픈 듯하다. 지금 나의 정성이 얇으니 어찌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농사가 이처럼 애타고 걱정이니 희생을 대신하여 몸소 제사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더구나 지난 전례를 삼가 살펴보니, 친히 제사 지내는 일은 효종조부터 선왕조까지 매번 원년에 행하여 많게는 3차, 4차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까지 천천히 기다린 것은 감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단지 복색을 바꾸어야 하므로 차마 갑자기 명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왕께서 친히 지내던 때와 비교하면 늦었다고 하겠다. 이 또한 내가 정성이 얇은 한 가지 단서이니, 택일하지 말고 9일에 몸소 사직단에 나아

之舉，始於數十年間，而或無或有，亦知其非是定式之事，此後只令禁酒事，分付。”

丁酉五月初七日

● 社稷五次祈雨祭，親臨

一. 都承旨洪國榮入侍時，傳曰：“噫，近日亢旱，可謂孔酷，幾次禱雨，霈澤尙闕，出日杲杲，繼以淒風，言念民事，若惘在己。顧今予微誠，豈足以仰格天心？而民事之渴悶若此，代犧躬禱之舉，有不容少緩。況敬考已例，親禱之舉，自孝廟至於先朝，每行元年，而多至於三四次矣。予之尙今遲待者，非敢慢也，特以服色之有所變改，不忍遽然命下，視先朝親行之時，抑云晚矣。此亦予誠淺之一端，不卜日，當於初九日，躬詣社壇，親行祈雨，而宗廟祈雨，亦是當次，遣大

가 기우제를 친행하겠다. 종묘 기우제도 지내야 할 차례이니, 대신을 보내 섭행하겠다. 예조로 하여금 잘 알도록 하고, 재관을 각별히 가려 차임하여 각자 내가 정성껏 기도하는 뜻을 유념하게 하라. 반드시 목욕하고 옷을 세탁하여 재계를 극진히 하도록 힘 쓰라고 이조에서 향관과 배향관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 복색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사직단 기우제를 친히 지낼 때의 복색은 상께서 상중에 계시니, 을사년¹⁷²⁵의 규례대로 흑단령포·옥대·흑화자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배향할 때도 이 복식을 사용하며, 백관은 흑단령 차림으로 제사에 참석하도록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음악을 사용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사직단 기우제를 친히 지낼 때 음악을 사용하는 일은 을사년¹⁷²⁵의 규례대로 마련하여 거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臣攝行，令禮曹知悉。齋官另加擇差，其各體予虔禱之意，必也沐浴其身，洗濯其衣，務盡齋明之道，事自吏曹申飭享官及陪享官。”

● 服色

一. 曹啓曰：“今此社稷祈雨親祭時服色，自上方在諒闇中，依乙巳年例，黑團領袍·玉帶·黑靴子行祭，陪香時，亦用此服，百官則黑團領陪祭事，磨鍊以入之意，敢啓。”傳曰：“知道。”

● 用樂

一. 曹啓曰：“今此社稷祈雨親祭時，用樂一節，依乙巳年例磨鍊舉行之意，敢啓。”傳曰：“知道。”

● 사직단 친제의 재계를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친히 지내는 때에는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이번 사직단 친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으니,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치재하고,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에 묵으며 향소에서 하루 치재하며, 제사에 배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의 소속으로 유문을 수위하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사직단에서 친제의 의식을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단 기우제를 친히 지낼 때 집사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이달 8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나아갔다가 대가가 재계하는 곳에 나아간 뒤 대소 집사와 중사·승지는 흑단령 차림으로 규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지 말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社稷親祭齋戒

一. 曹啓曰：“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禮，而今此社稷親祭，只隔二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事，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并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墻門者，各於本司清齋一宿事，知委何如？”傳曰：“允。”

● 社稷親祭隸儀

一. 曹單子：“今此社稷祈雨親祭時，諸執事官除隸儀，今初八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詣齋所後，大小執事與中使·承旨，以黑團領，依例并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傳曰：“允。”

정유년¹⁷⁷⁷ 5월 8일

●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일을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사직단 기우제를 친히 지낼 때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일은 친림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9일

●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도승지 홍국영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으니 어찌 하늘이 감동하기를 바라겠는가. 어제는 제법 비가 내릴 가망이 있었으나 오늘 날씨는 아득하다고 할 만하다. 경계와 두려움이 마음에 교차하니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잘못은 나 한 사람에게 있으니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오늘부터 5일간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고 사옹원에 분부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10일

● 6차 기우제의 순서를 승정원에서 여쭙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청상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친히 기도하였으나 비가

丁酉五月初八日

● 省牲器稟

一. 曹啓曰：“今此社稷祈雨親祭時，省牲器，以親臨磨鍊之意，敢啓。”傳曰：“知道。”

丁酉五月初九日

● 減膳

一. 都承旨洪國榮入侍時，傳曰：“顧予寡昧，豈望孚格？而昨日頗有可望，今日日候，可謂漠然，戒懼交中，曷不言喻？咎在一人，萬姓奚辜？自今日減膳五日事，分付廚院。”

丁酉五月初十日

● 六次祈雨祭次序，自政院稟旨

一. 政院啓曰：“聖上憫旱親

내릴 조짐이 막연하니, 기도하는 일을 차례대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친히 제사를 지냈기에 해당 조에서 감히 규례대로 여쭙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조에 분부하여 속히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좌의정과 우의정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신령한 감응이 더욱 막연하여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니, 6차 기우제는 선농단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고 헌관·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 6차 기우제의 순서를 승정원에서 여쭙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친히 기도하기까지 하였으나 비가 내릴 조짐은 더욱 막연하니, 기도하는 절차를 차례대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친히 제사를 지냈기에 해당 조에서 감히 규례대로 여쭙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조에 분부하여 속히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계하한 뒤에 거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6차 기우제는 선농단에 중

禱, 雨意漠然, 祈禱之節, 所當次第舉行, 而才經親祀, 該曹不敢循例啓稟云, 分付該曹, 卽速舉行, 何如?”

一. 左右相入侍時, 傳曰: “靈應逾邐, 一霽尙靳, 六次祈雨祭, 先農壇遣重臣設行, 獻官·諸執事另加擇差.”

● 六次祈雨祭次序, 自政院稟旨

一. 政院啓曰: “聖上悶旱, 至於親禱, 而雨意猶邐, 祈禱之節, 所當次第舉行, 而纔經親祀, 該曹不敢循例啓稟云, 分付該曹, 卽速舉行, 何如?”

● 啓下後舉行

一. 曹啓曰: “因政院啓辭, 六次祈雨祭, 先農壇遣重臣設行

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선농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이달 12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는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달 15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제관과 제물을 신칙하다.

전교하기를,
“좌승지·우승지·우부승지가 나아가 집사들을 각 별히 가려 차임하고, 축문에 또한 수신하고 반성하는 뜻을 다하도록 힘쓰며, 궐문을 닫을 시간이 지난 뒤 이조 정랑을 불러 재관이 청재하는지 여부를 적간하고 오며,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라고 봉상시에 분부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16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事, 命下矣. 先農壇祈雨祭, 不卜日, 今十二日設行之意, 知委何如?”

● 七次祈雨祭

一. 曹單子: “七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遣近侍, 不卜日, 今十五日設行之意,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 祭官祭物申飭

一. 傳曰: “左承旨·右承旨·右副承旨進去, 諸執事另加擇差. 祝文中, 亦令務盡修省之意, 門限後, 招致吏郎, 齋官清齋與否, 摘奸以來, 祭物精備之意, 分付奉常寺.”

丁酉五月十六日

● 八次祈雨

一. 曹單子: “八次祈雨祭, 龍

“8차 기우제는 용산강·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달 18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1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최세복^{崔世福}의 수본에,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분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최세복^{崔世福}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촌 5분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17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의 기사에,

山江·楮子島遣重臣, 不卜日,
今十八日設行之意, 知委何
如?”

丁酉五月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崔世
福手本內: ‘下雨水標看審, 則
三分流下’是如爲白臥乎事.”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崔世
福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
審, 則一寸五分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丁酉五月十七日

● 祈雨祭停止

一. 政院啓辭: “因禮曹單子,

“예조의 단자로 인하여 8차 기우제의 향을 오늘 전달해야 하는데, 어제 단비가 내려 수표가 1촌 5분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지금도 동풍이 계속 불어 비가 내릴 조짐이 아직 짙습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정지하도록 아뢰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하교를 기다리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21일

● 1차 기우제를 다시 설행하다.

우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너무도 초조하고 절박하다. 삼각산·한각·목덕산의 1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모레 향을 받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24일 기우제는 근시를 보내 설행하고, 집사들을 각 별히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八次祈雨祭，今日當爲傳香，而昨日甘雨，水標已報一寸五分，今亦東風連吹，需意尙多，在前如此時，有啓稟停止之事，何以爲之？敢稟。”傳曰：“更待下教。”

丁酉五月二十一日

● 初次祈雨更爲設行

一. 右承旨入侍時，傳曰：“夏至已過，一需尙靳，言念民事，萬萬焦迫，三角山·漢江·木覓山初次祈雨祭，不卜日，再明日受香。”

一. 傳曰：“二十四日祈雨祭，遣近侍攝行，諸執事另加擇差。”

정유년¹⁷⁷⁷ 5월 25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달 27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였다.

● 중신을 헌관으로 삼다.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27일 2차 기우제의 헌관은 중신으로 채워 차임하라고 분부하고,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5월 29일

● 큰비가 내리기 전에는 기우제를 정지하는 일을 여쭙지 말도록 하다.

도승지 홍국영이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올여름 가뭄은 극심하다고 할 만하다. 이달이 끝나가는데 비가 내릴 조짐은 더욱 막연하다. 농사가 결판나게 생겼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겠는가. 더구나 서늘한 바람과 차가운 안개가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이 일어나는데 이는 모두 과인의 허물에서 말미암았으니 또한 어찌 수신하고 반성하는 방도를 소홀히 하겠는가.

丁酉五月二十五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宰臣，不卜日，今二十七日設行之意，知委何如?”

● 獻官重臣

一. 次對入侍時，傳曰：“二十七日再次祈雨祭獻官，以重臣填差事，分付，諸執事另加擇差.”

丁酉五月二十九日

● 未大霈前，祈雨祭停止，勿稟

一. 都承旨洪國榮入侍時，傳曰：“今夏亢旱，可謂極矣，此月將晦，霈意逾邇，民事其判，此將奈何? 重以淒風冷霧，朝聚夕起，此皆由於寡人之過，而亦何弛修省之道乎? 再次祈雨祭，不卜日，再明日受香，而若未得大霈之滂沱，則間或

2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모레 향을 받으라. 만약 큰비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간혹 비 내리는 때가 있어도 해당 조와 해당 방은 절대 정지하는 일을 쉽사리 번거롭게 내게 묻지 말라고 또한 분부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6월 3일

● 3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단에 택일하지 말고 이달 5일에 설행하고, 두 곳의 헌관은 대신으로 지금 채워 차임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단에 1품 중신을 보내고, 집사들을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6월 6일

● 4차 기우제 헌관의 품계를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4차 기우제는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단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이달 8일에 설행해야 합니다.

有霏灑時，該曹及該房，切勿以停止一款容易煩稟事，亦爲分付。”

丁酉六月初三日

● 三次祈雨

一. 曹啓曰：“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壇，不卜日，今初五日設行，而兩處獻官，大臣今方填差之意，敢啓。”

一. 傳曰：“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壇，遣一品重臣，諸執事另加擇差。”

丁酉六月初六日

● 四次祈雨獻官品秩稟

一. 曹啓曰：“四次祈雨祭，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不卜日，今初八日當爲設行，而三

3차 기우제의 헌관은 특교대로 이미 1품 중신을 보냈습니다. 이번 4차 기우제 헌관의 품계를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 기우제 제관의 복색

좌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지난번 1차 기우제를 지낼 적에 어떤 헌관의 소견이 달라 제복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관복을 입었다고 한다. 당초 헌관이 의심한 것은 비록 『오례의^{五禮儀}』 복색조^{服色條} 소주^{小註}의 유무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제사에 배석한 백관과 제관의 복색을 구별한 것에 불과하니, 이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이미 부당하고, 일찌감치 아뢰어 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사전^{祀典}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것이며 기우제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인가. 그런데 이렇게 공경이 부족한 일을 하였으니,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기우제의 헌관은 모두 과직하고, 2차·3차 헌관은 어리석게 오류를 답습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모두 엄하게 추고하라. 예조 판서로 말하자면 예절을 담당하는 것이 직무이고, 또 제사를 지낼 때 애초에 규찰하지 못하였고 끝내 고식적인 태도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잘못이 작지 않으니, 예조 판서 홍낙성^{洪樂性}을 체차하라.”

次祈雨祭獻官，因特教，既遣一品重臣矣。今此四次祈雨祭獻官，品秩自下不敢擅便，何以爲之乎？敢稟。”

● 祈雨祭祭官服色

一. 左承旨入侍時，傳曰：“向於初次祈雨祭也，因一獻官所見之參差，不以祭服將事，而服冠服云，當初獻官之起疑，雖在於五禮儀服色條小註之有無云，而此不過陪祭百官及祭官服色之區別者，則以此起疑，已涉不當，早即啓稟載定，又是不難。祀典何等致愼之處，祈雨又何等盡誠之事？而有此欠敬之舉，不可以既往而無警。初次祈雨祭獻官，一併罷職，再次·三次獻官，矇然襲繆之失，在所難免，一併從重推考。至於宗伯，職在掌禮，又當將事，初莫能糾檢，終不免姑息，以此以彼，所失不細，禮曹判書洪樂性遞差。”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6월 8일

● 수표를 아뢰지 않은 당상과 낭청을 파직하다.

전교하기를,

“어젯밤 비가 내렸는데 수표단자를 예조에서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아뢰지 않았으니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일이다. 더구나 단비가 내렸는데 해당 조의 잘못이 작지 않으니, 공무를 수행한 당상은 모두 파직하고, 해당 색^色의 낭청은 잡아다 처리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6월 9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단비가 쏟아져 농사가 천만다행이니 기우제는 지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보사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지낸 뒤 이미 단비가 내렸으니 보사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단·사직단의 보사제는 정식으로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

丁酉六月初八日

● 水標不奏堂郎罷職

一. 傳曰：“昨夜之雨，水標單子，該曹忘置，尙今不奏，事未前聞。況是甘霖，該曹之所失不細。行公堂上，一併罷職，該色郎廳拿處。”

丁酉六月初九日

● 祈雨停止

一. 曹啓曰：“甘雨霑然，民事萬幸，祈雨祭，今姑停止，何如？”傳曰：“允。”

● 報謝祭

一. 曹啓曰：“祈雨祭後，旣得甘霖，不可無報謝之舉，風雲雷雨·山川·雪祀壇·社稷報謝祭，依定式，待立秋後，擇日

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鎭別將 윤진오尹進五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불어나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3척 5촌 정도가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우제의 제관의 상격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지낸 지 3일 안에 단비가 시원하게 내렸으니 헌관 홍홍·이중호李重祐에게 각각 숙마 1필을 내려주고 두 대축과 집사들에게 각각 아마兒馬 한 필을 내려 주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사직단 기우제를 지낸 뒤에도 단비가 내렸으니 헌관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에게 구마廐馬 1필을 내려 주고 대축·집사들에게 각각 아마 한 필을 내려 주라.”

하였다.

設行, 何如?” 傳曰: “允.”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鎭別將尹進五牒呈內: ‘今番雨後, 江水漲溢, 以布帛尺尺量, 則常流水基良中, 三尺五寸許添流’ 是如爲白臥乎事.”

● 祈雨祭官賞格

一. 傳曰: “祈禱三日內, 快得甘露, 獻官洪·李重祐, 各塾馬一匹賜給, 兩大祝·諸執事, 各兒馬一匹賜給.” 傳曰: “社壇祈雨後, 亦得甘露, 獻官領議政金尙喆, 廐馬一匹面給, 大祝·諸執事, 各兒馬一匹賜給.”

정유년¹⁷⁷⁷ 6월 1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수표직 최세복^{崔世福}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1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6월 16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윤진오^{尹進五}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불어나 포백척으로 측
량하니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7척 정도 더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6월 25일

● 경기도의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를 신칙 하다.

우부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밤낮으로 한 번 비가 내리고 한 번 날이 개는 것이

丁酉六月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水標直崔世福手
本內：‘今日下，水標看審，則二
尺一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丁酉六月十六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鎮別將
尹進五牒呈內：‘今番雨後，江
水漲溢，以布帛尺尺量，則常
流水基良中，七尺許添流’是如
爲白臥乎事。”

丁酉六月二十五日

● 京畿雨澤狀啓申飭

一. 右副承旨入侍時，傳曰：
“宵旰之中，一需一惕，俱是關
心，則身在畿輔，密邇城闕，分

모두 마음에 걸리니, 자신이 경기에 있고 도성과 가까우니 임금의 근심을 나누어 맡은 근심은 다른 도의 갑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제 이후 비가 4척을 넘었으나 경기의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장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최근 황해도와 충청도에서 어제 비가 내렸으면 오늘 아뢰는 것처럼 부지런하지 않은 것인가. 동부승지 역시 어찌하여 예전에는 양남 관찰사의 추고를 청하였으면서 지금 경기 관찰사의 추고는 청하지 않는 것인가. 동부승지 이세석^{李世奭}을 추고하라.

7일에 장계로 아뢰었으니 지나치게 소홀하였다. 누차 부지런히 신칙하였는데 또 어찌하여 유념하지 않았는가. 처분해야 마땅하나 다른 일로 이미 심리를 받고 있으니 지금은 논할 수 없다. 장계를 재촉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수표직 최세복^{崔世福}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살펴보니 4척 5촌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憂之念，宜倍他道，而昨日以後，雨過四尺，而畿甸雨澤狀啓，尙不來到，何其與近日海湖昨雨今聞之勤太異乎？前此同副，亦何請推於兩南道臣，而不及於畿伯乎？同副承旨李世奭推考，自初七日之狀聞之稽忽極矣，屢勤飭教，則又何不動念？宜有所處分，而以他事既已就理，今無可論，狀啓其令催促。”

一. 曹單子：“水標直崔世福手本內：‘今日下雨，看審則四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정유년¹⁷⁷⁷ 6월 29일

● 보사제는 입추 이후로 택일하다.

예조의 단자에,
“풍운뇌우·산천·우사단·사직단의 보사제는 입추를 기다린 뒤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하였습니다. 보사제의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금 잡게 하였더니, 오는 7월 8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7월 6일

● 보사제의 제문을 친히 짓다.

사직단 보사제의 제문 단자에 대해 전교하기를,
“기우제의 제문을 이미 친히 지었으니 보사제의 제문을 어찌 대신 짓겠는가. 지어 내린 것을 사용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7월 11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윤진오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불어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10척 정도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丁酉六月二十九日

● 報謝祭, 立秋後擇日

一. 曹單子: “風雲雷雨·山川·雩祀壇·社稷報謝祭, 待立秋後, 擇日設行事, 啓下矣. 報謝祭吉日, 令日官推擇, 則來七月初八日爲吉云. 以此日設行之意, 知委何如?”

丁酉七月初六日

● 報謝祭文親製

一. 以社稷報謝祭文單子, 傳曰: “祈既親製, 報何代撰? 以製下者用之.”

丁酉七月十一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鎮別將尹進五牒呈內: ‘今番雨後, 江水漲溢, 以布帛尺丈量, 則常流水基良中, 十尺添流’是如爲白臥乎事.”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7월 14일

예조의 단자에,
“수표직 최세복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2촌이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7월 15일

예조의 단자에,
“수표직 최세복의 수본에,
‘오늘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3촌이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7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수표직 최세복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6촌이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丁酉七月十四日

一. 曹單子: “水標直崔世福手
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三尺二寸’ 是如爲白臥乎
事.”

丁酉七月十五日

一. 曹單子: “水標直崔世福手
本內: ‘今夜下雨, 水標看審,
則二尺三寸’ 是如爲白臥乎
事.”

丁酉七月二十三日

一. 曹單子: “水標直崔世福手
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六寸流下’ 是如爲白臥
乎事.”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7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수표직 최세복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이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8월 1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최세복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촌 5분이 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8월 5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수표직 최세복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3촌이 흘렀습
니다.’

丁酉七月二十六日

一. 曹單子: “水標直崔世福手
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二寸流下’是如爲白臥
乎事.”

丁酉八月初一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崔世
福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
審, 則三寸五分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丁酉八月初五日

一. 曹單子: “節呈水標直崔世
福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
審, 則二尺三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8월 6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윤진오의 첩정에,

‘어제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에
서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5척 정도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8월 10일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윤진오의 첩정에,

‘이번 비가 내린 후 강물이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에
서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5척 정도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8월 26일

● 영제

예조가 아뢰기를,

“찬비가 잇달아 내려 아직까지 날이 갠 가망이 없는

丁酉八月初六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鎮別將
尹進五牒呈內: ‘昨日雨後, 江
水漲溢, 常流水基良中, 以布
帛尺尺量, 則五尺許添流’ 是
如爲白臥乎事.”

丁酉八月初十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鎮別將
尹進五牒呈內: ‘今番雨後, 江
水漲溢, 常流水基良中, 以布
帛尺尺量, 則五尺添流’ 是如爲
白臥乎事.”

丁酉八月二十六日

● 禋祭

一. 曹啓曰: “冷雨連霖, 尙無
開霽之望, 秋成已迫, 傷穀可

데 추수가 이미 임박하였으니 곡식이 상할까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문영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에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침에 영의정이 이미 아뢰 바가 있으니 기청제는 다시 형세를 보아 설행하라.”

하였다,

정유년¹⁷⁷⁷ 8월 26일

● 영제를 지낼 때 지레 먼저 문을 닫은 일을 병조가 초기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송례문·돈의문의 수문군이 와서 말하기를,

‘봉상시 관원이 영제의 신위판을 받들고 문루에 봉안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규례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가 들으니 예조에서 영제를 설행하겠다는 초기를 아직 계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향을 받기 전인데 막중한 성문을 지레 닫았으니 듣고서 너무나 놀라 장교를 보내 살펴보고 호군·부장을 잡아다 조사하여 물었더니, 문을 닫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듣지 못한 일이니 너무도 한심합니다. 두 문에 나아간 봉상시 관원은 해당 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처리하게 하고, 호

悶，祈晴之舉，不容少緩，四門禁祭，不卜日，來二十七日爲始，三日而止事，分付何如?”
傳曰：“朝者領相既有所奏，祈晴祭，更爲觀勢設行.”

丁酉八月二十六日

● 禁祭時，經先閉門事，兵曹草記

一. 兵曹啓曰：“崇禮門·敦義門守門軍來言：‘奉常寺官員奉禁祭神位版，來詣奉安于門樓，故依例掩閉門隻’云，而伏聞禮曹禁祭設行草記，姑未啓下云，未及受香之前，莫重城門，經先掩閉，聞極驚駭。發遣將校看審，捉致護軍·部將，查問則閉門的實云。事未前聞，萬萬寒心，兩門進去奉常寺官員，令該府拿問嚴處，護軍·部將汰去後，令攸司照律嚴治，何如?” “允，神位之奉

군과 부장은 태거한 뒤 담당 관사로 하여금 조율하여 엄히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 신위를 모시고 가는 것은 향을 받는 날이어야 한다. 초기를 계하하기 전에 먼저 봉안하는 것은 전에 듣지 못한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청제는 형세를 보아 설행하겠다고 이미 명하였으니, 또 도로 봉상시에 봉안할 것인가. 소홀하기가 이보다 심한 일이 없으니, 사전^{祀典}을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 놀랍고 송구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 곡절을 승정원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라.”

하였다.

● 문을 닫은 일로 당상관을 월봉하고 낭청을 잡아다 처리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들으니 신위를 과연 제사 지낼 곳에 봉안하였는데 곧 또다시 신실^{神室}에 도로 봉안하였다고 한다. 너무나도 공경이 부족하다. 곡절을 자세히 조사하니, 비단 봉상시 낭청의 죄가 아니라 예조의 잘못이다. 초기에 대한 비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감결을 보냈으므로 이조에서 전사관을 차출하여 신위와 제물을 모두 모시고 갔다고 한다. 예조의 해당 당상관은 월봉 1등에 처하고 낭청은 잡아다 처리하라.”

하였다. 【색정랑^{色正郎} 이주연^{李柱延}의 나수 전지^{拿囚傳旨}에 대해 전교하기를, “우선 보방^{保放}하라.” 하였다. 진

詣，當在受香之日。草記未啓下之前，先爲奉安，不特事未前聞，況祈晴既命觀勢，則又爲還奉本寺乎？事之褻瀆，莫甚於此，其在重祀典之道，不勝驚悚，其委折，卽令政院聞啓”

● 閉門事堂上越俸，郎廳拿處

一. 傳曰：“今聞神位果已奉安祭所，旋又還奉神室云，欠敬極矣。詳查委折，非特該寺郎廳之罪，卽禮曹之失着也。不待草記批下，經先甘結之故，吏曹差出典祀官，神位及祭物，并爲奉詣云，禮曹當該堂上越俸一等，郎廳拿處。”【色正郎李柱延拿囚傳旨，傳曰：“姑爲保放。”進香使便勒書順付出來，翌日頒赦時，入於赦

향사^{進香使} 편에 칙서^{勅書}를 순부^{順付}하여 보내고, 다음 날 사면을 반포할 때 사면할 대상에 넣어 직임을 맡은 채로 풀어주었다.】

정유년¹⁷⁷⁷ 9월 3일

- 영제를 지낼 때 병조에 공문을 보낸 뒤 문을 닫기로 하다.

9월 2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하여 입시하였을 때 병조 판서 김종수^{金鍾秀}가 아뢰기를,
“성문을 열고 닫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데 영제를 지낼 때마다 위판과 향축을 모시고 가면 각 성문에서 병조에 관문을 보내지 않고 곧장 문을 닫는 것이 전례입니다. 일전에 성문을 함부로 닫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이 체면을 이루지 못하고 또 훗날의 폐단과 관계되니, 앞으로 영제 때는 예조에서 병조에 공문을 보내고, 병조 판서가 영전^{令箭}을 보내 각 성문에 통지하여 문을 닫도록 한 뒤에 비로소 거행하라고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심히 옳으니, 그리하라.” 하였다.

秩, 帶職放送.】

丁酉九月初三日

- 祭時, 移文兵曹後, 閉門

一. 今九月初二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兵曹判書金鍾秀所啓: “城門開閉, 何等嚴重, 而每當祭時, 位版·香祝進詣, 則各城門不爲關由於兵曹, 而直爲閉門者, 舊例如此. 日前城門之輕閉, 亦由於此, 不成事面, 且關後弊, 此後祭時, 禮曹移文兵曹, 兵曹判書送令箭, 知委各城門, 使之閉門, 然後始爲舉行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所奏甚是, 依爲之.”

무술년¹⁷⁷⁸ 6월 28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방금 접수한 한강진 별장 윤진오의 첩정에,

‘이번 큰비에 강물이 불어 넘쳐 평상시 수위 기준에
서 포백척으로 측량하니 10척 정도 더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술년¹⁷⁷⁸ 윤6월 4일

전교하기를,

“기쁜 비가 장마가 되어 농사가 걱정이다. 또 가을
전에 기청제를 지낸 옛 규례가 많이 있으니, 택일하
지 말고 6일에 영제를 설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헌관·집사들은 직임이 있는 사람을 모두 가려 차임
하게 하라.”

하였다.

무술년¹⁷⁷⁸ 윤6월 5일

예조가 아뢰기를,

“택일하지 말고 6일에 영제를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
셨습니다. 성상의 전교대로 사문영제를 6일부터 시
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戊戌六月二十八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尹進五牒呈內：‘今番潦雨，江
水漲溢，常流水基良中，以布
帛尺尺量，則十尺許添流’是如
爲白臥乎事。”

戊戌閏六月初四日

一. 傳曰：“喜雨成霖，民事可
慰，且秋序前祈晴，多有古例，
不卜日，初六日禁祭設行事，分
付禮曹，獻官·諸執事，以有職
人並令擇差。”

戊戌閏六月初五日

一. 曹啓曰：“不卜日，初六日，
禁祭設行事，命下矣。依聖教，
四門禁祭，自初六日爲始，三
日而止事，知委何如？”傳曰：
“允。”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일 향을 받는 곳에서 헌관·집사들을 각별히 가
려 차임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무술년¹⁷⁷⁸ 윤6월 7일

전교하기를,

“제관이 3차 제향을 지낼 때 재계하고 공경하는 마
음을 혹시라도 게을리할 염려가 없지 않다. 더구나
지금 곳은 비가 멈추었다가 다시 내리니, 더욱 십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 뜻을 사문 기청제 지내는
곳의 헌관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一. 傳曰：“明日受香所，獻官·
諸執事另擇事，分付。”

戊戌閏六月初七日

一. 傳曰：“以祭官行三次祭享，
齋敬之心，或不無怠忽之慮，
況今陰雨，既息復作，尤可十
分處誠，以此意申飭四門祈晴
祭所獻官。”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유승(성균관대학교)
공동번역	김해인·이정우·김연수/ 부유섭·이승재·김중섭·강민형
출판교열	장유승
감수	김문식(단국대학교)
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디자인	임범상·이선정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67-01

ISBN 979-11-6988-365-8(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https://science.kma.go.kr/museum>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